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 산 승인 안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 금 결 산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4년 5월 27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II.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 개요¹⁾

- '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1조 4,900억 4,8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53조 4,687억 9,900만원) 보다 △3.7%, △1조 9,787억 5,100만원 감소한 것임

1)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 최종예산액 50조 3,759억 8,100만원은 당초 본예산(47조 1,905억 1,200만원), 간주처리분(1,482억 3,300만원), 추경 증액 조정분(3조 372억 3,600만원)을 합한 것이며²⁾
- 최종예산액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 1조 1,140억 6,600만원을 합한 '23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53조 4,687억 9,900만원)보다 △ 3.7%, △1조 9,787억 5,100만원 감소한 51조 4,900억 4,800만원 임
-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55조 5,716억 8,200만원)보다 △8.6%, △ 4조 8,131억 2,800만원 감소한 50조 7,585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 계 36조 2,152억 6,800만원과 특별회계 14조 5,432억 8,500만원임
- 세출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50조 2,765억 8,700만원)보다 △5.6%, △2 조 8,161억 3,200만원 감소한 47조 4,604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조 9,284억 7,200만원과 특별회계 12조 5,319억 8,2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5조 2,950억 9,500만원) 보다 △1조 9,969억 9,700만원 감소한 3조 2,980억 9,800만원임

2) '23회계연도에는 총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본예산	제1회 추경	간주처리	최종예산
47,190,512	3,037,236	148,233	50,375,981

〈표 2-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 입 결 산 액 (가)	세 출 결 산 액 (나)	결산상잉여금 (가)-(나)	결산상잉여금	세 부 내 역
2023	총 계	51,490,048	50,758,554	47,460,455	3,298,098	명 시 이 월 ^{주1)} 641,198
			(98.6%)	(92.2%)	(6.4%)	사 고 이 월 860,581
		<2023최종>				건 설 개 량 이 월 ^{주1)} 32,902
		50,375,981				계 속 비 이 월 -
		<2022→2023이월>				보조금실 제반납금 117,424
		1,114,066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1,645,991
2023	일 반 회 계	38,319,642	36,215,268	34,928,472	1,286,796	명 시 이 월 ^{주1)} 42,345
			(99.2%)	(95.7%)	(3.5%)	사 고 이 월 213,859
		<2023최종>				계 속 비 이 월 -
		36,232,230				보조금실 제반납금 97,913
		<2022→2023이월>				채 무 상 환 -
		275,161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932,676
2023	특 별 회 계	14,982,655	14,543,285	12,531,982	2,011,302	명 시 이 월 ^{주1)} 598,853
			(97.1%)	(83.6%)	(13.4%)	사 고 이 월 646,721
		<2022최종>				건 설 개 량 이 월 ^{주1)} 32,902
		14,256,679				계 속 비 이 월 -
		<2021→2022이월>				보조금실 제반납금 19,510
		892,477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713,314

※ 주1)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만, 건설개량이월은 공기업특별회계만 작성됨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6820 ('24. 4. 1)

2. 예비비 결산 개요

- '23회계연도 예비비는 1,488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582억 9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551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2-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지 출 잔 액 (가)-(나)-(다)
합 계	148,871	58,209	55,111	173	2,924
일 반 회 계	125,001	51,792	48,694	173	2,924
특 별 회 계 ^{주1)}	23,870	6,416	6,416	-	0 ^{주2)}

※ 주1)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주2)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잔액은 34,000원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09 ('24. 3.28)

3. 기금 결산 개요

- 17개 기금, 26개 계정을 운용한 '23회계연도말 조성액은 7조 6,622억 7,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 조성액(7조 2,080억 8,100만원)보다 4,541억 9,800만원 증가한 것임

- '23회계연도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은 3조 2,389억 5,6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조 7,847억 5,800만원임

- 17개 기금, 26개 계정을 운용한 결과 수입은 6조 5,317억 8,200만원³⁾, 지출은 6조 4,906억 8,300만원⁴⁾으로 기금의 결산결과를 제출하였음

3) 전년도 이월액 361억 3,000만원 미포함

4) 다음연도 이월액 772억 2,900만원 미포함

Ⅲ.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36조 2,152억 6,800만원)와 특별회계(14조 5,432억 8,500만원)를 합한 50조 7,585억 5,4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55조 5,716억 8,200만원)보다 △8.7%, △4조 8,131억 2,800만원 감소된 것임

〈표 3-1〉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 수 납 액
합	계	51,490,048	52,245,294	50,758,554	293,169	1,193,571
	일 반 회 계	36,507,392	37,461,876	36,215,268	288,978	957,629
	특 별 회 계 주1)	14,982,655	14,783,418	14,543,285	4,191	235,941

※ 주1)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 '23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52조 2,452억 9,400만원)중 1조 1,935억 7,100만원이 미수납되고, 2,931억 6,900만원이 정리보류⁵⁾되어 50조 7,585억 5,4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 직전회계연도보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0.3%포인트 증가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도 △0.6%포인트 감소한 바, 미수납액이 1조 1,935억 7,1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미수납 감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22회계연도 결산까지 사용되던 용어인 "불납결손" 또는 "결손처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개정됨('24. 1)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정리보류"로 명칭이 변경됨

〈표 3-2〉 세입결산중 미수납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실제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비율
2023	52,245,294	50,758,554	293,169	1,193,571	97.2	2.3
2022	56,822,399	55,571,682	114,645	1,136,071	97.8	2.0
2021	53,887,515	52,859,112	82,124	946,278	98.1	1.8

2. 일반회계 세입결산

(1) 시세 세입관련

- '23회계연도 일반회계 시세(지방세)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26조 1,637억 9,700만원)보다 △8.7%, △2조 3,009억 9,800만원 감소한 23조 8,627억 9,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25조 5억 100만원)대비 95.4%가 수납된 것이나, 지방세 실제징수율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3-3〉 시세 세입결산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실제징수율 (B)/(A)	환 금 액
2023	24,112,184	25,000,501	23,862,799	95.4	1,634,773
2022	23,095,574	27,089,200	26,163,797	96.6	1,121,818
2021	20,023,706	26,777,061	26,001,188	97.1	1,184,178

- 시세 세입예산액(24조 1,121억 8,400만원)과 세입결산액(23조 8,627억 9,900만원)을 비교하면, 당초보다 △1.0%, △2,493억 8,500만원이 부족수납된 바, 예산액대비 결산액이 부족하면 세출재원 확보에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세입 예·결산의 차이가 감소되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4〉 시세 세입예산·세입결산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세 입 예 산 (A)	세 입 결 산 (B)	증 감 (C)=(B)-(A)	증 감 륜 (C)/(A)
2 0 2 3	24,112,184	23,862,799	△249,385	△1.0
2 0 2 2	23,095,574	26,163,797	3,068,223	13.3
2 0 2 1	20,023,706	26,001,188	5,977,482	29.9

- 징수결정액(25조 5억 100만원)의 경우, 직전회계연도(27조 892억원)와 비교하면, △7.7%, △2조 886억 9,800만원 감소하였고, 환급액은 1조 6,347억 7,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1,218억 1,800만원)보다 45.7%, 5,129억 5,500만원이 증가한 바,⁶⁾ 직전 2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환급액 규모가 1조원 이상 발생되어 지방세 징수결정의 정밀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22회계연도 대비 '23회계연도 지방세 환급액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방세 총 환급액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년도 수입
2 0 2 3	1,634,773	224,496	2,958	13,573	11,154	0	14.7	-	1,347,396	992	29,827	4,358
2 0 2 2	1,121,818	149,152	1,691	6,461	10,319	0	0.5	-	924,760	1,360	19,520	8,551
증 감 액	512,955	75,344	1,267	7,112	835	0	14.2	-	422,635	△367	10,306	△4,192

〈표 3-5〉 지방세 환급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환 급 액	행정기관 착 오	납 세 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 오	차 량 미등기	국 경 세 정	법 개 령 정	법 정 인 산	기 타
지 방 세	1,634,773	4,614	294,887	39,108	13,737	230,222	20,329	1,020,430	11,442
취 득 세	224,496	278	183,792	20,779	70	-	18,195	131	1,248
주 민 세	2,958	16	1,519	1,139	-	0.1	155	-	127
재 산 세	13,573	3,220	1,932	6,375	0.2	-	168	-	1,875
자동차세	11,154	6	8	333	10,407	-	19	-	380
레 저 세	0	-	-	0	-	-	-	-	-
담배소비세	14	-	-	8	-	-	-	-	6
자방소비세	-	-	-	-	-	-	-	-	-
자방소득세	1,347,396	52	82,752	7,991	0	229,595	6	1,020,298	6,699
지역자원 시 설 세	992	354	121	165	-	-	63	-	288
자방교육세	29,827	641	21,446	2,225	3,249	0	1,525	-	738
지난년도 수 입	4,358	43	3,314	89	10	626	194	-	7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7221 ('24. 4.16)

○ '23회계연도 당해연도분에 대한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23조 6,371억 7,4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23조 8,984억 8,400만원보다 △ 2,613억 1,000만원 감소된 바,

- 주민세(987억 9,600만원), 지방소득세(492억 2,100만원)는 증가되었으나, 취득세(△746억 8,100만원), 재산세(△471억 4,500만원), 자동차세(△577억 8,800만원), 레저세(△10억 500만원), 담배소비세(△55억 9,400만원), 지방소비세(△1,080억 2,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180억 1,500만원), 지방교육세(△970억 7,600만원) 등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표 3-6〉 지방세 세목별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입 예 산 (A)	세 입 결 산 (B)	증 감 (C)=(B)-(A)	증 감 륜 (C)/(A)
합	계 주1)	23,898,484	23,637,174	△261,310	△1.1
	취 득 세	5,221,862	5,147,180	△74,681	△1.4
①	주 민 세	672,385	771,181	98,796	14.7
④	재 산 세	3,522,079	3,474,933	△47,145	△1.3
⑥	자 동 차 세	1,052,439	994,650	△57,788	△5.5
⑤	레 저 세	106,133	105,127	△1,005	△0.9
	담 배 소 비 세	582,205	576,610	△5,594	△1.0
③	지 방 소 비 세	2,786,892	2,678,871	△108,020	△3.9
②	지 방 소 득 세	7,933,937	7,983,158	49,221	0.6
	지역자원시설세	313,104	295,088	△18,015	△5.8
	지 방 교 육 세	1,707,448	1,610,371	△97,076	△5.7

※ 주1) 당해연도분 지방세 수입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난년도수입” 제외

- ①주민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 증가와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이 '22회계연도 408만원에서 '23회계연도 426만원으로 4.4% 증가하여⁷⁾ 고용이 증진됨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가 초과 징수되어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6,723억 8,500만원)보다 987억 9,600만원 초과수납된 것임
- ②지방소득세 수입은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 및 임금상승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이 증가하는 등 종합소득분, 특별징수분이 증가하여 당초 세입예산액(7조 9,339억 3,700만원)보다 0.6%, 492억 2,100만원 초과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7〉 지방소득세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입 예 산 (A)	세 입 결 산 (B)	증 감 (C)=(B)-(A)	증 감 륜 (C)/(A)
합 계		7,933,937	7,983,158	49,221	0.62
	양 도 소 득 분	740,773	738,756	△2,016	△0.27
	종 합 소 득 분	909,933	1,009,903	99,970	10.99
	법 인 소 득 분	2,631,051	2,552,179	△78,871	△3.0
	특 별 징 수 분	3,652,180	3,682,319	30,139	0.83

- ③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액⁸⁾의 25.3%(소비지출분 19.3%, 취득세 등 보전분 6%)를 시·도별로 안분하는 세목으로 '23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의 안분비율과 비교할 때 소비지출분(19.3%)은

7) 통계청, '서울특별시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및 전년대비 상승률'
 2020년도 : 3,745,761원(1.1%) / 2021년도 : 3,904,436원(4.2%)
 2022년도 : 4,082,853원(4.6%) / 2023년도 : 4,263,174원(4.4%)

8) 부가가치세 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감면·공제세액 + 가산세

12.8%로 △0.2%, 취득세 등 보전분(6%)은 △0.9% 감소한 바⁹⁾

- 민간소비 및 수입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이 감소되어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2조 7,868억 9,200만원)보다 △1,080억 2,000만원(△3.9%) 부족수납된 것임
 - 지방소비세의 세액 비율은 '23회계연도에는 25.3%로 인상되었고 향후 민간소비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세수 증가가 예상되나
 - 서울시와 타·시도의 안분비율 가중치를 달리 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소비지출분 및 취득세 등 보전분에 대한 안분비율 상향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¹⁰⁾
- ④재산세 수입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서울시 공시가격이 '22회계연도보다 △5.83% 인하되어¹¹⁾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3조 5,220억 7,900만원)보다 △471억 4,500만원(△1.3%) 부족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9)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현황(2023회계연도~2019회계연도)

구분	2023	2022	2021	2020	2019
소비지출분(19.3% ^{주1)})	12.8%	13.0%	13.0%	12.9%	13.6%
취득세 등 보전분(6%)	22.8%	23.7%	23.4%	24.5%	26.6%

※ 주1) 2023회계연도 : 부가가치세의 19.3% / 2022회계연도 : 부가가치세의 17.7%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 부가가치세의 15% / 2019회계연도 : 부가가치세의 9%

10) 최근 4년 동안 중앙정부에 지방소비세에 대한 안분비율 상향을 요구한 내역 없음

11) 국토교통부, '23회계연도 서울시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단위: %)

구분	2023	2022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5.91	10.17
서울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5.83	11.21
서울시 공동주택 변동률	△17.32	14.22
서울시 표준주택 변동률	△8.55	10.55

- ⑤레저세 수입은 사업경영 정상화 및 경기재개 등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징수하였으나,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1,061억 3,300만원)보다 △10억 500만원(△0.9%) 부족수납된 것으로 제출됨
- ⑥자동차세의 경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한시 인하정책 등으로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1조 524억 3,900만원)보다 △577억 8,800만원(△5.5%) 부족수납된 것으로 제출되었음

(2) 시세 세입중 미수납액 관련

- '23회계연도에 대한 시세세입 결산결과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보다 4.6%, 378억 2,100만원 증가한 8,521억 1,3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표 3-8〉 시세세입 수납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2 0 2 3	25,000,501	23,862,799	95.4	852,112	3.4
2 0 2 2	27,089,200	26,163,797	96.6	814,292	3.0
2 0 2 1	26,777,061	26,001,188	97.1	701,913	2.6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된 시세 수입중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 해부터 장기간에 걸쳐 징수하는 것으로 '23회계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8,521억 1,200만원)은 당해연도분 미수납액 3,948억원과 지난년도분 미수납액 4,573억 1,200만원으로 확인됨¹²⁾

12) 서울특별시, 세무과-7221 ('24. 4.16)

- '23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 미수납액(8,142억 9,200만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무재산 등 고의성 있는 시세 체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방세 체납 및 회피사례에 대하여 출국정지 신청 기준을 더욱 낮추는 등 보다 직접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3회계연도에 발생한 시세 미수납액(8,521억 1,200만원)의 경우, 「지방회계법」¹³⁾에 따라 '24년 2월말 기준으로 10.6%(899억 5,500만원)가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¹⁴⁾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지난 '22회계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8,142억 9,200만원)중 27.7%, 2,256억 2,500만원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어¹⁵⁾ 미납된 시세에 대한 징수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지방세 미수납액(8,521억 1,200만원) 발생 사유별 현황을 검토하면, 무재산이 45.7%, 3,898억 6,500만원으로 가장 높고, 납세태만¹⁶⁾이 40.8%, 3,480억 7,700만원, 납기 미도래¹⁷⁾ 5.3%, 452억 2,1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3)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14) 서울특별시, 세무과-7221 ('24. 4.16)

15) 서울특별시, 세무과-7221 ('24. 4.16)

16) 납부여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것

17) 납부기한이 결산연도 이후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아니지만 수납되지 않은 금액

〈표 3-9〉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미수납액											
			무 재 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 무 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	각위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납 기 미 도 래
합	계	852,112 (100.0)	389,865 (45.7)	28,530 (3.3)	348,077 (40.8)	32,215 (3.8)	981 (0.1)	5 (0.0)	1,551 (0.2)	3,820 (0.4)	1,471 (0.2)	371 (0.0)	45,221 (5.3)
당 해 연 도 분 미 수 납 액		394,800 (100.0)	221,128 (56.0)	7,925 (2.0)	121,017 (30.7)	1,839 (0.5)	157 (0.0)	- (0.0)	135 (0.0)	1,710 (0.4)	0.9 (0.0)	371 (0.1)	40,513 (10.3)
	취 득 세	70,764	38,044	346	16,350	32	-	-	131	71	-	371	15,416
	주 민 세	7,858	5,404	35	2,349	9	29	-	-	0.8	-	-	29
	재 산 세	50,005	29,781	598	18,421	11	5	-	-	488	-	-	698
	자 동 차 세	54,850	36,969	344	16,593	91	2	-	0.1	22	0.8	-	825
	담 배 소 비 세	9,209	4,096	-	5,113	-	-	-	-	-	-	-	-
	지 방 소 득 세	163,780	84,319	6,348	48,362	1,664	117	-	-	1,011	-	-	21,957
	지역자원시설세	3,119	1,455	41	1,584	0.9	0.3	-	-	16	-	-	20
	지 방 교 육 세	35,211	21,056	211	12,242	29	1	-	4	98	0.1	-	1,565
지 난 년 도 분 미 수 납 액		457,312 (100.0)	168,737 (36.9)	20,605 (4.5)	227,060 (49.6)	30,375 (6.6)	823 (0.2)	5 (0.0)	1,416 (0.3)	2,109 (0.5)	1,470 (0.3)	- (0.0)	4,708 (1.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7221 ('24. 4.16)

-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중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서울시 전체 징수결정액은 9,302억 400만원이나, 이중 서울시 체납 전담부서인 38세금징수과의 실제 수납액은 5.2%(479억 3,100만원)이고, 서울시 전체 실제수납액(2,256억 2,500만원)을 고려하면 38세금징수과의 수납 비율은 21.2%(479억 3,100만원)로서 25개 자치구가 나머지 78.8%(1,776억 9,300만원)를 징수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서울시와 자치구의 체납징수 인원¹⁸⁾에 차이가 있고, 1인당 징수액¹⁹⁾에도 차이가 있어 징수액의 절대치를 비교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징수실적에만 한정하여 비교할 경우, 전담부서의 실효성이 제기될 수도 있어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8) 체납징수 인원

① 체납징수 인원은 체납징수 부서의 관리자(과장, 팀장) 제외, 계약직 포함 근무자 현원임
 ② '23년 10월 기준, 서울시(38세금징수과) 42명, 자치구 370명

19) 1인당 징수액 ('23년 10월 기준)

- 서울시(38세금징수과) 1인당 징수액 : 11억 4,100만원
 - 자치구 1인당 징수액 : 4억 8,000만원

〈표 3-10〉 지방세 미수납액중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도	'22년도	'21년도
지 난 년 도 수 입	예 산 액		213,700	210,000	201,005
	서울시 전체 징수결정액 (A)		930,204	778,458	699,543
	서울시 전체 실제수납액 (B)		225,625	215,569	235,753
	서울시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 (C)=(B)/(A)		24.3	27.7	33.7
	38 세 금 징 수 과	예 산 액	42,500	42,600	39,000
		징 수 결 정 액	515,892	388,014	298,432
		실 제 수 납 액 (D)	47,931	42,858	56,330
		서울시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38세금징수과 실제수납률 (E)=(D)/(A)	5.2	5.5	8.1
		서울시 전체 실제수납액 대비 38세금징수과 실제수납률 (F)=(D)/(B)	21.2	19.9	23.9
		참 고	조 직 구 성	5개팀	5개팀
			현 원	42명	41명
	자 치 구	예 산 액	171,200	167,400	162,005
		징 수 결 정 액	414,311	390,444	401,110
		실 제 수 납 액 (G)	177,693	172,710	179,422
		서울시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자치구 실제수납률 (H)=(G)/(A)	19.1	22.2	25.6
		서울시 전체 실제수납액 대비 자치구 실제수납률 (I)=(G)/(B)	78.8	80.1	76.1
		참 고	조 직 구 성	72개팀	71개팀
			현 원	370명	371명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7221 ('24. 4.16)

(3) 시세 세입중 정리보류액 관련

- '23회계연도에 대한 시세 세입 결산결과 정리보류액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57.0%, 1,744억 7,800만원 증가한 2,855억 8,900만원이며 이 중 당해연도분 정리보류액은 383억 2,200만원, 지난연도분은 2,472억 6,6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됨

〈표 3-11〉 지방세 정리보류액 사유별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정리보류액									
		배분금액 부 족	체납처분 중 지	소멸시효 완 성	행방불명	무 재 산	채 무 자 회생법에 의한면제	국 세 정리보류	평 가 액 부 족	기 타
2 0 2 3	285,589	133	259	15,977	1,739	214,939	32	-	39,714	12,794
	(100.0)	(0.0)	(0.1)	(5.6)	(0.6)	(75.3)	(0.0)	-	(13.9)	(4.5)
2 0 2 2	111,111	56	733	17,291	2,089	73,216	5	185	12,862	4,669
	(100.0)	(0.1)	(0.7)	(15.6)	(1.9)	(65.9)	(0.0)	(0.2)	(11.6)	(4.2)
2 0 2 1	73,958	48	107	16,514	776	42,930	4	16	8,424	5,135
	(100.0)	(0.1)	(0.1)	(22.3)	(1.1)	(58.0)	(0.0)	(0.0)	(11.4)	(6.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7221 ('24. 4.16)

- '22년 1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22년 2월부터 그동안 사용하던 “결손처분”을 “정리보류”²⁰⁾로 개정하였으나 명칭만 다를 뿐 정리보류 또한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정리보류 또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인 바,
- 정리보류 이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도 있어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한 이후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및 체납처분을 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리보류를 적용하여 해당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운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총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3. 삭제
 -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표 3-12〉 지방세 세목별 정리보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리보류액									
			배분금액 부 족	채납처분 중 지	소멸시효 완 성	행방불명	무재 산	채 무 자 화상법에 의한면제	국 세 장리보류	평 가액 부 족	기 타
합	계	285,589	133	259	15,977	1,739	214,939	32	-	39,714	12,794
	당 해 연 도 수 입	38,323	58	1.9	-	124	34,588	1.7	-	2,450	1,097
	취 득 세	519	39	-	-	-	65	-	-	377	36
	주 민 세	653	-	0	-	0.7	425	-	-	74	151
	재 산 세	418	13	-	-	50	78	-	-	203	71
	자 동 차 세	1,067	-	1.1	-	10	280	0.6	-	335	438
	담 배 소 비 세	18,789	-	-	-	-	18,788	-	-	-	-
	지 방 소 득 세	10,211	-	0.5	-	28	8,718	1.0	-	1,294	167
	지역자원시설세	81	2	-	-	21	8	-	-	33	15
	지 방 교 육 세	6,585	3	0.3	-	11	6,222	0.1	-	129	216
	지 난 년 도 수 입	247,267	74	257	15,977	1,615	180,350	30	-	37,263	11,69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7221 ('24. 4.16)

(4) 세외수입 관련

- 세외수입은 회계연도중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세수가 가감되는 세입원으로서 시세 수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원의 안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23년도 예산편성시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연평균 0.1%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1조 3,350억 5,100만원)보다 4%, 534억 5,200만원 증가된 1조 3,885억 3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임
-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7,849억 3,300만원)보다 △7.6%, △595억 8,200만원 감소된 7,253억 5,1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은 1,22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픽스(COFIX) 금리인상²¹⁾등으로 인해 14.7%, 180억 2,800만원 초과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업수입**은 2,96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825억원) 불발 등으로 △28.5%, △846억 7,700만원 부족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의 경우, 지난 '22회계연도에는 매각대금 7,500억원 전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매각 불발로 미수납 되었

21) 2023회계연도 코픽스(COFIX) 금리

(단위 : %)

대상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2023/11	4.00	3.89	3.35
2023/09	3.82	3.88	3.29
2023/07	3.69	3.83	3.21
2023/05	3.56	3.76	3.14
2023/03	3.56	3.71	3.08

※ 자료근거 : 은행연합회 COFIX 공시

으며, '23회계연도에는 당초 1,896억원을 편성하고, '23년 7월, 제1회 추경에서 825억원으로 감액조정하였으나, 매각 불발로 징수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825억원 전액을 부족 수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5,424억 6,900만원)보다 20.8%, 1,129억 1,700만원 증가된 6,553억 8,6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임시적 세외수입중 **보조금 반환수입**은 2,13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837억 6,300만원 초과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3〉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3 회 계 연 도			2 0 2 2 회 계 연 도			2 0 2 1 회 계 연 도		
	예산액	실 제 수납액	수납률	예산액	실 제 수납액	수납률	예산액	실 제 수납액	수납률
세 외 수 입	1,335,051	1,388,503	104.0	1,888,271	1,336,601	70.8	1,752,711	1,115,326	63.6
경 상 적 세 외 수 입	784,933	725,351	92.4	1,423,889	702,749	49.4	1,250,794	523,116	41.8
재 임 대 산 수 입	159,401	172,253	108.1	154,234	137,268	89.0	144,847	120,742	83.3
사 용 료 수 입	155,688	154,990	99.6	142,832	148,134	103.7	148,041	116,739	78.8
수 수 료 수 입	38,799	36,405	93.8	44,616	44,379	99.5	40,390	54,626	135.2
사업수입 ^{주1)}	296,900	212,223	71.5	949,551	193,447	20.4	881,440	166,027	18.8
징수교부금 ^수	11,394	8,700	76.4	11,383	9,541	83.8	14,024	10,912	77.8
이 자 수 입	122,748	140,776	114.7	121,271	169,978	140.2	22,050	54,067	245.2
임 시 적 세 외 수 입	542,469	655,386	120.8	456,496	621,337	136.1	494,477	587,341	118.7
재 산 매 각 수	149,218	168,042	112.6	52,835	56,573	107.1	106,761	15,806	14.8
자 치 단 체 간 부 담 금	13,770	13,392	97.3	14,599	13,641	93.4	10,598	10,591	99.9
보 조 금 반 환 수	213,478	297,241	139.2	178,922	292,360	163.4	141,413	303,641	214.7
기 타 수 입	135,503	147,949	109.2	180,852	221,681	122.6	204,387	218,526	106.9
지 난 년 도 수	30,498	28,759	94.3	29,288	37,080	126.6	31,316	38,775	123.8
지방행정제재 ^부 과 금 등	7,648	7,766	101.5	7,884	12,514	158.7	7,439	4,868	65.4
과 징 금	691	588	85.2	317	1,916	603.4	410	838	204.1
이행강제금	-	-	-	-	-	-	-	-	-
변 상 금	4,470	4,403	98.5	3,371	7,899	234.3	3,334	4,942	148.2
과 태 료	2,361	2,482	105.1	4,062	2,637	64.9	3,562	2,830	79.5
환 수 금	-	132	-	-	9	-	-	95,859	-
부 담 금	124	158	127.0	133	52	39.0	131	△3,838	△2918.0
범 칙 금 ^{주2)}	-	-	-						

주1) 매각사업수입 △825억원(DMC 랜드마크용지) 포함

주2)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도부터 세입과목 “범칙금”이 신설

(5) 지방교부세 관련

- **지방교부세** 수입은 대표적인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나,²²⁾ 서울시에는 ①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보전분),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음

〈표 3-14〉 지방교부세 세입결산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실제수납액 (E)	예 산 액 대 비 실제수납액 차 이 (F=E-A)
	A=B+C+D	본 예 산 (B)	추 경 예 산 (C)	간 주 처 리 (D)		
지 방 교 부 세	199,226	184,631	9,008	5,586	201,220	1,994
보 통 교 부 세	155,407	155,407	-	-	155,407	0
특 별 교 부 세	5,836	-	250	5,586	7,830	1,994
소방안전교부세	37,983	29,224	8,759	-	37,983	0

-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본예산에 1,554억 700만원을 편성하고, 소방안전교부세²³⁾는 본예산에 292억 2,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2) 2014년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 제3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생략)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X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X 100분의 3
3. 삭제
4. 부동산교부세 :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23)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23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 '23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액(292억 2,400만원)보다 45억 1,000만원 증액된 337억 3,400만원으로 확정통보하였고,²⁴⁾ '22년도 세계잉여금 정산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42억 4,900만원)을 회계연도중 추가 교부하는 것으로 통보함에²⁵⁾ 따라 총 87억 5,900만원이 증액된 379억 8,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아울러 '23회계연도중 예산총칙에 근거하여²⁶⁾ 간주처리한 55억 8,600만원²⁷⁾을 특별교부세로 세입조치하고,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별교부세 세입예산을 기정예산보다 증액조정(2억 5,000만원)하여 의결하여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예산액(1,992억 2,600만원)보다 세입결산액(2,012억 2,000만원)이 초과수납(19억 9,400만원)된 것으로 확인됨

○ 지난 '14년도에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은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금액을 '19년도까지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으로 한정하되²⁸⁾ 2020년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24)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2978 ('22.12.30), “2023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통보”

25)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1064 ('23. 4.20), “2022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 교부결정 통지”

26) 2023년도 예산서중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

27)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5428('23.12.28) “2023 회계연도 제19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알림”

28) 「지방교부세법」 부칙 제2조(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통합되는 분권교부세 중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금액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2015년도 교부액은 2014년도에 교부된 분권교부세액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교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교부액은 2015년도 교부액에 해당 연도의 내국세 증감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따른 교부세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2020년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7조에 따른 양로시설 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
3. 「정신건강법」 제3조제5호 및 제52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라 2015년에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 총 금액은 1,253억원으로 한다.

- 서울시는 지난 '22년 11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부서장회의'에서 분권 교부세 보전분 제도 원안유지 의견을 제출하여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분) 교부기한을 '25년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바 있으나, 중앙정부로부터 구체적인 공문을 받은 바가 없는 구두협의라는 한계가 있어 향후 보통교부세 교부액 현실화 및 교부 재원의 안정성이 담보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국고보조금등 관련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경비의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인 바,

-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등(511)**으로 편성하되, ①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②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입, ③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세입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어²⁹⁾ 서울시도 동 기준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수납한 것임³⁰⁾

29)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60

30)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023회계연도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세입과목인 국고보조금등(511)중 ①국고보조금(511-01), ②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③기금(511-03)으로 구분하여 편성 및 수납한 것이나,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①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73)중 국고보조금수입(173-01), ②보조금수익(673)중 국고보조금(673-01)으로 구분하여 편성 및 수납함

※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입과목 (괄호 안의 숫자는 세입과목코드)

회계	세입과목			설정	비고
	항	세항 ^{주1)}	목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국고보조금등 (511)	-	국고보조금 (511-01)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11-02)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입	
		-	기금 (511-03)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잉여금수입 (170)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73)	국고보조금수입 (173-01)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상·하수도
		보조금수입 (174)	국고보조금수입 (174-02)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공사·공단 등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영구 임대 주택 건설자금)	공영개발 공사·공단
	영업외수익 (670)	보조금수익 (673)	국고보조금 (673-01)	국가로부터 전입된 수익적 보조금 수입	공통

※ 자료근거 : ①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60

②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22. 6), p.120~123

주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와 달리 “세항”이 없음

※ 참고 : ①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세입과목중 보조금수입(174)중 국고보조금수입(174-02)은 공영개발 및 공사·공단에 대한 것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② 2021회계연도 결산까지 사용되던 타회계전입금수익(672) 중 국고보조금(672-06)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삭제

○ '23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511)**은 6조 4,781억 4,6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6조 5,652억 5,900만원)보다 △ 1.3%, △871억 1,300만원이 부족수령된 바,

- 결산결과를 세입과목별로 검토하면, ①**국고보조금(511-01)**의 경우, 6조 607억 5,4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6조 1,625억 7,000만원)보다 △1.7%, △1,018억 1,600만원이 부족수령 되었으며,
- ②**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의 경우, 1,402억 6,2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1,357억 6,800만원)보다 3.3%, 44억 9,400만원이 초과수령 되고,
- ③**기금(511-03)**의 경우, 2,771억 2,9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 (2,669억 1,900만원)보다 3.8%, 102억 1,000만원이 초과수령된 것임

〈표 3-15〉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실제수납액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B)	수납률 (B)/(A)	(C)=(B)-(A)	부족수령률 (C)/(A)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511)	6,565,258	6,478,146	98.7	△87,112	△1.3
국고보조금(511-01)	6,162,570	6,060,754	98.3	△101,816	△1.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511-02)	135,768	140,262	103.3	4,494	3.3
기금(511-03)	266,919	277,129	103.8	10,210	3.8

※ 자료근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표 3-16〉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실제수납액 (B)	부족수령액 (B)-(A)
계		8,734,677	8,357,766	△376,911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주1)}	6,565,258	6,478,146	△87,112
	특별회계	2,169,419	1,879,620	△289,799
	기타특별회계 ^{주1)}	2168234	1878436	△289,799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61,423	135,698	△25,725
	교통사업특별회계	47,397	46,069	△1,32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246	20,246	-
	주택사업특별회계	797,461	604,495	△192,966
	도시개발특별회계	141,611	140,176	△1,435
	균형발전특별회계	11,160	9,253	△1,90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52,725	889,065	△63,66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2,382	29,605	△2,777
	소방특별회계	3,829	3,829	-
	공기업특별회계 ^{주2)}	1,180	1,180	-
	수도사업특별회계	1,145	1,145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34	34	-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주1)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 ① 국고보조금(511-01)
- 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 ③ 기금(511-03)을 포함한 국고보조금등(511)에 대한 세입결산 현황임

주2)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 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73)중 국고보조금수입(173-01)과
- ② 보조금수익(673)중 국고보조금(673-01)에 대한 수입결산 현황임

자료근거 : ① 「2023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결산”

- ② 「2023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제60기)」중 “수입예산결산보고서”
- ③ 「2023년도 사업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중 “수입예산결산보고서”

3. 특별회계 세입결산³¹⁾

○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14조 7,834억 1,800만원)의 98.4%, 14조 5,432억 8,500만원이 실제수납된 바,

- 미수납액(2,359억 4,1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 미수납액(2,123억 400만원)보다 11.1%, 236억 3,700만원 증가하였고, 정리보류액(41억 9,100만원) 또한 직전회계연도보다 367.6%, 30억 5,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3-17〉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정리보류액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2023	14,783,418	14,543,285	98.4	235,941	1.6	4,191
2022	15,070,984	14,857,539	98.6	212,304	1.4	1,140
2021	13,809,285	13,686,110	99.1	118,672	0.9	4,50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7221 ('24. 4.16)

- 특히, ①수도사업특별회계(614억 8,000만원) ②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518억 7,700만원), ③주택사업특별회계(517억 7,000만원), ④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365억 9,800만원), ⑤교통사업특별회계(310억 2,700만원) 등에서 대규모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어 해당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세수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1) 10개 기타특별회계, 2개 공기업특별회계

〈표 3-18〉 특별회계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징수결정액대비)	정 리 보 류 액 (징수결정액대비)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대비)
합 계		14,783,418	14,543,285 (98.4)	4,191 (0.0)	235,941 (1.6)
기 타 특 별 회 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56,158	2,056,139 (99.9)	- (-)	18 (0.0)
	⑤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2,188,287	2,155,086 (98.5)	2,172 (0.1)	31,027 (1.4)
	④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360,298	323,700 (88.8)	- (-)	36,598 (10.2)
	③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2,907,489	2,855,718 (98.2)	- (-)	51,770 (1.8)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074,218	2,071,873 (99.9)	- (-)	2,344 (0.1)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03,209	203,209 (100.0)	- (-)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2,788	11,335 (88.6)	1,118 (8.7)	335 (2.6)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1,801,032	1,800,825 (99.9)	- (-)	206 (0.0)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34,341	34,341 (100.0)	- (-)	- (-)
	소 방 특 별 회 계	986,484	986,169 (99.9)	32 (0.0)	282 (0.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159,111	2,044,885 (94.7)	867 (0.0)	113,357 (5.3)
	①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74,511	1,012,372 (94.2)	658 (0.1)	61,480 (5.7)
	② 공 기 업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84,600	1,032,513 (95.2)	209 (0.0)	51,877 (4.8)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310억 2,700만원)중 86.8%, 269억 3,400만원이 납세태만³²⁾으로 제출되었고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517억 7,000만원)중 무재산은 62.5%, 323억 3,900만원, 납세태만은 24.4%, 126억 1,000만원으로 확인되어, 해당 사유로 인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³³⁾ 미수납액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2) 납부여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것

33) '22회계연도 미수납액(281억 7,500만원)중 “무재산”, “납세태만” 사유의 미수납 금액은 없음

〈표 3-19〉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미수납액											
		무 재 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유예	격 또는 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납 미 도 래
합 계	122,583 (100.0)	32,527 (26.5)	4,464 (3.6)	39,810 (32.5)	104 (0.1)	- (-)	2 (0.0)	5,268 (4.3)	4 (0.0)	1,602 (1.3)	10,164 (8.3)	28,633 (23.4)
도시 철도 건설 사업	18 (100.0)	- (-)	- (-)	- (-)	- (-)	- (-)	- (-)	- (-)	- (-)	- (-)	18 (100.0)	- (-)
교 통 사업	31,027 (100.0)	142 (0.5)	13 (0.0)	26,934 (86.8)	- (-)	- (-)	- (-)	2,156 (6.9)	- (-)	- (-)	1,774 (5.7)	6 (0.0)
광역 교통	36,598 (100.0)	- (-)	- (-)	101 (0.3)	- (-)	- (-)	- (-)	2,731 (7.5)	- (-)	503 (1.4)	7,129 (19.5)	26,132 (71.4)
주택 사업	51,770 (100.0)	32,339 (62.5)	4,439 (8.6)	12,610 (24.4)	- (-)	- (-)	2 (0.0)	379 (0.7)	4 (0.0)	1,097 (2.1)	303 (0.6)	594 (1.1)
도시 개발	2,344 (100.0)	- (-)	- (-)	- (-)	- (-)	- (-)	- (-)	- (-)	- (-)	- (-)	551 (23.5)	1,793 (76.5)
학교 용지	335 (100.0)	- (-)	- (-)	- (-)	- (-)	- (-)	- (-)	- (-)	- (-)	- (-)	335 (100.0)	- (-)
의료 급여 기금	206 (100.0)	- (-)	- (-)	- (-)	94 (45.9)	- (-)	- (-)	- (-)	- (-)	- (-)	51 (24.9)	60 (29.1)
소 방	282 (100.0)	45 (16.1)	10 (3.7)	164 (58.3)	9 (3.4)	- (-)	- (-)	2 (0.7)	- (-)	2 (0.7)	1 (0.4)	47 (16.7)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1조 745억 1,100만원)의 94.2%인 1조 123억 7,200만원이 실제수납 된 것으로 제출됨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1조 745억 1,100만원)은 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익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직전회계연도 징수결정액(8,985억 4,800만원)보다 19.5%, 1,759억 6,300만원 증가하였음
 - 다만 미수납액의 경우 직전회계연도(509억 6,000만원)보다 20.6%, 105억 2,000만원 증가된 614억 8,0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검토되며
 - 미수납액(614억 8,000만원)중 **납기미도래**³⁴⁾를 사유로 65.7% 403억 6,600만원이 미수납³⁵⁾된 것으로 확인되어 '24년도에는 납기내에 반드시 수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4) 납부기한이 결산연도 이후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아니지만 수납되지 않은 금액

35) 수도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미수납액													
		무 재 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도부	업는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격또입	리는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납기미도래
수도사업 특별회계	61,480 (100.0)	209 (0.3)	- (-)	3,748 (6.1)	1,584 (2.6)	- (-)	- (-)	- (-)	- (-)	- (-)	- (-)	14,527 (23.6)	1,044 (1.7)	40,366 (65.7)

〈표 3-20〉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23~'22)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정 리 보 류 액	미 수 납 액
2 0 2 3		1,074,511 (100.0)	1,012,372 (100.0)	658 (100.0)	61,480 (100.0)
	당 해 연 도 분	1,058,564 (98.5)	999,359 (98.7)	- (-)	59,204 (96.3)
	지난년도수입	15,946 (1.5)	13,012 (1.3)	658 (100.0)	2,275 (3.7)
2 0 2 2		898,548 (100.0)	846,853 (100.0)	735 (100.0)	50,960 (100.0)
	당 해 연 도 분	885,307 (98.5)	836,256 (98.7)	0 (0.0)	49,051 (96.3)
	지난년도수입	13,241 (1.5)	10,596 (1.3)	735 (100.0)	1,909 (3.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7221 ('24. 4.16)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1조 846억)의 95.2%인 1조 325억 1,300만원이 실제수납된 바,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1조 846억)은 직전회계연도 징수결정액(1조 88억 2,800만원)보다 7.5%, 757억 7,200만원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의 경우, 직전회계연도(520억 1,300만원)보다 △0.3%, △1억 3,600만원 감소한 518억 7,7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표 3-21〉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23~'22)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정 리 보 류 액	미 수 납 액
2 0 2 3		1,084,600 (100.0)	1,032,513 (100.0)	209 (100.0)	51,877 (100.0)
	당 해 연 도 분	1,034,912 (95.4)	986,267 (95.5)	- -	48,644 (93.8)
	지난년도수입	49,688 (4.6)	46,246 (4.5)	209 (100.0)	3,232 (6.2)
2 0 2 2		1,008,828 (100.0)	956,596 (100.0)	218 (100.0)	52,013 (100.0)
	당 해 연 도 분	989,383 (98.1)	944,200 (98.7)	0 -	45,183 (86.9)
	지난년도수입	19,444 (1.9)	12,396 (1.3)	218 (100.0)	6,829 (13.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7221 ('24. 4.16)

4. 지방채 관련

- '23회계연도말 지방채 현재액은 11조 4,424억 9,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11조 8,980억 200만원)보다 △3.8%, △4,555억 400만원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지방채 현재액은 342억원이나, '21회계연도에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등 342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지난 '22회계연도에 이어 '23회계연도에도 별도의 추가 차입이나 상환이 없어 직전회계연도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됨
- **특별회계** 지방채 현재액의 경우에는 '23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직전회계연도말(11조 2,138억 200만원)보다 △4.0%, △4,555억 400만원 감소된 10조 7,582억 9,700만원으로 확인됨
- **지방채 차입**의 경우, 직전회계연도 차입액(2조 2,816억 2,600만원)보다 △5,744억 600만원 감소된 1조 7,072억 2,000만원으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①도시철도공채(6,906억 9,000만원)와 ②동북선 경전철 건설 등을 위한 모집공채(4,609억원)³⁶⁾를 포함하여 총 1조 1,515억 9,000만원을 차입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 확충을 위해 85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등을 위한 모집공채 3,950억원을 차입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23회계연도에는 총 756억 3,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23년도 예산서의 예산총칙에 명시된 ①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256억 3,000만원), ②풍납토성 복원 보상 등을 위한 모집공채(100억원)를 발행하였으며,

36) ①지하철 부채 상환(차환) 2,530억원, ②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819억원,
③노후 전동차 교체 510억원, ④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470억원, ⑤9호선 4단계 건설 280억원

- '22회계연도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은 이월발행분인 ③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200억원), ④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등 SOC 확충(200억원)³⁷⁾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표 3-22〉 2023회계연도 공채발행 및 차입금(예산총칙) 및 실제 발행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 2 3 년 도 본 예 산 예 산 총 칙	' 2 3 년 도 제 1 회 추 경 예 산 예 산 총 칙	예 산 총 칙 증 감 액	' 2 3 년 도 당 해 발행규모 ^{주1)}	예 산 총 칙 대 비 지 방 채 잔 액	비 고
	①	②	③=②-①	④	⑤=④-②	전년도이월발행
총 계	1,793,048	1,692,948	△100,100	1,667,220	25,727	40,000
일 반 회 계	-	-	-	-	-	-
특 별 회 계	1,793,048	1,692,948	△100,100	1,667,220	25,727	40,000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1,277,252	1,177,152	△100,100	1,151,590	25,561	-
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85,000	85,000	-	85,000	-	-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395,000	395,000	-	395,000	-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35,796	35,796	-	35,630	166	40,000 ^{주2)}

※ 주1) 전년도 이월발행분 400억원은 제외된 것임

주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 200억원,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등 SOC 확충 200억원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560 ('24. 4.15)

서울특별시, 세무과-7221 ('24. 4.16)

37) ①월드컵대교 건설 144억 6,000만원,
 ②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9억 9,000만원,
 ③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4억 9,000만원,
 ④신림~봉천터널 건설 6,000만원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23년도 예산서중 예산총칙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규모(1조 6,929억 4,800만원)보다 실제 발행규모(1조 6,672억 2,000만원)는 △257억 2,700만원 적은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지난 '23년 3월,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대상 범위를 일부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³⁸⁾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는 매출공채의 실판매액이 당초 예산액(7,162억 5,200만원)보다 △255억 6,100만원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6,906억 9,000만원이 발행되었고,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차입할 계획이었던 정부자금채에 대해서 발행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당초(257억 9,600만원)보다 △1억 6,600만원 감소된 256억 3,000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채 상환**의 경우, 특별회계는 지난 '22회계연도 상환액(1조 58억 5,200만원)보다 1조 785억 6,600만원 증가된 2조 1,370억 9,500만원을 상환한 바,
- 회계별로 지방채 상환 내역을 검토하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1조 3,924억 5,300만원을 상환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581억 6,6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38)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 ①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다목적형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매입 금액: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2.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매입 금액: 도급금액의 100분의 2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4.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소형(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803억 7,500만원을 상환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930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31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됨

○ **기금**의 지방채 현재액은 6,500억원으로, 코로나19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대규모 차입이 발생한 지난 '21회계연도(6,000억원)와 '22회계연도(2,000억원)의 채무상환 시기가 미도래하여 회계연도중 증·감이 없어 직전회계연도와 동일한 규모임

○ 서울시가 '23회계연도에 4개 특별회계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1조 7,072억 2,000만원으로 이월 발행액(400억원)을 제외하면 '23회계연도분 지방채는 1조 6,672억 2,000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한도액(2조 6,994억 6,500만원) 및 '23회계연도 예산총칙의 제4조(공채발행 및 차입금)의 범위(1조 6,929억 4,800만원)내에서 차입된 것으로 검토됨

- 더욱이 '23회계연도말 지방채 현재액(11조 4,424억 9,700만원)은 직전 회계연도말(11조 8,980억 200만원)보다 △3.8%, △4,555억 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 '24년도 말 지방채 예상액(11조 4,056억 6,900만원)과 '23회계연도 말 지방채 현재액(11조 4,424억 9,700만원)을 비교할 경우, △368억 2,8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24년도 서울시의 최종예산은 50조 5,244억 5,900만원³⁹⁾으로 행안부의 기준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하 “채무비율”)을 산출하면 22.5%인 것으로 검토되는 바,

39) '24년도 서울시 최종예산 50조 5,244억 5,900만원 (본예산 의결 기준)

①예산규모 45조 7,405억 1,700만원 + ②기금 4조 7,839억 4,200만원

〈표 3-23〉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중 채무지표 산정기준

◆ 채무지표별 산정 세부기준

③ 예산대비 채무비율 = $\frac{\text{일반채무 잔액}}{\text{최종예산}} \times 100$

- 연도구분 : 당해연도 최종예산 및 일반채무 자료 활용
- 최종예산 규모 대비 일반채무(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 이행책임)
 - ※ 전체 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 자치단체 : 총계 기준
 - ※ '24년도(본예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 = 22.5%
 - 서울시 채무 ('24년도 말 기준 11조 4,056억원) /
최종예산 (50조 5,244억원 = 예산 45조 7,405억원 + 기금 4조 7,839억원)
 - 다만, 동 수치는 채무는 '24년도 말 예산액 기준이지만
최종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향후, 추경 등을 통해 '24년도 예산규모가 조정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기준」('23. 7), p.9

-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⁴⁰⁾
- 재정주의단체⁴¹⁾로 지정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 채무비율(22.5%)이 25%를 초과하게 되면 당초 계획한 재정사업 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4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재정진단)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41)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정위기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2. 재정주의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 특히,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세입예산보다 부족 수납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물론, 경기불황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상황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4〉 2023회계연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및 발행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방 채
지 방 채 발 행 한 도 액	총 한도액 ^{주1)}		2,699,465
	기	본 한 도 액	1,702,213
	별	도 한 도 액	997,252
		지 역 개 발 채 권 발 행 액	-
		도 시 철 도 공 채 발 행 액	777,252
		' 2 3 년 차 환 채 발 행 액	220,000
		지 역 일 자 리 사 업 (투 자 사 업)	-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
지 방 채 발 행 규 모	총 발행규모 ^{주2)}		1,667,220
	일	반 회 계	-
	특	별 회 계	1,667,220
	기	금	-

※ 주1)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28171 ('22.11. 4), “2023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및 발행규모”

주2) 전년도 이월발행분 (400억원) 제외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28171 ('22.11. 4), 재정담당관-4560 ('24. 4.15)
일부 재구성

○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은 당해연도에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는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발행이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바,⁴²⁾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23회계연도에 발행된 지방채 756억 3,000만원 중 ①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200억원, ②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4억 9,000만원, ③신림~봉천터널 건설 6,000만원, ④월드컵대교 건설 144억 6,000만원, ⑤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9억 9,000만원은 지난 '22회계연도 지방채 발행계획분을 '23회계연도로 이월하여 발행한 사례로 확인됨

〈표 3-25〉 2022회계연도에 승인된 지방채를 이월 발행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지방채발행 계획액 ^{주1)}	'22회계연도 발행액	'23회계연도 발행액	차액
		(A)	(B)	(C)	(A-B-C)
총 계		98,000	57,900	40,000	100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공 원 보 상	20,000	- ^{주2)}	20,000	-
	강 남 순 환 도 시 고 속 도 로 건 설	10,000	9,500	490	10
	신 림 ~ 봉 천 터 널 건 설	22,500	22,400	60	40
	월 드 컵 대 교 건 설	14,500	-	14,460	40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31,000	26,000	4,990	10

※ 주1) 지방채발행계획액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의 금액임

주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의 경우에는 '22회계연도에 지방채 1,500억원을 발행하였으나, 이는 '21회계연도에 승인된 지방채를 이월발행한 것으로 '22회계연도에 승인된 200억원은 전액 '23회계연도로 이월하여 발행하였음

자료근거 :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3787 ('21.11.10)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396 ('23. 4.13)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560 ('24. 4.15)

42)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22. 7), P.20

4. 유의사항

바. 지방채의 발행 관련

- 당해 연도에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는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발행이 가능하며(한도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새로이 지방채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함

- '22회계연도에 승인받은 지방채를 '23회계연도로 이월 발행한 사례를 검토하면 '22년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확정된 지방채 발행계획에서 확정된 규모를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예산현액 1,684억 6,300만원)중 '23회계연도에 이월 발행한 지방채 200억원의 경우, '23회계연도에 162억 3,900만원은 집행되었으나, 37억 6,000만원⁴³⁾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4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예산을 집행하기 직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이미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재원중 18.8%, 37억 6,000만원을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원금뿐 아니라 추가적인 이자비용까지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방채의 발행 및 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중 실제 지출가능한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합리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지난 '23년도 본예산 심사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 257억 9,600만원을 발행할 것으로 계획하여 예산총칙 제4조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음⁴⁴⁾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은 채무관리서의 작성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하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등”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 보고

4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에서 지난 '23년 12월에 발행한 지방채 200억원은 '24년 1월, 전액 상환되었으며, 동 지방채(200억원)의 집행과정에서 '24회계연도로 이월된 37억 6,000만원은 '24년도 5월 현재 32억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5억 6,000만원도 '24년도중 전액 집행할 예정임

44) ■ 서울특별시, 「2023년도 예산서」, p.8 “예산총칙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개발특별회계 : 357억 9,600만원
■ 서울특별시, 「2023년도 예산서」, p.144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611-01 정부자금채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57억 9,600만원
612-02 모집공채 : 풍납토성 복원(지방채) 100억원

서의 작성 내용으로도 “당해연도 지방채(지방채 증권, 차입금) 발행 내용에 대해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⁴⁵⁾

- 그러나 서울시는 '23년도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에 편성된 정부자금채를 회계연도중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회계연도 결산서의 재무제표 첨부서류중 ①채무관리보고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중 ②지방채 발행 보고서에서 해당 사안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됨
- 이에 대하여 채무총괄관리부서는 동 정부자금채는 서울시가 발행하는 지방채(정부자금채)에는 해당되나, 관계 기관 간의 협의⁴⁶⁾에 따라 발행과 동시에 서울시농수산물공사로 채무를 이관하므로 서울시는 상환의무가 없어 채무가 해소된다고 회신한 바,⁴⁷⁾
- 동 지방채 발행 건은 예산총칙에 기재하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심사시 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사안으로 회계연도 개시후 실제 발행하여 서울시의 특별회계로 세입처리 되었고, 결산서에도 세입결산에 기재되어있음⁴⁸⁾

45)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4. 1), p.25

사.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수지상황 총괄 등 22종류)

⑩ 지방채 발행 보고서

- 당해연도 지방채(지방채증권, 차입금) 발행 내용에 대한 작성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4. 1), p.281

1. 채무관리서의 범위

○ 채무관리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하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등을 대상으로 작성

46) 서울특별시, 생활경제담당관-30576 ('09.12.14)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농특회계 용자 집행 계획”

▷ 시 부채관리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환주체인 농수산물공사에서 직접 용자를 교부받아 집행 후 상환토록 수차례 농림수산물공사와 협의하였으나

▷ 용자금 예산과목이 자치단체용자금이며, 장기간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자금 관리 등의 사유로 농림수산물공사에서 난색 표명

※ 서울시에서 정부자금채 발행 뒤 농수산물공사로 채무 이관

47)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773 ('24. 5.14)

48)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서 Ⅲ-1], p.1025

제3장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목별조서, 도시개발특별회계 611-01 정부자금채

예산현액 : 257억 6,900만원, 징수결정액 : 256억 3,000만원, 실제수납액 : 256억 3,000만원

-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은 작성대상에 정부자금채라 하여도 차입금에 포함시키고 있고, 작성예시에도 “정부자금(공자기금)”을 기재하고 있어, 정부자금채 발행 즉시 채무가 이관되어 상환이나 관리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라 하여도 채무관리보고서 및 지방채 발행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6〉 2023회계연도 지방채 발행현황 (회계별)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발 행 일	발 행 액	기 채 방 법 (차 입 선)	발 행 금 리	상 환 기 간
총 계		1,681,59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소 계	1,151,590			
도 시 철 도 건 설 (도 시 철 도 공 채)	연중	690,690	매출공채 (도시철도공채)	2.5	7년
동북선 경전철 건설 (민자)	2023.11.13	47,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63	3년만기 일시상환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2023.11.13	81,9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63	3년만기 일시상환
지하철 부채 상환 (차환)	2023.11.13	253,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63	3년만기 일시상환
9 호 선 4 단 계 건 설	2023.11.13	28,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63	3년만기 일시상환
노 후 전 동 차 교 체	2023.11.13	51,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63	3년만기 일시상환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소 계	395,000			
재 개발 임대주택 매입	2023.11.22	180,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3.963	2년만기 일시상환
재 건축 소형주택 매입	2023.11.22	60,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3.963	2년만기 일시상환
일 반 매 입 임 대	2023.12.12	80,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신 혼 부 부 매 입 임 대	2023.12.12	45,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청 년 매 입 임 대	2023.12.12	30,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소 계	85,000			
광 역 철 도 건 설 비 부 담	2023.12.12	85,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소 계	75,630			
풍납토성 복원사업 (차환)	2023.12.12	10,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45	1개월('24. 1월 상환)
가 락 동 농 수 산 물 도 매 시 장 시 설 현 대 화	연중수시	25,630	정부자금채 (공모공채)	3.00	농수산물공사로 채무 이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2023.12.12	20,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2023.12.12	49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신 림 ~ 봉 천 터 널 건 설	2023.12.12	6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월 드 컵 대 교 건 설	2023.12.12	14,46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2023.12.12	4,99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 자료근거 : ■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서」 첨부서류중 (18) 지방채 발행 보고서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560 ('24. 4.15)
 ■ 서울특별시, 세무과-7221 ('24. 4.16)

〈표 3-27〉 2023회계연도 지방채 증감 현황^{주1)}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선	2022년도말 현재액	2023회계연도 중 증감현황			2023년도말 현재액	2023회계연도 중 이자지급
				차입상환	증감	①-②		
				①	②	①-②		
총	계		11,898,002	1,681,590	2,137,095	△455,504	11,442,497	180,399
일	반 회 계 (합 계)		34,200	-	-	-	34,200	783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등 (일 반 회 계)	모 집 공 채	34,200	-	-	-	34,200	783
특	별 회 계 (합 계)		11,213,802	1,681,590	2,137,095	△455,504	10,758,297	168,113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11,213,802	1,681,590	2,137,095	△455,504	10,758,297	181,909
	도시철도공채 ^{주2)}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철도 공채	5,545,433	690,690	768,453	△77,762	5,467,670	77,626
	도시철도 확충 및 안전개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모 집 공 채	1,118,100	460,900	624,000	△163,100	955,000	9,656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도시 기금	716,024	-	48,166	△48,166	667,858	16,827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주택사업특별회계)	모 집 공 채	1,050,000	395,000	310,000	85,000	1,135,000	13,230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보상 (도시개발특별회계)	모 집 공 채	1,430,000	20,000	150,000	△130,000	1,300,000	22,754
	강남신도시고속도로 등 SOC 확충 (도시개발특별회계)	모 집 공 채	773,800	20,000	99,200	△79,200	694,600	19,689
	풍납토성 복원보상 (도시개발특별회계)	모 집 공 채	71,000	10,000	23,000	△13,000	58,000	944
	신림-봉천터널 건설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역상생 발전기금	20,418	-	3,025	△3,025	17,393	289
	서부간선지하도로건설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역상생 발전기금	38,625	-	5,150	△5,150	33,475	275
	동부간선도로확장 등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자 관리기금	31,400	-	-	-	31,400	428
	동부간선도로확장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공공자 관리기금	83,400	-	-	-	83,400	1,138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등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모 집 공 채	283,000	85,000	93,000	△8,000	275,000	4,326
	미수입복합공간 등 문화시설 확충 (균형발전특별회계)	모 집 공 채	52,600	-	13,100	△13,100	39,500	926
공	기업 특 별 회 계 (소 계)		-	-	-	-	-	-
기	금 (합 계)		650,000	-	-	-	650,000	11,503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재난관리기금)	모 집 공 채	650,000	-	-	-	650,000	11,503

※ 주1)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함(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제외), 이월발행분 포함

주2) 교통공사 공채 이관분은 도시철도공채에 포함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560 ('24. 4.15)

〈표 3-28A〉 서울시 채무현황 및 2024년도중 차입·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차입선	발행시기	단초 발행액	발행조건		'23년도말 현재액	'24년도중 지방채 차입·상환계획			'24년도말 전망액
				발행 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차입	원금상환	이자지급	
채 무 총 계 (가)+(나)+(다)			11,801,389			11,898,002	1,683,966	1,720,794	192,857	11,405,669
지방채 ^{주1)} (가)=㉠+㉡+㉢			11,801,389			11,898,002	1,683,966	1,720,794	192,857	11,405,669
일 반 회 계 ㉠			34,200			34,200	-	-	783	34,200
마 국 산 업 단 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등	모집공채	'21.12.	34,200	2.29 (고정금리)	5년 (일시상환)	34,200	-	-	783	34,200
특 별 회 계 ㉡=㉠+㉢			11,117,189			10,758,297	1,683,966	1,570,794	181,527	10,871,469
기 타 특 별 회 계 ㉢			11,117,189			10,758,297	1,683,966	1,570,794	181,527	10,871,469
도 시 철 도 공 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도시철도 공채	'17.~'23.	5,467,670	1.0~2.5 (고정금리)	7년 (일시상환)	5,467,670	665,966	376,300	38,349	5,343,323
도시철도 확충 및 안전개선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모집공채	'19.~'23.	955,000	1.69~4.26 (고정금리)	3년~10년 (일시상환)	955,000	294,000	392,153	38,478	1,208,000
지하철 부채 상환(차환)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공공자금 관리기금	'24.10. (예정)	-	-	-	-	220,000	-	-	220,000
공 공 임 대 주 택 매 입 (주 택 사 업)	주택도시 기금	'95~'01	1,018,574	1.8(변동) 3.0(고정)	10년거치 20년상환 30년거치 15년상환	667,858	-	52,305	15,325	615,552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등 (주 택 사 업)	모집공채	'19.~'23.	1,135,000	1.06~4.45 (고정금리)	1개월, 2년, 4년, 5년, 10년 (일시상환)	1,135,000	144,000	365,000	20,761	914,000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도 시 개 발)	공공자금 관리기금	'24.10. (예정)	-	-	5년거치 10년상환 (분할상환)	-	180,000	-	-	180,000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등 S O C 확충 (도 시 개 발)	모집공채	'20.~'23.	694,600	1.767~4.25 (고정금리)	1개월, 5년, 7년, 10년 (일시상환)	694,600	50,000	162,000	14,108	582,600

※ 주1)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함(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제외)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560 ('24. 4.15)

〈표 3-28B〉 서울시 채무현황 및 2024년도중 차입·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차입선	발행시기	당초 발행액	발행조건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중 지방채 차입·상환계획			'23년도말 전망액	
				발행 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차입	원금상환	이자지급		
채무총계 (가)+(나)+(다)			11,801,389			11,898,002	1,683,966	1,720,794	192,857	11,405,669	
지방채 ^{주1)} (가)=㉠+㉡+㉢			11,801,389			11,898,002	1,683,966	1,720,794	192,857	11,405,669	
특별회계 ㉡=㉠+㉢			11,117,189			10,758,297	1,683,966	1,570,794	181,527	10,871,469	
기타특별회계 ㉠			11,117,189			10,758,297	1,683,966	1,570,794	181,527	10,871,46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도시개발)			모집공채	'19.~'23.	1,300,000	1.29~4.25 (고정금리)	1개월, 5년, 7년, 10년, 30년 (일시상환)	1,300,000	- 20,000	22,269	1,280,000
풍납토성 복원사업 (도시개발)			모집공채	'19.~'23.	58,000	1.79, 4.25 (고정금리)	10년 (일시상환)	58,000	- 10,000	894	48,000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등 SOC 확충 (도시개발)			지역상생 발전기금	'19.~'20.	59,043	0.75 (고정금리)	2년거치 8년상환 (분할상환)	50,868	40,000 8,175	481	82,693
동부간선도로 확충 SOC (도시개발)			공공자금 관리기금	'20.	31,400	1.365 (고정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분할상환)	31,400	- -	430	31,400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SOC 확충 (광역교통시설)			모집공채	'19.~'23.	275,000	1.75~4.25 (고정금리)	1개월, 5년, 7년, 10년 (일시상환)	275,000	90,000 122,000	4,282	243,000
동부간선도로 확장 (북천교~의정부시계) (광역교통시설)			공공자금 관리기금	'20.	83,400	1.365 (고정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분할상환)	83,400	- -	1,140	83,400
미술문화보합공사 등 문화시설 확충 (문화관광형발전)			모집공채	'19.~'21.	39,500	1.79~4.45 (고정금리)	5년, 10년 (일시상환)	39,500	- -	832	39,500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기금 ㉢					650,000			650,000	- 150,000	11,503	650,000
재난관리기금 재원조성 (재난관리기금)			모집공채	'20.~'22.	650,000	1.237~2.585 (고정금리)	3년, 5년 (일시상환)	650,000	- 150,000	11,503	500,000
채무부담행위 (나)					-	-	-	-	- -	-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다)					-	-	-	-	- -	-	-

※ 주1)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함(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제외)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560 ('24. 4.15)

〈표 3-29〉 부채·채무^{주1)} 현황 (2023~2021)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2 3	2 0 2 2	2 0 2 1
서울시 및 투자기관 총계	부 채	43,399,239	44,776,082	43,540,404
	채 무	21,714,185	22,017,477	20,019,584
서울시	부 채	18,059,399	19,360,205	18,793,543
	채 무	11,442,497	11,898,002	10,774,904
서울시 투자기관	부 채	25,339,839	25,415,876	24,746,860
	채 무	10,271,687	10,119,475	9,244,680
서울교통공사	부 채	6,832,164	6,556,959	6,607,231
	채 무	3,958,000	3,538,000	3,597,310
서울시설공단	부 채	245,661	199,348	186,577
	채 무	-	-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부 채	197,104	172,091	147,393
	채 무	94,122	71,197	53,627
서울주택도시공사	부 채	17,706,889	18,168,757	17,634,093
	채 무	5,960,188	6,328,312	5,504,234
서울에너지공사	부 채	349,126	307,276	170,298
	채 무	259,377	181,965	89,50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 채	8,893	11,442	1,266
	채 무	-	-	-

※ 주1) 채무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을 포함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560 ('24. 4.15)

IV. 세출결산

1. 불용액⁴⁹⁾ 관련

(1) 불용액(집행잔액) 현황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51조 4,900억 4,800만원)의 4.3%인 2조 2,388억 5,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9,951억 500만원)보다 2,437억 4,400만원 증가한 것임
- 불용액은 ①사업추진중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②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③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등으로도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23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 사례 모두를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는 지난 '23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일부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2조 2,388억 5,000만원으로 지난 '17회계연도에 불용액이 1조원을 초과한 이후 불용액이 2조원 이상 발생한 바,⁵⁰⁾

49) 용어사용 관련사항

- 2014년 11월 신설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2에서 세출결산에 관하여 “집행잔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사용되어 온 법정용어인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변경됨
- 2016년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 바, 현재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세출결산 명시사항으로 “집행잔액”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는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부분적으로 병기하고 있고, 교육부의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에는 불용원인을 명확히 하기위해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예정액”으로 세분화하고 있음에 따라, 동 검토보고에는 '24년 현재까지도 “불용액”을 병용함

- 50) 서울시의 경우, '10회계연도에 1조 6,539억 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11회계연도부터 '16회계연도까지는 1조원 이하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나, '17회계연도(1조 1,352억 4,900만원) 이후 '22회계연도(1조 9,951억 500만원)까지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1조원을 초과하였음

- 사업부서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예산확보를 우선시하였을 수도 있으나,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해당 소요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용규모가 확대되어 당해연도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향후에는 회계연도중 감액 대상 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 회계연도별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주1)}	불 용 액 ^{주1)}	불 용 률
2 0 2 3	51,490,048	2,238,850	4.3
2 0 2 2	53,468,799	1,995,105	3.7
2 0 2 1	47,759,128	1,180,681	2.5
2 0 2 0	46,798,514	1,223,944	2.6
2 0 1 9	40,094,847	1,096,919	2.7
2 0 1 8	36,547,866	1,011,219	2.8
2 0 1 7	32,916,152	1,135,249	3.4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 아울러, '23회계연도의 경우에는 '22회계연도보다 예산의 규모가 △3.7%, △1조 9,787억 5,100만원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규모는 전년대비 12.2%, 2,437억 4,400만원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전년대비 51.7%)과 보조금반납금(전년대비 20.6%)도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불용이나 이월 사례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2〉 서울특별시 결산현황 ('23회계연도~'22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3 회 계 연 도 (A)	2 0 2 2 회 계 연 도 (B)	증 감 액 (C = A - B)	증 감 륜 (D = C / B)
예 산 현 액	51,490,048	53,468,799	△1,978,751	△3.7
지 출 액	47,460,455	50,276,587	△2,816,131	△5.6
다음연도 이월액	1,690,556	1,114,066	576,490	51.7
보 조 금 반 납 금	100,185	83,040	17,144	20.6
불 용 액	2,238,850	1,995,105	243,744	12.2

○ 회계별로 불용액 발생 규모를 검토하면 일반회계는 직전회계연도(8,604억 5,700만원)보다 3,814억 4,100만원 증가한 1조 2,418억 9,900만원 이 불용된 것으로

- '23회계연도에 세수 부족수납이 발생되어 보통세 등 지방세 세입규모에 연동하여 세출예산의 규모가 확정되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육 세 전출 등 법정전출금의 실제 지출액이 당초 추계한 규모보다 감소한 것 이 주요 원인으로 검토되는 바,
-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세입결손이 예상된다면 회계연도 종료 가 임박한 회계년도말이라도 정리추경을 통해 당해 연도 세입규모와 그와 연동된 법정전출금의 세출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됨

○ 특별회계는 직전회계연도(1조 1,346억 4,700만원)보다 △1,376억 9,600만원 감소한 9,969억 5,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기타특별회계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339억 8,300만원(예산현액 대비 17.3%)이 불용되어 직전회계연도(684억 2,000만원)보다 불용액

이 388.1%, 2,655억 6,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703억 5,900만원(예산현액 대비 5.6%)이 불용되어 직전회계연도(4,808억 7,900만원)보다 불용액이 △64.5%, △3,105억 2,000만원 감소하였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367억 7,100만원)중 71.7%, 263억 7,300만원이 불용된 바, 서울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⁵¹⁾에 따라 서울시 분담분인 토지매입가의 50%⁵²⁾를 편성한 것이나 교육청의 토지매입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매입가 확정이 지연되어, 당초 매입가를 예상하여 편성한 예산현액(19억 8,7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으며⁵³⁾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한 예탁금은 세입감소에 따라 예탁금 집행액이 감소하여 예산현액(337억원)의 28.8%, 97억원만 예탁되고 예산현액 대비 71.2%, 240억원이 불용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중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69억 5,100만원(예산현액 대비 6.6%)이 불용되어 직전회계연도(1,049억 9,800만원)보다 △36.2%, △380억 4,700만원 감소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60억 3,000만원(예산현액 대비 8.1%)이 불용되어 직전회계연도(703억 5,700만원)보다 불용액이 50.7%, 356억 7,300만원 증가하였음

5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5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14949 ('22.10.13) “학교용지매입비 지자체분담금 정산 지연 사유 및 2023년 예산 편성 요청”

※ '23년 예산 편성 요청액 : 19억 8,752만 5,000원

5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13829 ('23. 8.25) “학교용지매입비 지자체분담금 정산 지연 사유 및 2024년 예산 편성 요청”

※ 정산지연금액 : 19억 8,752만 5,000원

정산지연사유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제기

'24년 예산 편성 요청액 : 19억 8,752만 5,000원 ('23년도와 동일)

〈표 4-3〉 회계별 불용액 발생 현황 ('23~'22)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2 0 2 3 회 계 연 도		2 0 2 2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 용 률) 주 1)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 용 률) 주 1)
합 계	51,490,048	2,238,850 (4.3)	53,468,799	1,995,105 (3.7)
일 반 회 계	36,507,392	1,241,899 (3.4)	38,319,642	860,457 (2.2)
특 별 회 계	14,982,655	996,950 (6.7)	15,149,156	1,134,647 (7.5)
기 타 특 별 회 계	12,979,944	823,968 (6.3)	13,247,111	959,291 (7.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2,057,950	13,310 (0.6)	2,201,609	34,165 (1.6)
교통사업 특 별 회 계	2,230,608	146,182 (6.6)	2,292,776	190,577 (8.3)
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332,691	8,778 (2.6)	350,236	44,460 (12.7)
주택사업 특 별 회 계	3,041,073	170,359 (5.6)	3,002,632	480,879 (16.0)
도시개발 특 별 회 계	2,119,576	79,070 (3.7)	2,425,711	82,750 (3.4)
균형발전 특 별 회 계	211,850	14,857 (7.0)	208,872	11,253 (5.4)
학교용지부담금 특 별 회 계	36,771	26,373 (71.7)	29,214	26,513 (90.8)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1,928,934	333,983 (17.3)	1,752,290	68,420 (3.9)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37,339	3,282 (8.8)	33,731	978 (2.9)
소별회방 특 별 회 계	983,148	27,755 (2.0)	950,036	19,293 (2.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002,711	172,981 (8.6)	1,902,045	175,356 (9.2)
수도사업 특 별 회 계	995,268	106,030 (10.7)	867,963	70,357 (8.1)
공 기 업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07,442	66,951 (6.6)	1,034,081	104,998 (10.2)

※ 주1)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6820 ('24. 4. 1)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은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으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출잔액의 경우, '23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2조 2,388억 5,000만원)중 50.5%, 1조 1,313억 8,6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7,506억 5,300만원)보다 3,807억 3,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전체 불용액의 24.4%, 5,477억 5,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7,718억 4,000만원)보다 △2,240억 8,000만원 감소하였으나,
 - 보조금 정산잔액은 '23회계연도 불용액의 17.0%, 3,820억 1,400만원이 발생되어 직전회계연도(3,020억 3,600만원)보다 799억 7,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지난 '24년 1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일부개정됨에 따라⁵⁴⁾ '계약심사 절감액 등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경우'를 불용 원인중 예산절감액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절감액을 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은 0.2%, 61억 4,500만원으로 계약심사 과정에서 절감한 재원 등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는 계약심사 절감액 등을 예산절감액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불용사유가 자칫 예산의 과다 편성 등 편성과정에서 추계부실로 인한 과다 편성을 계약심사 절감액으로 포장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54)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24 ('24. 1.22)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일부 개정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추진 알림”

※ 붙임 1.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개정사항 p.6

4. 기타사항 정비

□ 개정내용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중 '예산절감' 항목에 계약심사 절감액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 예산절감액이 불용액의 발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오용되지 않도록 불용 사유를 분류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4〉 불용액 발생사유별 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발 생 사 유				
				보조금 정산잔액 주1)	예산절감액 주2)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주3)	낙찰차액 주4)	지출잔액 주5)
2023 회계연도	불용액	2,238,850		382,014	6,145	547,759	81,832	1,131,386
	구성비	100.0		17.0	0.2	24.4	3.6	50.5
2022 회계연도	불용액	1,995,105		302,036	-	771,840	84,915	750,653
	구성비	100.0		15.1	-	38.7	4.3	37.6
2021 회계연도	불용액	1,180,681		112,585	-	323,227	75,308	595,680
	구성비	100.0		9.5	-	7.4	6.4	50.5

※ 주1) 보조금정산금액 : 보조사업 정산 후 자체재원으로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사군비만 해당

주2) 예산절감 :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 계약심사 절감액 등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경우

주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집단민원 발생으로 쓰레기매립장건립사업 미착공
• 토지소유자의 합의 불가로 도로사업 미착공
•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 수 없어 실제인원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잔액
• 국·과 단위 홍보물 제작이 시·도 단위 홍보물 발간으로 국·과 단위 홍보물 미제작으로 인한 잔액

주4) 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중 재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

주5) 지출잔액 : 세출예산을 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주6)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을 기재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6820 ('24. 4. 1)

○ 실·본부·국중 불용액 발생규모가 가장 큰 복지정책실은 서울시 전체 불용액(2조 2,388억 5,000만원)의 23.2%, 5,192억 1,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주요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2,907억 5,9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1,305억 1,000만원) 등인 바,

- 복지정책실은 지난 '22회계연도 결산시에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정산잔액을 사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고보조금의 실제 교부액 및 예산 편성액을 적극적으로 경정 및 관리할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음⁵⁵⁾

■ 그럼에도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복지정책실의 불용액(5,192억 1,000만원)중 55.9%, 2,907억 5,900만원이 보조금 정산잔액을 사유로 한 불용액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도 25.1%, 1,305억 1,000만원이 발생되었음

■ 특히, 복지정책실의 '23회계연도 불용액(5,192억 1,000만원)은 지난 '22회계연도(1,778억 7,000만원)보다 3,413억 4,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불용규모가 전년 대비 191.9% 증가한 바,⁵⁶⁾

■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국고보조금 규모를 보다 정밀하게 추계하고, 적정 규모가 내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국비 규모가 변경내시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제 예산미집행에 따른 불용과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재원없는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p.40

56) 회계연도별 복지정책실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불용액 (계)	발 생 사 유 별 불 용 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23	519,215	290,759	-	130,510	141	97,804	-
2022	177,870	86,791	-	53,926	106	37,045	-
2021	84,465	13,381	-	56,315	38	14,729	-

- 평생교육국의 경우, 서울시 전체 불용액중 10.6%, 2,373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의 98.6%, 2,340억 9,500만원이 지출잔액을 사유로 불용되었음
- 평생교육국은 매년 지출잔액을 사유로 9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⁵⁷⁾ 지방세 전출, 담배소비세 전출, 지방교육세 전출 등은 세수실적과 연동하여 전출규모가 변동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세입 추계부서의 정밀한 세수추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서울시와 교육청이 상호 연계된 사업내용이기에 재원없는 불용이나 미수납이 상호 발생되지 않도록 세출경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교통실의 경우에는 '23회계연도 결산결과, 2,123억 6,700만원이 불용되고, 불용액의 62.1%, 1,319억 8,500만원이 지출잔액을 사유로 불용되고, 715억 9,200만원(불용액의 33.7%)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불용된 것임
- 주택정책실은 불용액(2,105억 6,200만원)중 52.7%, 1,110억 8,100만원이 지출잔액을 사유로 발생되었고, 불용액의 39.7%, 836억 3,800만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불용되었으며, 보조금 정산잔액을 사유로 한 불용액은 139억 3,100만원(불용액의 6.6%)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57) 회계연도별 평생교육국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불용액 (계)	발 생 사 유 별					불용액중 지출잔액 비율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23	237,319	-	-	1,987	1,236	234,095	-	98.6
2022	231,619	9	-	19	1,000	230,589	-	99.5
2021	57,408	43	-	31	228	57,105	-	99.4

〈표 4-5〉 실·본부·국별 불용액 발생사유^{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불용액(계)		발생사유별 불용액					
		구성비 ^{주2)}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유발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2,238,850	100.0	382,014	6,145	547,759	81,832	1,131,386	89,713
복지정책실	519,215	23.2	290,759	-	130,510	141	97,804	-
평생교육국	237,319	10.6	-	-	1,987	1,236	234,095	-
도시교통실	212,367	9.5	2,491	24	71,592	3,662	131,985	2,610
주택정책실	210,562	9.4	13,931	-	83,638	338	110,081	1,571
기획조정실	202,003	9.0	941	-	252	146	123,534	77,128
행정국	126,949	5.7	17	-	116,623	792	9,515	-
여성가족정책실	106,515	4.8	24,351	103	29,235	193	52,631	-
서울아리수본부	106,030	4.7	10,278	2,467	11,568	12,379	63,918	5,418
재무국	100,440	4.5	0.2	-	5,001	165	95,274	-
물순환안전국	81,925	3.7	375	-	9,364	15,638	56,013	533
재난안전관리실	54,492	2.4	4,697	212	2,075	19,123	28,383	-
균형발전본부	51,357	2.3	116	-	47,551	402	3,287	-
기후환경본부	47,963	2.1	24,489	835	2,944	1,341	18,352	-
경제정책실	29,128	1.3	69	203	2,222	751	25,880	-
소방재난본부	27,405	1.2	314	-	354	3,018	21,267	2,450
푸른도시여가국	22,587	1.0	879	86	2,462	6,793	12,365	-
시민건강국	22,383	1.0	6,584	84	6,312	1,345	8,056	-
도시기반시설본부	13,864	0.6	-	58	12,377	35	1,392	-
미래청년기획단	10,472	0.5	69	-	-	334	10,068	-
문화본부	10,157	0.5	249	634	2,223	3,309	3,740	-
미래한강본부	7,489	0.3	316	-	2,612	2,241	2,320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7,378	0.3	849	143	571	267	5,545	-
의회사무처	6,938	0.3	-	2	4,226	473	2,235	-
디지털정책관	6,924	0.3	6	1,006	30	2,653	3,227	-
관광체육국	3,973	0.2	419	-	209	943	2,400	-
디자인정책관	1,804	0.1	-	-	85	1,177	541	-
인재개발원	1,605	0.1	-	-	38	98	1,468	-
자치경찰위원회	1,555	0.1	-	-	382	734	438	-
시립미술관	1,526	0.1	-	-	-	201	1,324	-
홍보기획관	1,492	0.1	-	25	137	797	531	-
미래공간기획관	1,384	0.1	-	-	891	313	180	-
도시공간본부	1,347	0.1	-	-	21	306	1,020	-
서울역사박물관	609	0.0	5	-	-	189	414	-
비상기획관	599	0.0	7	-	-	210	381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456	0.0	-	-	234	13	208	-
감사위원회	327	0.0	-	-	3	18	305	-
기술심사담당관	118	0.0	-	-	-	17	101	-
민생사법경찰단	96	0.0	-	-	15	-	81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4	0.0	-	-	-	-	44	-
대변인	32	0.0	-	-	-	6	26	-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주2) “구성비”는 전체 불용액 중 각 실·본부·국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6820 ('24. 4. 1)

(2)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 및 이월예산 불용사업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40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60건, 1조 6,479억 1,300만원으로 '23회계연도중 발생한 불용액(2조 2,388억 5,000만원)의 73.6%에 해당됨

〈표 4-6A〉 불용액 발생규모 4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복 지 정 책 실	의 료 급 여 사 업	1,928,822	333,983	17.3	-
행 정 국	조 정 교 부 금	4,853,145	116,616	2.4	-
평 생 교 육 국	지 방 세 전 출	2,052,398	102,743	5.0	-
기 획 조 정 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순세계 잉여금)	1,062,487	100,000	9.4	-
평 생 교 육 국	지 방 교 육 세 전 출	1,946,118	97,772	5.0	-
복 지 정 책 실	기 초 연 금 지 급	3,043,664	77,113	2.5	-
복 지 정 책 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952,725	63,660	6.6	-
재 무 국	재 정 보 전 금	1,790,745	63,473	3.5	-
도 시 교 통 실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일반전출금(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747,575	60,000	8.0	-
도 시 교 통 실	운수업계(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129,783	56,467	43.5	-
균 형 발 전 본 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321,351	44,319	3.3	-
도 시 교 통 실	운수업계(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108,779	44,058	40.5	-
주 택 정 책 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	420,000	36,000	8.5	-
주 택 정 책 실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예 탁	33,700	24,000	71.2	-
기 후 환 경 본 부	전 기 차 보 급	282,047	22,938	8.1	39,661

※ 예비비 및 반환금, 인력운영비 제외

〈표 4-6B〉 불용액 발생규모 4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주 택 정 책 실	재 개 발 임 대 주 택 매 입	236,482	21,991	9.2	-
주 택 정 책 실	공 공 주 택 건 설 (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59,114	19,763	33.4	8,641
물 순 환 안 전 국	서 울 물 재 생 시 설 공 단 위 탁 사 업 비	190,408	18,964	9.9	-
주 택 정 책 실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110,629	17,111	15.4	-
서울아리수본부	장기사용 송배수관(400mm이상) 정비	71,033	15,642	22.0	19,779
여성가족정책실	부 모 급 여 (영 아 수 당) 지 원	339,248	14,525	4.2	-
여성가족정책실	누 리 과 정 보 육 료 지 원	207,221	14,304	6.9	-
주 택 정 책 실	청 년 월 세 한 시 특 별 지 원	54,724	14,219	25.9	10,000
재 무 국	시 세 징 수 교 부 금	581,888	12,887	2.2	-
평 생 교 육 국	친 환 경 학 교 급 식 지 원	203,371	12,701	6.2	-
여성가족정책실	서 울 형 키 즈 카 페 조 성	52,744	12,286	23.2	-
여성가족정책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5,898	11,480	15.1	-
서울아리수본부	장기사용 배급수관(350mm이하) 정비	74,205	11,416	15.3	944
기 획 조 정 실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전 출	118,213	10,000	8.4	-
기 획 조 정 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도시개발)	41,600	10,000	24.0	-
기 후 환 경 본 부	전 기 차 충 전 인 프 라 구 축	31,245	9,799	31.3	7,104
서울아리수본부	광 암 수 계 배 수 관 로 정 비	20,107	9,376	46.6	2,791
서울아리수본부	정 수 센 터 시 설 정 비	54,668	9,182	16.7	2,226
여성가족정책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19,802	9,129	46.1	-
평 생 교 육 국	담 배 소 비 세 전 출	284,423	9,088	3.1	-

※ 예비비 및 반환금, 인력운영비 제외

〈표 4-6C〉 불용액 발생규모 4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경 제 정 책 실	서 울 동 행 일 자 리	106,134	8,398	7.9	304
시 민 건 강 국	코 로 나 1 9 백 신 접 종 시 행 비	38,634	7,620	19.7	-
재난안전관리실	노 후 포 장 도 로 정 비	100,319	7,460	7.4	5,629
서울아리수본부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	25,115	6,821	27.1	5,515
주 택 정 책 실	안 심 집 수 리 보 조 사 업	10,650	6,382	59.9	-
도 시 교 통 실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법 정 전 출 금	454,413	6,331	1.3	-
주 택 정 책 실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도정계정)	188,764	6,331	3.3	-
주 택 정 책 실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재촉계정)	188,764	6,331	3.3	-
도 시 교 통 실	운 수 업 계 (버 스) 연 료 보 조 금	27,086	6,179	22.8	-
여성가족정책실	아 동 수 당 지 원	408,118	5,873	1.4	-
미래청년기획단	서 울 청 년 수 당	60,297	5,817	9.6	-
경 제 정 책 실	서 울 형 뉴 딜 일 자 리	80,508	5,415	6.7	1,464
여성가족정책실	임 산 부 교 통 비 지 원	37,200	5,088	13.6	-
주 택 정 책 실	역 세 권 공 공 임 대 주 택 등 매 입	17,994	5,065	28.1	-
여성가족정책실	지 역 아 동 센 터 운 영 지 원 (자 체)	20,571	5,049	24.5	-
주 택 정 책 실	공 공 토 지 건 설 형 서 울 리 츠	7,472	5,008	67.0	-
재 무 국	차 세 대 지 방 세 입 정 보 시 스 템 개 발 및 운 영 분 담 금	4,990	4,990	100.0	-
주 택 정 책 실	재 건 축 등 공 공 임 대 주 택 매 입	153,473	4,904	3.1	-
재난안전관리실	구 천 면 길 도 로 확 장	4,889	4,834	98.8	-
주 택 정 책 실	시 유 지 활 용 공 공 주 택 공 급	19,387	4,790	24.7	-

※ 예비비 및 반환금, 인력운영비 제외

〈표 4-6D〉 불용액 발생규모 4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복 지 정 책 실	장 애 인 거 주 시 설 운 영	111,326	4,756	4.2	-
주 택 정 책 실	청 년 월 세 지 원	64,802	4,569	7.0	-
물 순 환 안 전 국	중 량 물 재 생 센 터 운 영	58,574	4,536	7.7	-
주 택 정 책 실	주 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25,000	4,205	16.8	-
물 순 환 안 전 국	난 지 물 재 생 센 터 운 영	32,135	4,156	12.9	1,005

※ 예비비 및 반환금, 인력운영비 제외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경기침체, 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인해 보통세중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입과목⁵⁸⁾에서 세입예산액보다 부족 수납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법정전출 사업의 경우 재원이 부족수납되어 당초 편성규모보다 감액전출됨으로써 '시세 부족수납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행정국 소관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 4조 8,531억 4,500만원의 2.4%, 1,166억 1,600만원이 불용된 바,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는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자 보통세의 일부를 조례에 따라 자치구로 교부하는 것으로,⁵⁹⁾

58)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2. 7), p.56

※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장 : 지방세수입(100), 관 : 지방세(110), 항 : 보통세(111)

보통세(111)중 '23회계연도에 징수결정액보다 부족 수납되어 결손이 발생한 목은 다음과 같음

①취득세(111-01) : △1,462억원, ②재산세(111-04) : △746억원, ③자동차세(111-05) : △577억원,
④레저세(111-06) : △10억원, ⑤담배소비세(111-07) : △55억원, ⑥지방소비세(111-08) : △1,080억원

59)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후략)

- 서울시는 '23년도 본예산 제출시 추계한 당해연도 보통세 세입 규모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편성하였으나, 보통세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세입 규모와 연동되는 조정교부금을 당초 편성 규모대로 자치구로 교부하지 못하여 불용된 것임⁶⁰⁾
- 서울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⁶¹⁾에 따라 매년 시세의 일부를 서울시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는 바, 평생교육국 소관 3개 세부사업 ①**지방세 전출**은 예산현액(2조 523억 9,800만원)의 5.0%, 1,027억 4,300만원, ②**지방교육세 전출**은 예산현액(1조 9,461억 1,800만원)의 5.0%, 977억 7,200만원, ③**담배소비세 전출**은 예산현액(2,844억 2,300만원)의 3.1%, 90억 8,800만원은 '시세 부족수납에 따른 불용액'으로
- 평생교육국은 위 3개 세부사업이 계획한 규모만큼 교육청으로 전출되지 못한 사유를 세수징수실적 저조에 따른 **지출잔액**으로 제출하였음⁶²⁾
- 재무국 소관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1조 7,907억 4,500만원의 3.5%, 634억 7,3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5,818억 8,800만원의 2.2%, 128억 8,700만원이 '시세 부족수납에 따른 불용액'으로 확인됨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보전금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⁶³⁾ 서울시는 매년 공동재산세 일부를

60) 서울특별시, 총무과-9722 ('24. 4. 1)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후략)

62)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5317 ('24. 4. 1)

6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자치구로 전출하고 있는 바, '23회계연도에는 세수징수실적 저조로 인하여 연동되는 **재정보전금**에서도 '시세 부족수납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재무국은 그 사유를 **지출잔액**으로 제출하였음⁶⁴⁾

- 또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라 **시세 징수교부금**을 편성하여 징수실적에 따라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바,⁶⁵⁾ 결산결과 세입 징수액이 당초 추계에 미달되어 연동되는 세출사업에서도 '시세 부족수납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⁶⁶⁾
- 서울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⁶⁷⁾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는 ①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②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③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도정계정), ④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재촉계정)으로 각각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출하고 있음
- '23회계연도의 경우, 재산세 징수실적 저조로 인해 균형발전본부 소관 ①**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예산현액(1조 3,213억 5,100만원) 중 3.3%, 443억 1,900만원의 '시세 부족수납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⁶⁸⁾
- 도시교통실 소관 ②**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불용액 63억 3,100만원),⁶⁹⁾ 주택정책실 소관 ③**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도정계정)

64) 서울특별시, 재무과-16817 ('24. 4. 1)

65)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66) 서울특별시, 재무과-16817 ('24. 4. 1)

67)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68)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정책과-3915 ('24. 4.11)

(불용액 63억 3,100만원), ④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재촉계정)(불용액 63억 3,100만원)도 시세가 부족수납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로 검토됨⁷⁰⁾

〈표 4-7〉 시세 부족수납에 따른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 용 률
법 정 전 출 금 시 세 결 손 에 따 른 불 용 액 계				465,891	-
행 정 국	조 정 교 부 금	4,853,145	4,736,528	116,616	2.4
평 생 교 육 국	지 방 세 전 출	2,052,398	1,949,655	102,743	5.0
평 생 교 육 국	지 방 교 육 세 전 출	1,946,118	1,848,346	97,772	5.0
재 무 국	재 정 보 전 금	1,790,745	1,727,271	63,473	3.5
균형발전본부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법 정 전 출 금	1,321,351	1,277,032	44,319	3.3
재 무 국	시 세 징 수 교 부 금	581,888	569,001	12,887	2.2
평 생 교 육 국	담 배 소 비 세 전 출	284,423	275,335	9,088	3.1
도 시 교 통 실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법 정 전 출 금	454,413	448,082	6,331	1.3
주 택 정 책 실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법정전출금(도정계정)	188,764	182,433	6,331	3.3
주 택 정 책 실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법정전출금(재촉계정)	188,764	182,433	6,331	3.3

- '23회계연도에 발생한 '시세 결손에 따른 불용액'은 4,658억 9,100만원으로 이는 '23회계연도 총 불용액의 20.8%에 해당되며 이를 회계연도 종료 전에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을 하였다면 불용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원년이 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69)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6262 ('24. 4. 2)

70)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7383 ('24. 4.17)

- 서울시는 '23년도 본예산('22.11) 및 추경예산('23. 5) 편성시점에는 금번 발생한 세입 부족수납 사례를 예측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당 사례는 서울시의 집행 의지 등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회계연도중 가능한 조치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일 수 있으나,

- 회계연도 종료 직전이라도 시세 수입을 감액조정하고 그와 연계된 세출사업의 규모도 조정하여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세입 추계오류에 따른 세입예산 부족수납이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세입과 연동된 세출사업에도 '시세 결손에 따른 불용액'을 발생시켜 불용규모가 확대되는 등 회계연도의 재정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 관련 예산이 전출되는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또한 세입결손이 발생되어 해당 기관의 재정지표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서울시 회계간 전출입 등에도 영향을 주어 특정 회계의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 저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바,

- 향후에는 세입예산을 보다 정밀하게 추계하여 세수결손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라도 실제 세입 규모가 당초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감액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1조 624억 8,700만원중 9.4%, 1,000억원이 지출잔액을 사유로 불용된 것임⁷¹⁾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법정정산분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음⁷²⁾

71)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5425 ('24. 4. 1)

-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2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5.2%에 해당하는 1조 624억 8,700만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고자 하였으나
- 세수감소 등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비율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9,624억 8,700만원만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고, 1,000억원은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표 4-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순세계잉여금)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 용 액	보 조 금	예 산	계획변경등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 비 비
		정산잔액	절 감 액	집행사유 미 발생			
1,062,487	100,000 (9.4)	-	-	-	-	100,000 (9.4)	-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자료근거 : '23회계연도 결산서

- 사업부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다른 사업의 재원에 일부 활용하고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적립비율(50%)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출 규모를 조정할 것일 수 있으나, 해당 재원은 지난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른바 '현금성 자원'임에도 의회로부터 의결받은 전액을 전출하지 않고 1,000억원을 남겨둔 것으로 1,000억원의 용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2)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이하생략)

- 아울러 동 사례에 대해서 불용사유를 **지출잔액**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지출잔액**은 “세출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정하고 있어, 동 사유가 아닌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등에 해당되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보다 적합한 분류로 사료됨⁷³⁾

- 결산시 불용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불용액을 감소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다른 세부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전출하지 않은 사업의 불용사유까지 **지출잔액**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용사유에 따른 후속조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물순환안전국 소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는 예산현액 1,904억 800만원의 9.9%, 189억 6,400만원이 **지출잔액**을 사유로 불용됨

- 사업부서는 지난 '23년 5월 30일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력비 증가 및 추가 시설 개선 등을 사유로 107억 2,7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제1회 추경을 통해 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규모로 한정하여 감액조정하고
-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의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추가예산(132억 3,700만원)보다도 48억 1,400만원이 더 불용(181억 5,100만원)된 것으로 검토됨

7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4. 1), p.148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 (중략)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5. 지출잔액 :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예산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정산잔액은 제외

〈표 4-9〉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23년도 본 예 산 (A)	'23년도 1회추경	전용내역		예산현액 (B)	증감액 (B-A)	불용액
			감액	증액			
소 계	179,681	190,408	△300	300	190,408	10,827	18,964
공 공 운 영 비	-	-	-	300 ^{주1)}	300	300	0.8
공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65,204	178,442	△300 ^{주1)}	-	178,142	12,937	18,151
공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4,476	11,966	-	-	11,966	△2,510	813

※ 주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4874 ('23. 4.18)

- 공유재산 손해보험을 서울시가 직접 가입하고자 전용을 통해 재원 확보

자료근거 : '23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사업부서가 추경을 통해 증액요청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132억 3,700만원)의 내역은 동력비(123억 4,200만원), 일반운영비(1억 6,4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7억 3,000만원)인 바,
- 사업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발생한 불용액(181억 5,100만원)은 동력비(27억원), 일반운영비(6억원), 수선유지교체비(97억원), 약품비(17억원), 인건비(16억원), 일반예비비(18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어,⁷⁴⁾
- 결국 추경을 통해 증액 요청한 동력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안임에도 재원 확보만 우선시한 결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⁷⁵⁾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74)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027 ('24. 4. 5)

75)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4-10〉 '23년도 제1회 추경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구 분	산 출 내 역	증 감 사 유
공 기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공단 경상적대행사업비	13,237
	동력비	12,342
	동력비(탄천센터)	2,733
	동력비(서남센터)	9,608
	일반운영비	164
	직원채용 대행용역	110
	설립 이전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50
	탄천주민협의회 위원회 수당	4
	수선유지교체비	730
	서남센터 악취탈취포집 시설 개선사업	340
	탄천센터 악취탈취포집 시설 개선사업	270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 개선	50
	탄천물재생센터 노후 체육시설 개선(족구장)	70

※ 자료근거 :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년도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 수정안 p.48

- 주택정책실 소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547억 2,400만원)중 ①25.9%, 142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②18.2%, 100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648억 200만원)의 7.0%, 45억 6,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⁷⁶⁾

76)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7383 ('24. 4.17)

〈표 4-11〉 청년 월세 지원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23년도 본 예 산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청 년 월 세 한 시 특 별 지 원	21,400	33,324	54,724	27,717	10,000	2,786	14,219
청년 월세 지원	64,802	-	64,802	60,232	-	-	4,569

※ 자료근거 : '23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국고보조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⁷⁷⁾은 예산현액 547억 2,400만 원을 재원으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한 것이나,
 - 정부가 예측한 인원(26,180명)보다 실제 선정인원(17,305명)이 미달되어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이 예산현액(545억 1,100만원)의 25.9%, 141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이후 2회의 변경내시⁷⁸⁾를 통해 국고보조금 규모가 당초보다 △23억원 축소되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추경을 통해 반영하지 않아 감액 내시된 국고보조금분은 '재원없는 불용(23억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 매칭된 시비 또한 당초 대응 편성분의 79.1%, 118억 5,600만원 불용처리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회계연도중 국고보조금의 내시규모 변동

77) 주택정책실,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14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200,000원 * 12개월 * 26,180명 * 34.06% = 21,400,000천원

- 정부(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1년간, 22년~23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총예산의 60%를 편성했으며 '23년에는 나머지 필요금액 편성
- '23년도 예산액 : 214억원 ⇒ 국비 64억 2,000만원 / 시비 149억 8,000만원

78)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1790 ('23. 5. 2) "23년도 청년월세 국고보조금 예산 내시 변경 통보"

※ 기존내시액 : 64억 2,000만원 ⇒ 변경내시액 : 61억 2,000만원 / 변경액 : △3억원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2919 ('23. 7.27) "23년도 청년월세 국고보조금 예산 내시 변경 통보"

※ 기존내시액 : 61억 2,000만원 ⇒ 변경내시액 : 41억 2,000만원 / 변경액 : △20억원

에 따른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도 본예산에는 서울시 청년 25,000명을 지원하고자 64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음⁷⁹⁾

- 동 사업은 지난 '23년 5월, 1차 모집시 선정된 21,757명에게는 당초 계획대로 8개월분의 임차료를 지원하였으나, 2차 모집이 '23년 9월 실시되어 당초 계획의 절반인 4개월분의 임차료만 지원하게 되어⁸⁰⁾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은 예산현액 639억 5,000만원의 7.1%, 45억 6,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됨

-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당초 월세를 '23년 5월부터 8개월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차 대상자 선정 인원이 목표에 미달하여 일정대로 추진할 수 없었던 바, 동 사업의 불용사유를 **지출잔액**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1차 모집이 미달에 따른 2차 추가 모집 인원에 대한 지원금을 당초 계획(당초 계획은 4월)보다 늦은 9월부터 지급하여⁸¹⁾ 발생한 불용액(45억 6,900만원)이라는 점에서

79) 주택정책실,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131

청년 월세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64,000,000천원

- '22년 선정자 지원 = 200,000원 * 4개월 * 30,000명 = 24,000,000천원

- '23년 선정자 지원 = 200,000원 * 8개월 * 25,000명 = 40,000,000천원

○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실시('22 8월~'23. 8월)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규모 일시 축소('22년 : 30,000명 → '23년 : 25,000명)

80)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723 ('24. 1.11) “'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진계획”

Ⅱ.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 1차 모집 : 신청접수('23. 5. 3 ~ 6. 7), 선정인원(25,757명), 8개월분 임차료 지원

□ 2차 모집 : 신청접수('23. 9. 5 ~ 9.18), 선정인원(6,013명), 4개월분 임차료 지원

81)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723 ('24. 1.11) “'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진계획”

※ '23년도 2차 모집 지원내역 : 1회 4개월분 지급, 잔여 8개월분은 '24년도에 지급 예정

- 행정안전부의 기준⁸²⁾에 따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2〉 청년 월세 지원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 2 3 년 도 본 예 산 (A)	변경내역		예산현액 (B)	증감액 (B-A)	불용액
		감액	증액			
소 계	64,802	△50	50	64,802	-	4,569
사 무 관 리 비	80	-	-	80	-	4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 재 원)	64,000	△50 ^{주1)}	-	63,950	△50	4,565
공 기관 등 에 대 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22	-	50 ^{주1)}	772	50	-

※ 주1)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15324 ('23. 8.16) “'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추가모집 계획”
- 계획에 없던 추가모집을 하게 되어 서류 신청·접수·심사 대행비를 예산변경을 통해 확보
자료근거 : '23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8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24. 1), p.148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 (중략)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22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재원이 있는 사업중 10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53건으로 동 사업들의 불용규모는 2,090억 1,200만원임

- 직전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재원은 사업추진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여도 이용이나 전용, 추경을 통한 감액조정 등이 불가능하여 결국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바, 향후에는 재원의 이월 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13A〉 직전회계연도 이월 발생사업중 '23회계연도 불용액(10억원이상)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22→'23 이월액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23→'24 이월액
기 후 환 경 본 부	전 기 차 보 급	36,475	282,047	22,938	8.1	39,661
서울아리수본부	장 기 사 용 송 배 수 관 (4 0 0 mm 이 상) 정 비	16,842	71,033	15,642	22.0	19,779
주 택 정 책 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3,324	54,724	14,219	25.9	10,000
여성가족정책실	서 울 공 공 (안 심) 키 즈 카 페 조 성	40,862	52,234	12,265	23.4	-
기 후 환 경 본 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12,048	31,245	9,799	31.3	7,104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17,356	20,107	9,376	46.6	2,791
서울아리수본부	정 수 센 터 시 설 정 비	5,710	54,668	9,182	16.7	2,226
경 제 정 책 실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193	106,134	8,398	7.9	304
재난안전관리실	노 후 포 장 도 로 정 비	3,870	100,319	7,460	7.4	5,629
서울아리수본부	상 수 도 블 록 시 스템 공 급 체 계 구 축	1,710	25,115	6,821	27.1	5,515
경 제 정 책 실	서 울 형 뉴 딜 일 자 리	508	80,508	5,415	6.7	1,464
재 무 국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4,990	4,990	4,990	100.0	-
재난안전관리실	구 천 면 길 도 로 확 장	4,889	4,889	4,834	98.8	-

〈표 4-13B〉 직전회계연도 이월 발생사업중 '23회계연도 불용액(10억원이상)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22→'23 이월액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23→'24 이월액
물 순환 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164	32,135	4,156	12.9	1,005
의회사무처	의회청사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5,154	5,154	4,033	78.2	7
재난안전관리실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3,771	10,846	3,819	35.2	3,250
재난안전관리실	현릉로 확장	4,913	8,513	3,691	43.3	2,408
재난안전관리실	탄전변동측도로 확장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800	3,914	3,457	88.3	187
주택정책실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200	3,357	3,292	98.0	-
경제정책실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조성	24,062	26,061	3,179	13.2	3,595
도시교통실	공원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간데메공원)	3,126	3,126	3,126	100.0	-
서울아리수본부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465	27,808	3,029	10.8	25
평생교육국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3,680	10,004	2,978	29.7	2,938
평생교육국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3,125	15,107	2,516	16.6	4,686
문화본부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5,071	11,607	2,029	17.4	2,944
재난안전관리실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	8,752	10,272	1,971	19.1	-
균형발전본부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070	4,105	1,899	46.2	515
서울아리수본부	아리수올림터·배수지 노후기전시설 개량	277	12,158	1,835	15.0	109
문화본부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3,049	24,523	1,816	7.4	17,788
푸른도시여가국	성산근린공원 조성	1,700	1,700	1,700	100.0	-
서울아리수본부	정주장 순환정비	33	3,548	1,677	47.2	116
물 순환 안전국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2,982	14,442	1,637	11.3	1,183
균형발전본부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368	6,547	1,589	24.2	18

〈표 4-13C〉 직전회계연도 이월 발생사업중 '23회계연도 불용액(10억원이상)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22→'23 이월액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23→'24 이월액
기 후 환 경 본 부	난 지 물 재 생 센 터 지 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479	1,804	1,546	85.6	-
미 래 한 강 본 부	둔 치 및 화 장 실 청 소	3,841	12,708	1,515	11.9	2,616
푸른도시여가국	시 공 원 유 지 관 리 및 보 수 정 비	7,713	56,896	1,433	2.5	8,968
기 후 환 경 본 부	강남, 마포 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718	1,618	1,352	83.5	-
도 시 교 통 실	어 린 이 보 호 구 역 개 선 (전 환 사 업)	52	16,553	1,312	7.9	94
도시기반시설본부	위례신사선 건설(민자)	1,300	1,300	1,300	100.0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 행 · 운 영 사 업	1,297	7,659	1,298	16.9	-
균 형 발 전 본 부	세 종 로 공 원 환 경 개 선	2,290	2,290	1,296	56.6	-
서울아리수본부	원인자 이설공사 직접 시행	2,182	14,550	1,202	8.2	5,379
푸른도시여가국	단 절 된 녹 지 축 연 결	2,424	6,360	1,189	18.6	3,114
주 택 정 책 실	기 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3,317	3,317	1,183	35.6	-
재난안전관리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 환경 공 간 조 성	2,500	8,600	1,148	13.3	6,922
푸른도시여가국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2,067	10,744	1,115	10.3	427
도시기반시설본부	서 부 선 건 설 (민 자)	350	1,520	1,111	73.1	365
재난안전관리실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432	11,016	1,101	10.0	2,742
도 시 교 통 실	대 각 선 및 일 반 횡 단 보 도 확 충	376	3,765	1,062	28.2	394
서울아리수본부	소 블 록 배 수 관 세 척	247	5,814	1,024	17.6	-
경 제 정 책 실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95	14,611	1,020	6.9	1,050
물 순 환 안 전 국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 지 보 수 및 개 선	2,030	13,703	1,014	7.4	13,165
도 시 교 통 실	공 영 주 차 장 관 리 위 탁	141	46,643	1,000	2.1	1,201

- 기후환경본부 소관 **전기차 보급**은 예산현액 2,820억 4,700만원⁸³⁾의 8.1%, 229억 3,800만원이 불용되고 396억 6,100만원은 '24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검토됨
- '23회계연도 본예산에 1,138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12,053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⁸⁴⁾ 지난 '23년 5월, '23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본 예산보다 1,316억 8,200만원 증액된 2,455억 7,100만원으로 예산규모를 조정하여 당초 계획보다 8,523대 증가한 20,576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음⁸⁵⁾
- 동 사업의 '22회계연도로부터 사고이월된 364억 7,500만원은 '22회계연도 신청분(1,939대)⁸⁶⁾에 대한 보조금으로 '23년도 내 1,096대가 출고되었고, 신청취소 등으로 843대는 출고되지 못하여 직전회계연도 이월액(364억 7,500만원)중 10.1%, 37억 1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검토됨⁸⁷⁾
- '24년도로 이월된 396억 6,100만원의 경우에도 '23회계연도 종료 직전 신청한 수요에 대한 것으로⁸⁸⁾ 차량을 계약한 후에도 출고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매년 상당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83)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2 ('23. 4.17)

※ '22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보급 사고이월액 : 364억 7,500만원

- '22년 12월 전기차 구매 신청분 차량출고 기한(3개월) 미도래로 인해 연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함

84) 기후환경본부,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197

전기차 보급 사업내용 : 12,053대(민간보급 11,856대, 공공보급 197대)

85)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899

전기차 보급 사업내용 : 20,576대(민간보급 20,377대, 공공보급 199대)

86) ■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2190 ('23. 2.23)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5937 ('23. 5.25) “2023년 전기차 추가보급(추경) 계획”

87) '22회계연도 사고이월액(364억 7,500만원) 불용내역 (총 843대, 37억 100만원 불용)

○ 승용(택시포함) : 248대, 20억 5,600만원 불용, ○ 버스 : 4대, 5억 4,800만원 불용

○ 이륜 : 591대, 10억 9,600만원 불용, ○ 화물 : 신청 차량 전액 출고 (불용액 없음)

88)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5418 ('24. 4. 8)

〈표 4-14〉 전기차 보급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23년도 본 예 산	'23년도 1 추 주 1)	전 년 도 이 월 주 2)	예산현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소 계	113,889	131,682	36,475	282,047	39,661	59,620	22,938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1	-	-	91	-	-	10
사무관리비	135	-	-	135	-	-	1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08,270	131,542	36,028	275,841	39,661	59,614	22,680
자치단체자본보조	1,196	140	-	1,336	-	0.2	8
자산및물품취득비	4,197	-	447	4,644	-	6	236

주1)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증감액

주2) '22회계연도에서 '23회계연도로의 이월액(364억 7,500만원)은 전액 사고이월액임

- 실제로 동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23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2,820억 4,700만원의 56.6%, 1,598억 2,600만원만이 집행되고, 보조금반납금(596억 2,0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보다 485억 7,200만원(439.6% 증가) 증가하였으며, 불용액(229억 3,8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25억 5,700만원(120.9% 증가) 증가하였고, 이월액(396억 6,1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보다 31억 8,100만원(8.1% 증가) 증가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반납과 국비에 매칭된 시비가 보조금 정산잔액을 사유로 불용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보다 현실성 있는 수요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4-15〉 최근 3년간 전기차 보급 결산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률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불 용 액
2023	282,047	159,826	56.6	39,661	59,620	22,938
2022	307,870	249,964	81.1	36,475	11,048	10,381
2021	355,543	277,587	78.0	53,200	24,047	707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구천면길 도로확장**은 예산현액 48억 8,900만원⁸⁹⁾의 98.8%, 48억 3,400만원이 **지출잔액**을 사유로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은 사업대상지 내 건축물 철거를 위해 실시한 구조안전진단 용역 (5,400만원)의 준공시기가 당초 '23년 8월에서 '23년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었던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순연되어 48억 3,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검토됨⁹⁰⁾

〈표 4-16〉 구천면길 도로확장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출 과 목	' 2 3 년 도 본 예 산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시 설 비	-	4,889	4,889	54 ^{주1)}	4,834 ^{주2)}	98.8

※ 주1) 지출된 구조진단 용역비는 5,441만 7,000원임

주2) 보상비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불용사유는 지출잔액임

자료근거 : '23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89) '23회계연도 예산현액 48억 8,900만원은 전액 '22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예산임

90)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정책과-5584 ('24. 4. 2)

- 이월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예산현액에 대한 전용이나 변경, 추경을 통한 감액조정 등이 불가하여 회계연도중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예산의 이월은 필수적인 사업으로 최소화하여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예산집행시 이월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된 재원이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불용사유를 지출잔액으로 분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⁹¹⁾

〈표 4-17〉 구천면길 도로확장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 용 액	보 조 금	예 산	계획변경등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 비 비
		정산잔액	절 감 액	집행사유 미 발 생			
4,889	4,834 (98.8)	-	-	-	-	4,834 (98.8)	-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자료근거 : '23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9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4. 1), p.148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 (중략)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중략)
 - 집단민원 발생으로 쓰레기매립장건립사업 미착공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 장애요인 발생 등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하여 구조진단 용역의 준공기한이 두 차례 연기되고,⁹²⁾ 그로 인해 후속 절차가 순연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불용사유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국 소관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은 예산현액(100억 400만원)의 29.7%, 29억 7,800만원을 불용하고, 29.3%, 29억 3,800만원은 '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은 예산현액(151억 700만원)의 16.6%, 25억 1,600만원을 불용하고, 31.0%, 46억 8,600만원은 '24년도로 이월하였음

〈표 4-18〉 서울권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23년도 본 예산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지출액	'24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6,324	3,680	10,004	4,087	2,938	2,978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11,981	3,125	15,107	7,904	4,686	2,516

※ 자료근거 : '23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36억 8,000만원중 72.8%, 26억 8,200만원은 불용처리된 바,
- '22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모든 가입자에게 멘토를 1:1 매칭하여 학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서울권 가입자 수를 고려하여 멘토단 운영 예산을 이월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희망자에 한정하여 멘토단을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92) ■ 동작구, 도로과-19010 ('23. 8.17) “「구천면로 도로확장공사(6차)구간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 준공기한 변경 : (당초) '23. 8.30 ⇒ (변경) '23.10.31

■ 동작구, 도로과-24464 ('23.10.27) “「구천면로 도로확장공사(6차)구간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 준공기한 변경 : (당초) '23.10.31 ⇒ (변경) '23.12.31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⁹³⁾

-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은 회계연도중 불용할 것이 확실시되어도 이용, 전용 및 감추경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이월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사업부서는 동 사례로 인한 불용액(26억 8,200만원)을 지출잔액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계획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불용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⁹⁴⁾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의 경우에도 불용사유를 지출잔액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당초 총사업비를 일정 금액으로 계약하는 방식에서 월별 콘텐츠 실 이용 인원에 대한 사후정산 방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실제 지출액이 감소된 것으로 불용사유를 제출한 바,⁹⁵⁾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용사유를 지출잔액이 아닌 계약심사 절감액 등 예산 절감한 경우에 해당되는 **예산절감액**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⁹⁶⁾

93)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5317 ('24. 4. 1)

9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24. 1), p.148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 (중략)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중략)

95)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5317 ('24. 4. 1)

96)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24 ('24. 1.22)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일부 개정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추진 알림”

※ 붙임 1.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개정사항 p.6

4. 기타사항 정비

□ 개정내용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중 ‘예산절감’ 항목에 계약심사 절감액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 아울러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은 최초 시작된 '21년부터 현재까지 매 회계연도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고 있는 바,

- 사업부서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행되는 학사일정 중 서비스업체가 바뀌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이용하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예산이 이월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월액 발생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은 예산현액 41억 500만원의 46.2%, 18억 9,900만원이 불용되고, 12.5%, 5억 1,500만원은 이월된 바,

- 동 사업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설비** 예산현액 20억 6,6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 이월액(14억 2,600만원)⁹⁷⁾을 포함한 것으로
-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하였으나, 소유주 동의를 득하지 못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환경개선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시설비** 예산현액중 16억 1,2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는 동 사업과 관련된 입주민 동의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회계연도중 소요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이나,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는 이월액은 회계연도중 재활용이 불가하여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97)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2 ('23. 4.17)

※ '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시설비 이월액 : 14억 2,600만원
 - 명사이월(12억 3,000만원) : 인현진양상가 구간 아케이드 개선사업
 - 사고이월(1억 9,500만원) : 을지로 지하도 캐토피 설치 및 세운상가 시설개선공사

-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집행 장애요인이 다양한 변수로 인해 발생 될 수 있어 관련 예산의 이월은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만으로 한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 4-19〉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23년도 본 예 산	전 년 도 이 월 액	변경내역		예산현액	이월액	불용액
			감액	증액			
소 계	2,035	2,070	△92	92	4,105	515	1,899
사 무 관 리 비	1,385	622	△92 ^{주1)}	-	1,915	475	270
공 공 운 영 비	10	-	-	92 ^{주1)}	102	-	0.2
시 설 비	640	1,426	-	-	2,066	40	1,612
감 리 비	-	22	-	-	22	-	16

※ 주1)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2940 ('23. 3.28)

- 전용사유 : ①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 보험료 납부

② 운영 용역사 선정전으로 공공요금 직접 납부 필요

자료근거 : '23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3)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서울시가 '23회계연도에 추진한 19개 세부사업은⁹⁸⁾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4-20〉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재 무 국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부담금	4,990	4,990
도 시 교 통 실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간데메공원)	3,126	3,126
주 택 정 책 실	홍제3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2,802	2,802
평 생 교 육 국	학 교 용 지 매 입 비 부 담	1,987	1,987
푸른도시여가국	성 산 근 름 공 원 조 성	1,700	1,700
도시기반시설본부	위 레 신 사 선 건 설 (민 자)	1,300	1,300
주 택 정 책 실	강 서 구 공 항 동 도 시 재 생 사 업 지 원	1,117	1,117
주 택 정 책 실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통합공공임대주택)	876	876
문 화 본 부	백제역사유적지구 스마트 안전망 구축 지원	600	600
물 순 환 안 전 국	종 로 청 소 년 센 터 저 류 조 설 치	500	500
복 지 정 책 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부)	389	389
주 택 정 책 실	성 동 구 사 근 동 도 시 재 생 사 업 지 원	315	315
주 택 정 책 실	구 로 구 구 로 2 동 도 시 재 생 사 업 지 원	315	315
도 시 교 통 실	5 호 선 직 결 화 사 전 타 당 성 재 검 토 용 역	200	200
물 순 환 안 전 국	우수저류시설 운영 개선방안 수립 용역	198	198
주 택 정 책 실	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141	141
경 제 정 책 실	서 울 국 제 경 제 자 문 단 (S I B A C) 운 영	110	110
기 획 조 정 실	공 공 토 지 자 원 D B 의 효 율 적 관 리 · 운 용	100	100
도 시 교 통 실	스 마 트 쉘 터 성 과 분 석	100	100

※ 예비비 및 반환금 제외
예산현액(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한정

98) 예산현액(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한정

○ 재무국 소관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부담금**은 예산현액 49억 9,0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이나, 예산현액 전액은 지난 '22회계연도로부터 사고이월액된 재원임

-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개발 및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 당초 '23년도까지 구축·운영할 계획이었던 차세대 시스템중 서울시 통합사업이 반복적(4회)으로 유찰되는 등 시스템 개발 준공시기가 '24년도로 늦춰짐에 따라 '23회계연도로 이월된 예산을 '23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 동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3년 1월, 당초 개통할 예정인 차세대 시스템(2단계)의 준공 연기를 통보한 바 있고,⁹⁹⁾ 서울시도 이에 대해 차세대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과정(3단계)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¹⁰⁰⁾

■ '23년 7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서울시를 시스템에 통합하는 작업(3단계)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약정된 위탁사업비를 납부할 것을 요청함¹⁰¹⁾ 서울시는 해당 위탁사업의 미납액에 대해 서울시 통합사업

9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정정보부-259 ('23. 1.13)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추진상황 안내”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당초 1월 25일 개통예정이었으나 여러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개통 연기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림

100) 서울특별시, 세무과-3603 ('23. 2.27)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3단계[서울시 통합]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서울시 요구사항”

※ 차세대 3단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의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개발 및 테스트 완료되고 서비스가 안정된 이후 차세대 3단계를 발주하는 것이 타당함

- 3단계 발주 전 사업내용 설계, 과업내용 재검토 등으로 유찰없는 사업추진 요구
- 추가 개발된 신규 기능 과업내용에 추가 요구
- 차세대 3단계 추진시 서울시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차세대 3단계 추진일정 및 정기적인 사업 진행 상황 공유 등

10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정정보부-3266 ('23. 7.31)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2차년도)」 위탁사업비 납부 재요청”

※ 위탁사업비가 미납되어 재요청 드리오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 8.31.까지 사업비를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완료된 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납부할 예정으로 회신한 바,¹⁰²⁾ '23회계연도중 2단계 용역이 준공되지 않아 서울시가 요청한 3단계 용역은 공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의 위탁기관이 회계연도중 계획변경 및 준공연기를 반복하여 예산현액이 불용될 가능성을 예상하였을 것이나,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전액 이월예산으로 회계연도중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실시되어도 불용처리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른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전 절차가 준공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어도 회계연도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재원이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는 이월액인 경우에는 회계연도중 재원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결산시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 향후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부담금 형태의 사업은 일부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진행 추이를 고려하여 나머지 재원을 편성하는 합리적 선택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21〉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부담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출 과 목	'23년도 본 예산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공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4,990	4,900	-	4,900 ^{주1)}	100.0

※ 주1)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임

자료근거 : '23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102) 서울특별시, 세무과-15756 ('23. 8.21)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2차년도)’ 위탁사업비 납부 관련 회신”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2차년도) 위탁사업의 미납액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서울시 통합) 사업이 계약완료된 후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납부 예정임을 회신합니다.

- 주택정책실 소관 ①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②성동구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③구로구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④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은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전액 불용된 사업으로 검토됨

〈표 4-22〉 도시재생사업 전액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23년도 본 예산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1,117	1,117	-	1,117
성동구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315	315	-	315
구로구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315	315	-	315
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141	141	-	141

※ 자료근거 : '23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서울시는 지난 '21년 6월, 기존 도시재생방향과 달리 개발과 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2세대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¹⁰³⁾함에 따라 기존에 계획한 도시재생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변경하고 있는 바,

- ①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예산현액 11억 1,700만원), ②성동구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예산현액 3억 1,500만원), ③구로구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예산현액 3억 1,500만원)은 당초 강서구, 성동구, 구로구에서 수립한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심사 결과¹⁰⁴⁾ 재심사(2단계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된 것으로 검토됨

103)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1. 6.18), “서울시, 민간개발 유도, 재개발 연계...「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

104)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28055 ('22. 11. 2), “2022년 제9차(수시) 투자심사위원회 결과보고”

※ 7. 성동구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 조건부 추진(2단계 심사)

8. 구로구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 조건부 추진(2단계 심사)

10.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 조건부 추진(2단계 심사)

- ④**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의 경우, 지난 '20년 11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1년부터 '22년까지는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이력이 있으나,

■ 지난 '22년 10월, 국고보조금이 가내시된 이후, '23년 2월, 국토교통부가 사업규모 축소를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내시¹⁰⁵⁾ 하였으나, '23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국비(1억 1,200만원)와 매칭된 시비(2,900만원)를 감액조정하지 않아 불용된 사례로 검토됨

- 동 사례의 경우, 전액 감액내시되어 교부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을 조정하지 않아 “재원없는 불용”을 발생시키고, 매칭된 시비마저 불용하게 되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야기한 사례로 판단됨

○ 복지정책실 소관 ①**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부)**(예산현액 3억 8,900만원)의 경우, 당초 편성된 국고보조금의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으나, 추경을 통해 경정하지 않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검토됨

- 사업부서로서는 지난 '22년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내시를 근거로 '23년도 예산안중 국고보조금으로 편성¹⁰⁶⁾한 것으로 사료되나

■ '22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된 예산과목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고,¹⁰⁷⁾ '22년 12월 27일에도 동 사업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비 예산액의 규모를 변경하여 확정내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¹⁰⁸⁾

105)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정책과-420 ('23. 2.16) “'23년도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알림”
※ 국고보조금 0원

106)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13798 ('23. 8.25)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변경 계획”

107)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4821 ('22. 9.15) “2023년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4,300만원

108)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7292 ('22.12.27) “2023년도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3,300만원

- 사업부서가 지난 '23년 5월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 제출시 동 사업의 국비에 대하여 세입과목과 금액을 조정하여 편성의 오류를 해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 이후 집행시기가 임박해서야 국비의 세입과목이 변경된 것을 인지하고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국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¹⁰⁹⁾으로 간주 처리하고, 매칭되는 시비는 기존사업에서 예산의 변경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의 경우 이미 가내시를 근거로 국비(3억 8,900만원)와 매칭되는 시비(5억 2,700만원)를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바, 지난 '23년 8월, 매칭 편성한 시비는 예산변경을 하였으나, 기 편성된 국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감액조정 등 별도의 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원 없는 불용”이 발생한 사례로 검토됨
- 또한, 사업부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과목 편성오류를 경정하고자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②**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간주처리¹¹⁰⁾하고 시비에 대해서는 기 편성된 사업에서 예산의 변경¹¹¹⁾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으나,
- 예산총칙을 통해 정하고 있는 간주처리는 회계연도중 수시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서울시가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 사례와 같이 사업부서의 회계오류를 희석하기 위해 오용하는 제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109)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의 예산과목이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됨

110)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8678 ('23. 7.25) “2023 회계연도 제8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알림”

111)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13798 ('23. 8.25)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변경 계획”

-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지난 '23년 7월,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하였음¹¹²⁾
- 금번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 298호)은 '24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어 동 사인을 훈령 위반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으나, 동 기준에서 예산의 변경제도에 대한 개정 취지는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존중하여 예산을 행정편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동 사례는 가내시 및 확정내시된 국고보조금의 예산과목을 임의로 편성한 것을 추정 등을 통해 경정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를 간주처리와 세부사업 신설하는 우회적 기법을 통해 편성오류를 희석하려 한 사례로 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부서는 국비를 간주처리하고, 매칭되는 시비를 변경하면서까지 신설한 ②**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의 예산 또한,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하여 교부된 국비는 전액 반납하고, 시비는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업부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11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3. 7), p.37

○ 현행 법령 등을 고려하여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개정

〈표 4-23〉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 2 3 년 도 예 산 액		변경내역 ^{주2)}		예산 현액	집행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간 처 주 리	감액	증액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 원 시 범 사 업 (보 건 복 지 부)	(x389) 917	-	(△x0) △527	-	(x389) 389	-	-	(x389) 389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 원 시 범 사 업	(x433) 433	(x433) 433 ^{주1)}	-	(x0) 527	(x433) 960	-	(x433) 433	(x-) 527

※ 주1)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8678 ('23. 7.25) “2023 회계연도 제8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알림”

■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보건복지부)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 4억 3,300만원 (주관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주2)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13798 ('23. 8.25)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변경 계획”

○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가내시하여 국고보조금에 세입처리하였으나, 이후
확정내시를 국고보조금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정정 내시함에 따라
회계간 사업비 조정을 위한 시비예산 변경 필요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8122 ('24. 4. 3)

2. 이체 관련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¹¹³⁾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의 운용부서를 이관하는 것임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 발생한 조직개편에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 관리에 대한 직무권한의 변동에 한정되며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님
- '23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의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실·본부·국 및 부서간 이체가 발생한 것으로 191건, 4,429억 9,100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제출됨

〈표 4-24〉 2023회계연도 예산의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발생건수	증	감
소 계		191	442,991	△442,991
일	반 회 계	127	377,161	△377,161
특	별 회 계 ^{주1)}	64	65,829	△65,829

주1) 기타특별회계(64건, 658억 2,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이체 없음

113)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의 이체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사업을 이관하는 부서로서는 이관하기 전까지 대상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 사업을 이관 받는 부서로서도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이체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행정조직을 재구조화할 경우에는 기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까지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25A〉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고
	감	증	감	증	
계	191	191	△442,991	442,991	
여 성 가 족 정 책 실	15	15	△112,166	112,166	<감액> ■ 여성가족정책실 내 조직변경 △112,166(15건) <증액> ■ 여성가족정책실 내 조직변경 112,166(15건)
기 획 조 정 실	1	2	△63,773	63,845	<감액> ■ 기획조정실 내 조직변경 △63,773(1건) <증액> ■ 기획조정실 내 조직변경 63,773(1건) ■ 기획조정실←행정국 72(1건)
경 제 정 책 실	21	21	△32,162	32,162	<감액> ■ 경제정책실 내 조직변경 △32,162(21건) <증액> ■ 경제정책실 내 조직변경 32,162(21건)
기 후 환 경 본 부	27	27	△136,627	136,627	<감액> ■ 기후환경본부 내 조직변경 △136,627(27건) <증액> ■ 기후환경본부 내 조직변경 136,627(27건)

〈표 4-25B〉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고
	감	증	감	증	
행정국	5	-	△439	-	<감액> ■ 행정국→기획조정실 △72(1건) ■ 행정국→디지털정책관 △367(4건)
디지털정책관	-	4	-	367	<증액> ■ 디지털정책관←행정국 367(4건)
시민건강국	35	35	△50,837	50,837	<감액> ■ 시민건강국 내 조직변경 △50,837(35건) <증액> ■ 시민건강국 내 조직변경 50,837(35건)
디자인정책관	13	13	△4,014	4,014	<감액> ■ 디자인정책관 내 조직변경 △4,014(13건) <증액> ■ 디자인정책관 내 조직변경 4,014(13건)
재난안전관리실	11	11	△3,094	3,094	<감액> ■ 재난안전관리실 내 조직변경 △3,094(11건) <증액> ■ 재난안전관리실 내 조직변경 3,094(11건)
물순환안전국	56	56	△37,463	37,463	<감액> ■ 물순환안전국 내 조직변경 △37,463(56건) <증액> ■ 물순환안전국 내 조직변경 37,463(56건)
소방재난본부	7	-	△2,410	-	<감액> ■ 소방재난본부→비상기획관 △2,410(7건)
비상기획관	-	7	-	2,410	<증액> ■ 비상기획관←소방재난본부 2,410(7건)

3. 이용 관련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¹¹⁴⁾에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에 필요한 경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 총칙을 통해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3년도 서울시 예산서중 「예산총칙」 제8조를 통해 (1)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지방채상환(원리금 등), (3)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한정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지난 '14회계연도 이후 '23회계연도까지 정책사업간 예산의 이용이 발생 된 바 없음

114) 「지방재정법」 제47조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후략)

4.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9조¹¹⁵⁾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 '23회계연도의 경우, 전용 건수는 165건으로 예산현액 51조 4,900억 4,800만원중 0.05%, 240억 3,600만원을 전용한 바, '22회계연도 대비 전용 건수는 33건 증가하였으나, 전용액은 △27억 4,800만원 감소한 것으로
 - ①일반회계의 경우, 138건, 120억 6,700만원을 전용하여 '22회계연도보다 전용 건수는 48건 증가하였으나, 전용액은 △45억 700만원 감소하였고, ②기타특별회계는 18건, 35억 3,100만원을 전용하여 직전 회계연도 대비 △18건, △45억 9,900만원 감소하고, ③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9건, 84억 3,900만원을 전용하여 직전 회계연도보다 3건, 63억 6,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직전 회계연도보다 전용 건수가 증가한 것은 당초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여 위탁기관이 가입하던 공유재산 손해보험금(공제)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¹¹⁶⁾에 따라 서울특별시 명의로 재가입¹¹⁷⁾함에 따라

115)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6)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예산의 전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건물, 선박
 -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117)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3465 ('23. 3.29) “민간위탁(대행) 관련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부적절

55건, 14억 8,800만원이 전용된 것으로 제출됨

〈표 4-26〉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2		2021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합 계	165	24,036	132	26,784	168	26,701
일반회계	138	12,067	90	16,574	144	20,382
특별회계	27	11,970	42	10,209	24	6,318
기타특별회계	18	3,531	36	8,130	22	6,034
공기업특별회계 ^{주1)}	9	8,439	6	2,078	2	284

주1)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정하는 예산 전용 기준에 따라 분류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전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¹¹⁸⁾에 따른 전용 제한을 벗어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가입건 조치 후 회신 요청”

11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표 4-27〉 예산의 전용 규정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지방의회에 제출*(예산부서)
- *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내역 제출
-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 단, 차입금원금상환(601)과 차입금이자상환(311)간,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 ※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156

- 다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재정법」 119)에 따라 전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공식문서로 보고하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전용내역 2건¹²⁰⁾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

119)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120)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4874 (’23. 4.18)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재가입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 물순환안전국, 중량물재생센터 관리과-11881(’23.10.31) “중량물재생센터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전용 계획”

회에 안건 제출시 공문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바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¹²¹⁾ 동법 제6조¹²²⁾에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¹²³⁾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¹²⁴⁾를 통해 분기별로 전용내역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용 내역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나, 법규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0조¹²⁵⁾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조직별 전용현황을 검토하면, 26개 실·본부·국에서 165건을 전용한 것으로 복지정책실 31건, 41억 3,100만원을 전용하고, 시민건강국 16건, 7억 3,500만원, 문화본부 15건, 6억 6,500만원 등을 전용한 바,

- **복지정책실**의 경우, 손해보험 관련 14건, 6,600만원을 전용한 것 이외에도 수요 과소편성¹²⁶⁾을 사유로 16건, 31억 2,900만원을 전용하여, 향후 복지 수요 산출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121)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22. 7), p.87~88

○ 전용절차:전용요구(사업부서)→심사(예산부서)→결정(관리자 또는 사장·이사장)→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122) 「지방공기업법」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123)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5)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6)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1억 1,000만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12억 9,900만원),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5,300만원)

- **시민건강국**의 경우에도 손해보험 관련 7건, 7,200만원을 전용한 것 이외에도 국고보조금 교부¹²⁷⁾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등을 사유로 8건, 6억 6,000만원을 전용하고, **문화본부**의 경우에는 손해보험 관련 6건, 6,500만원을 비롯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예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¹²⁸⁾ 등을 사유로 9건, 6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제출됨

〈표 4-28〉 실·본부·국별 전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실·본부·국 ^{주1)}		전 용 건 수	전 용 액	
				전체 전용액 대비
계		165	24,036	100.0
	상 수 도 사 업 본 부	7	8,067	33.5
	복 지 정 책 실	31	4,131	17.1
	노 동 공 정 상 생 정 책 관	8	1,572	6.5
	도 시 교 통 실	11	1,469	6.1
	재 난 안 전 관 리 실	8	1,014	4.2
	평 생 교 육 국	3	984	4.0
	여 성 가 족 정 책 실	12	784	3.2
	시 민 건 강 국	16	735	3.0
	문 화 본 부	15	665	2.7
	디 지 털 정 책 관	2	620	2.5
	관 광 체 육 국	6	597	2.4
	기 후 환 경 본 부	6	583	2.4
	경 제 정 책 실	10	494	2.0
	미 래 한 강 본 부	2	472	1.9
	물 순 환 안 전 국	5	374	1.5
	미 래 청 년 기 획 단	2	329	1.3
	주 택 정 책 실	5	326	1.3
	소 방 재 난 본 부	2	298	1.2
	인 재 개 발 원	2	168	0.7
	행 정 국	2	97	0.4
	디 자 인 정 책 관	2	95	0.4
	기 획 조 정 실	2	59	0.2
	서 울 역 사 박 물 관	3	57	0.2
	푸 른 도 시 여 가 국	1	22	0.1
	의 회 사 무 처	1	10	0.1
	균 형 발 전 본 부	1	4	0.1

주1) 전용액 규모순

1.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2. “구성비”는 전체 실·본부·국(상수도사업본부 포함)의 전용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127)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3061 (’23.10.10) “2023년도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28)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9651 (’23. 7.14),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예산 전용 계획”

- 소관 실·본부·국별 전용 사례를 검토하면,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은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고자 세부사업 내 목그룹 간 2,000만원을 전용한 것임

〈표 4-29〉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사업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승 인 용 일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2	△20	-	'23. 8.28
“	사 무 관 리 비	-	-	20	

- 동 사업은 지역고용 노동현안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매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가급적 지자체가 직접 발주 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침¹²⁹⁾을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직접 발주로 변경하기 위해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해당 지침은 이미 지난 2018년도에 개정된 내용으로 지자체인 서울시가 이미 직접 발주하여야 하는 사안임에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편성 이후 전용을 통해 지침 위반요인을 해소한 사례로 사료되는 바,
-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전용제도의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 전용 사례로 사료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에서 9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서울시 공공배달앱을

129) 고용노동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지침」('23. 2), p.67

○ 사업은 가급적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되, 전문적인 분야 등은 위탁하여 수행(지자체 직접발주)

통해 상품권을 결제한 시민에게 제공되는페이백 상품권 발행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 직접 수행 방식으로 변경하고자¹³⁰⁾ 전용한 것인 바,

〈표 4-30〉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승 인 용 일
소 상 공 인 간 편 결 제 활 성 화 지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00	△900	-	'23. 3. 3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 행 · 운 영 사 업	사 무 관 리 비	5,462	-	900	

-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¹³¹⁾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동 전용 사례처럼 보조사업에서 직접사업으로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추경을 통해 세부사업간 소요예산을 경정하는 방안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광체육국 소관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은 국내·외 관광업계 간 온라인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바운드 관광업계 판로 지원을 위한 B2B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한국관광공사가 유사사업¹³²⁾을 추진하고 있어 소요예산중 민간경상사업보조(2억 3,100만원) 전액을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으로 전용한 것으로¹³³⁾

13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2578 ('23. 3. 2) “'23년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기본계획”

131)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32) 한국관광공사, 투어라즈 ('23. 4.19) “B2B기반 관광산업 통합플랫폼”

〈표 4-31〉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승 인 일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31	△231	-	'23. 7.27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550	-	231	

- 동 전용 사례는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감소시키고자 해당 예산과목에 편성된 소요예산 전액을 전용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¹³⁴⁾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요예산을 경정요청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본부 소관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은 세부사업 내 목그룹 간 3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24년 5월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자 예산과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신설하여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¹³⁵⁾

133)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7300 ('23. 3.19)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 예산 전용계획”

134)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35)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9651 ('23. 7.14),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예산 전용 계획”

〈표 4-32〉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승 인 용 일
문 화 재 조 사 및 문 화 재 위 원 회 운 영	사 무 관 리 비	496	△300	-	'23. 9. 7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300	

- 미래한강본부 소관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억 5,000만원을 전용한 바,¹³⁶⁾

〈표 4-33〉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승 인 용 일
한 강 관 공 선 등 운 영 및 관 리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600	△450	-	'23.11.24
미 래 한 강 본 부 청 사 시 설 유 지 관 리	공 공 운 영 비	1,558	-	450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의 경우, 재정사업에 민간공모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¹³⁷⁾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4억 5,000만원을 다른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간 전용한 것으로

136)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3171 ('23.11.24),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계획”

137)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1274 ('23. 3.10), “예산 변경 및 사용계획”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의 경우, '23년 3월, 본예산으로 편성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억 5,000만원중 △67.6%, △12억 5,000만원을 이미 변경(감액)하여 ①서울항 조성 사업중 서울항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6억 5,000만원, ②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중 수상택시 승강장 등 정비 3억원, ③난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유지관리중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유지보수 3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됨

○ 디지털정책관 소관 **재난재해 대비 SDDC기반 클라우드 환경 구축**은 세부 사업 내 통계목 간 6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중요시스템(대시민 서비스)에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고자 중요시스템 클라우드 전환비 6억원을 전액 전용한 것이나, 본예산 편성 시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과목에 대해 전용을 통하여 자체 치유한 사례일 수 있어 향후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표 4-34〉 재난재해 대비 SDDC기반 클라우드 환경 구축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승 인 용 일
재난재해대비 SDDC기반 클라우드 환경 구축	공 공 운 영 비	600	△600	-	'23. 7.11
〃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1,740	-	600	

5. 명시이월 관련

(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¹³⁸⁾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3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예산현액 51조 4,900억 4,800만원 중 1.6%, 8,299억 7,5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8,299억 7,500만원) 중에는 공기업특별회계¹³⁹⁾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329억 200만원)도 포함된 것임

〈표 4-35〉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른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명 시 이 월 액	명 시 이 월 률
합 계		51,490,048	829,975 ^{주1)}	1.6
	일 반 회 계	36,507,392	42,345	0.1
	기 타 특 별 회 계	12,979,944	754,727	5.8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002,711	32,902 ^{주2)}	1.6

※ 주1) '23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329억 2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주2) '23회계연도 결산결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

자료근거 :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138)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9) 서울시는 '23회계연도에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140)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141)에 따라 이월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는 달리 이월의 종류를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는 바,
- 이 중 건설개량이월은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활용되는 명시이월과 비교하면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한다는 점과, 다음연도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연도로 다시 사고이월(재이월)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근거, 이월대상, 이월에 대한 승인권자 등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상호 구별이 필요한 제도임¹⁴²⁾

140) 「지방공기업법」 제30조(예산의 이월)

- ①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2.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④ 관리자는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1)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22. 6), p.94

구 분	건 설 개 량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세목 단위까지	세목 단위	세목 단위
요구권자	관리자(부서의 장)	관리자(부서의 장)	관리자(사장·이사장)
승인권자	자치단체의 장(사장·이사장)	자치단체의 장(사장·이사장)	지방의회(이사회)
요구시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확정시기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이사회)의결 연장,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가능

142) 건설개량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

구 분	건 설 개 량 이 월	명 시 이 월
법적 근거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월 대상	경비의 성질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데 필요한 경비	회계연도 중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
	지출원인행위 여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지출원인행위 여부와 무관
이월에 대한 승인권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심사시 결산서에 건설개량이월액과 명시이월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기준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왔으며,¹⁴³⁾ 이에 따라 서울시도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수차례 기준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나,¹⁴⁴⁾
- 지난 '24년 1월, 개정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서도 여전히 건설개량이월액을 명시이월액에 통합하여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¹⁴⁵⁾ 행정안전부가 동 사안을 개선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체가 명확히 구별되는 이월제도가 결산서에서도 구분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기준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되, 행정안전부가 동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 외에 다양한 건의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43) 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19. 6), p.114

②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20. 6), p.94~95

③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23. 6), p.89

144) ① 서울특별시, 재무과-40036 ('19. 7.31)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39816 ('20. 7.30)

③ 서울특별시, 재무과-37868 ('23. 8.21)

145) 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24 ('24. 1.22)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일부 개정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추진 알림”

②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4. 1), p.132

4.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설개량이월액은 명시이월로 통합하여 기재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수도사업특별회계(90억 5,300만원)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238억 4,800만원)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액은 7,970억 7,300만원으로,
- 우리 시의회는 '24년도 예산심사시 서울시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심사하고 '23회계연도 중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84개 세부사업, 115개 통계목에 대해 8,188억 1,100만원의 명시이월을 승인('23.12)하였으나,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동일한 세부사업(84개)과 통계목(115개)에서 7,970억 7,300만원만 실제 명시이월된 것으로 제출된 바,¹⁴⁶⁾
 - 실제 명시이월액(7,970억 7,300만원)이 의회의 승인액(8,188억 1,100만원)보다 △2.6%, △217억 3,800만원 감소된 것은 예산안 제출일('23.11. 1)이나 의결일('23.12.15)에는 지출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비가 회계연도 종료시점('23.12.31)까지 일부 집행된 결과로 사료됨

〈표 4-36〉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관련 의회 승인현황 및 실제 이월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의회 승인현황 (2024년도 본예산 심사시 의결결과)			실제 이월현황 (결산결과)		
세부사업 수	통계목 수	명시이월 승인액	세부사업 수	통계목 수	명시이월액
84	115	818,811	84	115	797,07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6820 ('24. 4. 1)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액을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예산현액(49조 4,873억 3,600만원)이 직전회계연도(51조 5,667억 5,400만원)보다 △2조 794억 1,700만원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액(7,970억 7,300만원)은 오히려 직전회계연도(3,356억 7,700만원)보다 4,613억 9,500만원 증가된 것으로,
 -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직전회계연도(363억 5,400만원)보다 5,543억 2,300만원 증가된 명시이월(5,906억 7,800만원)이 발생한 결과 서울시의 전체 명시이월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검토됨
 -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한 세부사업 중 ①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¹⁴⁷⁾ ② **청년 매입임대 사업**,¹⁴⁸⁾ ③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¹⁴⁹⁾ ④ **공공원룸주택 매입임대 사업**¹⁵⁰⁾을 포함한 4개의 국고보조사업은 동일한 사유¹⁵¹⁾로 서울시 전체 명시이월액(7,970억 7,300만원)의 68.5%에 해당되는 5,465억 6,4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 명시이월은 건설개량이월이나 사고이월과 비교하면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해 예산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147)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4,466억 5,000만원(국비 2,723억 4,000만원, 시비 1,743억 1,000만원) 중 69.5%, 3,108억 1,200만원(국비 1,888억 200만원, 시비 1,220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임

148)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1,638억 5,000만원(국비 1,138억 5,000만원, 시비 500억원) 중 70.0%, 1,146억 9,500만원(국비 796억 9,500만원, 시비 350억원)이 명시이월된 것임

149)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1,585억 6,000만원(국비 787억 5,000만원, 시비 798억 1,000만원) 중 67.8%, 1,075억 8,300만원(국비 517억 2,300만원, 시비 558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임

150)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193억 6,500만원(국비 120억 1,500만원, 시비 73억 5,000만원) 중 69.5%, 134억 7,400만원(국비 83억 2,900만원, 시비 51억 4,5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임

151) 매입기준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이 개정('23. 7)된 이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부진하였으며, 미집행된 예산을 활용하여 다음연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한 것으로 제출됨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7383 ('24. 4.17)

- 결국 이월예산의 한 종류로서 ① 다음연도의 가용재원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며, ② 「지방재정법」 등¹⁵²⁾에 따라 해당 사업에 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현액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감추경 또한 불가능하여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가급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4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주관하는 사업부서(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는 중앙부처(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집행부진요인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이월보다는 감추경을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52)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165
 ○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표 4-37〉 회계연도별 명시이월 및 건설개량이월 현황('23~'21)

(단위 : 백만원, 건, %)

회계연도	구 분		예산현액 (가)	명시이월(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건설개량이월(공기업특별회계)		
				건수 ^{주1)}	이월액 (나)	이월률 (나)/(가)
2023	합계 ①+②+③		51,490,048	137	829,975 ^{주2)}	1.6
	명시이월	소계 ①+②	49,487,336	115	797,073 ^{주3)}	1.6
		일반회계 ①	36,507,392	48	42,345	0.1
		기타특별회계 ②	12,979,944	67	754,727	5.8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2,002,711	22	32,902	1.6
2022	합계 ①+②+③		53,468,799	178	348,007 ^{주2)}	0.6
	명시이월	소계 ①+②	51,566,754	164	335,677 ^{주3)}	0.9
		일반회계 ①	38,319,642	75	81,713	0.2
		기타특별회계 ②	13,247,111	89	253,964	1.9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1,902,045	14	12,329	0.6
2021	합계 ①+②+③		47,759,128	208	471,129 ^{주2)}	1.0
	명시이월	소계 ①+②	45,928,700	195	445,055 ^{주3)}	0.9
		일반회계 ①	33,834,846	85	85,451	0.3
		기타특별회계 ②	12,093,854	110	359,603	3.0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1,830,427	13	26,074	1.4

※ 주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통계목 기준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세목 기준

주2)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이 포함된 것임

주3)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액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명시이월액만을 합산한 것임)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16820 ('24. 4. 1) 등 재구성

〈표 4-38〉 직전회계연도 대비 명시이월 및 건설개량이월 증감현황(회계별)

(단위 : 백만원, 건, %, %p)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	
	예산현액	건수 ^{주1)}	이월액 (이월률)	예산현액	건수 ^{주1)}	이월액 (이월률)	건수	이월액 (이월률)
합 계	51,490,048	137	829,975 ^{주2)} (1.6)	53,468,799	178	348,007 ^{주2)} (0.6)	△41	481,968 (0.9)
① + ②								
명 시 이 월 (계) ①	49,487,336	115	797,073 ^{주3)} (1.6)	51,566,754	164	335,677 ^{주3)} (0.6)	△49	461,395 (0.9)
일 반 회 계	36,507,392	48	42,345 (0.1)	38,319,642	75	81,713 (0.2)	△27	△39,367 (0.0)
기 타 특 별 회 계	12,979,944	67	754,727 (5.8)	13,247,111	89	253,964 (1.9)	△22	500,762 (3.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2,057,950	6	37,369 (1.8)	2,201,609	10	23,492 (1.0)	△4	13,876 (0.7)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2,230,608	9	19,462 (0.8)	2,292,766	19	17,590 (0.7)	△10	1,871 (0.1)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332,691	2	3,480 (1.0)	350,236	3	4,774 (1.3)	△1	△1,294 (△0.3)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3,041,073	11	590,678 (19.4)	3,002,632	6	36,354 (1.2)	5	554,323 (18.2)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119,576	32	83,759 (3.9)	2,425,711	46	169,145 (6.9)	△14	△85,385 (△3.0)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11,850	7	19,978 (9.4)	208,872	5	2,606 (1.2)	2	17,371 (8.1)
학 교 용 지 부 담 금 특 별 회 계	36,771	-	- (0.0)	29,214	-	- (0.0)	-	- (0.0)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1,928,934	-	- (0.0)	1,752,290	-	- (0.0)	-	- (0.0)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37,339	-	- (0.0)	33,731	-	- (0.0)	-	- (0.0)
소 방 특 별 회 계	983,148	-	- (0.0)	950,036	-	- (0.0)	-	- (0.0)
건 설 개 량 이 월 (계) ②	2,002,711	22	32,902 (1.6)	1,902,045	14	12,329 (0.6)	8	20,572 (0.9)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002,711	22	32,902 (1.6)	1,902,045	14	12,329 (0.6)	8	20,572 (0.9)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995,268	8	9,053 (0.9)	867,963	8	4,964 (0.5)	-	4,089 (0.3)
공 기 업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07,442	14	23,848 (2.3)	1,034,081	6	7,365 (0.7)	8	16,483 (1.6)

※ 주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통계목 기준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세목 기준

주2)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이 포함된 것임

주3)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액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명시이월액만을 합산한 것임)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16820 ('24. 4. 1) 등 재구성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¹⁵³⁾과 「서울특별시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¹⁵⁴⁾에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액
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소관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는 이월액
확정기한('24. 1.10)이 약 2개월 경과한 시점인 지난 3월 4일, 명시이
월액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기준과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로
확인됨

〈표 4-39〉 당초 확정된 명시이월액을 임의로 정정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1월 10일자로 확정된 명시이월액 (가)	변경된 명시이월액 (‘23 결산서) (나)	증감액 (나)-(가)
물 순 환 안 전 국	강 남 역 일 대 빗 물 배 수 시 설 설 치	13,740 ^{주1)}	10,000	△3,740 ^{주2)}

※ 주1)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서 국비 34억 3,500만원과 시비 103억 5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주2) 기 확정된 명시이월액(137억 4,000만원) 중 서울시로 교부되지 않은 국비(9억 3,500
만원)와 이에 대한 매칭시비(28억 500만원)를 감액한 것임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4 ('24. 1.11)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630 ('24. 4. 8)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현액 전액(137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확정('24. 1)한 것이나,¹⁵⁵⁾

153)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166

154)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이월예산의 집행)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 제50
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
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과장 및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55)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4 ('24. 1.11)

- 사업부서는 기 확정된 이월액(137억 4,000만원) 중 서울시로 교부되지 않은 국비와 이에 대한 매칭시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여 지난 2월 29일과 3월 4일, 명시이월액을 100억원으로 정정요청 하고,¹⁵⁶⁾ 3월 4일, 예산부서가 사업부서의 요청대로 정정한 것인 바,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포함한 관련 기준과 규칙에는 1월 10일까지 이월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확정된 이월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는 없음에도,
- 동 사업의 명시이월액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확정기한 경과 이후에 임의로 변경한 것은 관련 기준과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를 일탈하여 이월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사례일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법」 제150조¹⁵⁷⁾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156) ①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3742 ('24. 2.29) “'23년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 명시이월 정정 요청”

②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3827 ('24. 3. 4) “'23년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 명시이월 정정 요청(수정)”

157)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 건설개량이월은 「지방공기업법」 158)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운용하는 회계 중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임
- '23회계연도 건설개량이월액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2조 27억 1,100만원) 중 1.6%에 해당하는 329억 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23억 2,900만원)보다 166.8%, 205억 7,200만원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표 4-40〉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발생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건, %)

구분		예산현액 (가)	건설개량이월		
			건수 (세목 기준)	건설개량이월액 (나)	건설개량이월률 (나)/(가)
2023 회계연도	계	2,002,711	22	32,902	1.6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995,268	8	9,053	0.9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7,442	14	23,848	2.3
2022 회계연도	계	1,902,045	14	12,329	0.6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67,963	8	4,964	0.5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34,081	6	7,365	0.7
2021 회계연도	계	1,830,427	13	26,074	1.4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15,087	10	22,218	2.7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15,340	3	3,856	0.3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158) 「지방공기업법」 제30조(예산의 이월)

- ①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 회계별로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목을 기준으로 한 건설개량이월 발생건수는 직전회계연도(8건)와 동일하나, 건설개량이월액은 직전회계연도(49억 6,400만원)보다 82.3%, 40억 8,900만원 증가되었으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목을 기준으로 한 건설개량이월 발생건수가 직전회계연도(6건)보다 133.3%, 8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설개량이월액도 직전회계연도(73억 6,500만원)보다 223.8%, 164억 8,300만원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 '23회계연도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민생안정과 지역경기 활력제고를 위해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을 통보하는 등 재정의 신속집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수차례 시행하였으며,¹⁵⁹⁾ 서울시의 예산부서(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도 경기침체 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사업공정과 집행관리에 유의하여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지출부서(재무국 재무과)는 물론 각 실·본부·국에도 통보하였으나,¹⁶⁰⁾
- 서울아리수본부가 운용하는 수도사업특별회계와 물순환안전국이 운용하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계연도 중 지출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한 채 예산 집행시기를 유예하는 건설개량이월이 직전회계연도보다 오히려 증가된 바,
 - 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운용기조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일 수 있어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히 반영하여 한정된 세출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되도록 개선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159) 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89 ('23. 1. 20) ②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90 ('23. 1.20)
 ③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86 ('23. 2. 2) ④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937 ('23. 3. 9)
 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634 ('23. 6. 9) ⑥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039 ('23. 6.21)
 ⑦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883 ('23. 8.23) ⑧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884 ('24. 8.23)
 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3 ('23. 9.14) ⑩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141 ('23.12.20) 등

160)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2007 ('23. 2.17)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3994 ('23. 3.29)
 ③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7820 ('23. 6.23)

○ 사업별로 건설개량이월이 발생된 내역을 검토하면,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는 예산현액 98억 5,100만원 중 52억 900만원(예산현액 대비 52.8%)이 건설개량이월 되고, 5억 2,400만원(예산현액 대비 5.3%)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①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증설)**의 경우, 주민협의회로부터 반대민원(4회)이 제기됨에 따라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50억 8,100만원 전액이 건설개량이월 되고,¹⁶¹⁾
- ②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중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회계연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한 시설비 1억 7,800만원과 감리비 6,900만원은 사고이월 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시설비 1억 2,700만원은 건설개량이월 되었으며,¹⁶²⁾
- '23년 10월, 당초 '23년도 본예산에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소요예산(8억 5,000만원¹⁶³⁾) 중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③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사업방침¹⁶⁴⁾을 수립하고, '23년 12월말,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용역비(2억 7,600만원) 전액이 회계연도 중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것임¹⁶⁵⁾

161) 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598 ('24. 1.1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세출예산 이월 확정 계획”

②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027 ('24. 4. 5)

162) 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598 ('24. 1.10) ②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027 ('24. 4. 5)

163) 시설비 5억 5,000만원, 감리비 3억원 포함

164)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13803 ('23.10.12)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처리 자립화 기반구축을 위한- 중랑 제1건조시설 개선 타당성 등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165) ① 서울특별시, 재무과-62640 ('23.12.27) “계약체결 통보[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용역계약 체결일자 : '23.12.27 ■ 착수일자 : '24. 1. 2

■ 완수일자(준공일자) : '24.12.31 ■ 계약금액 : 2억 7,620만원

②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598 ('24. 1.10) ③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027 ('24. 4. 5)

〈표 4-41〉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23년도 본예산	전년도 건설개량이월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계		5,931	3,919	9,851	4,631	4,107	5,733	5,209	524	10
시 설 비	소 계	550 ^{주1)}	-	770 ^{주1)}	642	187	582	127	454	-
	난 지	550	-	493 ^{주2)}	365	187	306	127	178	-
	중 량	-	-	276 ^{주2)}	276	-	276	-	276	-
감 리 비	난 지	300 ^{주1)}	-	80 ^{주1)}	69	-	69	-	69	10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탄 천	5,081	3,919	9,001	3,919	3,919	5,081	5,081	-	-

※ 주1) '23년 10월, 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 '23년도 본예산에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감리비(3억원) 중 2억 2,000만원을 동일사업 내 시설비로 조정('23.10.19)한 것임

주2) '23년도 본예산에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시설비(5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5,600만원)과 예산 조정('23.10)을 통해 확보한 시설비(2억 2,000만원)를 활용하여 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것임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13985 ('23.10.16) “-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조정계획”

②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027 ('24. 4. 5) 등 재구성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23회계연도에 ①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와 ②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추진하려던 것으로서

- 사업부서는 외부요인¹⁶⁶⁾으로 인해 당초 추진하려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신규추진이 필요한 별도의 사업내역(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에 집행잔액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운용이라고 판단하였을 수도 있으나, 다음의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66) ①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경기도·고양시)와의 협의·승인절차 등 지연

②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제기

- 첫째, 동 사업은 동일한 사유로 예산이월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과거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관한 유관기관 협의가 지연되어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이월된 사례가 있고,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되거나 반대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이월된 사례가 있으나,¹⁶⁷⁾ '23회계연도에도 유사한 이월사례가 발생한 바,
- 예산편성시 사업추진일정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밀하게 산정한 후 회계연도 중 집행이 확실시되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당초 전망한 것보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해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둘째, 동 사업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시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내용 및 취지, 지정한 내용을 존중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시의회는 예산심사 시 동 사업의 사업내역 각각에 대해 추진일정과 예산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에 대한 승인규모를 결정한 바,
- '23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도 사업부서는 ①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00억원과 ②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8억 5,000만원(시설비 5억 5,000만원, 감리비 3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¹⁶⁸⁾

167) ①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의 경우, '18회계연도 결산결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관한 유관기관 협의가 지연되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 81억 7,90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례가 있음
 ②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의 경우,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주민협의회 협의가 지연되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 89억 9,500만원을 건설개량이월한 바 있으며,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지역 주민에 의해 반대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지 못해 39억 1,900만원을 건설개량이월한 사례가 있음

- 우리 시의회는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①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위한 소요예산(100억원) 중 △49억 1,9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음¹⁶⁹⁾
-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심사 시 동 사업에 대해 ④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의 낙찰차액 등을 건설개량이월 하여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에 활용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사 취지를 등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월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¹⁷⁰⁾
- ⑤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과 이월 예산을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에 지출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이월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음¹⁷¹⁾

168) 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서(안)」, p.60

②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2023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p.903~904

169) '23회계연도 결산결과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50억 8,100만원) 전액이 건설개량이월 처리된 바, 본예산 심사시 의회가 소요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더라면 이월액 발생규모가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17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19. 6), p.136

17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22. 6), p.214~216

-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172)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결과 폐지·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방공기업법」 제6조¹⁷³⁾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며 서울시가 운용하는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사내용과 취지를 존중하고, 세출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동 사업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내역과 새로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내역 등에 대해 추경으로 시의회에 증·감조정을 요청하기보다는, 사업내역 간 일종의 ‘예산 돌려쓰기’를 통해 조정(변경) 등으로 예산을 융통하고 있어 당초의 의결취지대로 예산이 사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동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기간을 추가 확보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개량이월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再考)가 필요할 사안으로 사료됨

172)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73) 「지방공기업법」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¹⁷⁴⁾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특히 건설개량이월은 지출원인행위 조차 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는 것으로서 최소화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17회계연도까지는 기타특별회계로 운용하다가 '18회계연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속한 사업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운용 첫 해인 '18회계연도부터 지난 '23회계연도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건설개량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도 사업추진기간을 2년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운용기법으로 건설개량이월이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74)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표 4-42〉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결산결과(회계연도별, 2023~2018^{주1)})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불용액
2023	9,851	4,107	5,733	5,209	524	10
2022	13,307	8,734	3,919 ^{주2)}	3,919	-	652
2021	24,548	20,601	1,727 ^{주3)}	169	1,558	2,218
2020	20,535	2,447	18,048 ^{주4)}	8,995	9,052 ^{주7)}	39
2019	18,181	12,545	5,535 ^{주5)}	5,326	209	100
2018	44,792	33,593	11,181 ^{주6)}	3,002	8,179	17

※ 주1) '17회계연도까지 기타특별회계 중 하나로 운용되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회계연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고 그 명칭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변경되었음

주2) '22회계연도 결산 이월사유

- 건설개량이월 :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공법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나 2회 유찰, 지역주민에 의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39억 1,900만원 건설개량이월

주3) '21회계연도 결산 이월사유

- 건설개량이월 : 서남물재생센터 2단계 건조시설 설치 관련 시운전 등 일부사업에 대해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1억 6,900만원 건설개량이월
- 사고이월 : 서남물재생센터 2단계 건조시설 설치가 '22년 3월말 준공예정임에 따라 물품 및 공사 잔여 기성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15억 5,800만원 사고이월

주4) '20회계연도 결산 이월사유

- 건설개량이월 : 서남물재생센터 2단계 건조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의 준공이 지연되어 공사 착공시기도 지체되었으며, 탄천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설치의 경우 주민협의회 협의가 지연되어 회계연도 중 건조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89억 9,500만원 건설개량이월
- 사고이월 : 서남물재생센터 관련 관급자재 납품시기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출범('21. 1) 이후로 조정함에 따라 90억 5,200만원 사고이월

주5) '19회계연도 결산 이월사유

- 건설개량이월 : 설계용역 지연으로 서남물재생센터 2단계 건조시설 설치공사의 착공도 순연되어 53억 2,600만원 건설개량이월
- 사고이월 : 설계경제성심사, 건설기술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공기가 부족하여 설계용역의 준공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2억 900만원 사고이월

주6) '18회계연도 결산 이월사유

- 건설개량이월 : '19년도 본예산 심사시 의회가 삭감한 “난지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25억원)를 보전하기 위해 '18회계연도의 낙찰차액 등 30억 200만원을 건설개량이월
- 사고이월 : 가동설비 기간을 조정하여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관한 유관기관 협의가 지연되어 81억 7,900만원 사고이월

주7) '19회계연도에 건설개량이월된 민간대행사업비(53억 2,600만원)를 '20회계연도에 집행한 결과 다음연도로 다시 사고이월(재이월)된 30억 4,8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1303 ('19. 1.28)

③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027 ('24. 4. 5) 등 재구성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사업**은 예산현액 44억 3,500만원 중 88.8%, 39억 4,0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 된 것으로,

-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소화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는 소화조 준설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나,¹⁷⁵⁾ 소화조 준설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23년 10월말 준공됨에 따라 회계연도 중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36억 4,000만원)와 감리비(3억원)를 건설개량이월한 것으로 제출됨¹⁷⁶⁾

〈표 4-43〉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사업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세목별)

(단위 : 백만원)

세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4,435 ^{주1)}	441 ^{주2)}	441 ^{주2)}	3,940 (건설개량이월)	53
시 설 비	4,135	441	441	3,640 (건설개량이월)	53
감 리 비	300	-	-	300 (건설개량이월)	-

※ 주1) '23년도 본예산에 ㉔ 공사비(36억 4,000만원), 소화조 준설비(2억 5,000만원), 시스템 비계설치비(2억 1,000만원), 정밀안전진단비(3,5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41억 3,500만원과 ㉕ 감리비 3억원을 편성한 것임

주2)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소요예산 중 소화조 준설비, 시스템 비계설치비, 정밀안전진단비에 대해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이 이루어진 것임(공사비는 해당 없음)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027 ('24. 4. 5) 등 재구성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23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① '23년 1월부터 4월까지 소화조 준설용역을 실시하고, ② 4월부터 8월까지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며, ③ '23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된 바,¹⁷⁷⁾

175)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25516 ('22. 8. 29)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용역 세부계획”

176)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027 ('24. 4. 5)

177)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2023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p.989

- '23년 4월, 정밀안전진단용역을 '23년 12월 20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23. 4.21)¹⁷⁸⁾을 고려하면, 사업부서는 당초 계획대로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23년 5월, 제1회 추정안이 의회에 제출('23. 5.30)되기 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이미 지난 '21회계연도에도 설계지연으로 인해 설계비(2억 500만원) 중 8,2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설계지연으로 공사 발주시기도 지연되어 공사비 32억 7,500만원 전액이 건설개량이월 되었으며,¹⁷⁹⁾
- '22회계연도에는 건설기술심의를 이행('21.12)한 결과 공사시행 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설계용역을 준공('22. 4)한 결과 사업비가 증가되어 다시 투자심사를 이행('22. 8)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¹⁸⁰⁾ 직전회계연도로부터 건설개량이월된 공사비(32억 7,5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는 바,
- '21회계연도부터 편성되어 온 공사비를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과 불용 처리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23회계연도 중에는 선행공정(준설, 안전진단 등)의 추진상황에 따라 공사비(36억 4,000만원)와 감리비(3억원)의 집행가능성에 대해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필요시에는 감추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178)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4174 ('23. 4.21) “계약체결 통보[난지물재생센터 소화조 정밀안전진단용역]”

179) ① 2021 사업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중 “예산이월액조서”

②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20857 ('22. 4. 4)

180) 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12564 ('21.12. 7) “제197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자료제출”

■ 위원 검토의견 : 압축터빈 교반방식 장치가 기존 소화조(구조물) 상부에 설치되므로 설치에 따른 소화조 구조물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

■ 발주기관(부서) 의견 : (중략) 공사실시 전 구조물 진단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음

②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21840 ('22. 5.11)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준공검토보고”

■ 행정사항

○ 농축시스템 추가로 공사비 증가되어 투자심사 예정

③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28330 ('22.11. 9)

④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1 ('23. 4.17)

⑤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2022 회계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420~421

〈표 4-44〉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사업 결산결과(회계연도별, 2023~2021)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불용액
2023	4,435	441	3,940	3,940	-	53
2022	3,357	78	-	-	-	3,278 ^{주1)}
2021	3,480	123	3,357	3,275 ^{주1)}	82 ^{주3)}	-

※ 주1) 직전회계연도로부터 건설계량이월된 공사비(32억 7,5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주2) 공사비(32억 7,500만원) 전액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임

주3) 설계비(2억 500만원) 중 8,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027 ('24. 4. 5)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지난 '21회계연도와 '22회계연도에 이어 '23회계연도에도 감추경을 추진하지 않고, 단 1원도 지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지출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한 채 공사비(36억 4,000만원)와 감리비(3억원) 전액을 건설개량이월로 처리하고 있는 바,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사례로 사료되어 「지방자치법」 제150조¹⁸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181)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소관 **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
현액 28억 6,400만원 중 5,700만원(예산현액 대비 2.0%)이 사고이월
되고, 21억 9,800만원(예산현액 대비 76.7%)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으로,

- 당초 '23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6억 6,600만원)와 공사비(41억 6,000만원)를 포함한 48억 2,600만원¹⁸²⁾을 편성하고, '23년도 제1회 추경¹⁸³⁾에서 설계지연을 사유로 회계연도 중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공사비 △19억 6,100만원을 감액한 것이나,¹⁸⁴⁾
- '23년 11월, 설계용역의 준공기한을 '23년 12월 31일에서 '24년 6월 30일로 연기함에 따라 설계용역비(6억 6,600만원) 중 5,7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선행공정인 설계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발주도 순연되어 공사비 21억 9,800만원 전액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임¹⁸⁵⁾

〈표 4-45〉 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이월액(계)		건설개량		사고이월액	
			이월률	이월액	이월률	이월액	이월률	이월률
계		2,864 ^{주1)}	2,256	78.7	2,198	76.7	57	2.0
시설비	설계용역비	666	57	8.6	-	-	57	8.6
	공사비	2,198 ^{주1)}	2,198	100.0	2,198	100.0	-	-

※ 주1) 제1회 추경에서 본예산에 기 편성된 공사비(41억 6,000만원) 중 △19억 6,100만원을 감액한 것임
자료근거 :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5027 ('24. 4. 5) 등 재구성

182) '23년도 예산안을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6억 6,600만원)와 공사비(50억원)를 포함한 56억 6,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시의회 심사와과정에서 공사비가 △8억 4,000만원 삭감된 것임

183)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11-00878, 제출일: '23. 5.30, 예결특위 의결일: '23. 6.30, 본회의 의결일: '23. 7. 5)

184)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 사업별설명서(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p.54

185) ① 송파구, 치수과-26644 ('23.11.22) “서계변경(2회) 및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차)]”

○ 준공기한 연기사유 :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의뢰, 설계 경제성(VE) 검토 등 공사 발주 전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② 송파구, 치수과-26860 ('23.11.24)

③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027 ('24. 4. 5)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23년 1월, 당초 체결한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 준공기한('23.12.31)이 회계연도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준공기한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도 후속공정인 공사의 추진기간을 '23회계연도에 확보하기는 불가능했던 사안으로,
- 지방의회는 추경안 심사시 제출된 안건의 범위 내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고, 집행기관이 일부 감액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추가로 감액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¹⁸⁶⁾에서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중 공사착공이 불가능하다면 '23년 5월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통해 공사비(41억 6,000만원)에 대해 감추경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 공사비(41억 6,000만원) 중 일부(△19억 6,100만원)에 대해서만 감추경을 요청한 결과 감액되지 못한 공사비(21억 9,800만원)는 단 1원도 지출되지 못하고 전액 건설개량이월된 것으로서 사업부서가 감추경 요청규모를 소극적으로 산정한 결과는 아닌지 재고(再考)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소요예산을 자치구에 재배정(송과구)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해당 자치구는 당초 '23년 1월, 설계용역을 '23년 12월까지 준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86)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15.12), p.73, p76~77

- “지방의회의 추경예산 심의시 당초예산 수정”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 질의 : 지방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 제출하지 않은 당초예산을 감액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의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정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범위 내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함
- “추경예산에 제출되지 않은 기정예산 추가삭감 가능 여부”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 질의 :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및 계수조정 시 집행부에서 요구한 증감액 범위 내에서만 계수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 회신 :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부 감액 요구한 예산액에 대하여 추가로 감액하는 것은,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기정예산을 추가로 감액한 것이며, 자치단체장이 예산심의 요구를 하지 않은 예산액을 지방의회가 감액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서울시의 사업부서(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는 '23년 5월, 추경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 ① 당초부터 설계용역 준공기한이 '23년 12월로 정해졌던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자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지연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고, ② 실시설계가 준공되면 회계연도 중 일부 공사라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부정확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한 사실이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46〉 사업추진일정 관련 기재내용 비교

당초계약에 따른 실제 설계용역 기간 ^{주1)} (’23. 1. 1. 계약체결)	제1회 추경안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23. 5.30. 의회제출)
○ 착수일자 : ’23. 1. 1 ○ 완수일자(준공기한) : <u>’23.12.31</u>	○ 추경사유 -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 후 하반기 공사착공코자 하였으나, 실시설계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 공사비 감추경

※ 주1) ’23년 11월 27일 체결한 변경계약을 통해 준공기한(’23.12.31)이 ’24년 6월 30일로 연기됨

자료근거 : ①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5027 (’24. 4. 5)

②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 사업별설명서(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p.54

-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 소관 **미아 배수지 건설**은 ’23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12억 1,100만원)를 포함한 12억 8,6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예산현액(12억 8,600만원) 중 94.1%, 12억 1,1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가 북한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배수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해제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20년 6월, 서울시가 국립공원 해제안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부처 간 협의지연으로 인해 ’23년 5월에서야 환경부가 국립공원 해제를 고시한 것으로, 187)

187)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계획설계과-10515 (’23.11.30) “-미아 배수지 건설사업- 토지보상비 사고이월 검토 보고”

- 국립공원 해제('23. 5. 1)가 지연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23. 7), 실시계획 작성('23. 9)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회계연도 중 토지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절대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기 편성된 토지보상비(12억 1,100만원)를 전액 건설개량이월 처리한 것임¹⁸⁸⁾

〈표 4-47〉 사전절차 이행 후의 토지보상 추진일정(미아 배수지 건설)

구분		법정기한	일정
보상계획 수립		-	'23.11.16
보상계획 공고·통지·열람		14일 이상 열람	'23.12. 7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업체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30일 이내	'23.12.22 (토지소유자 추천시 일정 다소 연기)
	감정평가업체를 토지소유자가 추천할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30일 이상 협의	'24. 1.24 (협의를 성립될 경우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7일 내 협의되도록 독촉)
협의 불성립시	손실보상 협의 경위서 작성	-	'24. 1.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60일 이내	'24. 2. 1 (7일 내 협의되지 않을 경우 즉시 신청)
	재결신청 공고·열람	14일 이상	'24. 2.21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토지수용	-	-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14815 ('23.11.17)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토지 손실보상 계획” 재구성

- 동 사례의 경우, 동일한 사유(국립공원 해제절차 지연)로 이미 지난 '21회계연도에도 '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토지보상비(12억 4,600만원) 전액을 건설개량이월 하였으며, '22회계연도에는 직전회계연도로부터 건설개량이월된 토지보상비(12억 4,6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는 바,¹⁸⁹⁾

188) ①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제60기)」, p.181

②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계획설계과-10515 ('23.11.30)

③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4330 ('24. 4. 5)

189) ① 각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4330 ('24. 4. 5) 등

〈표 4-48〉 미아 배수지 건설 결산결과(2023~2021)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불용액
2023	1,286	69	1,211	1,211 ^{주1)}	-	5
2022	1,570	324	-	-	-	1,246 ^{주2)}
2021	1,998	318	1,570	1,246 ^{주3)}	324 ^{주4)}	109

※ 주1) 토지보상비 12억 1,1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임

주2) 직전회계연도로부터 건설개량이월된 토지보상비(12억 4,6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주3) 토지보상비 12억 4,6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임

주4) 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비 3억 2,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4330 ('24. 4. 5) 등

- 보상사업의 특성상 ‘보상협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서울시의 보상의지를 신용하도록 하려면 토지보상비가 편성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앞선 2개 회계연도에 관련 절차(국립공원 해제)가 완료되지 않아 ‘보상협의’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토지보상비를 단 1원도 지출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 또는 불용처리 하였다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일정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집행가능성이 낮은 경비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49〉 건설개량이월이 발생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건설개량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률
물순환안전국	물 재 생 센 터 슬 러 지 자 체 처 리 시 설 설 치	9,851	4,631	4,107	5,209	52.8
서울아리수본부	장 기 사 용 송 배 수 관 (400mm이상) 정비	71,033	47,878	35,611	3,976	5.5
물순환안전국	물 재 생 센 터 소 화 조 효 율 개 선 실 증 사 업	4,435	441	441	3,940	88.8
물순환안전국	중 랑 물 재 생 센 터 시설현대화(2-1단계)	3,855	1,154	54	2,700	70.0
물순환안전국	도 림 2 - 6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2,982	482	433	2,500	83.8
물순환안전국	구 로 1 - 1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3,622	1,115	1,074	2,500	69.0
물순환안전국	시 흥 고 지 - 2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2,971	480	410	2,490	83.8
서울아리수본부	상 수 도 블 록 시 스템 공 급 체 계 구 축	25,115	15,910	12,779	2,214	8.8
물순환안전국	가 락 - 3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2,864	623	565	2,198	76.7
서울아리수본부	미 아 배 수 지 건 설	1,286	69	69	1,211	94.1
물순환안전국	농축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6,463	4,988	4,970	1,160	17.9
서울아리수본부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3,316	1,511	1,468	990	29.8
물순환안전국	난 지 물 재 생 센 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1,653	814	686	766	46.3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20,107	10,253	7,939	477	2.3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시 설 복 개 공 원 화	4,300	4,016	1,918	283	6.5
서울아리수본부	아리수올림터·배수지 노 후 기 전 시 설 개 량	12,158	10,213	10,213	109	0.8
물순환안전국	토목시설물 유지보수	3,870	2,956	2,956	100	2.5
서울아리수본부	정수센터 시설 정비	54,668	45,210	43,058	74	0.1

※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만 건설개량이월이 발생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건설개량이월이 없는 대신 명시이월이 발생됨)

6. 사고이월 관련

- 「지방재정법」 190)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부대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3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51조 4,900억 4,800만원) 대비 1.6%에 해당하는 8,605억 8,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7,660억 5,800만원)보다 12.3%, 945억 2,200만원 증가된 바,

〈표 4-50〉 회계연도별 사고이월 발생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건, %)

구	분	예산현액 (가)	사 고 이 월		
			건 수 (통계목 기준)	사고이월액 (나)	사고이월률 (나)/(가)
2 0 2 3 회 계 연 도	계	51,490,048	706	860,581	1.6
	일반회계	36,507,392	306	213,859	0.5
	특별회계 ^{주1)}	14,982,655	400	646,721	4.3
2 0 2 2 회 계 연 도	계	53,468,799	708	766,058	1.4
	일반회계	38,319,642	304	193,448	0.5
	특별회계 ^{주1)}	15,149,156	404	572,610	3.7
2 0 2 1 회 계 연 도	계	47,759,128	709	690,473	1.4
	일반회계	33,834,846	296	183,674	0.5
	특별회계 ^{주1)}	13,924,281	413	506,799	3.6

※ 주1)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6820 ('24. 4. 1)

190)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36조 5,073억 9,200만원) 대비 0.5%에 해당하는 2,138억 5,900만원으로서 직전회계연도(1,934억 4,800만원)보다 10.5%, 204억 1,000만원 증가된 것이며,
 -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14조 9,826억 5,500만원) 대비 4.3%에 해당하는 6,467억 2,100만원으로서 직전회계연도(5,726억 1,000만원)보다 12.9%, 741억 1,100만원이 증가된 것임
- '23회계연도의 경우, 사고이월액 발생규모가 직전회계연도보다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액(7,970억 7,3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액(329억 200만원)¹⁹¹⁾까지 포함한 서울시 전체 이월액의 발생규모(1조 6,905억 5,600만원)도 직전회계연도(1조 1,140억 6,600만원)보다 51.7%, 5,764억 9,000만원 증가된 바,

〈표 4-51〉 예산이월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가)	이월액 계 (나) =(다)+(라)+(마)		명시이월액 (다)		건설개량 이월액 (라)		사고이월액 (마)	
		이월률 (나)/(가)		이월률 (다)/(가)		이월률 (라)/(가)		이월률 (마)/(가)	
2023	51,490,048	1,690,556	3.2	797,073 ^{주1)}	1.5	32,902	0.0	860,581	1.6
2022	53,468,799	1,114,066	2.0	335,677 ^{주2)}	0.6	12,329	0.0	766,058	1.4
2021	47,759,128	1,161,603	2.4	445,055 ^{주3)}	0.9	26,074	0.0	690,473	1.4

※ 주1) '23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8,299억 7,500만원)에서 실제 명시이월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개량이월액(329억 200만원)을 제외한 것임

주2) '22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3,480억 700만원)에서 실제 명시이월액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개량이월액(123억 2,900만원)을 제외한 것임

주3) '21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4,711억 2,900만원)에서 실제 명시이월액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개량이월액(260억 7,400만원)을 제외한 것임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16820 ('24. 4. 1) 등 재구성

191) '23회계연도에 발생한 사고이월액(8,605억 8,1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액(329억 200만원)을 합산할 경우, 의회의 사전승인(의결) 없이 발생한 이월예산은 8,934억 8,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7,783억 8,800만원)보다 14.7%, 1,150억 9,500만원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갑작스러운 사업중단으로 인해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 이월예산은 ①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고, ②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사정변경이 생기더라도 감추경을 추진할 수 없으며, ③ 다음연도의 가용재원이 되는 순세계 잉여금의 재원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규모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과는 달리¹⁹²⁾ 의회의 사전승인(의결)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나, '23회계연도에는 전체 이월액은 물론 사고이월액 발생규모까지도 직전회계연도보다 증가된 바,
- 시세 부족징수¹⁹³⁾ 등으로 인해 이전보다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재원의 한정성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92)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165~166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확정요구 (사업부서→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193) '23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23조 8,627억 9,900만원으로서 예산액(24조 1,121억 8,400만원)보다 △2,493억 8,400만원 감소된 바, 지방세수입이 예산액보다 부족수납된 것은 고금리 등에 따라 민간소비와 주택매수심리가 위축되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한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출됨 : 서울특별시, 세무과-7221 ('24. 4.16)

○ 조직별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내역을 검토하면, 서울시의 전체 실·본부·국(40개) 중 사고이월액 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3개 실·본부·국인 푸른도시여가국(1,632억 8,700만원), 물순환안전국(1,348억 9,200만원), 재난안전관리실(1,122억 3,500만원)에서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8,605억 8,100만원)의 47.6%에 해당하는 4,104억 1,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검토됨

- 푸른도시여가국의 경우, '23회계연도에 3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중 19.5%에 해당하는 63개 세부사업에서 통계목 기준 69건, 1,632억 8,7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8.9%)¹⁹⁴⁾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일반회계에서는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예산현액 145억 2,900만원의 33.2%, 48억 2,800만원), **근교산 등산로 정비**(예산현액 157억 2,500만원의 30.1%, 47억 3,8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예산현액 1,684억 6,300만원의 41.1%, 692억 7,100만원),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예산현액 389억 8,800만원의 48.6%, 189억 6,3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된 것임

- 물순환안전국의 경우, '23회계연도에 47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중 24.5%에 해당하는 115개 세부사업에서 통계목 기준 141건, 1,348억 9,2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5.6%)¹⁹⁵⁾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일반회계에서는 **홍제천 역사·문화 명소 조성**(예산현액 33억 8,600만원의 81.4%, 27억 5,700만원),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예산현액 45억 7,000만원의 46.1%, 21억 1,0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94) 푸른도시여가국의 '23회계연도 예산현액(8,241억 7,200만원)을 기준으로는 19.8%가 사고이월된 것임

195) 물순환안전국의 '23회계연도 예산현액(1조 2,778억 400만원)을 기준으로는 10.6%가 사고이월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예산현액 103억 8,400만원의 62.2%, 64억 6,400만원),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예산현액 60억 8,500만원의 31.4%, 19억 1,7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된 것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예산현액 5억 8,900만원의 21.7%, 1억 2,800만원)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예산현액 1억 5,900만원의 18.0%, 2,800만원)을 포함한 2개 세부사업이 사고이월된 것이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예산현액 326억 4,300만원의 32.8%, 107억 800만원), **면목 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예산현액 181억 3,200만원의 51.2%, 93억원) 등이 사고이월된 것임
- 재난안전관리실의 경우, '23회계연도에 32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중 22.3%에 해당하는 73개 세부사업에서 통계목 기준 94건, 1,122억 3,5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3.0%)¹⁹⁶⁾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일반회계에서는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예산현액 39억원의 19.8%, 7억 7,300만원),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예산현액 11억 4,700만원의 48.8%, 5억 6,0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교통개선분담금)**(예산현액 전액인 30억원),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개선분담금 계정)**(예산현액 98억 2,000만원의 21.3%, 21억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고,

196) 재난안전관리실의 '23회계연도 예산현액(1조 4,838억 4,500만원)을 기준으로 7.6%가 사고이월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신림~봉천터널 건설**(예산현액 342억 8,900만원의 44.1%, 151억 2,300만원),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예산현액 436억 7,400만원의 31.0%, 135억 4,1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된 것임
- 그 밖에 미래한강본부의 경우에는 '23회계연도에 8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중 32.9%에 해당하는 27개 세부사업에서 총 248억 1,100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한 바,
- 단순 비율상으로는 미래한강본부가 추진한 3개 사업 중 1개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직(미래한강본부)은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52〉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발생건수(통계목 기준) 및 사고이월사유^{주1)}

(단위 : 백만원, 건, %)

실·본부·국명	사고이월 건수 (통계목 기준)	사고이월액 (계)	구성비	사유별 사고이월액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합의 자연	사전·절차 자연	유관·사업 자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재 구매·자연	용역 준공·한 미·도래	기타
합 계	706	860,581	100.0	75,800 (8.8)	122,142 (14.1)	146,464 (17.0)	30,055 (3.4)	81,491 (9.4)	18,760 (2.1)	279,654 (32.4)	106,211 (12.3)
푸른도시여가국	69	163,287	18.9	3,894	88,234	48,543	1,690	9,577	773	9,148	1,425
물순환안전국	141	134,892	15.6	4,409	-	24,078	4,855	42,128	11,295	33,425	14,698
재난안전관리실	94	112,235	13.0	33,909	31,321	19,622	2,997	6,135	4,513	13,330	404
도시·건설본부	10	88,861	10.3	-	1,963	-	8,938	-	-	77,959	-
도시교통실	44	61,149	7.1	3,491	-	2,528	1,459	-	-	20,667	33,003
기후환경본부	21	57,490	6.6	-	-	13,267	-	-	-	2,263	41,959
경제정책실	26	44,042	5.1	-	-	-	2,579	-	-	41,462	-
문화본부	50	43,102	5.0	4,528	622	127	-	473	9	37,048	293
서울아리수본부	24	41,378	4.8	13,273	-	10,314	6,534	8,797	767	512	1,179
미래한강본부	33	24,811	2.8	8,184	-	1,520	-	3,719	341	10,778	266
균형발전본부	31	21,937	2.5	-	-	15,986	124	-	-	5,807	19
평생교육국	10	15,537	1.8	-	-	-	-	2,525	-	638	12,373
시민건강국	14	11,532	1.3	4,038	-	475	-	6,457	-	560	-
관광체육국	8	7,516	0.8	-	-	-	379	1,146	-	5,991	-
복지정책실	11	5,728	0.6	-	-	27	-	256	852	4,592	-
주택정책실	32	5,236	0.6	-	-	14	-	-	-	5,203	18
노동공정성장정책관	7	4,175	0.4	-	-	4,124	39	-	-	12	-
미래공간기획관	18	3,522	0.4	-	-	1,577	-	-	-	1,945	-
행정국	5	2,738	0.3	-	-	2,525	-	-	-	212	-
도시계획국	16	2,586	0.3	-	-	-	-	-	-	2,586	-
디지털정책관	7	2,514	0.2	-	-	-	-	-	-	2,514	-
디자인정책관	9	1,991	0.2	-	-	1,278	397	190	-	125	-
미래청년기획단	5	1,125	0.1	-	-	-	60	-	-	1,065	-
소방재난본부	4	725	0.08	-	-	-	-	-	118	37	569
홍보기획관	2	488	0.05	-	-	-	-	85	-	402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1	422	0.04	-	-	-	-	-	-	422	-
자치경찰위원회	2	395	0.04	-	-	306	-	-	88	-	-
의회사무처	3	279	0.03	-	-	7	-	-	-	272	-
시립미술관	3	240	0.02	70	-	-	-	-	-	170	-
기획조정실	2	213	0.02	-	-	-	-	-	-	213	-
여성가족정책실	2	209	0.02	-	-	-	-	-	-	209	-
서울역사박물관	2	209	0.02	-	-	136	-	-	-	73	-

※ () 안의 수치는 전체 사고이월액 대비 사유별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주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한 것이나,

-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은 실·본부·국(대변인,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재무국, 기술심사담당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포함한 8개 실·본부·국)은 작성이 생략된 것임

주2) 구성비는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8,605억 8,100만원) 중 각 실·본부·국의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 기본적으로는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만 표기하고 그 미만을 절사한 것이나, 사고이월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 실·본부·국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을 절사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6820 ('24. 4. 1)

〈표 4-53〉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발생현황(세부사업수,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액의 비율)

(단위 : 개, 백만원, %)

실·본부·국명	전체 세부사업수 ①	사고이월이 발생한 세부사업수 ②	사고이월이 발생한 세부사업 비율 ②/①	전체 예산현액 ③	사고이월액 ④	사고이월률 ^{주1)} ④/③
합계	4,776	576	12.1	51,490,048	860,581	1.6
푸른도시여가국	323	63	19.5	824,172	163,287	19.8
물순환안전국	470	115	24.5	1,277,804	134,892	10.5
재난안전관리실	328	73	22.3	1,483,845	112,235	7.5
도시기반시설본부	28	7	25.0	1,645,105	88,861	5.4
도시교통실	236	38	16.1	4,903,544	61,149	1.2
기후환경본부	173	20	11.6	769,370	57,490	7.4
경제정책실	198	17	8.6	807,537	44,042	5.4
문화본부	329	32	9.7	681,110	43,102	6.3
서울아리수본부	70	20	28.6	995,268	41,378	4.1
미래한강본부	82	27	32.9	151,863	24,811	16.3
균형발전본부	105	22	21.0	1,467,008	21,622	1.4
평생교육국	90	8	8.9	4,829,992	15,537	0.3
시민건강국	362	9	2.5	673,725	11,532	1.7
관광체육국	115	7	6.1	284,984	7,516	2.6
복지정책실	239	8	3.3	10,035,372	5,728	0.057
주택정책실	254	29	11.4	4,341,140	5,236	0.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75	5	2.9	344,458	4,175	1.2
미래공간기획관	51	14	27.5	25,579	3,377	13.2
도시계획국	80	20	25.0	27,781	3,047	10.9
행정국	96	4	4.2	5,182,634	2,738	0.052
디지털정책관	76	5	6.6	165,083	2,514	1.5
디자인정책관	79	9	11.4	73,920	1,991	2.6
미래청년기획단	28	3	10.7	117,462	1,125	0.9
소방재난본부	83	4	4.8	1,926,242	725	0.037
홍보기획관	38	2	5.3	89,244	488	0.5
약자와의동행추진단	12	1	8.3	4,415	422	9.5
자치경찰위원회	60	2	3.3	25,467	395	1.5
의회사무처	47	3	6.4	40,880	279	0.6
시립미술관	25	3	12.0	20,653	240	1.1
기획조정실	72	2	2.8	1,786,652	213	0.011
여성가족정책실	270	2	0.7	3,185,071	209	0.006
서울역사박물관	39	2	5.1	15,756	209	1.3
대변인	9	-	-	1,720	-	-
비상기획관	19	-	-	5,815	-	-
민생사법경찰단	4	-	-	1,103	-	-
재무국	43	-	-	3,255,499	-	-
기술심사담당관	11	-	-	2,156	-	-
인재개발원	19	-	-	17,434	-	-
감사위원회	29	-	-	2,336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9	-	-	829	-	-

※ 주1) 사고이월률은 기본적으로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만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한 것이나,
 - 예산현액에 비해 사고이월액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을 취하면 “0.0”으로 기재되
 는 실·본부·국에 한정하여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을 절사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5878 ('24. 5.10) 재구성

○ 아울러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유¹⁹⁷⁾를 검토하면, ①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를 사유로 2,796억 5,4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32.4%), ② **사전 절차 지연**을 사유로 1,464억 6,4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7.0%), ③ **보상협의 지연**을 사유로 1,221억 4,2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4.1%)의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표 4-54〉 사유별 사고이월 발생 현황 ('23~'21)^{주1)}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계 (구성비) ^{주2)}	사유별 사고이월액 (구성비) ^{주2)}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유관사업 지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기타
2023	860,581	75,800	122,142	146,464	30,055	81,491	18,760	279,654	106,211
	(100.0)	(8.8)	(14.1)	(17.0)	(3.4)	(9.4)	(2.1)	(32.4)	(12.3)
2022	766,058	184,211	113,933	177,425	7,586	22,972	25,590	133,228	101,110
	(100.0)	(24.0)	(14.8)	(23.1)	(0.9)	(2.9)	(3.3)	(17.3)	(13.1)
2021	690,473	123,947	13,920	121,680	10,589	84,648	8,818	198,567	128,301
	(100.0)	(17.9)	(2.0)	(17.6)	(1.5)	(12.2)	(1.2)	(28.7)	(18.5)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주2) () 안의 수치는 전체 사고이월액 중 사유별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6820 ('24. 4. 1)

-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액(2,796억 5,4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1,332억 2,800만원)보다 1,464억 2,400만원 증가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32.4%)도 직전회계연도(17.3%)보다 15.1%p 증가된 것임

197)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4. 1)에는 결산서 작성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① 보조금정산잔액, ② 예산절감액, ③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④ 낙찰차액, ⑤ 지출잔액, ⑥ 예비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에는 발생사유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자체적인 방침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795('23.11.21) “2023 회계연도 사고이월 추진계획”]을 통해 구분하고 있음

- 동 사유(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발생한 사고이월의 경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회계연도 결산심사시 계약체결시점부터 회계연도 중 준공되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 계약하거나,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고,¹⁹⁸⁾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¹⁹⁹⁾에도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이후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한 사례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 사업부서는 예산확보와 행정편의 등을 고려하여 ① 회계연도 중 집행하지 못할 용역비까지 편성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②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사료되어 사고이월부터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지양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액(1,464억 6,4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1,774억 2,500만원)보다 △309억 6,000만원 감소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7.0%)도 직전회계연도(23.1%)보다 △6.1%p 감소된 것임
- 동 사유로 발생한 사고이월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중앙부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인허가·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로서 관련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나,

198)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23. 6), p.111

199)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405

- 예산편성 당시에는 관련 절차의 이행기간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중에는 사업부서가 전망한 것보다 절차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임에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소요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해당 절차를 추진일정 및 예산규모에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서야 사업부서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뒤늦게 인식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이월이 발생되는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중 사전절차가 지연되거나 당초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 실제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경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액(1,221억 4,2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1,139억 3,300만원)보다 7.2%, 82억 800만원 증가된 것이나,
-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8,605억 8,100만원)이 직전회계연도(7,660억 5,800만원)보다 12.3%, 945억 2,200만원 증가됨에 따라 전체 사고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4.1%)은 직전회계연도(14.8%)보다 △ 0.7%p 감소된 것임
 - 동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월은 통계목을 기준으로 8건으로 제출되었으나,²⁰⁰⁾ 이 중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이행('23. 9~'23.11)한 후 '23년 12월부터 '24년 4월까지 협의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사유로²⁰¹⁾ 135억 4,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200)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5878 ('24. 5.10)

-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되어 ‘보상협의를 지연’된 사안이 아니라 보상협의 자체가 회계연도말에 착수된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 실제 협의가 지연된 사안인지를 불문하고, 보상사업의 이월사유를 **보상협의 지연**으로 구분하는 것은 서울시가 아닌 외부(토지 등의 소유자)로 사고이월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례로 오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55〉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푸른도시여가국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공 원 보 상 (시 공 원)	시 설 비	168,463	69,271	41.1
푸른도시여가국	도 시 계 획 시 설 (녹 지) 조 성 및 재 정 비	시 설 비	38,988	18,963	48.6
재난안전관리실	신 림 ~ 봉 천 터 널 건 설	시 설 비	31,637	14,687	46.4
재난안전관리실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시 설 비	43,674	13,541	31.0
도시개발시설본부	동 북 선 경 전 철 건 설 (민 자)	시 설 비	120,582	1,963	1.6
재난안전관리실	현 림 로 확 장	시 설 비	7,913	1,808	22.9
재난안전관리실	벗 꽃 로 확 장	시 설 비	1,284	1,284	100.0
문 화 본 부	국 가 지 정 문 화 재 보 수 정 비	시 설 비	22,095	622	2.8

※ 주1) 통계목 기준, “보상협의 지연”을 사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세부사업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5878 ('24. 5.10)

〈표 4-56〉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서울아리수본부	장 기 사 용 송 배 수 관 (4 0 0 m m 이 상) 정 비	시 설 비	69,494	15,533	22.4
물순환안전국	난 지 물 재 생 센 터 3 차 (총 인) 처 리 시 설 설 치	시 설 비	31,145	10,680	34.3
미래한강본부	암 사 초 록 길 조 성	시 설 비	19,620	8,184	41.7
재난안전관리실	노 들 로 구 조 개 선	시 설 비	16,149	7,500	46.4
재난안전관리실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시 설 비	14,586	6,815	46.7
재난안전관리실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시 설 비	10,295	6,233	60.6
문 화 본 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기존 통합수장고) 건립	시 설 비	21,781	4,528	20.8
물순환안전국	차 집 관 로 성 능 개 선	시 설 비	6,304	4,061	64.4
시 민 건 강 국	가 락 1 1 9 안 전 센 터 - 강 남 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시 설 비	7,582	3,930	51.8
재난안전관리실	월 드 컵 대 교 건 설	시 설 비	41,608	3,200	7.7
재난안전관리실	천 호 대 교 남 단 주 변 연 결 체 계 개 선	시 설 비	4,306	2,819	65.5
물순환안전국	방 화 1 - 8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3,861	2,658	68.8
도 시 교 통 실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전환사업)	시 설 비	11,648	2,474	21.2
서울아리수본부	광 암 수 계 배 수 관 로 정 비	시 설 비	18,347	2,245	12.2
재난안전관리실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교통개선분담금 계 정)	시 설 비	9,079	2,096	23.1
물순환안전국	방 화 1 - 9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5,574	1,940	34.8
재난안전관리실	한강교량 안전난간 설치공사	시 설 비	15,215	1,915	12.6
푸른도시여가국	관악산입구 으뜸공원 조성	시 설 비	4,699	1,500	31.9
물순환안전국	염 곡 - 2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5,140	1,378	26.8
재난안전관리실	모래내고가 방호울타리 개선공사	시 설 비	1,488	981	66.0

※ 주1) 통계목 기준,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발생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5878 ('24. 5.10)

〈표 4-57〉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균형발전본부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 하 차 도 건 설 사 업	시 설 비	39,985	15,540	38.9
푸른도시여가국	생 활 밀 착 형 공 원 조 성	시 설 비	27,451	14,175	51.6
푸른도시여가국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시 설 비	42,019	7,243	17.2
기후환경본부	전 기 차 충 전 인 프 라 구 축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21,858	7,104	32.5
재난안전관리실	서 부 간 선 도 로 일 반 도 로 화 및 친 환 경 공 간 조 성	시 설 비	7,700	6,551	85.1
서울아리수본부	배 수 지 내 부 방 식	공 공 운 영 비	14,159	6,488	45.8
서울아리수본부	원 인 자 이 설 공 사 직 접 시 행	공 공 운 영 비	14,550	5,379	37.0
물순환안전국	하 수 차 집 관 로 유 지 보 수	시 설 비	12,935	4,998	38.6
푸른도시여가국	근 교 산 등 산 로 정 비	시 설 비	15,718	4,738	30.1
물순환안전국	일 원 - 1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4,786	4,572	95.5
재난안전관리실	디 지 털 3 단 지 ~ 두 산 길 간 지 하 차 도 건 설	시 설 비	5,837	3,940	67.5
물순환안전국	문 래 - 3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4,571	3,797	83.1
기후환경본부	가 스 열 펌 프 배 출 가 스 저 감 장 치 설 치 사 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3,780	3,766	99.6
물순환안전국	신 촌 - 6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5,091	3,461	68.0
물순환안전국	남 가 좌 3 - 3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공 사	시 설 비	4,758	3,320	69.8
서울아리수본부	상 수 도 블 록 시 스 템 공 급 체 계 구 축	시 설 비	24,461	3,300	13.5
물순환안전국	이 문 - 1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4,269	3,267	76.5
푸른도시여가국	공 원 내 책 십 터 조 성	시 설 비	5,508	3,138	57.0
물순환안전국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시 설 비	14,588	3,137	21.5
물순환안전국	이 문 - 2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4,269	3,110	72.9

※ 주1) 통계목 기준, “사전절차 지연”으로 발생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5878 ('24. 5.10)

〈표 4-58〉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물순환안전국	면 목 3 - 5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16,532	9,013	54.5
시 민 건 강 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시 설 비	5,000	4,597	91.9
푸른도시여가국	자연휴양림 조성(전환사업)	시 설 비	7,340	4,003	54.5
재난안전관리실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교통개선분담금)	시 설 비	2,700	2,700	100.0
평생교육국	미래시민학교(가칭 인생전환 지원센터) 조성 운영	시 설 비	4,789	2,525	52.7
미래한강본부	독섬 전망 문화 복합 시설 운영 및 관리	시 설 비	3,704	2,501	67.5
푸른도시여가국	암사역사공원 조성	시 설 비	17,662	2,427	13.7
물순환안전국	중 곡 - 1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공 사	시 설 비	15,725	2,415	15.4
재난안전관리실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시 설 비	12,998	2,207	17.0
물순환안전국	군 자 - 2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11,371	2,178	19.2
푸른도시여가국	서울숲 확 대 조 성	시 설 비	2,939	2,155	73.3
시 민 건 강 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감 리 비	1,014	1,014	100.0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공원·휴게공간 조성	시 설 비	2,800	982	35.1
관 광 체 육 국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	2,471	793	32.1
물순환안전국	성내천(송파구) 생태하천 조 성 시 범 사 업	시 설 비	5,680	744	13.1
시 민 건 강 국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운영	전산개발비	1,724	597	34.7
물순환안전국	서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시 설 비	6,233	522	8.4
물순환안전국	갈현로7길37 일대 사유지 통과 사각형거이설	시 설 비	546	522	95.7
물순환안전국	하수도 사업 관리 용역	시 설 비	1,320	480	36.4
문 화 본 부	손기정 기념관 시설보강	시 설 비	720	473	65.7

※ 주1) 통계목 기준,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5878 ('24. 5.10)

〈표 4-59〉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시·간사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시 설 비	114,786	51,706	45.0
도시·간사설본부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시 설 비	106,072	15,966	15.1
경 제 정 책 실	(가 칭) 서 울 큐 브 조 성	시 설 비	13,203	11,146	84.4
경 제 정 책 실	양재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	시 설 비	21,643	8,813	40.7
경 제 정 책 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	시 설 비	25,225	8,473	33.6
도시·간사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시 설 비	62,642	8,244	13.2
문 화 본 부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시 설 비	19,397	8,124	41.9
문 화 본 부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시 설 비	16,865	7,700	45.7
경 제 정 책 실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시 설 비	10,436	6,974	66.8
물순환안전국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시 설 비	9,110	5,720	62.8
관 광 체 육 국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시 설 비	12,499	5,062	40.5
문 화 본 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기존 통합수장고) 건립	시 설 비	21,781	4,962	22.8
푸른도시여가국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시 설 비	14,461	4,828	33.4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시 설 비	8,668	4,503	52.0
도시교통실	복합시설 공영주차장 건설 (50 + 동 부 캠퍼스)	시 설 비	5,601	4,033	72.0
문 화 본 부	서서울미술관 건립	시 설 비	14,400	3,890	27.0
도시교통실	현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	시 설 비	8,037	3,714	46.2
복 지 정 책 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시 설 비	7,102	3,184	44.8
푸른도시여가국	단 절 된 녹지축 연결	시 설 비	6,333	3,114	49.2
물순환안전국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전산개발비	13,412	3,101	23.1

※ 주1) 통계목 기준,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발생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5878 ('24. 5.10)

〈표 4-60〉 기타 사유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기후환경본부	전 기 차 보 급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275,841	39,661	14.4
도시교통실	저 상 버 스 도 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74,009	33,003	44.6
물순환안전국	차 집 관 로 보 수 공 사	시 설 비	15,911	5,531	34.8
평생교육국	5 0 + 캠퍼스 확충	시 설 비	9,111	4,749	52.1
평생교육국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지원	사무관리비	15,097	4,686	31.0
물순환안전국	센터 내 토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공사	시 설 비	10,582	3,353	31.7
평생교육국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9,007	2,938	32.6
물순환안전국	장 위 - 4 소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설 비	7,431	2,069	27.8
기후환경본부	수 소 차 보 급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20,800	1,782	8.6
푸른도시여가국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운영비	1,255	1,255	100.0
물순환안전국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시 설 비	14,442	1,183	8.2
물순환안전국	행 당 - 5 소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설 비	2,210	888	40.2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재 료 비	4,568	710	15.6
기후환경본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2,723	399	14.7
물순환안전국	제어계측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시 설 비	3,411	351	10.3
물순환안전국	수 처리 분야 계측기 유지관리	시 설 비	3,477	323	9.3
재난안전관리실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	시 설 비	2,262	322	14.2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3,427	295	2.2
소방재난본부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자산및물품 취득비	750	289	38.6
소방재난본부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자산및물품 취득비	20,937	279	1.3

※ 주1) 통계목 기준, “기타” 사유로 발생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5878 ('24. 5.10)

(1) 주요 사고이월 발생사례 검토

-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근린공원 용지에 대하여 '19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총 2조 734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원 실효를 방지하고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²⁰²⁾
- 예산현액 1,684억 6,300만원 중 692억 7,100만원(예산현액 대비 41.1%)이 사고이월 되고, 99억 9,400만원(예산현액 대비 5.9%)이 명시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의 예산현액(1,684억 6,300만원) 중에는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명시이월액(855억 3,900만원)과 사고이월액(729억 2,300만원), 그리고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100억원)이 포함된 바,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명시이월액(99억 9,400만원)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분할, 실시계획 변경인가,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어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100억원) 중 99.9%가 이월된 것이며,
- 사고이월액(692억 7,1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이월예산(855억 3,900만원) 중 19.0%에 해당되는 162억 6,700만원이 회계연도 중 집행되었으나, 나머지 81.0%에 해당되는 692억 7,100만원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인해 재결절차를 이행하게 되거나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 집행하지 못해 보상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이월 처리한 사안으로 확인됨²⁰³⁾

202) 서울특별시(푸른도시여가국),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238

203) ① '23회계연도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전년도 이월사유별 집행 현황”

②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5800 ('24. 5.17)

〈표 4-61〉 최근 5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주1)} 결산결과 ('23~'19)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2023	168,463	89,165	79,266	9,994	69,271 ^{주2)}	32
2022	279,883	121,419	158,463	85,539	72,923 ^{주3)}	-
2021	450,542	264,467	186,075	185,745	329	1
2020	250,027	149,441	585	585	-	100,000
2019	289,488	190,603	98,677	98,677	-	206

※ 주1) '19회계연도의 세부사업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강남)임

주2) '23회계연도의 사고이월액(692억 7,100만원)은 '22회계연도 명시이월액(855억 3,900만원) 중 지출되지 못한 소요예산이 재이월된 것임

주3) '22회계연도의 사고이월액(729억 2,300만원)은 '21회계연도 명시이월액(1,860억 7,500만원) 중 지출되지 못한 소요예산이 재이월된 것임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5800 ('24. 5.17) 등 재구성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22회계연도에도 실시계획 인가 등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약에 불응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938억 800만원) 중 91.1%에 해당하는 855억 3,9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 직전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이월예산(1,857억 4,500만원) 중 39.2%에 해당되는 729억 2,300만원이 재이월(사고이월)된 바 있어²⁰⁴⁾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월할 당시 계획한 대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사안으로 사료됨

-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보상협약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서울시의 보상의지를 신용하도록 하기 위해 소요예산이 편성될 필요는 있지만, 사업추진방식이나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

204) ① '22회계연도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②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5800 ('24. 5.17)

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²⁰⁵⁾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이 관련 법령²⁰⁶⁾에 따른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사업추진방식 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확인됨²⁰⁷⁾
- 다만, 동 사업은 예산이 신규편성된 '19회계연도부터 지난 '23회계연도까지 총 9건, 1조 4,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현재까지 해당 지방채에 대해 775억 8,300만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²⁰⁸⁾
-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면서도 해당 재원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처리될 경우에는 이자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 최근의 고금리 기조가 단기간 내 종식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부담이 증가되는 등 부수적 부담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세출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3. 6), p.119

2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7)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5800 ('24. 5.17)

-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사업추진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내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여 집행되는 사업으로 물건조사 및 측량,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감정평가 등 보상에 최소 200일 이상 소요되며,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약 1년~2년 이상 추가 소요됨
 - 보상대상 물건조사 및 측량, 보상계획수립, 감정평가 등 절차에서 이행기간 단축 및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구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208)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5800 ('24. 5.17)

- ※ 지급된 이자비용(775억 8,300만원) 중 25%는 중앙정부가 국비지원을 통해 분담하는 것으로 제출됨

〈표 4-6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관련 지방채 발행현황 및 이자 부담현황

(단위 : 백만원, %)

지방채 발행현황 ^{주1)}						지방채 (원금) 상환액 ^{주2)}	지방채 (원금) 잔액 ^{주2)}	이자 지급액 ^{주2)}
발행일자	발행액	기채방법 (차입선)	발행금리	상환기간	상환재원			
합계	1,450,000					170,000	1,280,000	77,583
'19.10.30	210,000	공모공채 (모집공채)	1.847	30년 일시상환	지방비	-	210,000	17,454
'19.11.22	190,000		1.685			-	190,000	12,806
'19.12.24	180,000		1.742	10년 일시상환		-	180,000	12,542
'20. 5.22	280,000		1.297	5년 일시상환		-	280,000	12,710
'20. 7.23	150,000		1.359	7년 일시상환		-	150,000	7,134
'21. 5.14	150,000		2,245	10년 일시상환		-	150,000	8,418
'21.12 1.	120,000		2,454			-	120,000	5,889
'22.12.12	150,000		4,450	1개월 일시상환		150,000	-	556
'23.12.12	20,000		4,250			20,000	-	70

※ 주1) 지방채 발행현황은 '19회계연도부터 '23회계연도까지의 현황을 정리한 것임

주2) 지방채(원금) 상환액, 지방채(원금) 잔액, 이자지급액은 '24회계연도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 이자지급액 중 25%는 중앙정부가 국비지원을 통해 부담하는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5800 ('24. 5.17) 재구성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소관 **전기차 보급**은 예산현액 2,820억 4,700만원²⁰⁹⁾ 중 14.0%, 396억 6,100만원²¹⁰⁾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① **버스**의 경우, 구매계약 체결이 지연되었으며, 차량출고까지 2개월 상당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 집행이 불가능한 보조금 368억 5,600만원(399대분)이 사고이월 되고,
- ② **승용·화물·이륜차**의 경우, 4/4분기에 일부 모델이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등의 사유로 구매지원 신청이 증가되었으나, 차량 출고기한(2개월)이 미도래하여 28억 500만원(총 372대분²¹¹⁾)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4-63〉 사고이월이 발생한 세부내역 (전기차 보급)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이월 물량	사고이월액		
			계	국비	시비
합계		771	39,661	28,081	11,580
버스	소계	399	36,856	25,849	11,006
	시내버스·마을버스	385	36,267	25,411	10,856
	통학버스	13	517	388	129
	통근버스	1	71	49	21
승용	소계	308	2,158	1,746	411
	승용	244	1,438	1,141	296
	택시	64	720	605	114
화물		35	598	460	137
이륜		29	48	24	24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14261 ('23.12.20) “2023년 전기차 보급 사업 사고이월 계획”

②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5418 ('24. 4. 8) 등 재구성

209) 국비 2,011억 5,900만원, 시비 808억 8,800만원 포함

210) 국비 280억 8,100만원, 시비 115억 8,000만원 포함

211) 승용차 308대, 화물차 35대, 이륜차 29대

〈표 4-64〉 최근 5년간 전기차 보급 세출결산 결과 ('23~'19)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보조금반납금 바율)	불용액 (불용률)
			계 (이월률)	명시이월 (명시이월률)	사고이월 (사고이월률)		
2023	282,047	159,826 (56.6)	39,661 (14.0)	- (0.0)	39,661 ^{주1)} (14.0)	59,620 (21.1)	22,938 (8.1)
2022	307,870	249,964 (81.1)	36,475 (11.8)	- (0.0)	36,475 ^{주2)} (11.8)	11,048 (3.5)	10,381 (3.3)
2021	355,543	277,587 (78.0)	53,200 (14.9)	- (0.0)	53,200 ^{주3)} (14.9)	24,047 (6.7)	707 (0.1)
2020	246,727	172,166 (69.7)	70,528 (28.5)	50,400 (20.4)	20,128 ^{주4)} (8.1)	2,652 (1.0)	1,380 (0.5)
2019	177,897	97,180 (54.6)	28,786 (16.1)	- (0.0)	28,786 ^{주5)} (16.1)	25,859 (14.5)	26,069 (14.6)

※ 주1) '23회계연도의 경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96억 6,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업 중 **3번째로 큰 규모의 사고이월액**이 발생된 것임

주2) '22회계연도의 경우, **차량출고기한(3개월)이 미도래**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60억 2,8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차량생산기간(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4,7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업 중 **2번째로 큰 규모의 사고이월액**이 발생된 것임

주3) '21회계연도의 경우, **차량출고기한(3개월) 미도래**로 인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32억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고이월액**이 발생된 것임

주4) '20회계연도의 경우, **차량출고기한(2개월) 미도래**로 인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1억 2,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업 중 **3번째로 큰 규모의 사고이월액**이 발생된 것임

주5) '19회계연도의 경우, **차량출고기한(2개월) 미도래**로 인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83억 2,9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차량생산기간(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5,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업 중 **3번째로 큰 규모의 사고이월액**이 발생된 것임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22825 ('20. 4.23)

③ 서울특별시, 재무과-17134 ('21. 4. 2) ④ 서울특별시, 재무과-23355 ('22. 4. 7)

⑤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1 ('23. 4.17) ⑥ 서울특별시, 재무과-16820 ('24. 4. 1)

- 동 사업의 경우, 매 회계연도 결산마다 차량출고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서울시 전체 사업 중 사고이월 발생규모가 선순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회계연도 결산과 '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 사업은 동일 사유(차량출고기한 미도래)로 수 백억원 규모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월액 발생규모가 감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환경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²¹²⁾
- 그러나 사업부서로부터 동 사업에 대해 최근 3년간('21. 4~'24. 4) 소관 중앙부처(환경부)와 협의하거나 개선건의한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주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²¹³⁾
- 중앙부처(환경부)는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문제보다는 소관사업의 활성화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업부서는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서울시의 입장에서 불용이나 이월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용결과가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식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12) 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2. 6), p.101~p.102

②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3. 6), p.120

213) ①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5734 ('24. 5.17)

②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16803 ('21.12.14) “서울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관련 유관기관 회의개최 결과”

③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1243 ('22. 5. 9) “2022년 어린이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시범사업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④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506 ('23. 1.11) “2023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방안 자문회의 결과 보고”

⑤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974 ('23. 1.25) “전기차 화재예방 및 대응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⑥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46 ('24. 1. 5)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체계 개선 건의”

⑦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1859 ('24. 2. 8)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 푸른도시여가국 동부공원여가센터 소관 **서울숲 확대 조성**은 예산현액(30억 800만원)의 72.6%, 21억 8,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23년 4월, 신규 청사를 건축(신축)하지 않고 기존 청사를 증축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²¹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직전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소요예산(25억 7,100만원) 중 21억 8,600만원이 재이월(사고이월) 처리된 것임²¹⁵⁾

〈표 4-65〉 서울숲 확대 조성^{주1)} 결산결과 ('23~'22)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2023	3,008	158	2,186	-	2,186 ^{주2)}	663
2022	2,719 ^{주3)}	147	2,571	2,571 ^{주4)}	-	-

※ 주1) '22회계연도의 세부사업명은 독섬 승마훈련원 리모델링 및 서울숲관리사무소 이전임

주2) '22회계연도 결산결과 '23회계연도에 청사 신축을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된 예산(25억 7,100만원) 중 21억 8,600만원을 활용하여 '24회계연도에는 기존청사 증축을 추진하고자 재이월(사고이월) 처리한 것임

주3) '22년도 본예산에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청사를 이전하고자 신규편성된 것임

주4) '23회계연도 중 청사 신축을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된 것임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그러나 시장이 편성하여 제출하고 시의회가 의결한 소요예산은 편성·의결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특히 이월예산은 '이월된 내용대로만' 집행할 수 있는 바,²¹⁶⁾

214)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4305 ('23. 4.11) “동부공원여가센터 청사 증축 계획”

※ 청사신축에 대해 공유재산심의를 이행('22. 9)한 결과 해당 부지(독섬승마훈련원)에 신축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건물을 증축하거나 다른 신축부지를 검토하도록 “보류”로 결정되어 사업계획을 변경('23. 4)한 것임

215) ① '23회계연도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

②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4896 ('24. 4. 3)

216)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15.12), p.296, p.327, p.331,

※ 이월예산은 이월된 내용대로 집행만 허용되는 것이며, 당해 경비의 성질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월된 사유와도 맞지 않게 되므로 경비성질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는 없는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동부공원여가센터의 청사 이전²¹⁷⁾ 등에 따라 부족한 사무공간과 부속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① 당초에는 구(舊) 뚝섬승마훈련원의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하고자 '22년도 본예산(27억 1,900만원)을 편성·의결한 것이나,²¹⁸⁾ ② '22회계연도 중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을 추진하기로 변경하고 사업비(25억 7,100만원)를 명시이월한 것으로,
- 우리 시의회가 부족한 사무공간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신축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면, 명시이월된 소요예산(25억 7,100만원)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된 용도(신축) 이외의 다른 용도로 유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또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23. 4)하여 기존 청사에 대한 증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2회계연도 결산시 신축을 위해 명시이월된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증축을 위한 소요예산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 행정편의가 우선시되어 신축을 위해 직전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이월 예산을 활용하여 증축을 추진하도록 사고이월(재이월)로 처리한 결과 실제 추진되는 사업내용(증축)이 당초 예산이 편성·의결된 내용(리모델링)은 물론 의회가 명시이월을 승인한 내용(신축)과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사무공간 등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의회의 의결취지를 도외시한 것은 물론 이월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150조²¹⁹⁾에 따라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217) 서울특별시(푸른도시국), 「2022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591~593

218)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4305 ('23. 4.11) “동부공원여가센터 청사 증축 계획”

※ 청사신축에 대해 공유재산심의를 이행('22. 9)한 결과 해당 부지(뚝섬승마훈련원)에 신축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건물을 증축하거나 다른 신축부지를 검토하도록 “보류”로 결정되어 사업계획을 변경('23. 4)한 것임

219)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소관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은 예산현액(4억원) 중 1억 9,400만원(예산현액 대비 48.6%)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법령개정 반영 등으로 인해 용역발주('23. 9)가 지연되어 용역 준공기한('24.12)이 미도래함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²²⁰⁾

〈표 4-66〉 '23회계연도 결산결과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400	194	194	194	-	11

※ 자료근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 동 사업의 경우, '23년 9월 수립한 「용역 시행계획」에는 용역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23.12)한 후 '23년 12월부터 '24년 12월까지 12개월간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²²¹⁾

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20)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7383 ('24. 4.17)

221) ①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13200 ('23. 9. 1) “용역시행계획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용역금액 : 3억 9,300만원

※ 선정절차 : 입찰공고(20일) → 제안서 제출 → 심사위원 선정 → 제안서 평가 → 적격자 통보(협상순위와 협상일정 통보) → 협상진행(10일 내 협상) → 계약체결(협상완료 일로부터 7일 이내)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56889 ('23.12.11) “계약체결통보(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 계약일자 : '23.12. 7 ○ 착수일자 : '23.12. 7 ○ 완수일자(준공기한) : '24.12. 7

- 이미 '23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에도 사업별설명서²²²⁾에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하여 '24년 2월 준공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동 사업이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임을 지적한 사안임²²³⁾
 - 따라서 동 사업은 발주지연으로 인해 비로소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산심사 시에 우리 시의회가 문제제기한 부분이 결산심사 시에 현실화된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
 - 사업부서는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용역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단일 회계연도에 용역비 전액을 편성하여 예산이월을 내재시키는 것보다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일을 현실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회계연도 중 실제 집행가능한 소요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소관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은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빈도²²⁴⁾를 상향시킴에 따라 총 275억 8,600만원(예산현액 534억 5,200만원의 51.6%)이 사고이월된 것임
- 서울시는 '22년 8월 발생한 이상폭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 등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22년 10월,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²²⁵⁾을

222) 서울특별시(주택정책실),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375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추진방법 : 용역 수행
- 사업의 주요내용 : 제도개선 방안 마련

223)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22.12), p.153

224) 설계빈도는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를 의미하는데, 설계빈도가 100년이라면 100년에 1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하여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임

225)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4461 ('22.10.20)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93호)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사망 8명
- 재산피해 : 2만 76건, 683억원
- 기타 : 하천범람 1개소, 대형건축물 지하 침수 21개소, 지하철 4개 역사 침수 및 64개 역

수립하여 시간당 95mm를 초과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방재성능목표(95mm/hr)를 시간당 100mm(100mm/hr)로 상향하고,

-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서 소구역 정비사업의 설계 빈도도 기존에 간선이 30년, 지선이 10년이던 것을 간선 50년, 지선 30년으로 상향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설계 등을 추진한 사업(6개)에서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임

〈표 4-67〉 방재성능상향 추진을 사유로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업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회계명)	사업명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사고이월 사유
합계		53,452	27,586 (51.6)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 사업특별회계)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8,132	9,300 (51.2)	방재성능목표 상향(30년→50년)에 따른 설계 재검토로 인한 시공중지 및 과업중지에 따라 1차분 공사준공이 연기되어 2차분 계약 착수 지연
	일원-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186	4,972 (95.8)	방재성능목표 상향(30년→50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과업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
	문래-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626	3,797 (82.0)	상향된 방재성능목표 적용을 위해 실시설계용역 준공지연, 공사시행 지연, 사전절차 지연
	이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569	3,567 (78.0)	방재성능목표 상향(30년→50년)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이문-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000	3,410 (85.2)	방재성능목표 상향(30년→50년)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6,936	2,539 (14.9)	방재성능목표 상향 추진에 따른 재설계 등으로 공사가 지연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027 ('24. 4. 5)
②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6788 ('24. 5.21) 재구성

- 사업별로는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 재검토(재설계) 등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현액(181억 3,200만원)의 51.2%, 93억원이 사고이월된 것이며,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현액(169억 3,600만원)의 14.9%, 25억 3,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그리고 **일원-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이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문-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기한을 연기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 **일원-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예산현액(51억 8,600만원)의 95.8%에 해당하는 49억 7,2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이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예산현액(45억 6,900만원)의 78.0%에 해당하는 35억 6,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문-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현액(40억원)의 85.2%에 해당하는 34억 1,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문래-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공사시행 등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현액(46억 2,600만원)의 82.0%, 46억 2,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6개 사업)의 경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에 대한 방어능력을 강화하고자 재설계, 설계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 것으로서 사업이 지연된 것에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 **이문-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의 경우에는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이 수립('22.10)된 지난 '22회계연도에도 이미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한 전례가 있는 바,²²⁶⁾

226)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6788 ('24. 5.21)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사고이월 발생내역 및 사유

○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 설계빈도 상향을 위한 재검토로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어 준공기한을 연기함에 따라 예산현액(34억원)의 92.1%, 31억 3,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227)에 따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부서는 동 사업에서 동일한 사유로 인해 반복적인 예산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일정과 예산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일원-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 설계빈도 상향을 위한 설계재검토로 인해 용역준공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예산현액(4억 6,500만원)의 40.1%, 1억 8,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문래-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 설계빈도 상향을 위한 설계재검토로 인해 용역준공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예산현액(4억 6,000만원)의 27.5%, 1억 2,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이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 설계빈도 상향을 위한 설계재검토로 인해 용역준공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예산현액(19억 7,300만원)의 28.8%, 5억 6,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 설계빈도 상향을 위한 재검토로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어 준공기한을 연기함에 따라 예산현액(34억원)의 56.9%, 19억 3,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227)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4-68A〉 주요 사고이월 사업현황 (사고이월액 3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푸른도시여가국	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상(시공원)	168,463	89,165	69,271	41.1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1,267	66,321	52,757	43.5
기후환경본부	전기차보급	282,047	159,826	39,661	14.0
도시교통실	저상버스도입	74,009	40,382	33,003	44.5
푸른도시여가국	도시계획시설(녹지)조성및재정비	38,988	19,568	18,963	48.6
도시기반시설본부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건설	124,990	98,426	16,404	13.1
균형발전본부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지하차도건설사업	41,840	25,771	15,986	38.2
서울아리수본부	장기사용송배수관(400mm이상)정비	71,033	35,611	15,802	22.2
재난안전관리실	신림~봉천터널건설	34,289	19,166	15,123	44.1
푸른도시여가국	생활밀착형공원조성	27,560	9,851	14,197	51.5
재난안전관리실	장기미집행도로토지보상비	43,674	30,133	13,541	31.0
경제정책실	(가칭)서울큐브조성	14,080	2,680	11,307	80.3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3차(총인)처리시설설치	32,643	21,906	10,708	32.8
문화본부	서울시문화유산보존센터(기존통합수장고)건립	23,960	12,909	9,935	41.4
물순환안전국	면목3-5소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	18,132	8,832	9,300	51.2
경제정책실	양재AI혁신지구양재커시설조성	22,782	13,731	9,050	39.7
도시기반시설본부	위례선도시철도건설(교통개선분담금)	79,733	56,253	8,938	11.2
경제정책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건립	26,899	17,777	8,734	32.4
문화본부	연극창작지원시설건립	20,922	12,438	8,469	40.4
미래한강본부	암사초록길조성	20,492	12,231	8,260	40.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9호선4단계건설	64,907	56,662	8,244	12.7
재난안전관리실	노들로구조개선	17,651	9,636	8,015	45.4

〈표 4-68B〉 주요 사고이월 사업현황 (사고이월액 3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문화본부	서울사진미술관건립	18,582	10,549	7,918	42.6
푸른도시여가국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56,896	46,494	7,243	12.7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1,245	14,341	7,104	22.7
경제정책실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11,532	4,293	7,069	61.2
재난안전관리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8,600	529	6,922	80.4
재난안전관리실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15,408	8,493	6,915	44.8
서울아리수본부	배수지 내부방식	14,373	7,092	6,488	45.1
물순환안전국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10,384	3,919	6,464	62.2
재난안전관리실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11,045	4,701	6,343	57.4
시민건강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6,112	422	5,690	93.0
물순환안전국	차집관로 보수공사	15,911	10,289	5,530	34.7
관광체육국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13,841	7,789	5,512	39.8
서울아리수본부	원인자 이설공사 직접 시행	14,550	7,969	5,379	36.9
물순환안전국	하수 차집관로 유지보수	12,935	7,287	4,998	38.6
물순환안전국	일원-1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186	214	4,972	95.8
푸른도시여가국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14,529	7,420	4,828	33.2
평생교육국	50+ 캠퍼스 확충	9,930	5,150	4,749	47.8
푸른도시여가국	근교산 등산로 정비	15,725	8,808	4,738	30.1
평생교육국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15,107	7,904	4,686	31.0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9,249	4,396	4,552	49.2
문화본부	서서울미술관건립	17,013	11,119	4,411	25.9
재난안전관리실	노후 포장도로 정비	100,319	87,229	4,267	4.2

〈표 4-68C〉 주요 사고이월 사업현황 (사고이월액 3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재난안전관리실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건설	6,435	2,185	4,249	66.0
물순환안전국	차집관로 성능개선	12,026	7,391	4,061	33.7
도시교통실	복합시설공영주차장건설 (50+동부캠퍼스)	5,601	1,568	4,033	72.0
푸른도시여가국	자연휴양림 조성(전환사업)	7,420	3,416	4,003	53.9
시민건강국	가락119안전센터-강남 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8,598	4,656	3,942	45.8
물순환안전국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16,159	12,259	3,884	24.0
물순환안전국	문래-3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626	765	3,797	82.0
기후환경본부	가스열펌프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사업	3,780	-	3,766	99.6
도시교통실	현릉로중앙버스 전용차로조성	8,500	4,782	3,714	43.6
물순환안전국	신촌-6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542	1,838	3,596	64.8
경제정책실	홍릉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24,061	17,286	3,595	14.9
물순환안전국	이문-1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569	715	3,567	78.0
물순환안전국	남가좌3-3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158	1,620	3,521	68.2
물순환안전국	이문-2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000	589	3,410	85.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양곡도매시장 이전	4,651	1,262	3,387	72.8
물순환안전국	센터내토목및 건축시설물보수공사	10,582	6,606	3,353	31.6
서울아리수본부	상수도블록시스템 공급체계구축	25,115	12,779	3,300	13.1
재난안전관리실	월드컵대교건설	43,608	40,408	3,200	7.3
복지정책실	시립서대문농아인 복지관별관건립	7,502	4,317	3,184	42.4
푸른도시여가국	공원내책심터 조성	5,768	2,359	3,174	55.0
물순환안전국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및개선	13,703	9,525	3,165	23.0
푸른도시여가국	단절된녹지축연결	6,360	2,057	3,114	48.9
재난안전관리실	영등포로터리구조개선 (교통개선분담금)	3,000	-	3,000	100.0

〈표 4-69〉 사고이월률 90% 이상 사업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재난안전관리실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교통개선분담금)	3,000	-	3,000	100.0
재난안전관리실	벚꽃로 확장	1,284	-	1,284	99.9
기후환경본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	3,780	-	3,766	99.6
도시교통실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	1,500	49	1,450	96.7
푸른도시여가국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297	36	1,255	96.7
물순환안전국	서대문역 1번출구 주변 하수관로 개량	2,070	50	1,989	96.1
물순환안전국	일원 - 1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186	214	4,972	95.8
도시교통실	당산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1,562	1	1,459	93.3
시민건강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6,112	422	5,690	93.0

(2)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사례 검토

- '23회계연도의 경우,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법정 의무경비를 정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²²⁸⁾ 추가경정예산이 1차례 편성된 바,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23년 5월, 시의회에 제출되어 7월에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편성된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편성된 세부사업 중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은 예산현액(1억 5,600만원)의 25.2%, 3,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추경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1억 5,600만원) 전액을 집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²²⁹⁾ 운영기관 선정절차가 '23년 9월말 완료되어 '23년 10월,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용역준공기한('24. 3.19)이 미도래하여 사무관리비(3,900만원)가 사고이월된 것임²³⁰⁾

〈표 4-70〉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사무관리비	156	99	39	39	-	17

※ 자료근거 : ① 2023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8122 ('24. 4. 3)

228)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11-00878, 제출일: '23. 5.30, 예결특위 의결일: '23. 6.30, 본회의 의결일: '23. 7. 5)의 “제안이유”

229)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3. 5), p.692

230) ① 서울특별시, 재무과-46775 ('23.10.20) “계약체결통보(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②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8122 ('24. 4. 3)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소관 **온열의자 설치**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서 3억 8,8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업으로서 사업별설명서에는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3억 8,800만원) 전액을 집행할 계획으로 기재된 것이나,²³¹⁾

- 대상지 선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준공기한('23.12.24)을 '24년 1월 30일까지 연기하기로 변경방침을 수립한 결과²³²⁾ 예산현액(3억 8,800만원) 중 단 1원도 지출하지 못하고 3억 2,000만원(예산현액 대비 82.4%)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4-71〉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온열의자 설치)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시설비	388	-	320	320	-	67

※ 자료근거 : ① 2023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6262 ('24. 4. 2)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가 소요예산을 '24년도 본예산이 아닌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요청한 것은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하여 온열의자를 조속히 설치함으로써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경예산 편성 이후 대상지 선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었음을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례로 검토되는 바,
- 추경예산의 경우, 회계연도 중 집행을 위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요예산 편성요청 이전에 사업대상지를 구체화시킬 필요성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23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3. 5), p.799~801

232) ①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44626 ('23.12. 6)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전기 인입공사)”

②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6262 ('24. 4. 2)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소관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는 여의나루역에 시민의 야외운동을 지원하는 공간(러너스테이션)을 조성하기 위해 추경안을 통해 27억 1,9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서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 전액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²³³⁾ 예산현액(27억 1,900만원) 중 34.1%, 9억 2,7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운영**은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러너스테이션 조성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러너스테이션 준공('23.12)에 대비하여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사전 불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 4,6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이나,²³⁴⁾ 예산현액(1억 4,600만원) 중 67.8%, 9,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여의나루역 러너축제의 경우**에도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러너스테이션이 준공('23.12)되면 러닝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하고자 2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서 '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 전액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²³⁵⁾ 예산현액(2억 8,000만원) 중 단 1원도 지출하지 못하고 전액 사고이월된 것임

〈표 4-72〉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러너스테이션 관련 3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디자인정책관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	2,719	1,726	927	927	-	64
관광체육국	여 의 나 루 역 러너스테이션 운영	146	45	99	99	-	1
관광체육국	여 의 나 루 역 러너 축제 운영	280	-	280	280	-	-

※ 자료근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233)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3. 5), p.1750~1752

234)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3. 5), p.1193~1195

235)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3. 5), p.1196~1199

-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의 경우, ① 추경안 의결('23. 7) 이후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심의('23. 7), 일상감사('23. 7~'23. 8),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23. 9)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② 지하철 역사에서 추진되는 공사의 특성상 주간에는 공사추진이 제한되어 준공기한을 당초 '23년 12월에서 '24년 4월로 연기함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된 바,²³⁶⁾
-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과 공사대상지가 지하철 역사인 경우에는 주간작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추경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나,
- 사업추진일정을 낙관하고 소요예산을 편성한 결과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사안은 아닌지 재고(再考)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운영**과 **여의나루역 러너축제**는 다른 실·본부·국(디자인정책관)이 추진하는 사업(**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을 통해 러너스테이션이 회계연도 중 준공('23.12)된다는 것을 전제로 소요예산이 편성된 것이나, 러너스테이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동 사업도 순연되어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인 바,²³⁷⁾
- 러너스테이션의 당초 준공시점('23.12)이 회계연도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관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서는 동 사업의 추진시점도 순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유관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추진될 수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 소요예산을 편성한 결과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
- 향후 유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될 사업은 유관사업과 동시에 추경안에 편성하기보다는 다음연도 본예산이나 별도의 추경을 통해 단계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236)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담당관-3857 ('24. 4. 1)

237)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3687 ('24. 4. 1)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러너스테이션 준공기한은 당초 '23년 12월에서 '24년 4월로 연기된 것임에도,²³⁸⁾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를 검토하면 **지하철 유희공간 혁신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러너스테이션의 준공기한을 '24년 10월로 오기하고 있고,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운영**과 **여의나루역 러너축제**는 러너스테이션의 준공기한을 '24년 6월로 오기하고 있는 바,

- 이는 결산심사를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작성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저해시킨 사례일 뿐만 아니라, 유관사업을 추진하는 실·본부·국 간에 사업추진일정에 대해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소관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은 예산현액(5억원)의 71.0%, 3억 5,5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표 4-73〉 '23회계연도 결산결과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500	134	355	355	-	10

※ 자료근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238)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담당관-13977 ('23.12. 8) “-지하철 유희공간 혁신 프로젝트- 용역계약 변경계획”

■ 용역기간

- 변경전 : '23.10.12~'23.12.29
- 변경후 : '23.10.12~'24. 4.30 (4개월 연장)

-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은 러너스테이션의 준공기한이 '23년 12월에서 '24년 4월로 연장되었기 때문이나, 벚꽃 개화시기가 지연되어 여의나루역에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장기화 되었음을 사유로 '24년 4월, 용역준공기한을 '24년 4월('24. 4.30)에서 '24년 5월('24. 5.31)로 다시 연장하였음 :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담당관-4483 ('24. 4.18) “-지하철 유희공간 혁신 프로젝트- 용역계약 변경계획”

-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대상지 선정('23. 9) 후 '23년 10월 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준공기한('24. 4)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²³⁹⁾
 - 그러나 추경안 심사 당시에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추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 전액(5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²⁴⁰⁾ 결산시점에서는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용역발주 등이 지연된 결과 예산이월이 발생되었다고 이월사유를 제출하는 것은 예산과 결산 시점에 있어 사업부서가 서로 모순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소관 **정원도시 서울 전략 기본계획 용역**과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소관 **어린이박물관 조성도**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편성된 사업인 바,

〈표 4-74〉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푸 른 도 시 여 가 국	정원도시 서울 전략 기본 계획 용 역	200	-	195	195	-	4
서 울 역 사 박 물 관	어린이박물관 조성	223	85	136	136	-	1

※ 자료근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 **정원도시 서울 전략 기본계획 용역**의 경우, 예산현액(2억원) 중 97.9%, 1억 9,5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건설기술 심의('23. 8), 제안서 평가('23.10)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23년 11월,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내용에 따른 준공기한이 '24년 8월이기에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²⁴¹⁾

239)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7383 ('24. 4.17)

240)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3. 5), p.1950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소관 **어린이박물관 조성**은 예산현액(2억 2,300만원) 중 60.9%, 1억 3,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건축설계 공모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절차인 공공건축사전심의('23. 9~'23.10), 공공건축설계 공고 및 작품 접수('23.10~'23.11), 디지털심사('23.11) 등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당선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²⁴²⁾
- **정원도시 서울 전략 기본계획 용역과 어린이박물관 조성**의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의 이행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소요예산을 확보한 결과 예산이월이라는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발생한 사안으로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비교할 때 회계연도 중 예산집행이 가능한 기간이 더욱 제한적이며, 별도의 추경안이 추가적으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경정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일정 등을 보수적으로 전망하여 회계연도 중 집행이 확실시되는 소요예산만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업별설명서에는 회계연도 중 소요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결산시점에는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므로 사전절차 이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월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는 지양하여야 할 것임

241)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4896 ('24. 4. 3)

242)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3653 ('24. 4. 2)

(3)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사례 검토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²⁴³⁾는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시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3년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이 편성되어 회계연도 중 추진된 시민참여예산사업(5개 세부사업) 중 3개 세부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표 4-75〉 '23회계연도에 추진된 시민참여예산사업(5개 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합계		2,250	1,280 (56.9)	812 (36.0)	157 (6.9)
푸른도시여가국	응봉근린공원(금호산) 무장애 산책로 조성(시민참여)	1,000	485 (48.5)	434 (43.4)	80 (8.0)
미래한강본부	야간 자전거 안전운행 유도디자인고도화	300	- (0.0)	256 (85.5)	43 (14.4)
디자인정책관	공원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유도 안내사인 디자인	350	226 (64.7)	121 (34.6)	2 (0.5)
푸른도시여가국	북악하늘길 교통약자를 위한 산책로 정비(시민참여)	500	468 (93.6)	- (0.0)	31 (6.3)
시민건강국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시범사업	100	100 (100.0)	- (0.0)	- (0.0)

- ※ 자료근거 : ① 2023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12180 ('24. 4. 3)
 ③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담당관-3857 ('24. 4. 1)
 ④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4896 ('24. 4. 3)
 ⑤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총무과-5436 ('24. 4. 1)

243) ■ 구(舊)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의2(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 심사 기준) ('24. 5.20 조례 제92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 현행 조례('24. 5.20 조례 제9242호로 일부개정된 것)도 규정된 내용은 동일하나, 구 조례상 제22조의2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20조로 조문 이동하였음

○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소관 **응봉근린공원(금호산) 무장애 산책로 조성(시민참여)**은 예산현액(10억원)의 43.4%, 4억 3,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23년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후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산책로 조성공사('23. 9.22~'23.12.20)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 공사 추진과정에서 ① 전문가 현장 자문의견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반영하여 공법과 노선을 변경하고, ② 배수시설 확충 등 공종이 추가되었으며, ③ 우천 및 동절기에 따른 공사 중단기간을 반영하여 '23년 12월, 공사 준공기한을 당초 '23년 12월에서 '24년 3월로 연기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시설비(4억 3,400만원)가 사고이월된 것임²⁴⁴⁾

○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소관 **야간 자전거 안전운행 유도디자인 고도화**는 야간에 사고발생률이 높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3년도 본예산에 3억원이 편성된 것으로서²⁴⁵⁾ 예산현액(3억원) 중 단 1원도 지출하지 못하고 2억 5,600만원(예산현액 대비 85.5%)이 사고이월된 바,

- 시설물의 설치위치, 안정성,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시일이 소요되어 '23년 12월에서야 공사계약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기가 부족하여 '24년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2억 5,600만원)가 사고이월된 것임²⁴⁶⁾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소관 **공원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유도 안내사인 디자인**은 예산현액(3억 5,000만원)의 34.6%, 1억 2,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244) ① 성동구, 공원녹지과-21708 ('23.12.12) “응봉근린공원(금호산) 무장애 산책로 조성 시설공사 준공기한 연장 등 계획 변경 보고”

②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4896 ('24. 4. 3)

245)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180~181

246)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총무과-5436 ('24. 4. 1)

- 당초 서울대공원에 올바른 공원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형 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서울대공원에서 동 사업의 취지가 공원운영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유로 사업대상지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용역 준공기한을 '23년 12월에서 '24년 3월로 연기한 결과 시설비(1억 2,100만원)가 사고이월된 것임²⁴⁷⁾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간 결산심사 시 조례가 시민참여예산사업을 단년도 사업에 한정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이 회계연도 중 실현가능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이월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온 바,²⁴⁸⁾

- 지난 '22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이월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23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추진된 시민참여예산사업(5개 세부사업) 중 절반 이상(3개 세부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어 조례에 따른 선정결과(단년도 사업)와 실제 현실이 괴리되는 사례가 재발된 것으로 검토됨

247) ①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담당관-14293 ('23.12.15) “-2023년 공원 행동유도 디자인 개발(확산)-용역계약 변경계획”

②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7986 ('23.12.28) “공원 행동유도형 사인시스템 대상지 선정 재검토 요청”

③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담당관-3857 ('24. 4. 1)

※ 동 사업은 사업대상지를 청계광장 및 청계천 산책로로 변경하여 '24년 3월 완료되었음 :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담당관-3548 ('24. 3.25) “-공원 행동유도 디자인 개발 사업- 사업 추진 결과보고”

248) 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 6), p.139~140

②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1. 6), p.124

③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2. 6), p.114~116

〈표 4-76〉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회계연도별 결산결과 ('23~'19)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2023	2,250	1,280	812	157
2022	22,944	22,565	-	379
2021	43,361	40,907	109	2,689
2020	61,167	57,226	1,373	2,567
2019	59,284	54,034	2,024	3,224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무과-22825 ('20. 4.23)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17134 ('21. 4. 2)
 ③ 서울특별시, 재무과-23355 ('22. 4. 7)
 ④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1 ('23. 4.17) 등 재구성

- 사업부서는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전검토 등을 수행함으로써 사업 지연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 내용이 다른 실·본부·국과도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의함으로써 회계연도 중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안된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내용을 단년도 내에 실현되기 어려운 사안인 경우에는 시민참여예산사업보다는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면서도 시민의 요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이월액 확정 이후 사고이월액을 임의변경한 사례 검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²⁴⁹⁾은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즉 1월 10일까지 이월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²⁵⁰⁾에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관련 기준과 규칙에는 확정기한(1월 10일)이 경과한 이후 이월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서울시는 확정된 사고이월액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3건(통계목 기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²⁵¹⁾

〈표 4-77〉 당초 확정된 사고이월액을 임의로 정정한 사례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통계목	1월 10일자로 확정된 사고이월액 (가)	변경된 사고이월액 (‘23 결산서) (나)	증감액 (나)-(가)
재난안전관리실	남 부 순 환 로 (개 봉 사 거 리) 평 탄 화	시 설 비	6,825	6,815	△10
물순환안전국	홍제천(마포구) 망원 나들목 설치 사업	시 설 비	307	279	△28
미래한강본부	안 양 천 교 자 전 거 도 로 구 조 개 선	시 설 비	1,605	1,560	△45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4 (’24. 1.11)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630 (’24. 4. 8)

249)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2. 7), p.166

250)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이월예산의 집행)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과장 및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51)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630 (’24. 4. 8)

○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 소관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는 '24년 1월, 시설비 예산현액(101억 4,000만원) 중 68억 2,500만원을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나,

- 지난 2월 8일,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중의 지출액 등을 착오하였음을 사유로 기 확정된 사고이월액(68억 2,5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한 68억 1,500만원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훈령과 상관없이 2월 16일, 예산부서가 사업부서의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됨²⁵²⁾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소관 **홍제천(마포구) 망원나들목 설치 사업**은 '24년 1월, 시설비 예산현액(28억 3,800만원) 중 3억 700만원을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나,

- 지난 2월 13일, 사업부서가 회계연도 중의 지출액 등을 착오하였음을 사유로 기 확정된 사고이월액(3억 700만원) 중 △2,800만원 감액한 2억 7,900만원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2월 16일, 예산부서가 사업부서의 요청대로 사고이월액을 변경한 사안으로 확인됨²⁵³⁾

○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소관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은 '24년 1월, 시설비 예산현액(30억원) 중 16억 500만원을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나,

- 확정기한('24. 1.10) 경과 이후 4,500만원이 추가지출('24. 1.17) 됨에 따라 2월 13일, 사업부서가 기 확정된 사고이월액(16억 500만원)에서 지출된 예산만큼 △4,500만원 차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월 16일, 예산부서가 사업부서의 요청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됨²⁵⁴⁾

252) ①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2073 ('24. 2. 8) “2023년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사업 사고이월 정정 요청”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630 ('24. 4. 8)

253) ①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2520 ('24. 2.13) “'23년 홍제천(마포구) 망원나들목 설치 사업 사고이월 정정 요청”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630 ('24. 4. 8)

254) ①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시설관리과-1111 ('24. 2.13) “'23년 회계 사고이월 정정요청(안양천교 자전거

-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로서는 실제 지출된 예산규모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잘못 산정된 이월예산을 정정하는 것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 관련 규칙과 기준이 회계연도 종료 이후 10일 이내에 이월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최대 10일 간 지출액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월 예산의 규모를 정확히 확정하라는 취지로 사료되는 바,
 - 주어진 기간(최대 10일)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지출액 등을 파악하고 이월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 기준과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인 것은 물론 회계관리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내용도 경시하는 행태일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법」 제150조²⁵⁵⁾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다만,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의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등²⁵⁶⁾을 근거로 회계연도말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으나 지출하기 곤란하여 이월액 확정기한('24. 1.10) 경과 이후 '24년 1월 20일까지 기성금을 집행한 특수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도로 구조개선”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630 ('24. 4. 8)

255)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56) ■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4. 1), p.9

가. 출납사무의 폐쇄

-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예외적인 때에만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 출납 폐쇄기한)

나.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지방회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1월 20일까지 지출된 사안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단서조항이 전혀 마련되어 않아 관련 기준과 규칙에 따른 확정기한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될 수밖에 없으나,
-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출된 예산을 확정기한(1월 10일) 이내에 파악하고 이월예산 산정시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가 적용된 사안에 한정하여서는 이월액 확정기한도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정되도록 하고, 이와 연계된 후속조치로서 서울시의 규칙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7. 순세계잉여금 관련

-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함
-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1조 6,459억 9,1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된 바, 직전회계연도(4조 1,379억 4,600만원)보다 △60.2%, △2조 4,919억 5,500만원 감소된 것임

〈표 4-78〉 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회 계 연 도	2022 회 계 연 도	2021 회 계 연 도
합 계		1,645,991	4,137,946	6,442,845
	일 반 회 계	932,676	3,254,857	5,871,201
	특별회계 ^{주1)}	713,314	883,089	571,643

주1)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 일반회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3조 2,548억 5,700만원)보다 △71.3%, △2조 3,221억 8,100만원 감소한 9,326억 7,6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8,830억 8,900만원)보다 △19.2%, △1,697억 7,500만원 감소한 7,133억 1,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물가 상승 및 민간 소비심리 둔화, 공시지가 인하 등으로 지방소비세(△1,080억 2,000만원), 취득세(△746억 8,100만원), 자동차세(△577억 8,900만원), 재산세(△471억 4,600만원) 등이 부족 수납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36조 5,073억 9,200만원)보다 △2,921억 2,300만원 감소한 36조 2,152억 6,900만원이 실제수납 되었고,

- 세출결산의 경우, 직전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37조 1,167억 7,300만원)보다 △2조 1,883억 100만원 감소한 34조 9,284억 7,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제출된 바,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 (3조 5,973억 7,000만원)보다 △2조 3,105억 7,400만원 감소한 1조 2,867억 9,600만원이 발생되어
- 다음 연도 이월액(2,562억 4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979억 1,300만원)을 차감한 **일반회계 세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3조 2,548억 5,700만원)보다 △2조 3,221억 8,000만원 감소한 9,326억 7,600만원으로 제출됨

〈표 4-79〉 최종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최	총 예 산 ①	36,232,230	38,050,516	33,482,498
전	년 도 이 월 액 ②	275,161	269,125	352,348
예	산 현 액 ③=①+②	36,507,392	38,319,642	33,834,846
세	입 결 산 액 (수 납 액) ④	36,215,268	40,714,143	39,173,001
세	출 결 산 액 (지 출 액) ⑤	34,928,472	37,116,773	32,960,202
결	산 상 잉 여 금 ⑥=④-⑤	1,286,796	3,597,370	6,212,799
	채 무 상 환 ⑦	0	0	0
	명 시 이 월 액 ⑧	42,345	81,713	85,225
	사 고 이 월 액 ⑨	213,859	193,448	181,274
	계 속 비 이 월 액 ⑩	0	0	0
	보 조 금 실 제 반 납 금 ⑪	97,913	67,351	75,097
	세 계 잉 여 금 ⑫=⑥-(⑦+⑧+⑨+⑩+⑪)	932,676	3,254,857	5,871,20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7221 ('24. 4.16)

- 「지방회계법」 257)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상 세계잉여금의 처리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 '23회계연도에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9,326억 7,600만원 중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에 따라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1,736억 500만원),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872억 8,100만원), ③타 회계전출(551억 3,400만원) 등 이른바 “법정정산분”(3,160억 2,100만원)을 제외한 잉여금(6,166억 5,500만원)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표 4-80〉 '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결산상 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세 계 잉 여 금	법 정 정 산 분				여유재원
	소 계	자 치 구 교 부 ①	교 육 청 전 출 ②	타 회 계 전 출 등 ③	
932,676	316,021	173,605	87,281	55,134	616,65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7221 ('24. 4.16)

-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58)에 따라 매 회계연도 결산상 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 이상을 통

257)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258)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이하 생략)

합재정안정화기금중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세계잉여금(9,326억 7,600만원)의 경우에도 법정정산분(3,160억 2,100만원)을 제외한 6,166억 5,5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3,083억 2,700만원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할 것으로 확인됨²⁵⁹⁾

○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일부 특별회계에 대해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24년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한 바,

- 「지방회계법 시행령」²⁶⁰⁾은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와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매년 6월 직전회계연도 결산 이후 특별회계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 전망분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아닌 행정안전부 회신²⁶¹⁾을 근거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해 전년도 11월 제출하는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미리 편성하여 예산안으로 제출하였음

259)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24. 5.27) (의안번호:1819, p.160)

260)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26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290 ('19. 8.16)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과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 회신”

- 서울시로서는 특별회계는 수입원이 한정되어 세출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편성일 수 있으나, 회계연도 중 대규모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정 재원을 미리 소진하게 되어 추가적인 재정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예결특위 예산 및 결산 심사과정중 지적하였음에도²⁶²⁾ '23회계연도 결산이후 발생규모가 확정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24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음

〈표 4-81〉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의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23회계연도 결산상잉여금 (추 계 액)	2024년도 세입 편성액 (순 세 계 잉 여 금)	잉여금 잔액
합 계		468,731	468,731	0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08,305	108,305	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135	5,135	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99,553	199,553	0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76,321	76,321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130	5,130	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70	170	0
	소 방 특 별 회 계	28,024	28,024	0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46,093	46,093	0

- 결과적으로 '23회계연도 결산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발생규모가 '2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의 추계액보다 감소되어 '24회계연도중 기편성된 세입예산을 감액조정 하여야 하며 감액하지 않는다면 '25년 6월, 결산시 세수결손이 확실시되어 '24회계연도중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6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3. 6), p.147~148

- ①**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706억 6,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1,083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실잔액은 △376억 4,500만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②**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억 1,200만원 부족한 상황으로 확인됨
 - 동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전망액을 51억 3,500만원으로 예측하고, '24년도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전망치 전액(5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마이너스(-) △2억 1,2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24년도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타 회계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전출 등을 통해 본예산에 이른바 '가불하여' 편성한 51억 3,500만원 뿐만 아니라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2억 1,200만원까지 추가 편성(53억 4,700만원)하거나, 실제없이 장부상 허수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51억 3,500만원)과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손분(△2억 1,200만원)을 포함하여 △53억 4,700만원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회계는 '22회계연도에도 마이너스(-) 결산(△66억 3,100만원)이 발생하였고, '23회계연도에도 연속하여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2억 1,200만원)을 유발시킨 바, 이는 회계질서를 무의미하게 인식하는 사례일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③**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156억 8,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1,995억 5,300만원을 미리 편성한 결과 △838억 7,300만원의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④**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도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13억 6,600만원임에도 2024년도 본예산에 763억 2,100만원을 미리 편성한 결과 △449억 5,500만원의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2024년도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년 법령위반 사항임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편성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0조²⁶³⁾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63)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생략)

〈표 4-82〉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 2 3 회 계 연 도 순 세 계 잉 여 금 ①	' 2 4 년 도 본 예산 기 편 성 액 ②	실 잔 액 ①-②
합	계	1,645,991	468,731	1,177,260
	일 반 회 계	932,676	0	932,676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6,698	0	36,698
	①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70,660	108,305	△37,645
	②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12	5,135	△5,347
	③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15,680	199,553	△83,873
	④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31,366	76,321	△44,955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6,094	0	6,094
	학 교 용 지 부 담 금 특 별 회 계	936	0	936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205,873	5,130	200,743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284	170	114
	소 방 특 별 회 계	30,776	28,024	2,752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23,134	46,093	77,041
	공 기 업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92,022	0	92,02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7221 ('24. 4.16)

8.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 관련 검토

(1) 개 요

- 서울시는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²⁶⁴⁾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²⁶⁵⁾
- 「지방공기업법」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서, 사업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²⁶⁶⁾
 -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서²⁶⁷⁾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별도로 제출하여 결산승인을 받고 있음

264)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중략)

6. 하수도사업 (후략)

-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65)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 ①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66)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7)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서는 총괄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예산결산보고서(수입·지출결산서),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참고자료로 구성

(2) 공기업특별회계 불용액 관련

-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결산결과, 예산현액 9,952억 6,800만원의 10.6%, 1,060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74억 4,200만원의 6.6%, 669억 5,1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4-83〉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예 산 액	예 산 성 립 증 감 액	예 산 현 액 (가)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주1)}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금 액 (나)	비 율 (나)/(가)
계	1,843,784	158,926	2,002,711	1,646,412	183,113	202	172,981	
수도사업	930,000	65,268	995,268	838,603	50,431	202	106,030	
공 기 업 하수도사업	913,784	93,657	1,007,442	807,809	132,682	-	66,951	

※ 주1)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중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과 건설개량이월액이 포함됨
자료근거 : '23회계연도 결산서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에 따라 불용액을 집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과는 달리 사업별 불용사유를 ①보조금 정산잔액, ②예산절감액, ③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④낙찰차액, ⑤지출잔액, ⑥예비비로 유형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별 불용사유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처럼 사업별 불용사유가 유형화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경우에도 사유별로 불용액이 관리 되도록 개선요청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위원회는 현행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제한사항을 최소화시키고자 불용액 발생사유를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준하여 제출받은 바,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3사업연도에 발생한 불용액 1,060억 3,000만원중 지출잔액이 전체의 60.3%, 639억 1,800만원 발생되었고, **낙찰차액**은 11.7%, 123억 7,900만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²⁶⁸⁾

〈표 4-84〉 수도사업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불 용 액	발 생 사 유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절 감 산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 비 비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6,030	10,278	2,467	11,568	12,379	63,918	5,418
	(100.0)	(9.7)	(2.3)	(10.9)	(11.7)	(60.3)	(5.1)

※ 자료근거 : '23회계연도 결산서

-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중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등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제외한 **사업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864억 6,400만원이며,²⁶⁹⁾ 이 중 85.9%, 742억 7,300만원이 16개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268)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4330 ('24. 4. 5)

269) 불용액은 1,060억 300만원으로 ①기본경비 불용액 19억 1,000만원, ② 인건비성 경비 불용액 122억 3,700만원, ③예비비 불용액 54억 1,800만원(투자사업, 경상사업 포함), ④사업비 불용액 864억 6,400만원임

〈표 4-85〉 사업비^{주1)} 중 주요 불용액 발생 현황 (불용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장기사용 송배수관 (400mm 이상) 정비	71,033	35,611	19,779	15,642	22.0
장기사용 배급수관 (350mm 이하) 정비	74,205	61,844	944	11,416	15.3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20,107	7,939	2,791	9,376	46.6
정수센터 시설 정비	54,668	43,058	2,226	9,182	16.8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	25,115	12,779	5,515	6,821	27.1
아리수 생산재료비	179,500	175,625	304	3,571	1.9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27,808	24,753	25	3,029	10.8
급수공사	29,661	26,937	0	2,723	9.1
노후 밸브 정비	28,549	25,829	0	2,720	9.5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 점검 및 시설 정비	9,235	6,262	1,111	1,860	20.1
아리수 올림터·배수지 노후 기전시설 개량	12,158	10,213	109	1,835	15.0
정수장 순환 정비	3,548	1,754	116	1,677	47.2
원인자 이설공사 직접 시행	14,550	7,969	5,379	1,202	8.2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	5,100	3,977	0	1,122	22.0
스마트 정수센터 구축	1,353	286	0	1,067	78.8
소블록 배수관 세척	5,814	4,789	0	1,024	17.6

※ 주1)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제외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4330 ('24. 4. 5)

○ **장기사용 배급수관(350mm이하) 및 송배수관(400mm이상) 정비**의 경우, 지출현액 1,452억 3,800만원중 67.1%, 974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전체 사업비 불용액 864억 6,400만원중 31.3% 270억 5,800만원을 불용처리된 바,

- 주요 불용사유로는 ①낙찰차액, ②예산절감, ③설계변경 등 집행잔액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나, ③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된 불용액중 76.4%에 이르고 있어 외부요인보다 내부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86〉 장기사용 배급수관 및 송배수관 정비 불용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지 현 출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소 계	①공사, 용역 및 자재 구입 낙찰 차액	②설계 등 심사 예산 절감액	③설계 등 변경 집행 잔액	④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
합 계	145,238	97,456	20,724	27,058	5,134 (19.0)	1,193 (4.4)	20,680 (76.4)	47
장기사용 배급수관	74,205	61,844	944	11,413	2,087	105	9,218	3
장기사용 송배수관	71,033	35,611	19,779	15,642	3,047	1,088	11,462 ^{주1)}	44

※ 주1) '22사업연도 사고이월액중 불용액 109억 1,700만원 포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4330 ('24. 4. 5)

○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의 경우, 지출현액 201억 700만원중 39.4%, 79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46.6%, 93억 7,600만원이 불용된 바, 동 사업의 경우, 지난 '22사업연도에도 93억 2,2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23사업연도에는 이월액 전액이 불용된 것임

- 지난 '22사업연도부터 '23사업연도에 발생한 불용은 한국도로공사 주관 선행공사 일정이 수 차례 변경됨에 따라 불용 된 것이나, 이월된 예산은 집행되지 않으면 불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행공사 등 외부요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찰과 필요시 사업예산 경정 등이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87〉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불용현황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예산현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계 획 변 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잔액
시 설 비	18,347	6,740	2,245	9,360	9,352 ^{주1)}	8

※ 주1) '22사업연도 사고이월액중 불용액 93억 2,200만원 포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4330 ('24. 4. 5)

-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 발생에 따른 잉여금이 해당 회계로 재순환되는 구조로 인하여 추경을 통해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재활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 있으나, 타 회계로 전입·전출 또한 용이하지 않다는 특수성도 있어 향후에는 추경을 통해 세출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3사업연도에 669억 5,100만원이 불용된 바, 지출잔액에 대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73.0%, 489억 1,200만원으로 낙찰차액(23.2%, 155억 5,600만원)이나 다른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초 지출계획이 실제보다 과다 편성된 결과일 수 있어, 지출잔액을 원인으로 한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88〉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불 용 액	발 생 사 유					
		보 조 금 정 산 잔 액	예 절 감 산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 비 비
공 기 업 하수도사업 특 별 회 계	66,951	-	-	2,315	15,556	48,912	167
	(100.0)	-	-	(3.5)	(23.2)	(73.1)	(0.2)

※ 자료근거 : '23회계연도 결산서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중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등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제외한 **사업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95.5%, 639억 5,800만원²⁷⁰⁾이며 10억원 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 또한 사업비 불용액의 64.3%, 411억 5,900만원으로 검토됨

270) 불용액은 669억 5,100만원으로 ①인건비성 경비 불용액 26억 700만원, ②기본경비 불용액 2억 1,800만원, ③예비비 불용액 1억 6,700만원 ④사업비불용액 639억 5,800만원임

〈표 4-89〉 사업비^{주1)} 중 주요 불용액 발생 현황 (불용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90,408	171,443	-	18,964	9.9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58,574	53,914	123	4,536	7.7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32,135	26,972	1,005	4,156	12.9
환경기초시설 설치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3,402	824	-	2,577	75.7
중랑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19,431	17,008	-	2,422	12.4
탄천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7,714	6,053	-	1,660	21.5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14,442	11,621	1,183	1,637	11.3
난지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11,279	9,706	-	1,572	13.9
탄천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5,192	3,142	689	1,360	26.2
중랑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9,445	8,188	-	1,256	13.3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13,703	9,523	3,165	1,014	7.4

※ 주1)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제외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027 ('24. 4. 5)

- **환경기초시설 설치(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잠실수중보 상류인 송파구, 강동구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4억 200만원중 24.2%, 8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75.7%, 25억 7,700만원을 불용한 것임

〈표 4-90〉 환경기초시설 설치(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불용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①2023	3,402	824	-	2,577	자치구 매칭 지방비 과소 편성
②2022	4,282	3,400	-	882	지출잔액
③2021	5,739	3,231	1,054	2,508	강동구 공법 변경에 따른 준공일 연기로 사고이월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027 ('24. 4. 5)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2 ('23. 4.17)

③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20857 ('22. 4. 4)

- 동 사업은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한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매년 자치구의 계획에 따라 지출되는 바, '23사업연도에는 강동구, 송파구의 과소 편성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²⁷¹⁾되어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 **탄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의 경우, 탄천 하수처리구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를 보수보강(9건)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7억 1,400만원중 78.5%, 60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21.5%, 16억 6,000만원이 불용된 바,

271) 환경기초시설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	변경		
	계	지방비	기금(국비)		계	지방비	기금(국비)
계	14,188	10,786	3,402		5,688	4,800	888
강동구	10,848	8,246	2,602		4,900	4,200	700
송파구	3,340	2,540	800		788	600	188

〈표 4-91〉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불용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 용 액		
				계	낙찰차액	지출잔액
중랑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19,431	17,008		2,422	1,818	603
난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5,789	5,038		750	652	98
서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6,233	4,801	522	908	540	368
탄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7,714	6,053		1,660	393	1,26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027 ('24. 4. 5)

- 남부순환로 3154~3179 주변 원형관로 보수 사업비(9억 5,8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사업중 지출잔액 발생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제출됨
- 동 사업은 하수관내 나무뿌리의 침입으로 이음부 단차 및 결함, 균열 등이 발견되어 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편성하는 사업이기에 미집행 규모가 클수록 사고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불용액 발생 규모가 감소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V. 재무제표 (재무회계결산)

-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7조제2항²⁷²⁾에 의해 결산서를 구성하는 서류로서, 동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²⁷³⁾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와 현금흐름표, 주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²⁷⁴⁾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임
- 재무회계 결산결과 2023회계연도 자산은 152조 5,148억 700만원, 부채는 18조 891억 8,1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34조 4,256억 2,6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결과 **비용**은 37조 2,318억 3,400만원이고, **수익**은 37조 3,301억 600만원으로 비용과 수익의 차액인 **재정운영 결과**는 982억 7,200만원 흑자임

272) ■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 「지방회계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②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2. 유형자산 명세서
3. 감가상각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73) ■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74)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24. 4.12)는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도의 의견임

〈표 5-1〉 재무제표(요약)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재정상태			재정운영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차액
2023	152,514,807	18,089,181	134,425,626	37,330,106	37,231,834	98,272
2022	152,170,872	19,360,205	132,810,666	40,643,160	39,621,406	1,021,753
증감액	343,935	△1,271,024	1,614,959	△3,313,054	△2,389,572	△923,482
(증감률)	(0.2)	(△6.6)	(1.2)	(△8.1)	(△6.0)	(△90.4)

※ 작성부서가 재무제표의 총괄설명증 ‘재무제표 요약’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고, 재정상태표 이하의 내용은 ‘원’단위로 기재하여 일부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1. 재정상태표 관련

-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²⁷⁵⁾
- '23회계연도말 **자산**은 152조 5,148억 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 자산(152조 1,708억 7,200만원)보다 0.2%, 3,439억 3,500만원 증가하였음
- '23회계연도의 **부채**는 18조 891억 8,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부채(19조 3,602억 500만원)보다 △1조 2,710억 2,400만원(△6.6%) 감소하였음

27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회계실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34조 4,256억 2,6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순자산(132조 8,106억 6,600만원)보다 1조 6,149억 5,900만원(1.2%) 증가하였음

(1) 자산

-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됨²⁷⁶⁾
- 2023회계연도말 서울특별시의 자산은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84조 5,188억 3,900만원(55.4%), 도서관,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31조 3,943억 7,700만원(20.6%),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투자자산** 18조 5,661억 9,400만원(12.1%), 현금 및 현금성자산인 **유동자산** 8조 846억 9,300만원(5.3%) 등의 순으로 구성됨

276)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자산의 분류)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표 5-2〉 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 감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증감액	증감률
자 산 총 계	152,514,807	100.0	152,170,872	100.0	343,935	0.2
유 동 자 산 ^{주1)}	8,084,693	5.3	10,505,676	6.9	△2,420,983	△23.0
투 자 자 산 ^{주2)}	18,566,194	12.1	18,584,906	12.2	△18,712	△0.1
일 반 유 형 자 산 ^{주3)}	8,804,694	5.9	8,975,640	5.9	△170,946	△1.9
주 민 편 의 시 설 ^{주4)}	31,394,377	20.6	29,740,759	19.6	1,653,618	5.6
사 회 기 반 시 설 ^{주5)}	84,518,839	55.4	83,277,280	54.7	1,241,558	1.5
기타비유동자산 ^{주6)}	1,146,009	0.7	1,086,608	0.7	59,400	5.5

주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유동자산)

-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을 말한다.

주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투자자산)

-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주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일반유형자산)

-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입목 등을 말한다.

주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주민편의시설)

-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주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사회기반시설)

-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주6)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 **자산**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3,439억 3,500만원 증가한 바,

- 주요 증감 내용은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에서 1조 6,536억 1,800만원,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1조 2,415억 5,8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현금성 자산 등 유동자산은 △2조 4,209억 8,300만원 등이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 직전회계연도 대비 **증감내역**을 계정별로 검토하면

- **유동자산**은 ①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상품 1조 5,086억 8,600만원 증가하고, ②단기대여금 2,743억 5,300만원 증가하였으나, ③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조 1,415억 7,000만원 감소하여 직전회계연도보다 △2조 4,209억 8,300만원(△23.0%) 감소된 것임

〈표 5-3〉 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8,084,693	10,505,676	△2,420,983	△23.0
③ 현금및현금성자산 ^{주1)}	4,366,484	8,508,054	△4,141,570	△48.7
① 단 기 금 용 상 품 ^{주1)}	1,713,621	204,935	1,508,686	736.2
미 수 세 금 ^{주2)}	717,492	675,555	41,937	6.2
미 수 세 외 수 입 금 ^{주3)}	326,850	290,039	36,811	12.7
미수정부간이전수익	187,687	353,305	△165,617	△46.9
② 단 기 대 여 금 ^{주4)}	312,736	38,676	274,353	708.6
재 고 자 산 ^{주5)}	37,829	33,780	4,048	12.0
기 타 유 동 자 산	421,991	401,623	20,368	5.1

주1)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과 기금의 연도말 예치금 통장금액

주2) 세입결산액 중 목적세와 보통세 미수납 채권(대손충당금 차감)

주3) 세입결산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 채권(대손충당금 차감)

주4)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대손충당금 차감)

주5) 판매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산

- **투자자산**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87억 1,200만원(△0.1%) 감소한 것으로 ①민간 및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융자금 등의 **장기대여금** △977억 8,300만원 감소하였으나, ②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및 주식투자 등 **장기투자증권**²⁷⁷⁾ 758억 4,2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임

〈표 5-4〉 투자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18,566,194	18,584,906	△18,712	△0.1
① 장 기 대 여 금 ^{주1)}	1,036,059	1,133,842	△97,783	△8.6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6,756	△8,976	2,219	24.7
② 장 기 투 자 증 권 ^{주2)}	17,518,423	17,442,580	75,842	0.4
기 타 투 자 자 산	18,468	17,459	1,008	5.8

주1)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대여금

주2) 민간이나 지방공사·공단 등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및 투자주식 등

277) 장기투자증권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공 기 특 별 회 계	업 기 금 회 계
'23회계연도	17,518,423	3,271,193	13,072,958	0	1,174,271
'22회계연도	17,442,580	3,387,533	12,968,090	0	1,086,957
증 감 액	75,842	△116,339	104,868	0	87,313

- **일반유형자산**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709억 4,600만원(△1.9%) 감소된 것으로 ①토지의 경우, 송현동 및 잠원동 부지²⁷⁸⁾의 상호 교환취득(△1,800억원), 분할 및 합병말소(116건, △448억원) 등으로 △1,838억 600만원이 감소하였고 ②건물의 경우, 서대문경찰서 교통센터 등 미사용 노후건물 처분(△39억원), 감가상각(△344억원) 등으로 △286억 6,800만원 감소하였으나, ③항공기 및 선박등을 포함한 차량운반구 196억 8,000만원 등은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5-5〉 일반유형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8,804,694	8,975,640	△170,946	△1.9
① 토	지	7,357,856	7,541,662	△183,806	△2.4
입	목	3,011	3,011	-	-
② 건	물 ^{주1)}	911,709	940,377	△28,668	△3.0
구	축 물 ^{주1)}	14,537	18,084	△3,547	△19.6
기	계 장 치 ^{주1)}	4,737	5,429	△691	△12.7
③ 차	량 운 반 구 ^{주1)}	106,609	86,929	19,680	22.6
집	기 비 품 ^{주1)}	229,401	216,771	12,630	5.8
임	차 개 량 자 산 ^{주1)}	298	625	△326	△52.2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176,531	162,748	13,782	8.5

※ 주1)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1196 ('24. 4.25)

278) 서울시재산(서초구 잠원동 71-10, 11.608㎡, 학교용지)와 교육청재산(강남구 압구정동 526, 13.889㎡, 학교용지) 유상이관

- **주민편의시설**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조 6,536억 1,800만원(5.6%) 증가된 바, ①공원의 경우, 용산가족공원 등 공원토지 취득(230건, 7,961억원), 도시개발 관련 토지 기부채납(26건, 1,564억원) 등 7,812억 900만원 증가하였고, ②기타주민편의시설의 경우, 상계 6구역 등 주택사업부지 취득(1,731억원), 응암1구역 등 임대주택매입(3,312억원) 등 2,829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③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은 △158억 1,100만원 감소 한 것으로 제출됨

〈표 5-6〉 주민편의시설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31,394,377	29,740,759	1,653,618	5.6
도	서 관 ^{주1)}	98,610	84,621	13,989	16.5
주	차 장 ^{주1)}	1,511,033	1,492,859	18,173	1.2
주 차 장	사 용 수 익 권	△330	-	△330	△100.0
① 공	원 ^{주1)}	12,039,121	11,257,911	781,209	6.9
박 물 관 및 미 술 관	^{주1)}	445,179	422,932	22,246	5.3
동 물	원 ^{주1)}	2	9	△7	△77.8
수 목 원 및 휴 양 림	^{주1)}	355,415	353,963	1,452	0.4
문 화 및 관 광 시 설	^{주1)}	4,147,850	3,919,891	227,959	5.8
문화및관광시설사용수익권		△27,576	△31,098	3,522	11.3
③ 체	육 시 설 ^{주1)}	1,884,291	1,895,283	△10,992	△0.6
사 회 복 지 시 설	^{주1)}	1,382,654	1,312,180	70,474	5.4
③ 의	료 시 설 ^{주1)}	667,945	672,764	△4,819	△0.7
교 육 시 설	^{주1)}	1,005,341	891,344	113,996	12.8
② 기 타 주 민 편 의 시 설	^{주1)}	5,936,084	5,653,182	282,902	5.0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1,948,753	1,783,813	164,940	9.2

※ 주1)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1196 ('24. 4.25)

- **사회기반시설**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조 2,415억 5,800만원(1.5%) 증가한 바, ①도로의 경우, 동남권유통단지 사회기반시설 등 기부채납(116건, 7,681억원), 서초대로 등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취득(1,793억원) 등 8,923억 5,900만원 증가하고, ②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의 경우, 건설중인 자산(도로 2,837억원, 도시철도 3,977억원, 하천부속시설 921억원 등) 2,603억 200만원 증가하였고, ③도시철도사용수익권 858억 7,500만원, 도로사용수익권 840억 3,800만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5-7〉 사회기반시설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84,518,839	83,277,280	1,241,558	1.5
① 도로	62,558,399	61,666,039	892,359	1.4
③ 도로 사용 수익 권	△1,819,117	△1,903,156	84,038	4.4
도 시 철 도	5,407,425	5,423,391	△15,965	△0.3
③ 도시철도 사용 수익 권	△1,076,311	△1,162,187	85,875	7.4
상 수 도 시 설 주1)	4,907,412	4,917,849	△10,436	△0.2
③ 수 질 정 화 시 설 주1)	6,543,400	6,637,176	△93,776	△1.4
하 천 부 속 시 설	3,627,414	3,573,177	54,236	1.5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주1)	101,567	107,313	△5,745	△5.4
재 활 용 시 설 주1)	140,004	145,223	△5,219	△3.6
농 수 산 기 반 시 설 주1)	301,129	301,594	△454	△0.2
기 타 사 회 기 반 시 설 주1)	25,508	26,914	△1,405	△5.2
②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3,804,246	3,543,944	260,302	7.3

※ 주1)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1196 ('24. 4.25)

- **기타비유동자산**은 직전회계연도보다 594억원 증가된 바, ①기타비유동자산의 경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회전기금 지원액 696억 6,100만원이 증가하고, ②전산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68억 1,400만원이 증가하고, ③역세권청년주택(장기안심보증금)(23건, 74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장기안심주택보증금 만기도래액(67건, 643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기타보증금은 196억 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5-8〉 기타 비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1,146,009	1,086,608	59,400	5.5
보	증 금	353,364	333,783	19,581	5.9
	임 차 보 증 금	53,126	53,149	△22	0
	전 신 전 화 가 입 권	8	9	△1	△11.1
	③ 기 타 보 증 금	300,229	280,624	19,605	7.0
무	형 자 산	172,043	157,066	14,976	9.5
	지 적 재 산 권	4,761	72	4,688	6,512.5
	② 전 산 소 프 트 웨 어	55,592	48,777	6,814	14.0
	용 익 물 권	105,274	103,702	1,571	1.5
	건 설 중 인 무 형 자 산	6,415	4,513	1,901	42.1
기	타 비 유 동 자 산	620,601	595,758	24,842	4.2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40,099	69,109	△29,010	△42.0
	유 산 자 산	62,136	58,612	3,524	6.0
	생 물 자 산	942	900	41	4.6
	장 기 일 반 미 수 금 ^{주 1)}	447,622	466,995	△19,373	△4.1
	① 기 타 비 유 동 자 산	69,801	140	69,661	49,757.9

※ 주1) 대손충당금 차감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1196 ('24. 4.25)

(2) **부채**²⁷⁹⁾

○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됨²⁸⁰⁾

○ 2023회계연도말 서울특별시의 **총부채**는 18조 891억 8,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9조 3,602억 500만원)보다 △6.6%, △1조 2,710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음

- 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금, 유동성 지방채증권 등의 **유동부채**(18.9%, 3조 4,239억 2,600만원)와 1년 이후에 상환이 도래되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의 **장기차입부채**(53.7%, 9조 7,217억 200만원) 그리고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시직원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포함한 **기타비유동부채**(27.3%, 4조 9,435억 5,200만원)로 구성되어 있음

- **부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1조 2,710억 2,400만원이 감소한 바, ①유동부채가 △1조 4,556억 100만원 감소하고, ②장기차입부채도 △392억 400만원 감소하였으나, ③기타비유동부채는 2,237억 8,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 다만, 서울시 평생교육국이 '23년 4월23일, 서울시교육청에게 '23회계연도 법정전출금(지방세 전출) 정산액을 당초 536억 2,500만원에서 297억 8,400만원 증가한 834억 1,000만원으로 변경통지한 바,

- 출납사무가 완결된 이후 지방세 전출분중 지방소비세 관련 산정오류를 뒤늦게 인지하고 조치한 것이나, 이미 결산검사('23. 4.15~5.19)가 진행 중인 시점에 오류를 인지함으로써 재무회계결산중 부채(일반미지급금, 정

279)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②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280)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부채의 분류)

○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부간이전비용)가 297억 8,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재무회계결산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됨²⁸¹⁾

- 이에 따라 지난 5월27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첨부서류중 재무제표는 ①총괄(요약), ②재무제표중 기타비유동부채의 세부내역(주석17), ③필수보충정보중 성질별 재정운영표(정부간 이전비용)과 ④필수보충정보중 기능별 재정운영표(일반회계) 등을 수정하여 제출한 것임

〈표 5-9〉 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부 채 총 계		18,089,181	19,360,205	△1,271,024	△6.6
	① 유 동 부 채 ^{주1)}	3,423,926	4,879,527	△1,455,601	△29.8
	② 장 기 차 입 부 채 ^{주2)}	9,721,702	9,760,906	△39,204	△0.4
	③ 기타비유동부채 ^{주3)}	4,943,552	4,719,771	223,781	4.7

※ 주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유동부채)

-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주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주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충금, 장기 선수수익(先受收益 :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1196 ('24. 4.25)

281) 서울특별시, 재무과-26642 ('24. 5.31),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수정내역 제출”

○ 직전회계연도 대비 **부채의 주요 증감내역**을 검토하면

- **유동부채**는 직전회계연도 대비 △1조 4,556억 100만원(△29.8%) 감소된 바, ①유동성장기차입부채의 경우, 유동성지방채증권의 모집공채 감소 등으로 △4,163억원 감소하고, ②기타유동부채의 경우, 일반미지급금(자치구조정교부금 △6,105억원, 교육청전출금 △3,540억원) 등 △1조 393억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5-10〉 유동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3,423,926	4,879,527	△1,455,601	△29.8
	단 기 차 입 금	-	-	-	-
	① 유 동 성 장 기 차 입 부 채	1,720,794	2,137,095	△416,300	△19.5
	유 동 성 장 기 차 입 금	-	-	-	-
	유 동 성 지 방 채 증 권	1,660,314	2,080,753	△420,439	△20.2
	유동성장기정부차입금	60,480	56,341	4,138	7.3
	② 기 타 유 동 부 채	1,703,131	2,742,432	△1,039,300	△37.9
	일 반 미 지 급 금	1,052,983	2,234,941	△1,181,958	△52.9
	선 수 금	154,445	25,161	129,284	513.8
	선 수 수 익	34,964	35,058	△93	△0.3
	단 기 예 수 보 관 금	282,853	332,915	△50,062	△15.0
	일 반 미 지 급 비 용	113,691	112,354	1,337	1.2
	유 동 성 장 기 미 지 급 금	2,000	2,000	-	-
	기 타 유 동 부 채	62,192	-	62,192	10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1196 ('24. 4.25)

- **장기차입부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0.4%, △392억 400만원 감소된 바,
 - ①일반공모채의 경우, 도시철도 확충 만기 등으로 △3,214억원 감소하고,
 - ②도시철도공채는 신규보다 만기도래 상환이 증가하여 △777억 6,200만원 감소하고,
 - ③공공임대 주택매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도 △481억 6,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5-11〉 장기차입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A=B+E)		9,721,702	9,760,906	△39,204	△0.4
장기차입금	유동성대체후 잔액 (B=C-D)	773,046	833,526	△60,480	△7.3
	계 (C)	833,526	889,868	△56,341	△6.3
	금 융 기 관 차 입 금	0	0	0	0
	③ 주 택 도 시 기 금 ^{주 1)}	667,858	716,024	△48,166	△6.7
	공 공 자 금 관 리 기 금	114,800	114,800	0	0
	지 역 상 생 발 전 기 금	50,868	59,043	△8,175	△13.8
	차감(유동성대체액) (D)	60,480	56,341	4,138	7.3
지방채증권	유동성대체후 잔액 (E=F-G)	8,948,656	8,927,380	21,276	0.2
	계 (F)	10,608,970	11,008,133	△399,162	△3.7
	② 도 시 철 도 공 채	5,467,670	5,545,433	△77,762	△1.4
	① 일 반 공 모 채	5,141,300	5,462,700	△321,400	△5.9
	차감(유동성대체액) (G)	1,660,314	2,080,753	△420,439	△20.2

※ 주1) 국토부 공공임대주택매입 사업 관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1196 ('24. 4.25)

- **기타비유동부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2,237억 8,100만원(4.7%) 증가된 바, ①임대보증금 수납액 증가에 따라 2,359억 3,300만원 증가하고, ②진행 중인 소송사건 관련 우발부채²⁸²⁾ 152억 6,3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③장기예수보증금 △290억 100만원, ④재개발임대주택 매입관련 장기미지급금 △20억원 등은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5-12〉 기타비유동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4,943,552	4,719,771	223,781	4.7
퇴 직 급 여 총 당 부 채		76,425	70,115	6,309	9.0
기 타 비 유 동 부 채		4,867,127	4,649,655	217,471	4.7
③	장 기 예 수 보 증 금	40,099	69,109	△29,010	△42.0
④	장 기 미 지 급 금	5,830	7,830	△2,000	△25.5
①	임 대 보 증 금	4,430,404	4,194,470	235,933	5.6
	장 기 미 지 급 이 자	165,493	168,208	△2,715	△1.6
②	우 발 부 채	225,299	210,036	15,263	7.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1196 ('24. 4.25)

282) 우발부채 내역

(단위 : 백만원)

발생연도	소송사건 현황		부채 계상액 (확정 부채)	비고
	내용	소송가액		
계	60건	297,834	225,300	
2023년	부당이득금반환등 11건	26,410	19,162	
2022년	부당이득금반환등 22건	35,990	17,393	
2021년	부당이득금반환등 17건	115,853	163,491	
2020년	공사대금등 5건	3,417	115	
2019년	부당이득금등 2건	3,030	25,139	
2018년 이전	공사대금등 3건	113,135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결산보고서

- 2023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부채가 $\Delta 6.6\%$, 1조 2,710억 2,400만원 감소되어 자산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제출함

〈표 5-13〉 총자산 대비 총부채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자 산 (a)	152,514,807	152,170,872	149,366,845
부 채 (b)	18,089,181	19,360,205	18,793,544
비 율 (b/a)	11.8	12.7	12.6

- 아울러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유동비율도 감소된 바, 지표상으로는 단기 부채 상환을 위한 현금동원력이 직전회계연도 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부채의 절대규모가 여전히 커 유동비율의 증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표 5-14〉 유동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유 동 자 산 (a)	8,084,693	10,505,677	11,085,140
유 동 부 채 (b)	3,423,926	4,879,528	5,018,086
유 동 비 율 (b/a)	42.3	46.4	45.3

(3) 순자산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132조 8,106억 6,600만원)보다 1.2%, 1조 6,149억 5,900만원 증가한 134조 4,256억 2,600만원임
- **순자산**은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되는 바,²⁸³⁾
 - **고정순자산**²⁸⁴⁾은 전체 순자산의 84.4%, 113조 4,396억 2,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10조 3,638억 8,300만원)보다 2.8%, 3조 757억 4,200만원 증가하였고,
 - **특정순자산**²⁸⁵⁾은 전체 순자산의 4.8%, 6조 4,464억 7,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8조 5,761억 2,700만원)보다 △24.8%, △2조 1,296억 5,400만원 감소하였으며
 -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것으로서, 전체 순자산의 10.8%, 14조 5,395억 2,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3조 8,706억 5,500만원)보다 4.8%, 6,688억 7,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5-15〉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순 자 산 총 계	134,425,626	100.0	132,810,666	100.0	1,614,959	1.2
고정순자산	113,439,626	84.4	110,363,883	83.1	3,075,742	2.8
특정순자산	6,446,473	4.8	8,576,127	6.5	△2,129,654	△24.8
일반순자산	14,539,527	10.8	13,870,655	10.4	668,870	4.8

28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순자산의 분류)

①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284)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

285)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자원과 관련된 순자산

2. 재정운영표 관련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²⁸⁶⁾ 항목의 분류 방식에 따라 성질별 재정운영표²⁸⁷⁾와 기능별 재정운영표²⁸⁸⁾로 작성됨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총비용**은 37조 2,318억 3,400만원이고, **총수익**은 37조 3,301억 6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82억 7,200만원 흑자로 검토됨

〈표 5-16〉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 감 액	증 감 륜
재 정 운 영 결 과 (A - B)		(98,272)	(1,021,753)	△923,481	△90.4
비	용 (A)	37,231,834	39,621,406	△2,389,572	△6.0
수	익 (B)	37,330,106	40,643,160	△3,313,054	△8.2

※ 재정운영결과 괄호는 흑자를 의미

(1) 성질별 재정운영표

-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따른 2023회계연도 **총비용**은 37조 2,318억 3,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39조 6,214억 600만원)대비 △6.0%, △2조 3,895억 7,200만원 감소하였고, **총수익**은 37조 3,301억 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40조 6,431억 6,000만원) 대비 △8.2%, △3조 3,130억 5,400만원 감소하였음

286) 「지장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287) 성질별재정운영표 : 집행결과를 비용의 성질을 감안하여 계정과목별로(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 나타내는 분류방식

288) 기능별재정운영표 :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집행결과를 기능별로(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등) 나타내는 분류방식

〈표 5-17〉 재정운영표(성질별)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 감 액	증 감 률
			금 액	구성비		
재정운영결과(A-B)	(98,272)		(1,021,753)		△923,481	△90.4
비 용 (A)	37,231,834	100.0	39,621,406	100.0	△2,389,572	△6.0
인건비 ^{주1)}	2,204,969	5.9	2,153,165	5.4	51,804	2.4
운영비 ^{주2)}	7,921,455	21.3	7,661,588	19.2	259,866	3.4
정부간이전비용 ^{주3)}	20,266,324	54.4	22,270,149	58.9	△2,003,824	△9.0
민간등이전비용 ^{주4)}	4,649,803	12.5	5,370,114	13.5	△720,311	△13.4
기타비용 ^{주5)}	2,189,281	5.9	2,166,388	3.1	22,893	1.1
수 익 (B)	37,330,106	100.0	40,643,160	100.0	△3,313,054	△8.2
자체조달수익 ^{주6)}	28,024,666	75.1	30,270,397	72.7	△2,245,730	△7.4
정부간이전수익 ^{주7)}	8,746,024	23.4	9,986,029	25.8	△1,240,005	△12.4
기타수익 ^{주8)}	559,415	1.5	386,733	1.5	172,682	44.7

※ 재정운영결과 괄호는 흑자를 의미

주1)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등

주2)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주3)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주4)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주5)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주6)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대세외수익 등

주7)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주8)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등

- **비용**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정부간이전비용**이 전체 비용의 54.4%(20조 2,663억 2,400만원), **운영비**가 전체의 21.3%(7조 9,214억 5,500만원), **민간등이전비용**이 12.5%(4조 6,498억 300만원), **인건비**가 5.9%(2조 2,049억 6,900만원), **기타비용**이 전체의 5.9%(2조 1,892억 8,100만원)으로 확인됨

- 비용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건비**의 경우, 전년대비 급여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440억원), 기간제근로자 등 기타인건비(79억원) 등의 증가로 518억 400만원 증가하였고, **운영비**의 경우, 위탁대행사업비, 연료비 등이 증가하여 2,598억 6,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정부이전비용**의 경우, 재정규모 감소 및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시도비보조금, 자치구조정교부금이 감소하여 △2조 38억 2,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 **민간 등 이전비용**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매입 전출금비용(△4,293억원), 민간복지시설 등의 민간보조금(△3,016억원) 등이 감소하여 △7,203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비용**의 경우,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1,577억원)는 감소하였으나, 대손상각비(1,967억원),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451억원) 등의 증가로 228억 9,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5-18A〉 재정운영표(성질별) 비용 상세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 감 액
비용총계	37,231,834	39,621,406	△ 2,419,354
인건비	2,204,969	2,153,165	51,804
1. 급여	1,484,322	1,483,320	1,002
2. 복리후생비	450,447	406,435	44,012
3. 기타인건비	251,648	243,737	7,910
4. 퇴직급여	18,550	19,672	△ 1,121
운영비	7,921,455	7,661,588	259,866
1. 도서구입 및 인쇄비	14,456	14,948	△ 492
2. 소모품비	122,076	107,622	14,453
3. 홍보 및 광고비	45,549	40,507	5,041
4. 지급수수료	383,896	311,749	72,146
5.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53,827	46,189	7,638
6.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365,652	314,193	51,459
7.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1,482,348	1,457,711	24,636
8. 기타자산유지보수비	93,750	83,517	10,233
9. 교육훈련비	28,115	18,598	9,517
10. 제세공과금	76,804	160,344	△ 83,539
11. 보험료및공제료	17,591	17,750	△ 159
12. 임차료	74,693	81,791	△ 7,098
13. 출장비	12,245	9,678	2,566
14. 연구개발비	23,276	18,893	4,383
15. 이자비용	186,094	273,332	△ 87,238
16. 업무추진비	11,368	10,929	439
17. 행사비	85,122	49,830	35,292
18. 의회비	10,564	9,826	738
19. 위탁대행사업비	3,906,100	3,711,511	194,589
20. 주민자치활동운영비	2,882	2,776	105
21. 징수교부금	594,922	648,710	△ 53,788
22. 연료비	139,471	15,469	124,002
23. 원·정수구입비	54,146	53,835	311
24. 공립대학운영비	63,982	87,533	△ 23,750
25. 기타운영비	72,713	114,335	△ 41,622

〈표 5-18B〉 재정운영표(성질별) 비용 상세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 감 액
정부간이전비용	20,266,324	22,270,149	△2,003,824
1. 시도비보조금	10,350,010	11,318,427	△ 968,417
2. 자치구조정교부금	5,853,842	6,476,386	△ 622,543
3.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39,282	4,850	34,432
4. 국가에대한부담금	97	38,873	△38,776
5.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756,030	4,141,904	△385,874
6.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267,060	289,706	△22,645
민간 등 이전비용	4,649,803	5,370,114	△720,311
1. 민간보조금	2,904,074	3,205,750	△ 301,675
2. 민간장학금	235	247	△11
3. 이차보전금	198,402	216,260	△17,857
4. 출연금	878,498	771,307	107,191
5. 전출금비용	519,995	949,376	△ 429,380
6. 지방공공기관보조금	28,526	37,627	△9,100
7 기타이전비용	120,068	189,545	△69,476
기타비용	2,189,281	2,166,388	22,893
1. 자산처분손실	3,416	8,363	△4,946
2. 자산손상차손	704,023	793,653	△89,630
3.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196,366	151,204	45,162
4.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319,199	476,952	△ 157,753
5.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639,854	613,635	26,219
6. 무형자산상각비	24,266	24,466	△200
7. 대손상각비	292,749	96,026	196,723
8. 기타비용	9,405	2,086	7,319

○ 수익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 지방세, 경상세외수익 등의 **자체조달수익**이 수익총계의 75.0%, 28조 246억 6,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간이전수익**이 23.4%, 8조 7,460억 2,400만원, 교육청 전입금 등의 **기타수익**이 1.5%, 5,594억 1,500만원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 수익의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소득세(△8,099억원), 취득세(△7,020억원) 감소 등으로 **자체조달수익**이 △2조 2,457억 3,000만원 감소하였고, 국고 매청사업 감소로 국고보조금수입(△6,144억원) 감소에 따른 자치구 교부액이 감소²⁸⁹⁾하는 등의 사유로 **정부간이전수익도** △1조 2,400억 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5-19〉 재정운영표(성질별) 수익 상세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 감 액
수익총계	37,330,106	40,643,160	△ 3,313,054
자체조달수익	28,024,666	30,270,397	△ 2,245,730
1. 지방세수익	24,186,209	26,387,286	△ 2,201,077
2. 경상세외수익	2,740,294	2,531,899	208,394
3. 임시세외수익	1,098,163	1,351,211	△ 253,047
정부간이전수익	8,746,024	9,986,029	△ 1,240,005
1. 지방교부세수익	202,010	269,223	△ 67,212
2. 국고보조금수익	8,248,149	8,862,581	△ 614,432
3.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227,859	405,235	△ 177,376
4.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68,004	448,989	△ 380,984
기타수익	559,415	386,733	172,682
1. 전입금수익	462,502	343,477	119,025
2. 기부금수익	5,746	10,597	△ 4,851
3. 대손충당금환입	3,131	373	2,757
4.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0	0	0
5. 기타수익	88,035	32,285	55,75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1196 ('24. 4.25)

(2) 기능별 재정운영표

-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제29조의2²⁹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²⁹¹⁾에 따라 작성되는 바,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것으로서, 직전회계연도에는 1조 217억 5,300만원 흑자였고, 2023회계연도의 경우에도 982억 7,200만원 흑자로 제출됨

〈표 5-20〉 재정운영표(기능별)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 감 액
재 정 운 영 결 과 (A-B)		(98,272)	(1,021,753)	923,481
재 정 운 영 순 원 가 (① + ② + ③ - ④) (A)		25,105,156	27,110,377	△ 2,005,221
	사 업 순 원 가 ①	22,635,776	24,729,809	△ 2,094,033
	관 리 운 영 비 ②	2,202,987	2,234,373	△ 31,386
	비 배 분 비 용 ③	1,521,926	1,680,818	△ 158,891
	비 배 분 수 익 ④	1,255,533	1,534,623	△ 279,089
일 반 수 익 (B)		25,203,428	28,132,131	△ 2,928,703

※ 재정운영결과 괄호는 흑자를 의미

290)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재정운영표)

②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순원가 가. 총원가 나. 사업수익
2. 재정운영순원가 가. 관리운영비 나. 비배분비용 다. 비배분수익
3. 재정운영결과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원가계산)

② 원가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9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재정운영표 작성과 제29조의2에 따른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정운영순원가**²⁹²⁾는 직전회계연도(27조 1,103억 7,700만원)보다 △ 2조 52억 2,100만원 감소한 25조 1,051억 5,600만원으로
- **사업순원가**는 총원가에서 사업수익²⁹³⁾을 차감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24조 7,298억 900만원)보다 △2조 940억 3,300만원 감소한 22조 6,357억원 7,600만원이며
 - **관리운영비**²⁹⁴⁾는 인건비, 경비, 정부간이전비용 및 민간등이전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2조 2,343억 7,300만원)보다 △313억 8,600만원 감소한 2조 2,029억 8,700만원이고,
 - **비배분비용**²⁹⁵⁾은 직전회계연도(1조 6,808억 1,800만원)보다 △1,588억 9,100만원 감소한 1조 5,219억 2,600만원이고
 - **비배분수익**²⁹⁶⁾은 1조 2,555억 3,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5,346억 2,300만원)보다 △2,790억 8,9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 **일반수익**²⁹⁷⁾은 직전회계연도(28조 1,321억 3,100만원)보다 2조9,287억 300만원 감소한 25조 2,034억 2,800만원으로 제출됨

292) 사업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293)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

294)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

295) 임시적·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 및 사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어 총원가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

296) 임시적·비경상적 수익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사업수익에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수익

297) 사업수익이나 비배분수익에 속하지 않는 지방세수익, 과태료수익, 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등을 의미

3. 순자산변동표 관련

- **순자산변동표**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임²⁹⁸⁾
- 2023회계연도 순자산의 증가는 1조 8,084억 7,500만원이고, 순자산의 감소는 2,917억 8,700만원으로 순증액은 1조 5,166억 8,700만원으로 검토됨
 - 순자산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①조직개편 및 부서이관 등 자산이동에 따른 증가액 117억 700만원, ②양여·기부로 인한 자산 증가액 등 1조 3,396억 6,000만원, ③기타 순자산의 증가액 4,571억 700만원임
 - 순자산의 주요 **감소사유**로는 ④재산이관·관리전환에 따른 자산 감소액 △117억 700만원, ⑤주택재개발 등의 양여·기부로 인한 자산 감소액 △32억 7,300만원, ⑥토지분할 감소 및 합병말소등의 기타 순자산의 감소액 △2,768억 600만원이 감소된 것임
- 2023회계연도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132조 8,106억 6,600만원에서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인 982억 7,200만원과 순자산의 순증액 1조 5,166억 8,700만원을 더한 **134조 4,256억 2,600만원**으로 지난 '22회계연도(132조 8,106억 6,600만원)보다 1.2%, 1조 6,149억 5,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298)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순자산변동표)

〈표 5-21〉 순자산변동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순자산 변동 사유
		금 액	구성비	
기 초 순 자 산 (A)		132,810,666		
재 정 운 영 결 과 (B)		(98,272)		
순 자 산 의 증 가 (C)		1,808,475	100.0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	-	
	회 계 기 준 변 경 으 로 생 긴 누 적 이 익	-	-	
	재 산 이 관 · 관 리 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①	11,707	0.6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재산이관
	양 여 · 기 부 로 생 긴 자 산 증 가 ②	1,339,660	74.1	·도시개발 관련 및 민간투자시설 귀속분 증가
	기타 순자산의 증가 ③	457,107	25.3	·토지 분할증가 및 합병증가 등
순 자 산 의 감 소 (D)		△291,787	100.0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	
	회 계 기 준 변 경 으 로 생 긴 누 적 손 실	-	-	
	재 산 이 관 · 관 리 전환으로 생긴 자산감소 ④	△11,707	4.0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재산이관
	양 여 · 기 부 로 생 긴 자 산 감 소 ⑤	△3,273	1.1	·주택재개발 사업 등 시유재산 무상양여 감소
	기타 순자산의 감소 ⑥	△276,806	94.9	·토지 분할감소 및 합병말소 등
기 말 순 자 산 (A + B + C - D)		134,425,626		

※ 재정운영결과 괄호는 흑자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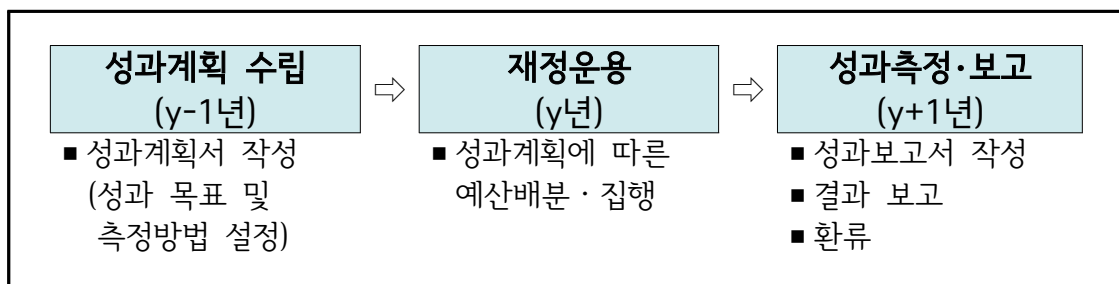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결산보고서

VI.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1. 성과보고서 검토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²⁹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³⁰⁰⁾
- 또한 「지방회계법」은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의 구성 서류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고,³⁰¹⁾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⁰²⁾

〈표 6-1〉 성과 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p.59

299)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0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과 목표
 -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01)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중략)

4. 성과보고서

302)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 ④ 제15조제4항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39개 실·본부·국에 대해 39개 전략목표수, 225개 정책사업목표 개수, 430개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바 있으나,

- '23회계연도 결산서에 포함된 성과보고서는 39개 실·본부·국에 대한 39개 전략목표수와 227개 정책사업목표 개수, 433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에 대한 성과달성도를 제출함

〈표 6-2〉 회계연도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현황

(단위 : 개)

회계연도	성 과 계 획 서			성 과 보 고 서		
	전 략 목 표	정 책 사 업 목 표	정 책 사 업 목 표 지 표	전 략 목 표	정 책 사 업 목 표	정 책 사 업 목 표 지 표
2023	39	225	430	39	227	433
2022	41	222	420	38	248	439
2021	42	215	412	41	225	426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별 결산서

○ 서울시는 '23년 도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수 회 개정하여³⁰³⁾ 기존(6실 4본부 11국 15관·단 3합의제)의 조직에서 6실 5본부 10국 15관·단 3합의제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의 이체³⁰⁴⁾가 총 191건, 4,429억 9,100만원 발생한 바,

303)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4, 의결일 '23. 5. 3)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65, 의결일 '23. 6.28)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51, 의결일 '23. 9. 8)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16, 의결일 '23.12.15)

304)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생략)

- '24년 2월, 성과보고서 작성·제출 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상 변경된 조직 및 '23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수정한 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초 제출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개수,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³⁰⁵⁾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산 요구 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³⁰⁶⁾

-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과계획서를 최종예산과 일치시키도록 개선 요구한 사례가 있음³⁰⁷⁾
- '23회계연도의 경우, 본예산(47조 1,905억 1,200만원)과 최종예산(50조 3,759억 8,200만원)이 6.8%, 3조 1,854억 7,000만원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23년도에는 명시적으로 4회의 조직개편을 하여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상 성과계획서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305)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간 차이 (실국명 기준)

- 조직개편에 따라 성과계획서의 ①안전총괄실, ②한강사업본부가 제외됨
- 조직개편에 따라 성과보고서에는 ①재난안전관리실, ②미래한강본부가 추가됨

306)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150

- 예산 요구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확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수정하고, 향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
-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

30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p.56~5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p.204~20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p.198~20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p.192~194

- 성과계획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지 않아,³⁰⁸⁾ 각 부서에서는 통일된 지침 없이 '23회계연도가 종료된 '24년 2월, 성과보고서 작성 시점이 되어서야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부서의 판단하에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사료됨

○ 「국가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³⁰⁹⁾

- 「지방재정법」의 경우에는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서류인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³¹⁰⁾ 기타 관련 법령에도 변경된 성과계획서의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 「지방재정법」도 「국가재정법」과 동일하게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경우, 사후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법령에 성과계획서의 수정시기·방법 및 변경된 성과계획서의 의회 제출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재차 개선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출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433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중 ①74개 지표(17.1%)는 **초과달성**, ②262개 지표(60.5%)는 **달성**, ③97개 지표(22.4%)는 **미달성**한 것으로 검토됨

308)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6190 ('24. 5.21),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첨부서류 수정 현황 제출”
○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첨부서류 수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09) 「국가재정법」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10)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성과계획서
9 ~ 14 생략

〈표 6-3〉 '23회계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달성도 현황

(단위 : 개, %)

실·본부·국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39	227	433 (100.0)	74 (17.1)	262 (60.5)	97 (22.4)
대 변 인	1	1	2	0	2	0
홍 보 기 획 관	1	6	13	2	10	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1	2	3	1	2	0
여 성 가 족 정 책 실	1	7	13	2	9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	9	12	1	9	2
비 상 기 획 관	1	1	2	0	1	1
디 지 털 정 책 관	1	8	15	6	9	0
민 생 사 법 경 찰 단	1	1	3	0	3	0
미 래 청 년 기 획 단	1	1	2	0	2	0
기 획 조 정 실	1	10	18	2	14	2
소 방 재 난 본 부	1	9	23	2	13	8
경 제 정 책 실	1	11	22	4	16	2
복 지 정 책 실	1	7	13	1	8	4
도 시 교 통 실	1	10	19	2	13	4
기 후 환 경 본 부	1	9	14	0	10	4
문 화 본 부	1	10	13	1	7	5
관 광 체 육 국	1	5	9	2	3	4
평 생 교 육 국	1	6	9	4	4	1
시 민 건 강 국	1	13	31	3	16	12
행 정 국	1	9	14	3	9	2
재 무 국	1	6	12	3	6	3
미 래 공 간 기 획 관	1	3	6	1	3	2
디 자 인 정 책 관	1	3	5	3	2	0
기 술 심 사 담 당 관	1	2	4	0	3	1
재 난 안 전 관 리 실	1	11	15	4	10	1
주 택 정 책 실	1	12	24	5	11	8
도 시 계 획 국	1	6	6	2	3	1
균 형 발 전 본 부	1	10	17	0	13	4
푸 른 도 시 여 가 국	1	13	18	2	14	2
물 순 환 안 전 국	1	3	5	0	4	1
인 재 개 발 원	1	1	3	0	1	2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1	5	10	0	3	7
미 래 한 강 본 부	1	2	6	0	4	2
서 울 역 사 박 물 관	1	1	3	1	2	0
시 립 미 술 관	1	1	6	2	2	2
의 회 사 무 처	1	3	24	7	12	5
감 사 위 원 회	1	6	11	3	7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1	2	2	0	0
자 치 경 찰 위 원 회	1	3	6	3	2	1

- 성과지표별로 검토하면, 시민건강국의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실적**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DNA 검사실적을 측정하는 지표로 '23회계연도에 39,098건을 목표로 하여 112.6%, 44,006건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6-4〉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실적 성과지표 관련

(단위 : 건,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실적(건)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	목표	39,098	39,788
		실적	44,006	40,044
		달성률	112.6	100.6

- 그러나 동 성과지표는 직전회계연도에 이미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실적 40,044건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23회계연도 목표를 소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푸른도시여가국의 **공원 녹색여가 프로그램 참여**는 녹색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 녹색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23회계연도에 520만명을 목표로 하여 107.5%, 약 559만 2,000명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 동 성과지표는 직전회계연도에 달성한 성과보다 낮은 수준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23년도 5월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발표에 따라 외부활동 활성화가 예상됨에도 '23회계연도 목표를 소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사료됨

〈표 6-5〉 공원 녹색여가 프로그램 참여 성과지표 관련

(단위 : 천명,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공원 녹색여가 프로그램 참여(천명)	공원 녹색여가 프로그램 참여인원	목표	5,200	5,200
		실적	5,592	5,272
		달성률	107.5	101.4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사유로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³¹¹⁾ 과거 추세치와의 비교를 통해 자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재난안전관리실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횟수를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23회계연도에 36회를 목표로 하여 100% 달성한 것으로 제출됨

〈표 6-6〉 산업안전보건 교육 성과지표 관련

(단위 : 회,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산업안전보건 교육(회)	교육 횟수	목표	36	36
		실적	36	30
		달성률	100	83.3

31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17. 9), p.11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경우

-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 설정 시, 가급적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도록 하고, 사업특성상 **결과지표**로 설정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출지표**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³¹²⁾
- 해당 지표의 정책사업목표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으로 ‘교육 횟수’라는 **성과지표**는 산출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책사업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성과지표로 사료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1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17. 9), p.9

- 사업특성상 결과지표로 설정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출지표로 설정

예) 홍보사업 : 단순히 산출의 양을 측정하는 ‘홍보건수’가 아니라 산출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인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를 성과지표로 제시

-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구 분	개 념	특 성
투입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교육 수료자 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 기후환경본부의 **친환경차 보급실적**은 친환경차량 보급대수를 측정하는 성과 지표로 '23회계연도 성과 달성률이 42.6%인 것으로 확인됨

〈표 6-7〉 친환경차 보급 실적 성과지표 관련

(단위 : 대,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친환경차 보급 실적(대)	전기차, 수소차 보급대수	목표	35,000	27,000
		실적	14,924	23,821
		달성률	42.6	88.2

- 해당 지표는 '22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비율³¹³⁾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 후 계산하여 달성률을 88.2%로 제출한 사례로 시정 권고된 바 있음에도 '23회계연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산식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합산한 수치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³¹⁴⁾ 있으므로 향후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산식을 정할 때 단순합산하여 결과치를 계산하는 측정방식은 지양하고, 중요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시민건강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3회계연도에 흡연율 27.3%를 목표로 하였으나 성과 달성률이 0%인 것으로 확인됨

313) 전기차: 23,281대, 수소차: 540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p.134~135

31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17. 9), p.8

〈표 6-8〉 성인 남성 흡연율 성과지표 관련

(단위 :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성인 남성 흡연율(%)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피운 사람 중에서 현재 흡연자의 수 /조사대상 응답자수 ×100	목표	27.3	27.6
		실적	0	28.1
		달성률	0	101.8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은 성과를 미달성한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하도록 한 바,³¹⁵⁾ 성과 미달성 사유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질병관리청) 당해연도 실적 미발표로 인한 실적 산출 불가로 기재('24년 4월 발표 예정)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는 성과보고서 작성일정상 작성 및 제출기한을 2월말로³¹⁶⁾ 정하고 있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평가결과가 3~4월에 공개되면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목표달성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성과지표 실적치로 활용하는 것은 성과를 계획·평가하여 재정 운영에 반영하려는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취지³¹⁷⁾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성인 남성 흡연율 측정을 위한 방법과 시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1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4. 1), p.79

○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작성 충실

· 성과분석 시 성과미달성, 초과 달성(130% 이상)한 경우에 대한 원인분석 제시

31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4. 1), p.82

○ 작성일정

-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2.28일, 자치단체의 각 실국단위)

- 성과보고서 검토보완 후 확정(3.20일, 자치단체장 보고)

- 성과보고서 결산 검사 및 의회 제출(안) 확정(4월 말, 결산부서)

- 성과보고서 지방의회 제출(~5.31, 결산부서)

31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4. 1), p.60

○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임

- 관광체육국의 **시립 복합체육문화시설 이용자 만족도**는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23회계연도의 경우, 만족도 90점을 목표로 하여 실제 80.3점이 되어 달성률은 89.2%인 것으로 확인됨

〈표 6-9〉 시립 복합체육문화시설 이용자 만족도 성과지표 관련

(단위 : 점,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시립 복합체육문화시설 이용자 만족도(점)	5개 차원, 차원별 2~5개 설문 실시로 종합만족도 측정	목표	90	89.7
		실적	80.3	83.8
		달성률	89.2	93.4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은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충실히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³¹⁸⁾
- 사업부서는 스포츠 행사 확대 등으로 편의시설 증설 및 개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편의시설 미확충 등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개선사항은 일절 작성하지 않아 성과보고서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에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획조정실의 **회의 운영 횟수**는 부서간 협업·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 주요회의 운영 횟수를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23년도에는 회의 운영 횟수 170회를 목표로 하여 170회, 달성률 100%로 제출됨

318)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4. 1), p.79

○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작성 충실

· 성과분석 시 성과미달성, 초과 달성(130% 이상)한 경우에 대한 원인분석 제시

〈표 6-10〉 시정 주요회의 운영 성과지표 관련

(단위 : 회,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시정 주요회의 운영(회)	회의 운영 횟수	목표	170	170
		실적	170	186
		달성률	100	109.4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 설정 시,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며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³¹⁹⁾
- 해당 지표의 정책사업 목표는 ‘시정운영계획 체계적 관리 및 대외협력체계 강화’로 ‘회의 운영 횟수’라는 성과지표는 ‘회의 빈도’ 등과 같은 지엽적 지표로 사료되어 정책사업목표를 통합적 시각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성과지표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19)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17. 9), p.8

○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지표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함

-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
- 기획·조정 등 업무의 경우 측정가능한 지표 설정을 위해 정책사업목표와 거리가 먼 ‘회의 빈도’, ‘참가자 수’, ‘예산교부율’ 등과 같은 지엽적 지표 설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2. 성인지결산서 검토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³²⁰⁾
- 또한 「지방회계법」³²¹⁾은 성인지결산서를 결산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320)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321) ■ 「지방회계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성인지 결산서

■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 서울시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제출한 '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대상 사업 개수는 293개로, 23년도 예산안 제출 시(294개)에 비해 △1개 감소하였으며 성인지 대상 사업 예산현액 4조 549억 2,100만원 중 96.6%, 3조 9,190억 6,8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6-11〉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293	4,054,921	3,919,068	96.6
기	일 반 회 계	285	3,700,492	3,584,249	96.8
	기타특별회계	266	353,202	333,704	94.4
	금	22	1,227	1,114	90.8

- '23회계연도는 총 388개의 성과목표 중 240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61.9%로 확인되며 이는 지난 '22회계연도(62.4%) '21회계연도(65.2%)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6-12〉 연도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추이('23~'21)

(단위 : 개, %)

구분	2023	2022	2021
성과목표수	388	431	431
달성 수	240	269	281
달성률	61.9	62.4	65.2

- '23회계연도의 경우, 본예산(47조 1,905억 1,200만원)과 최종예산(50조 3,759억 8,200만원)이 6.8%, 3조 1,854억 7,000만원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23년도에는 명시적으로 4회의 조직개편을 하여 성인지

예산서상 사업금액, 조직별 성인지 예산사업 내역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 「지방재정법」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³²²⁾ 지난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성인지 예산서를 수정·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지난 '21년도에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책무를 부여하고³²³⁾ 있는 바, 성인지결산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필요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22)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성인지 예산서

323)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교육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 「지방재정법」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자원 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³²⁴⁾
- 「2023~2027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3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1개)와 특별회계(12개), 기금(17개)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 의회의 심의를 거쳐 '23년도 예산이 수정의결되었고, '23년 6월,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도 수정의결된 바 있어 「2023~2027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도 예산의 수정내역과 연동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24)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표 6-1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규모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23년도 예산안) (A)	' 2 3 년 도 본 예 산 (의 회 의 결)	' 2 3 년 도 제 1 회 추 경 (의 회 의 결) (B)	증 감 (B - A)
총 계		47,205,227	47,190,512	50,279,162	3,073,935
	일 반 회 계	33,524,517	33,466,084	36,169,531	2,645,014
	특 별 회 계	13,680,710	13,724,427	14,109,631	428,921

- '23년도의 경우, 본예산(47조 1,905억 1,200만원)과 최종예산(50조 3,759억 8,200만원)이 6.8%, 3조 1,854억 7,000만원 차이가 있고, 지난해 7월 의결된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50조 2,791억 6,200만원)의 경우에도 기정예산 대비 6.5%, 3조 886억 5,000만원 증액된 바,
- 추경예산의 경우, 당초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향후 5년간 재정전망 중 2024년도에 목표한 재정규모(48조 4,476억원)를 초과한 금액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표 6-14〉 '23~27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2022 (최종)	계획기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총 계	522,233	472,052	484,476	504,386	521,403	541,190	2,523,507
일 반 회 계	379,879	335,245	342,722	358,800	373,407	389,113	1,799,287
특 별 회 계	142,354	136,807	141,754	145,586	147,997	152,077	724,221

○ 다만, 현재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은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에 해당되어³²⁵⁾ 서울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종합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초가 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도 연계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³²⁶⁾ 재정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변동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련 법령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사유·시기·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을 재차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325)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행정안전부,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22. 8), p.3

○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확정되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더라도 변경 가능(지방재정법 제33조제8항)

-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수립 직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326)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VII.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

-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³²⁷⁾ 지출된 예비비에 대해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³²⁸⁾
 - 또한,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³²⁹⁾
 - 서울특별시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 및 기금 결산서와 함께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있으며 '23회계연도의 경우에도 별도의 안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³³⁰⁾
- 「지방재정법」은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 각 회계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327)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28)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9)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략)

330) 의안번호 제11-01898호,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³³¹⁾

- 또한, 「지방재정법」은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의 제한(일반회계 예산총액 100분의 1 이내)과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³³²⁾ 서울특별시는 '23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음

○ '23회계연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의 경우, 본예산에 1,08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³³³⁾ '23년 5월,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1억 2,100만원을 감액하여 1,050억 1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³³⁴⁾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특별회계와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 예비비 24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³³⁵⁾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6억 1,700만원을 감액한 238억 7,000만원으로 조정하였음³³⁶⁾

331)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32)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33) '23년도 본예산중 일반회계 예비비 ①일반 예비비 1,081억 2,200만원, ②목적 예비비 200억원

334) '23년도 최종예산중 일반회계 예비비 ①일반 예비비 1,050억 100만원, ②목적 예비비 200억원

335) '23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현황

①교통사업특별회계 15억 5,100만원, ②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억 3,200만원,
③주택사업특별회계 24억 5,000만원, ④도시개발특별회계 59억 6,500만원,
⑤균형발전특별회계 9억 9,400만원, ⑥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600만원,
⑦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900만원, ⑧소방특별회계 21억 6,000만원,
⑨수도사업특별회계 93억원, 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억 6,700만원

336) '23년도 최종예산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현황

①교통사업특별회계 17억 7,000만원, ②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억 4,000만원,
③주택사업특별회계 23억 7,800만원, ④도시개발특별회계 40억 5,700만원,
⑤균형발전특별회계 11억 8,600만원, ⑥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억 4,100만원,
⑦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6,600만원, ⑧소방특별회계 29억 6,200만원,
⑨수도사업특별회계 93억원, 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억 6,700만원

〈표 7-1〉 2023회계연도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	최종예산
총 계	152,610	△3,739	148,871
일 반 회 계	128,122	△3,121	125,001
일 반 예 비 비	108,122	△3,121	105,001
목 적 예 비 비	20,000	-	20,000
특 별 회 계	24,487	△617	23,870
기 타 특 별 회 계	14,320	△617	13,702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0,167	-	10,16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09 ('24. 3.28)

○ '23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는 총 1,488억 7,100만원으로 이 중 582억 900만원(101건)을 지출결정하여 551억 1,100만원(91건)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에는 1,281억 2,200만원중 41.4%, 517억 9,200만원(90건)을 지출결정하고, 486억 9,400만원(80건)을 지출한 것으로

■ 일반회계 예비비중 일반 예비비는 474억 4,200만원(41건)을 지출결정하여 444억 1,100만원(31건)을 지출하였으며, 목적 예비비는 43억 5,000만원(49건)을 지출결정하여 42억 8,300만원(49건)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예비비 4건, 13억 2,3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3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³³⁷⁾ 소방특별회계에서는 1건, 5억 1,1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337)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잔액 : 32,000원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4건, 38억 8,1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8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³³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2건, 7억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음

〈표 7-2〉 예비비 지출 현황 ('23회계연도~'21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지출잔액 ^{주1)} (가-나-다)
2023	소 계	148,871	58,209	55,111	173	2,924
	일반 회 계	125,001	51,792	48,694	173	2,924
	특 별 회 계	23,870	6,416	6,416	-	0.0 ^{주2)}
2022	소 계	168,804	81,621	79,428	445	1,748
	일반 회 계	147,070	70,995	69,349	12	1,633
	특 별 회 계	21,733	10,626	10,078	432	115
2021	소 계	167,693	93,814	90,771	-	3,042
	일반 회 계	150,946	89,777	86,767	-	3,010
	특 별 회 계	16,747	4,036	4,003	-	32

※ 주1) 지출잔액은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금액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중 지출결정되지 않은 732억 800만원(1,250억 100만원 - 517억 9,200만원)은 불용처리됨

주2) '23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잔액은 34,000원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09 ('24. 3.28)

- 「지방재정법 시행령」³³⁹⁾은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의 용도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건중 보조금으로 지출한 사례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338)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잔액 : 2,000원

33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표 7-3A〉 예비비 지출액중 보조금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출액	지 출 사 유
계		7,447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5,123	
	총 합 사 회 복 지 관 운 영	571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노 인 총 합 복 지 관 운 영	42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시 니 어 클 럽 운 영 지 원	57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발 달 장 애 인 평 생 교 육 센 터 운 영	72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뇌 병 변 장 애 인 비 전 센 터 운 영	3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체 육 시 설 운 영	13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복 지 관 운 영	316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의 료 재 활 시 설 운 영	18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가산급여	3,431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매칭비
	주 거 급 여 수 급 자 지 원	598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매칭비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800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800	침수 위험지역 방지시설 설치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900	
	결핵 관 리·보 건 소 결핵 관 리 (자 체)	900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241	
	노 인 총 합 복 지 관 운 영	7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체 육 시 설 운 영	51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노 숙 인 일 시 보 호 시 설 운 영	24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노 숙 인 자 활 시 설 운 영	108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노 숙 인 재 활 시 설 운 영 (전 환 사 업)	42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노 숙 인 요 양 시 설 운 영 (전 환 사 업)	9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09 ('24. 3.28)

〈표 7-3B〉 예비비 지출액중 보조금 지출 현황 (통계목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출액	지 출 사 유
계		7,447	
사 회 복 지 시 설 법 정 운 영 비 보 조		1,281	
아 동 복 지 시 설	운 영 지 원	450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가 정 폭 력 피 해 자 보 호 시 설	운 영 지 원	0.9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한 부 모 가 족 복 지 시 설	운 영 지 원	165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전환사업)		27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공 동 생 활 가 정	운 영	92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단 기 거 주 시 설	운 영	55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199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수 어 통 역 센 터	운 영	19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의 료 재 활 시 설	운 영	34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장 애 인 주 간 보 호 시 설	운 영	86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정 신 요 양 시 설 운 영 보 조 (국 비)		27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정 신 재 활 시 설 운 영 보 조		105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정 신 질 환 자 지 역 사 회 전 환 시 설 운 영		3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		14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09 ('24. 3.28)

-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 대해 예비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³⁴⁰⁾

34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예비비의 지출제한중 “실정법상 제약”으로 긴급재해대책 성격일 때에 예외적으로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더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정하고 있어³⁴¹⁾ 지난 '23년 1~2월에 있었던 겨울철 한파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예비비로 지원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됨

〈표 7-4〉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예비비의 지출제한

다. 예비비의 지출제한

-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 내재적 제약
 -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②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 실정법상 제약(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 ①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 ② 업무추진비·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2. 7), p.417

- 다만,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지출한 사례중 ①복지정책실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가산급여**(34억 3,100만원)와 ②주택정책실의 **주거급여수급자 지원**(5억 9,800만원)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매칭시비를 예비비 지출을 통해 확보한 사례로 검토되는 바,

3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하기 앞서 예비비의 지출제한중 “내재적 제약”에 따라 이용·전용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부서 및 예비비 관리부서는 동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①**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가산급여**는 지난 '23년 6월에 변경 내시되었으며,³⁴²⁾ ②**주거급여수급자 지원**는 지난 '23년 9월에 변경 내시되어³⁴³⁾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회계연도중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 시비를 지출하여야 하는데 해당 예산과목이 “보조금”인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편의성 등을 우선시하여 예비비로 지출하기 보다는 예비비의 지출제한을 고려하여 추경 등 보다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 '23회계연도중 지출된 예비비 집행사례를 검토하면 재무국은 지난 '23년 1월 5일,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³⁴⁴⁾ ①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5억 6,400만원) ②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2억 3,000만원)에 대해 예비비 7억 9,500만원을 지출요구한 바,³⁴⁵⁾
 - 예산부서는 1월 9일, 재산관리과가 지출요구한 예비비에 대해 사용 승인 하였고³⁴⁶⁾ 사업부서는 1월 11일, 지출계획한 예비비 7억 9,500만원을 전액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³⁴⁷⁾

342) ■ 보건복지부, 주거복지지원과-3433 ('23. 6.21) “2023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가산급여)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변경 알림”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062 ('24. 3.26)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가산급여 : '23. 8.24 간주처리 49억 8,400만원

343)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3433 ('23. 9. 7) “2023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예산 내시 변경 통보(2차)” (국비공문 확인)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062 ('24. 3.26)

※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 '23.12.12 간주처리 12억 8,300만원

344)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157 ('23. 1. 5), “-시유재산 분할납부 이자 관련- 예비비 사용계획”

345)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210 ('23. 1. 5), “예비비 지출 요구”

346)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276 ('23. 1. 9), “예비비 사용승인 알림”

347)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09 ('23. 3.28)

〈표 7-5〉 재무국 재산관리과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 지출요구일	예비비 사용승인일	예비비 지출일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564	564	-	'23. 1. 5	'23. 1. 9	'23. 1.11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230	230	-	'23. 1. 5	'23. 1. 9	'23. 1.11

- 사업부서는 소요예산 추계시 '23년도 예산안 제출시점('22.11. 1) 직전에 발표된 COFIX³⁴⁸⁾가 3.4%('22.10.17 기준)임에 따라 '23년도 소요예산 추계시 일부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3.6%의 금리를 적용하였으나,
 - 이후 분할납부 시점('23년 1월)에 적용될 실제 금리가 4.34%로 발표되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보다 0.76%p 증가됨에 따라, 분할납부 대금부족 사유가 발생하였고, 부족분에 대해 추경을 통해 확보하게 될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이자비용을 감소시키고자 예비비를 통해 부족분을 지출한 것으로 검토됨³⁴⁹⁾
-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매월 15일에 COFIX를 발표하고 있어, '23년도 1월에 적용될 COFIX는 지난 '22년 12월 15일에 고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결이 임박한 시기라 하여도 '23년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이 결정되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부서로서는 본예산의 의결 일정이 임박하여 '22년 12월에 고시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나, COFIX는 '22

348) COFIX(Cost of Funds Index) : 정보제공은행들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를 의미

349)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157 ('23. 1. 5), “-시유재산 분할납부 이자 관련- 예비비 사용계획”

□ 추진계획

- 이자율 상승으로 분할납부 대금이 부족하나, 추경편성으로 부족한 금액을 확보하는 경우 지체 시기만큼 이자액이 증가하므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연초에 신속히 집행하고자 함
- 최대한 이자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3. 1.11자 기준으로 이자기간을 산출, 연초에 집행함으로써 예산 절약

년 11월에도 3.98%로 발표되어 이미 예산안 제출시 예상한 금리 (3.6%)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은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되었다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거나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향후에는 유사사례 발생시 예비비를 지출하여 소요예산 산출의 미흡함을 회석하기 보다는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표 7-6〉 COFIX 통계

(단위 : %)

공시일	대상월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	신잔액기준
2023/02/15	2023/01	3.82	3.63	3.02
2023/01/16	2023/12	4.29	3.52	2.92
2022/12/15	2022/11	4.34	3.19	2.65
2022/11/15	2022/10	3.98	2.85	2.36
2022/10/17	2022/09	3.40	2.52	2.04

- 상수도사업본부(現 서울아리수본부)는 **아리수 생산재료비** 사업 추진중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소요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지난 '23년 10월 25일,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³⁵⁰⁾ 예비비 32억 1,700만원을 사용 요청하였으며³⁵¹⁾
-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부서³⁵²⁾는 12월 11일, 기전설비과가 사용 요청한 예비비에 대해 사용 승인하여³⁵³⁾ 12월 15일, 승인된 예비비(32억 1,700만원)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³⁵⁴⁾

〈표 7-7〉 아리수 생산재료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사용승인일	예비비 지출일
동 력 비	3,217	3,217	-	-	'23.12.11	'23.12.15

- 예비비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출한 **아리수 생산재료비**는 서울시 수도물인 아리수를 생산하고자 '23년도 본예산에 1,62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던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85억 3,500만원)과 예비비(32억 1,7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95억원으로 '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1.9%, 35억 7,1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검토됨
- 동 사업의 세출과목중 **동력비**의 경우에는 당초 본 예산에 67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중 예비비(32억 1,700만원), 전용(46억원)을 통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749억 9,600만원으로 본 예산 편성규모보다 11.6%, 78억 1,700만원 증가된 것으로³⁵⁵⁾

350) 서울특별시, 기전설비과-9863 ('23.10.25), “동력비 예산 추가 확보계획”

351) 서울특별시, 기전설비과-11440 ('23.12.11), “예비비 사용승인 및 세출예산 재배정 요청”

352) 상수도사업본부(現 서울아리수본부) 기획예산과

353) 서울특별시, 기획예산과-14390 ('23.12.11), “예비비 사용 승인”

354)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09 ('23. 3.28)

355) 아리수 생산재료비의 목중 동력비의 예산현액은 본예산 편성분(671억 7,900만원), 예비비지출(32억 1,700만원), 전용(46억원)으로 전년도이월액, 변경은 없음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의 예비비 지출 및 전용 사유에 대해 연중 3회 인상된 전기요금을 주요 원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23년도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인상을 고시한 시기는 '22년 12월('23. 1. 시행), '23년 5월('23. 5.16 시행), '23년 11월('23. 11. 9 시행)로 확인되는 바,
- 지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시점('23. 5.30)전에 이미 2회의 전기요금 인상이 시행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재원으로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충당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추경을 통해 추가소요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력비**뿐만 아니라 **일반재료비**, **약품비** 경우에도 부족한 재원을 전용, 변경 등을 통해 확보하고, 여유재원은 타 사업으로 변경해준 사례가 있어 서울시 내부 의사결정 사항인 변경·전용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보다는 추경을 통해 재원을 증·감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표 7-8〉 2023회계연도 아리수 생산재료비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주1)}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62,231	179,500	175,625	304	3,571
일반재료비	20,503	31,634 ^{주2)}	30,636	304	693
약품비	13,276	11,597 ^{주3)}	10,696	-	900
원수구입비	55,192	55,192	54,249	-	942
수선유지비	6,081	6,081	5,105	-	975
동력비	67,179	74,996 ^{주4)}	74,937	-	58

주1)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등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하는 증·감액을 반영한 것

주2) 일반재료비 예산현액 316억 3,400만원은 예산액(205억 300만원), 이월액(85억 3,500만원), 전용(9억 5,100만원), 변경(16억 4,500원)임

주3) 약품비 예산현액 115억 9,700만원은 예산액(132억 7,600만원), 변경(△16억 7,900만원)임

주4) 동력비 예산현액 749억 9,600만원은 예산액(671억 7,900만원), 예비비지출(32억 1,700만원), 전용(46억원)임

- 특히, 지난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등은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은 바,

- 사업부서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괄 부서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부족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정상적인 절차보다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편의적 대안을 선호한 결과로 사료되어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관리하는 예산부서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미래청년기획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에 대해 서울시 관내 대학교에도 '23년도 1학기분에 해당되는 지원금³⁵⁶⁾을 지출하고자 지난 '23년 5월 22일,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³⁵⁷⁾ 예비비 2억 5,300만원을 사용 요청하였으며³⁵⁸⁾

- 예산부서는 5월 24일, 미래청년기획단이 지출요구한 예비비에 대해 사용 승인하였고³⁵⁹⁾ 사업부서는 7월 27일, 지출계획한 예비비 2억 5,300만 원을 전액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³⁶⁰⁾

〈표 7-9〉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사용승인일	예비비 지출일
사 무 관 리 비	253	253	-	-	'23. 5.24	'23. 7.27

356)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금

정부(농림축산식품부) 1,000원 + 학생 1,000원 + 대학교 부담금(자율) + 서울시 1,000원(추가분)

357)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7035 ('23. 5.22),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358)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7037 ('23. 5.22),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천원의 아침밥 지원)”

359)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6281 ('23. 5.24), “예비비 사용승인 알림”

360)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09 ('23. 3.28)

- 서울시는 지난 '23년 4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신속하게 확산되도록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으며,³⁶¹⁾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이미 참여중인 5개 대학교³⁶²⁾외에 다른 대학도 추가로 참여할 것을 독려한 바 있음
- 서울시는 정부지원금(1,000원), 학생부담금(1,000원)과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대학교 부담금이 서울 소재 대학교의 정책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 판단하여 서울시가 “1식(食)당 1,000원”을 부담하여 대학과 학생의 부담을 낮추고자 한 것임
- '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속적인 협조요청 및 사업홍보³⁶³⁾로 서울 소재 참여 대학교가 26개 대학으로 확대되어 '23년도 1학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수요에 따라 소요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임
- 다만, 동 예비비 지출 사례는 당초 농정원³⁶⁴⁾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용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용승인된 예비비를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나,³⁶⁵⁾ 계약 전 시행된 일상감사 결과, 수의계약 용역방식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받아 수의계약이 아닌 대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³⁶⁶⁾

361) 서울특별시, (자료제공)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362) 1기 천원의 아침밥 사업참여 대학교 :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5개)

363)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1488 ('23. 4.14)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신청기간 연장 알림 및 지자체 협조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1553 ('23. 4.19)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관련 협조 요청”

364) 농정원 :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65)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7714 ('23. 6. 8), “서울시 천원의 아침밥 상반기 운영 용역 추진계획”

366) ■ 서울특별시, 공공감사담당관-7758 ('23. 6.19), “일상 감사 의견서 송부(서울시 천원의 아침밥 지원 상반기 운영)”

※ 감사의견 : 1인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의견입니다.

■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의견서 천원의 아침밥 추진 관련 (2023-0492)”

※ 의견 : 수의계약은 계약의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대행협약 자체를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함

- 지난 '23년 6월, 전용방침을 수립하여 예비비로 확보한 재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고,³⁶⁷⁾ '23년 7월 27일에 '23년도 1학기에 해당되는 소요예산 2억 5,300만원을 전액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³⁶⁸⁾

〈표 7-10〉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승 인 용 일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 무 관 리 비	253	△253	-	'23. 6.29
"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253	

- 예비비가 지출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26개 대학교로 직접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³⁶⁹⁾
- '23년 5월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청할 당시에는 **사무관리비**로 지출결정하고, 예비비를 지출 직전에서만 다른 세출과목으로 전용하였다는 점에서 예산과목에 대한 고민보다 자원 확보를 우선시하여 예비비를 요청한 사례로 판단되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무엇보다도 동 예비비 지출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23년 7월 27일에서야 지출되었다는 점에서, 지난 '23년도 추경예산의 의결일자가 '23년 7월 5일임을 고려하면 추경예산의 사업에 포함하여 의회로부터 심사·의결을 받은 이후 집행하는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이 소홀하였던 결과로 사료됨

367)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8543 ('23. 6.26) “상반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전용계획”

368)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5013 ('24. 4. 3)

369) 26개 대학교에 대해서는 예산과목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고 서울시립대는 공립학교인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중 예산과목을 “공립대학 운영비”로 경정함

- 동 사업은 사업 추진 방식이나 주체 등에 대한 고민보다 재원 확보를 우선시하여 예비비를 통해 지출 계획하고, 지출 계획한 예비비는 통계목의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으며, 결국, 지출시기도 서울시 제1회 추경이후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목적에 집중하여 방법과 비합리적 선택이 발생되는 절차 등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태풍으로 인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잔여일정을 속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에 숙박, 식사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³⁷⁰⁾ 이후 잼버리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예비비 등의 재원은 국가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안내된 바,³⁷¹⁾

-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8월 14일, 예비비를 활용하여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6개 실·본부·국에서 잼버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계획한 것임³⁷²⁾

- 폭염,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해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과생된 비용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어 잼버리 지원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결정은 예비비의 지출범위내로 사료되나,³⁷³⁾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잼버리와 관련하여 예비비 지출이 결정된 9개 세부사업은 실제 예비비를 지출한 이후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한류관**

370)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798 ('23. 8. 8)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관련 협조요청"

1. 안전관리, 식사 제공, 비상의료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
2. 모든 숙소에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하여 배정 등을 확인할 것
3. 잼버리 대원들로부터 지역프로그램을 신청받아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 시행할 것

37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297 ('23. 8. 8)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관련 협조 요청"

1.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니 적극 협조 요청
2. 지방자치단체가 잼버리 지원 관련하여 지출한 예산은 국가차원에서 보전할 예정

372)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9553 ('23. 8.14),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예비비 사용·승인계획"

373)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광 활성화³⁷⁴⁾를 제외한 8개 예비비 지출건은 지출결정된 예비비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됨

〈표 7-11〉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관련 예비비 사용 요구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실·본부·국	부서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예비비 요구액
소 계				1,407
1	기 획 조 정 실	기 획 담 당 관	세 계 잼 버 리 대 회 지 원 (식비, 물품구입비, 대체시설 숙박비 등)	941
2	문 화 본 부	한성백제박물관	박 물 관 유 지 운 영 (잼 버 리) (박물관 야간 개장 프로그램 지원)	16
3		서울공예박물관	박 물 관 운 영 및 시 설 관 리 (잼 버 리) (박물관 야간 개장 프로그램 지원)	16
4	관 광 체 육 국	관 광 산 업 과	한 류 관 광 활 성 화 (잼 버 리) (한류 체험 관광프로그램 운영)	51
5			태 권 도 상 설 공 연 화 지 원 (잼 버 리) (케이팝과 태권도 연계 공연 제공)	36
6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잼버리)	17
7	푸른도시여가국	서부공원여가센터	월 드 컵 공 원 유 지 관 리 (잼 버 리) (케이팝 콘서트 행사장 주차장 사용료)	12
8	미 래 한 강 본 부	기 획 예 산 과 (한강문화관광과)	한 강 사 계 절 축 제 (잼 버 리) (한강페스티벌 공연 및 수영장 야간 개장)	294
9		기 획 예 산 과 (환경수질과)	둔 치 및 화 장 실 청 소 (잼 버 리) (화 장 실 추 가 설 치 운 영)	22

374)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09 ('23. 3.28)

※ **한류관광 활성화**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위해 고용한 통역사의 고용보험금이 당초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시 추계한 것보다 65,800원 초과되어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지출하고, 초과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출결정된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예비비는 지출결정되면 지출사유가 해소되어도 예비비로 되돌릴 수 없는 바, 지출결정된 예비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사례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회계연도중 긴급한 재정소요가 발생하면 이미 지출결정되었으나 전액 불용처리되어 사실상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재원이라 할 지라도 단 1원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비비 사용요청과 지출결정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7-12〉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관련 예비비 결산 결과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소 계	1,407	0.06 ^{주1)}	-	1,407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지원	941	-	-	941
박 물 관 유 지 운 영 (2 0 2 3 세 계 잼 버 리 지 원)	16	-	-	16
박 물 관 운 영 및 시 설 관 리 (2 0 2 3 세 계 잼 버 리 지 원)	16	-	-	16
한 류 관 광 활 성 화 (2 0 2 3 세 계 잼 버 리 지 원)	51	0.06 ^{주1)}	-	51
태 권 도 상 설 공 연 화 지 원 (2 0 2 3 세 계 잼 버 리 지 원)	36	-	-	36
자 원 봉 사 센 터 민 관 협 력 강 화 (2 0 2 3 세 계 잼 버 리 지 원)	17	-	-	17
월 드 컵 공 원 유 지 관 리 (2 0 2 3 세 계 잼 버 리 지 원)	12	-	-	12
한 강 사 계 절 축 제 (2 0 2 3 세 계 잼 버 리 지 원)	294	-	-	294
둔 치 및 화 장 실 청 소 (2 0 2 3 세 계 잼 버 리 지 원)	22	-	-	22

주1) 한류관광 활성화, 65,800원 지출

○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³⁷⁵⁾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서울시는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세부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세부사업 기준 5건, 10억 300만원으로 확인됨

〈표 7-13〉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본예산 삭감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소 계			1,003	1,003
뇌 병 변 장 애 인 비 전 센 터 운 영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50	3	3
장 애 인 복 지 관 운 영	민 간 위 탁 금	△113	73	73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2,898	316	316
거 리 노 숙 인 보 호	민 간 위 탁 금	— ^{주1)}	30	30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 회 복 지 시 설 법정운영비보조	△200 ^{주2)}	105	105
성 산 대 교 성 능 개 선	배 상 금 등	— ^{주3)}	475	475

주1) 거리노숙인 보호는 본예산 심사시 민간위탁사업비를 △1억원 감액하였음

주2)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는 본예산 심사시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억원을 감액하였음

주3) 성산대교 성능개선은 본예산 심사시

- 복지정책실 소관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거리노숙인 보호**, 시민건강국 소관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는 한파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대해 난방비를 예비비를 통해 지원한 사례임

375)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동 사업들의 본예산 삭감내역을 검토한 결과,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은 개소가 지연되고 있는 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 감액조정 하였고,³⁷⁶⁾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시립 및 구립, 법인 복지관의 인건비중 여유분을 감액 조정한 것이며³⁷⁷⁾
 - **거리노숙인 보호**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이동형 목욕차량 구매비를 감액조정 하였고,³⁷⁸⁾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는 정신건강통합센터 프로그램비를 일부 조정하고, 정신재활시설 인건비를 감액조정한 것으로 확인됨³⁷⁹⁾
 - 재난안전실 소관 **성산대교 성능개선**은 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을 예비비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본예산 심사시 삭감내역은 동 사업의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시설비의 일부를 조정한 것임³⁸⁰⁾
-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376)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 p.50

※ 세부사업명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감액내역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센터 운영비 15억원 → 13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37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 p.52

※ 세부사업명 : 장애인복지관 운영

감액내역 : ■ (민간위탁금) 시립복지관 인건비 208억 5,535만 2,000원 →

207억 5,404만 4,000원 (△1억 1,300만 8,000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복지관 인건비(구립 및 법인) 556억 8,744만원 →

527억 8,874만 8,000원 (△28억 9,869만 2,000원)

37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 p.54

※ 세부사업명 : 거리노숙인 보호

감액내역 : (민간위탁사업비) 이동형 목욕차량 구매(1대) 2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1억원)

379)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 p.54

※ 세부사업명 :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감액내역 : ■ (민간위탁금) 정신건강통합센터 운영 18억 4,947만 2,000원 →

17억 2,947만 2,000원 (△1억 2,000만원)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208억 1,368만 9,000원 →

206억 1,368만 9,000원 (△2억원)

380)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 p.121

※ 세부사업명 : 성산대교 성능개선

감액내역 : (시설비) 공사비 161억원 → 91억원 (△70억원)

- 시급성 등이 고려되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사료됨에도 관련 법령 및 기준 위반 결과일 수밖에 없어 동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승인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향후 법령 및 기준 개선 건의 등을 통해 예비비 지출 제한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7-14〉 실·본부·국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건)

실·본부·국		지출결정액 ^{주1)}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건수 ^{주3)}
합	계 ^{주2)}	58,209	(100.0)	55,111	2,924	91
	재난안전관리실	21,077	(36.2)	21,077	0 ^{주4)}	4
	복지정책실	11,157	(19.2)	10,316	840	39
	도시교통실	6,964	(12.0)	6,964	0 ^{주4)}	2
	시민건강국	6,079	(10.4)	5,403	676	18
	서울아리수본부	3,881	(6.7)	3,881	0 ^{주4)}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010	(3.5)	2,010	0 ^{주4)}	5
	물순환안전국	1,500	(2.6)	1,500	-	3
	기획조정실	941	(1.6)	-	941	-
	여성가족정책실	797	(1.4)	797	-	6
	재무국	795	(1.4)	795	0 ^{주4)}	2
	주택정책실	598	(1.0)	598	-	1
	소방재난본부	511	(0.9)	511	-	1
	자치경찰위원회	500	(0.9)	499	0 ^{주4)}	1
	균형발전본부	490	(0.8)	490	0 ^{주4)}	2
	미래한강본부	316	(0.5)	-	316	-
	미래청년기획단	253	(0.4)	253	-	1
	문화본부	206	(0.4)	-	33	-
	관광체육국	87	(0.2)	0.06	87	1
	행정국	28	(0.04)	11	17	1
	푸른도시여가국	12	(0.02)	-	12	-

주1) 지출결정액 규모순

주2)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함에 따라 “계”와 “실본부국별 집행잔액”간 차이 있음

주3)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통계목 기준)

주4) 집행잔액은 재난안전관리실 32,000원, 도시교통실 1,000원, 서울아리수본부 2,000원, 노동공정상생정책관 54만 5,000원, 재무국 1,000원, 자치경찰위원회 113,000원, 균형발전본부 1,000원임

VIII. 기금결산 관련 검토

1. 기금결산 총괄 설명 관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381)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금번 정례회중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제출된 기금결산 승인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382)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①기금결산 총괄설명, ②기금 수입·지출결산, ③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음
- '23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17개 기금, 26개 계정을 운용하여 당해연도말 7조 6,622억 7,900만원을 조성한 것으로383) '22회계연도말 조성액(7조 2,080억 8,100만원)보다 4,541억 9,8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8-1〉 2023회계연도 기금 조성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전 년 도 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 해 연 도 말 조 성 액 (E = A + B)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7,208,081	454,198	3,238,956	2,784,758	7,662,279

38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38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4. 1.), p.183~189

- 기금결산 총괄설명(p.183)
- 기금 수입·지출결산(p.186)
-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p.188)

383)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시금고 예치 또는 타 회계·기금에 예탁되어 있음

- 기금결산 결과 2023회계연도중 3조 2,389억 5,600만원을 조성하고, 2조 7,847억 5,800만원을 사용함으로써 당해연도 조성액 증가액은 4,541억 9,800만원이 발생한 바,

■ **당해연도 조성액**은 전입금 1조 4,435억 3,400만원과 예수금 1조 595억 9,400만원, 보조금 101억 1,100만원 등 3조 2,389억 5,600만원이며,

■ **당해연도 사용액**은 비용자성사업비 6,889억 2,300만원, 융자성사업비 4,506억 8,500만원, 차입금원리금상환 1조 3,683억 2,400만원 등 2조 7,847억 5,800만원임

〈표 8-2〉 당해연도 조성액 및 사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조성액				사용액					
조성액소계				3,238,956	사용액소계				2,784,758
	전입금			1,443,534		비용자성사업비			688,923
	예수금			1,059,594		융자성사업비			450,685
	보조금			10,111		차입금원리금상환			1,368,324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72,170		기타지출			130,448
	차입금			-		예수금원리금상환			143,763
	이자수입			167,544		인력운영비			2,326
	기타수입			286,001		기본경비			28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표 8-3〉 2023회계연도말 기금조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계	연도말 시금고잔액 * 예치금 + 이월금 (B)	타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한 예탁금 (C)
	(A = B + C)		
계	7,662,279	2,719,814	4,942,46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938,917	1,192,284	4,746,633
통합계정	4,174,525	92,292	4,082,233
재정안정화계정	1,764,392	1,099,992	664,400
중소기업육성기금	266,171	246,171	20,000
융자계정	126,708	126,708	-
투자계정	88,769	88,769	-
사회적경제계정 ^{주1)}	50,693	30,693	20,000
식품진흥기금	51,071	16,071	35,000
기후대응기금	79,115	51,115	28,000
도로굴착복구기금	32,754	32,754	-
성평등기금	24,093	893	23,20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0,594	8,594	2,000
사회복지기금	69,202	38,892	30,310
노인복지계정	12,045	555	11,490
장애인복지계정	22,572	8,172	14,400
자활계정	9,853	5,433	4,420
주거지원계정	24,731	24,731	-
체육진흥기금	58,423	6,102	52,321
재난관리기금	929,809	929,809	-
재난계정	788,701	788,701	-
구호계정	141,107	141,107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주2)}	32,995	32,995	-
대외협력기금	5,045	5,045	-
국내협력계정	1,828	1,828	-
국제협력계정	3,216	3,216	-
도시재생기금	79,686	79,686	-
관광진흥기금	6,697	1,697	5,000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256	1,256	-
서울관광플라자계정	5,441	441	5,000
공무원주거안정기금	4,172	4,172	-
하수도사업회전기금	73,231	73,231	-
고향사랑기금 ^{주3)}	297	297	-

※ 주1)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23. 3.27) 및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3.12.29) 에 따른 기금변경

사회투자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주2)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23.12.29) 에 따른 기금명칭 변경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주3)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2.12.30) 에 따른 기금 신설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279 ('24. 4. 4)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361억 3,000만원과 당해 연도 수입액 6조 5,317억 8,200만원을 운용하여 6조 4,906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772억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표 8-4〉 기금 운용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전 이 (A)	년 월 (B)	도 액 (C)	수 입 액 (D)	지 출 액 (E)	다 음 연 도 액 (F)	비 고
36,130	6,531,782	6,490,683	77,229	A+B=C+D		

2. 기금의 수입 · 지출 결산 관련

(1) 수입결산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중 당초 수입계획액은 5조 1,973억 2,5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6조 5,317억 8,200만원³⁸⁴⁾으로 당초 수입계획보다 1조 3,344억 5,600만원 증가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반영된 수입계획 6조 5,396억 1,300만원보다 78억 3,100만원 감소하여 수납된 것으로 제출됨

384) 전년도이월액 361억 3,000만원 별도

〈표 8-5〉 2023회계연도 과목별 수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수 납 액 (B)	증 감 액 (C=B-A)	주 요 증 감 내 역
	당 초 (A)	수 정			
계	5,197,325	6,539,613	6,531,782	1,334,456	
전 입 금	461,376	1,545,424	1,443,534	982,158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624억 8,700만원 ②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200억원 ③자원회수시설 주민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9,300만원
보 조 금	8,964	11,557	10,111	1,146	①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1억 4,600만원
차 입 금	-	-	-	-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309,071	299,988	272,170	△36,901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6억 3,000만원 ②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279억 900만원
예 탁 금 원 금 회 수	25,920	25,920	25,920	-	
예치금회수	2,811,743	3,273,114	3,266,905	455,162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65억 3,900만원 ②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341억 8,600만원 ③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887억 7,000만원
예 수 금	1,374,150	1,059,594	1,059,594	△314,556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245억 5,600만원
이 자 수 입	142,119	145,808	167,544	25,424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3억 9,100만원 ②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44억 4,300만원
기 타 수 입	63,980	178,206	286,001	222,021	①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612억 5,500만원 ②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431억 2,800만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 **전입금**은 당초 4,613억 7,6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결산결과 9,821억 5,800만원 증가한 1조 4,435억 3,400만원이 실수납된 바,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624억 8,700만원 적립³⁸⁵⁾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200억원 증가, **자원회수시설 주민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2억 9,3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됨
- **보조금**은 당초 89억 6,4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결산결과 11억 4,600만원이 증가한 101억 1,100만원이 실수납된 바, 호우피해 재난지원 국고보조금 11억 4,600만원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으로 교부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융자금회수**는 당초 3,090억 7,1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721억 7,000만원이 수납되어 당초 대비 △369억 100만원이 감소한 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당초 회수계획보다 △106억 3,000만원을 감수납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에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의 정책 시행에 따른 △279억 900만원을 감수납한 것으로 확인됨
- **예치금회수**는 지난 회계연도말 지출항목에 예치한 여유재원을 당해연도에는 수입항목으로 연동시켜 계상하는 수입 과목으로 당초 2조 8,117억 4,3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4,551억 6,200만원 증가한 3조 2,669억 500만원이 실수납된 바,

385)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065억 3,900만원 감소하였으나,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3,341억 8,600만원, **구호계정**은 887억 7,000만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예수금**은 당초 1조 3,741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3,145억 5,600만원이 감소한 1조 595억 9,400만원이 실수납된 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회계 및 기금별 예수금 조정에 따라 △3,245억 5,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이자수입**은 당초 1,421억 1,9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54억 2,400만원 증가한 1,675억 4,400만원이 실수납된 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53억 9,100만원, **구호계정**에서 44억 4,300만원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됨
- **기타수입**은 당초 639억 8,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220억 2,100만원 증가한 2,860억 100만원이 실수납된 바,
 - 코로나19와 침수복구 등의 사업 종료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서 612억 5,500만원 및 **구호계정**에서 1,431억 2,800만원 등의 반환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됨

〈표 8-6〉 기금별 수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 입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수입계획 현 액	징 결 정 액	실 수 납 액	수 납 률
		당 초	수 정 (A)					
			(B)	(C=A+B)	(D)	(E)	(E / C)	
계		5,197,325	6,539,613	36,130	6,575,743	6,570,324	6,531,782	99.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79,660	4,185,929	-	4,185,929	4,094,606	4,094,606	97.8
	통 합 계 정	1,758,938	1,321,633	-	1,321,633	1,322,603	1,322,603	100.7
	재 정 안 정 화 계 정	1,820,722	2,864,295	-	2,864,295	2,772,002	2,772,002	96.7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496,466	607,290	-	607,290	588,445	586,079	96.5
	융 자 계 정	372,648	426,998	-	426,998	401,014	401,014	93.9
	투 자 계 정	86,986	128,905	-	128,905	132,343	132,343	102.6
	사 회 적 경 제 계 정	36,832	51,385	-	51,385	55,089	52,720	102.6
식 품 진 흥 기 금		11,408	18,394	-	18,394	20,083	20,083	109.1
기 후 대 응 기 금		66,594	78,723	4,407	83,130	83,695	79,287	95.3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52,751	71,771	1,381	73,153	73,023	71,641	97.9
성 평 등 기 금		1,473	1,854	-	1,854	1,916	1,916	103.3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39,824	38,823	-	38,823	37,032	37,032	95.3
사 회 복 지 기 금		55,430	59,899	-	59,899	58,091	58,091	96.9
	노 인 복 지 계 정	1,738	1,845	-	1,845	1,622	1,622	87.9
	장 애 인 복 지 계 정	9,736	12,736	-	12,736	13,065	13,065	102.5
	자 활 계 정	5,040	6,302	-	6,302	6,344	6,344	100.6
	주 거 지 원 계 정	38,913	39,015	-	39,015	37,058	37,058	94.9
체 육 진 흥 기 금		12,179	14,347	54	14,402	16,421	16,367	113.6
재 난 관 리 기 금		679,512	1,245,005	29,872	1,274,877	1,371,961	1,342,052	105.2
	재 난 계 정	576,729	975,987	29,872	1,005,859	1,031,689	1,001,781	99.5
	구 호 계 정	102,782	269,018	-	269,018	340,272	340,271	126.4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26,137	33,431	-	33,431	33,487	33,487	100.1
대 외 협 력 기 금		10,176	10,945	174	11,119	11,342	11,168	100.4
	국 내 협 력 계 정	4,055	4,606	174	4,780	4,866	4,691	98.1
	국 제 협 력 계 정	6,120	6,338	-	6,338	6,476	6,476	102.1
도 시 재 생 기 금		67,887	72,805	240	73,045	80,985	80,745	110.5
관 광 진 흥 기 금		2,926	3,437	-	3,437	3,526	3,520	102.4
	서울관광간접지원계정	2,539	2,968	-	2,968	3,085	3,079	103.7
	서울관광플라자계정	386	469	-	469	441	441	93.9
공 무 원 주 거 안 정 기 금		25,249	23,538	-	23,538	22,173	22,173	94.2
하 수 도 사 업 회 전 기 금		69,646	73,292	-	73,292	73,231	73,231	99.9
고 향 사 랑 기 금		-	124	-	124	297	297	238.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279 ('24. 4. 4)

(2) 지출결산

-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지출계획은 당초 5조 1,973억 2,500만원이었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6조 5,396억 1,3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6조 4,906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72억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제출됨

〈표 8-7〉 지출결산 결과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B)	지출계획 현 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 행 잔 액 ^{주1)} (F = C - D - E)
	당 초	수 정 (A)					
계	5,197,325	6,539,613	36,130	6,575,743	6,490,683	77,229	7,831
비 용 자 성 사 업 비	433,001	895,220	32,348	927,568	688,923	73,842	164,802
용 자 성 사 업 비	259,049	490,316	3,782	494,098	450,685	3,386	40,025
예 치 금	1,407,453	2,445,212	-	2,445,212	2,642,585	-	△ 197,373 ^{주2)}
예 수 금 원리금상환	151,872	143,819	-	143,819	143,763	-	55
예 탁 금	1,448,100	1,063,340	-	1,063,340	1,063,340	-	-
차 입 금 원리금상환	1,475,093	1,368,324	-	1,368,324	1,368,324	-	-
기 본 경 비	510	494	-	494	285	-	209
인 력 운 영 비	144	2,437	-	2,437	2,326	-	111
기 타 지 출	22,099	130,448	-	130,448	130,448	-	-

※ 주1) 기금은 세부사업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을 여유재원으로 예치함에 따라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을 표기하지 않으나, 해당 표의 집행잔액은 세부사업의 지출상황을 산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임

주2) 세부사업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의 합계이나, 여유재원으로 초과지출되어 △으로 표시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279 ('24. 4. 4)

- **비용자성사업비**는 지출계획현액 9,275억 6,800만원 중 6,889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738억 4,2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7.9%)이 이월되었으며 1,648억 2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17.7%)이 미집행된 것으로 제출된 바,

〈표 8-8〉 기금별 비융자성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사업수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E = D / A)
계		927,568	688,923	73,842	164,802	17.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	155,000	155,000	-	-	-
재정안정화계정	1	155,000	155,000	-	-	-
중소기업육성기금	16	188,308	129,475	-	58,832	31.2
융자계정	3	104,215	91,133	-	13,082	12.5
투자계정	11	83,622	38,106	-	45,516	54.4
사회적경제계정	2	470	235	-	234	49.8
식품진흥기금	13	2,271	2,067	-	204	9.0
기후대응기금	24	11,246	8,082	85	3,077	27.3
도로굴착복구기금	2	44,967	40,264	1,027	3,676	8.1
성평등기금	4	1,013	921	-	92	9.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11	31,001	28,437	-	2,563	8.2
사회복지기금	13	30,724	6,555	-	24,168	78.6
노인복지계정	7	1,318	1,064	-	254	19.2
자활계정	5	605	604	-	1	0.3
주거지원계정	1	28,800	4,887	-	23,912	83.0
체육진흥기금	15	10,634	10,318	-	316	2.9
재난관리기금	7	439,171	298,059	72,608	68,503	15.6
재난계정	3	353,256	219,736	72,608	60,911	17.2
구호계정	4	85,915	78,323	-	7,592	8.8
남북교류협력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1	3,278	482	-	2,795	85.2
대외협력기금	19	6,712	6,147	-	564	8.4
국내협력계정	11	3,355	3,035	-	319	9.5
국제협력계정	8	3,357	3,112	-	245	7.3
도시재생기금	1	1,418	1,290	120	6	0.4
관광진흥기금	4	1,820	1,820	-	-	-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4	1,820	1,820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11개의 세부사업에 836억 2,200만원을 지출계획하여 381억 6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45.5%)을 지출한 것으로

- 서울Vision2030펀드의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 및 벤처투자시장 위축 등으로 지출계획현액 836억원 2,200만원중 455억 1,6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54.4%)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표 8-9〉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비용자성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A-B)	불용률 (D=C/A)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계	83,622	38,106	45,516	54.4
	서울Vision2030펀드 운용 및 관리	422	422	-	-
	4차 산업혁명펀드 출자	7,000	5,060	1,940	27.7
	스마트시티펀드 출자	9,000	4,451	4,549	50.5
	창업지원펀드 출자	13,500	8,745	4,755	35.2
	재도전지원펀드 출자	4,000	1,600	2,400	60.0
	서울바이오펀드 출자	10,000	8,013	1,987	19.8
	문화콘텐츠산업펀드 출자	6,500	3,675	2,825	43.4
	스케일업펀드 출자	18,000	2,000	16,000	88.8
	첫걸음동행펀드 출자	7,000	2,450	4,550	65.0
	디지털대전환펀드 출자	7,000	1,450	5,550	79.2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출자	1,200	240	960	8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1개의 세부사업에 비용자성사업비 288억원을 지출계획하여 48억 8,5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16.9%)을 지출한 것으로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사업은 반지하 거주 가구가 이주한 이후 바우처가 지급되는 등의 사유로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지출계획현액 288억원중 239억 1,2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83.0%)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표 8-10〉 사회투자기금 주거지원계정 비용자성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 = A - B)	불용률 (D = C / A)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 조 지 급	28,800	4,887	23,912	83.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경우 1개의 세부사업에 비용자성 사업비 32억 7,800만원을 지출계획하여 4억 8,2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14.7%)을 지출한 것으로 남북관계 경색 등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확인됨

〈표 8-1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비용자성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 = A - B)	불용률 (D = C / A)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	3,278	482	2,795	85.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 **용자성사업비**는 지출계획현액 4,940억 9,800만원 중 91.2%, 4,506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33억 8,6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0.6%)을 이월하였으며 400억 2,5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8.1%)을 미집행한 것으로 제출됨

〈표 8-12〉 기금별 융자성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사업수	지출계획현액 (A)	지 출 액 (B)	다 음 연 도 이 월 액 (C)	집 행 잔 액 (D=A-B-C)	불 용 률 (E = D / A)
계	11	494,098	450,685	3,386	40,025	8.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1	221,300	221,300	-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 자 계 정	1	200,000	170,531	-	29,468	14.7
중소기업육성기금 사 회 적 경 제 계 정	1	5,000	1,790	-	3,210	64.2
식 품 진 흥 기 금	1	2,000	1,942	-	57	2.9
기 후 대 응 기 금	3	31,463	24,492	3,386	3,584	11.3
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	1	7,400	4,885	-	2,515	33.9
사 회 복 지 기 금 자 활 계 정	1	335	305	-	30	8.9
사 회 복 지 기 금 주 거 지 원 계 정	1	8,600	7,440	-	1,160	13.4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	18,000	18,000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는 50억원을 지출계획하여 17억 9,0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35.8%)을 집행한 바, 기금운용 방식 변경³⁸⁶⁾에 따른 수행주체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융자 신청을 10월에 추진하는 등 실행이 지연되어 기금지출이 부진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표 8-13〉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투융자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 = A - B)	불용률 (D = C / A)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5,000	1,790	3,210	64.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386) 기금운용방식 : (공모)사회적금융기관 → (협약)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 **예치금**은 당초 1조 4,074억 5,300만원으로 계획하고,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조 4,452억 1,2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나, 2조 6,425억 8,500만원이 지출(예치)된 바,

〈표 8-14〉 예치금 계획 대비 지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지 출 액 - 수 정 계 획
당 초	수 정		
(A)	(B)	(C)	(B-C)
1,407,453	2,445,212	2,642,585	△197,373

- 당초 예치금 지출계획보다 여유재원 예치가 증가한 것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적립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의 사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9,030억 6,900만원³⁸⁷⁾ 증가하고,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이자수입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의 증가로 2,717억 7,500만원³⁸⁸⁾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은 949억 5,000만원³⁸⁹⁾이 증가한 것으로 결산결과를 제출한 것임

387) 기금결산보고서 제2장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당초 예치금 지출계획액 1,969억 2,200만원 → 결산결과 1조 999억 9,200만원(9,030억 6,900만원 증)
- 순세계잉여금 적립에 따른 증가

388) 기금결산보고서 제2장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당초 예치금 지출계획액 4,443억 1,600만원 → 결산결과 7,160억 9,200만원(2,717억 7,500만원 증)
- 이자수입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증가

389) 기금결산보고서 제2장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당초 예치금 지출계획액 461억 5,700만원 → 결산결과 1,411억 700만원(949억 5,000만원 증)
- 코로나 완화, 풍수해 피해 감소에 따른 기금잔액 증가

○ 「지방회계법」 제7조³⁹⁰⁾에 따라 출납사무가 완결되는 '24년 1월20일 현재, 각 기금별 예치금 지출계획과 실제 적립액을 비교하면, 1,973억 7,100만원 초과 적립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³⁹¹⁾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지출계획액보다 123.4%, 490억 3,000만원이 예치금에 추가 적립된 상태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도 지출계획액보다 15%, 165억 7,100만원 예치금에 추가 적립되어 있고,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경우에는 예치금 지출계획액보다 1,430.4%, 231억 1,500만원이 실제 초과 적립된 것으로 확인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에는 지출계획액보다 실제 예치금 적립액이 △922억 7,200만원(△7.7%) 부족하게 적립되었고,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경우에도 지출계획보다 △13억 5,900만원 부족하게 적립(예치)된 것으로 확인됨

■ 예치금이 당초 계획보다 실제 초과 혹은 부족 적립(예치)되는 것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기금별 실제 예치된 자원과 지출계획상 예치금 적립계획을 일치시키지 않은 결과로써 이른바 '실제 통장잔고'와 '장부상 계획'을 현행화시키지 않아 발생 된 결과로 판단됨

■ 예치금의 '장부상 계획'과 '실제 통장잔고'가 불일치하는 것은 결산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기금결산중 예치금 규모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

390)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한 세입금은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391)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995 ('24. 5.20)

인이 되는 것은 물론 다음연도 수입계획(예치금회수)에 있어서도 실제 통장잔고가 아닌 장부상 계획치를 반영하는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계획과 실제간 현행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기금법」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³⁹²⁾ ①**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고, ②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바,

- ‘장부상 계획’과 ‘실제 통장잔고’와 차이가 있는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 계정)을 포함한 8개 기금(계정포함)³⁹³⁾은 금번 제324회 정례회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통해 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과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경우에는 「지방기금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이도 회계연도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 개별 기금의 경우에도 예치금 불일치 규모가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 이하에 해당된다면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치금의 ‘장부상 계획’과 ‘실제 통장잔고’ 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것으로 사료됨

392) 「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393) ①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925, 제출일 '23. 5.27)

②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926, 제출일 '23. 5.27)

③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927, 제출일 '23. 5.27)

④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928, 제출일 '23. 5.27)

⑤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929, 제출일 '23. 5.27)

⑥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930, 제출일 '23. 5.27)

⑦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931, 제출일 '23. 5.27)

⑧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932, 제출일 '23. 5.27)

-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편성기준」³⁹⁴⁾과 서울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기준」³⁹⁵⁾및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의하면,³⁹⁶⁾ 다음년도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는 직전연도말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잔액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 회계연도종료에 앞서 예치금의 ‘장부상 계획’과 ‘실제 통장잔고’를 일치시킴으로써 불일치 상태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장부상 허수가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에 반영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94)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3. 7), p.301

395) 서울특별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기준」(’23. 7), p.234

396)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13820 (’23. 9.20) “기금운용계획 수립 관련 질의회신”

〈표 8-15〉 기금별 예치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당초	수정		
계			1,407,453	2,445,212	2,445,212	2,642,58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4,033	1,283,583	1,283,583	1,192,284
	통합계정		357,111	91,320	91,320	92,292
	재정안정화계정		196,922	1,192,263	1,192,263	1,099,992
중소기업육성기금			94,960	175,783	175,783	246,171
	융자계정		55,787	110,138	110,138	126,708
	투자계정		27,820	39,740	39,740	88,769
	사회적경제계정		11,352	25,905	25,905	30,693
식품진흥기금			7,335	14,118	14,118	16,071
기후대응기금			44,107	40,416	40,416	47,643
도로굴착복구기금			18,800	28,170	28,170	31,727
성평등기금			473	714	714	893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12,680	7,821	7,821	8,594
사회복지기금			9,404	12,811	12,811	38,892
	노인복지계정		1,430	523	523	555
	장애인복지계정		2,295	5,316	5,316	8,172
	자활계정		4,164	5,356	5,356	5,433
	주거지원계정		1,513	1,615	1,615	24,731
체육진흥기금			1,845	3,757	3,757	6,102
재난관리기금			490,474	691,552	691,552	857,200
	재난계정		444,316	629,292	629,292	716,092
	구호계정		46,157	62,260	62,260	141,107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 통일기반조성기금			22,759	30,053	30,053	32,995
대외협력기금			5,495	4,254	4,254	5,045
	국내협력계정		1,082	1,422	1,422	1,828
	국제협력계정		4,412	2,831	2,831	3,216
도시재생기금			66,881	71,617	71,617	79,566
관광진흥기금			1,312	1,607	1,607	1,697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925	1,138	1,138	1,256
	서울관광플라자계정		386	469	469	441
공무원주거안정기금			7,242	5,531	5,531	4,172
하수도사업회전기금			69,646	73,292	73,292	73,231
고향사랑기금			-	124,637	124,637	297

- **예수금원리금상환**은 당초 1,518억 7,200만원으로 지출계획 하였으나, △81억 900만원 감소된 1,437억 6,3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80억 5,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5,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8-16〉 예수금원리금상환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B)	증 감 액 (B-A)	증 감 사 유
	당 초 (A)	수 정			
예 수 금 원 리 금 환	151,872	143,819	143,763	△8,109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0억 5,300만원 감소 ②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5,500만원 감소

- **예탁금**은 당초 1조 4,481억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지출계획보다 △3,847억 6,000만원 감소된 1조 633억 3,400만원으로 변경하여 전액 예탁한 것으로 확인됨

〈표 8-17〉 예탁금의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B)	증 감 액 (B-A)	증 감 사 유
	당 초 (A)	수 정			
예탁금	1,448,100	1,063,340	1,063,340	△384,760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847억 6,000만원 감소

- **차입금원리금상환**은 당초 1조 4,750억 9,300만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1조 3,683억 2,4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전액 상환한 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축소되어 원금 상환액이 감소하였고, 차입기간 단축 등으로 이자 상환액 등도 감소하였음³⁹⁷⁾

〈표 8-18〉 차입금원리금상환의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B)	증 감 액 (B-A)	증 감 사 유
	당 초 (A)	수 정			
차 입 금 원 리 금 상 환	1,475,093	1,368,324	1,368,324	△106,768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1,067억 6,800만원 감소

- **인력운영비**는 당초 1억 4,4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4억 3,7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23억 2,600만원이 지출된 바,
-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³⁹⁸⁾은 인력운영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이 불가하나, 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시 폭증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이 가능한 바, 기금의 지출항목을 통해 지출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전년도에 이어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당초 인력운영비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회계연도 개시 이후 2회³⁹⁹⁾의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인건비 19억 8,000만원을 지출한 바,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⁴⁰⁰⁾에서도 인력운영비의 산출기초가 부족한 것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의회의 심사 취지를 등한시한 사례일 수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97) 단축기간 : (당초) 1년 → (변경) 1개월, 금리인하 : (편성) 5.5% → (실제) 4.45%

398)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302

399) ('23.3.)감염병대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억 4,300만원 순증
('23.6.)서울시 자치구 재택치료 및 역학조사 운영 6억3,800만원 증

4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p.213

〈표 8-19〉 인력운영비 당초계획 대비 증감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운용계획		지 출 액 (B)	증 감 액 (B-A)	증 감 사 유
	당 초 (A)	수 정			
인 력 운 영 비	144	2,437	2,326	2,182	①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9억 8,000만원 증가 ②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억 600만원 증가

○ **기본경비**는 당초 5억 1,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억 2,500만원 감소한 2억 8,500만원을 지출한 바,

-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감소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9,000만원, 지방채 발행이 축소됨에 따라 수수료가 감액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2,100만원 등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표 8-20〉 기본경비의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운용계획		지 출 액 (B)	증 감 액 (B-A)	증 감 사 유
	당 초 (A)	수 정			
기본경비	510	494	285	△225	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9,000만원 감소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100만원 감소 등

○ **기타지출**은 당초 220억 9,9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1,083억 4,800만원(당초대비 490.2%)을 증액한 1,304억 4,8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전액 지출한 바,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당초 기타지출을 계획하지 않았으나, 2021회계연도 생활치료센터 국고보조금 98억 1,200만원을 반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전액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동 계정은 지난 '22회계연도에도 '20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누락한 지출내역을 지출계획변경을 통해 융통한 바,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예측가능한 지출임에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기금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표 8-21〉 기타지출 당초계획 대비 증감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B)	증 감 액 (B-A)	증 감 사 유
	당 초 (A)	수 정			
기타지출	22,099	130,448	130,448	108,348	①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98억 1,200만원 증가 ②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985억 3,600만원 증가

3.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하 변경인 경우에 한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한 바,⁴⁰¹⁾
 - 총 17개 기금 26개 계정 중 13개 기금, 20개 계정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⁴⁰²⁾ 이중 22건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⁴⁰³⁾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⁴⁰⁴⁾에 따라 각 기금별 개별 조례로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바,
 - '23회계연도에는 심의위원회를 20회⁴⁰⁵⁾ 개최하여 2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으나 이중 3회의 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회의로 개최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의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면회의로 갈음하기보다 대면 회의를 통해 의회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개별 사안이 심도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01) 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2)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424('23. 4.13)

403)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295

■ 정책사업비 2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404) 지방기금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0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관광진흥기금은 계정 통합 심의

〈표 8-22A〉 지방기금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회 기	기 금 명	지출계획 주요 변경내용	의결 결과
제 319회 정 령 회 (' 23.6)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 재무활동 △5,082억 400만원(△29.4%) - 예탁금 1조 2,681억 →9,533억 4,000만원(△3,147억6,000만원) - 예수금이자 상환: 516억 7,200만원 →436억 1800만원(△80억5400만원) - 예치금: 3,571억 1,100만원 →1,626억 2,000만원(△1,944억 9,100만원) - 공사공단등융자금 0 →150,000만원(순증)	수정 가결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 정 안 정 화 계 정	- 효율적 재정운영 1,550억(순증) - 출자금 0 →155,000만원 ▶서울교통공사 출자 지원 증액 - 재무활동 8,993억 6,400만원(49.4%) - 예치금 1,969억 2,300만원 →1조 962억 8,700만원(8,993억 6,400만원)	원안 가결
	③성 평 등 기 금	- 재무활동 3억 8,100만원(80.5%) - 예치금 4억 7,300만원 →8억 5,400만원(3억 8,100만원)	원안 가결
	④중소기업육성기금 융 자 계 정	- 재무활동 543억 5,100만원(17.7%) - 예치금 557억 8,700만원 →1,101억 3,800만원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⑤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 정책활동 300억(55.9%) -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536억 2,200만원 →836억 2,200만원 ▶서울 Vision2030펀드 신규조성 및 미래혁신성장펀드 유지관리 증액 - 재무활동 119억 1,900만원(35.7%) - 예치금 278억 2,000만원 →397억 4,000만원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수정 가결
	⑥대 외 협 력 기 금 국 제 협 력 계 정	- 정책활동 10억 4,500만원(80.7%) - 비용자성사업비 18억 8,900만원 →29억 3,400만원 ▶서울시청년해외봉사단 증액(7억 4500만원) ▶유스글로벌리더십 신규편성(3억) - 재무활동 △10억 4,500만원(△26.2%) - 예치금 43억 →32억 5,500만원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수정 가결
	⑦사 회 복 지 기 금 노 인 복 지 계 정	- 정책활동 10억 1,300만원(331.2%) - 비용자성사업비 0 →7억 8,300만원 ▶디지털 돌봄 역량 강화 사업 신규편성(3억) ▶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 신규편성(4억 5,000만원), ▶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정서지원 신규편성(3,300만원) - 용자성사업비 1억 →3억 3,000만원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용자지원 증액(2억 3,000만원)	원안 가결
	⑧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	- 재무활동 29억 9,800만원(131.5%) - 예치금 22억 9,600만원 →53억 1,500만원(30억 1,900만원)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 기본경비 감액: 4,100만원 →2,000만원(△2,100만원)	원안 가결

〈표 8-22B〉 지방기금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회 기 기 금 명	지출계획 주요 변경내용	의결 결과
제 319회 정 령 회 (' 23.6)	⑨ 사 회 복 지 기 금 자 활 계 정 - 재무활동 11억 9,100만원(28.6%) - 예치금 41억 6,500만원 → 53억 5,600만원 ▶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증가	원안 가결
	⑩ 관 광 진 흥 기 금 서울관광긴급지원 계 정 - 재무활동 4억 2,900만원(46.3%) - 예치금 9억 2,600만원 → 13억 5,4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⑪ 관 광 진 흥 기 금 서울 관광 플라자 계 정 - 재무활동 8,200만원(21.4%) - 예치금 3억 8,700만원 → 4억 6,9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⑫ 기 후 대 응 기 금 - 정책활동 118억 1,400만원(44.6%) - 비용자성사업비 87억 8,400만원 → 105억 9,800만원 ▶ 국제기후테크 컨퍼런스(2억 9,000만원) ▶ 수성도로 전환장비 구매지원(3억 2,000만원) ▶ 난방효율 개선 (8억 5,400만원) ▶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3억 5,000만원) - 융자성사업비 176억 8,400만원 → 276억 8,400만원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증액(100억원)	원안 가결
	⑬ 체 육 진 흥 기 금 - 정책활동 2억 5,600만원(2.5%) - 비용자성 사업비 103억 2,400만원 → 105억 8,000만원 ▶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 재무활동 19억 1,200만원(103.6%) - 예치금 18억 4,500만원 → 37억 5,7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⑭ 공 무 원 주 거 안 정 기 금 - 재무활동 △17억 1,100만원 (△23.6%) - 예치금 72억 4,200만원 → 55억 3,100만원 ▶ 예치금 회수수입 감소에 따른 예치금 감액	원안 가결
	⑮ 대 외 협 력 기 금 국 내 협 력 계 정 - 정책활동 △1억 3,000만원(△3.0%) - 비용자성 사업비 30억 1,100만원 → 28억 8,100만원 ▶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감액(△1억 3,000만원) - 재무활동 6억 3,900만원(59%) - 예치금 10억 4,200만원 → 17억 2,2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⑯ 남 북 교 류 협 력 및 평 화 통 일 기 반 조 성 기 금 - 재무활동 72억 9,300만원(32.0%) - 예치금 227억 5,900만원 → 300억 5,3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표 8-22C〉 지방기금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회 기 기 금 명	지출계획 주요 변경내용	의결 결과
제 321 회 정 려 회 ('23.12)	⑰ 식 품 진 흥 기 금 - 재무활동 69억 8,600만원(92.5%) - 예치금 71억 3,100만원 → 141억 1,8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자 원 회 수 시 설 ⑱ 주 변 영 향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 재무활동 △25억 5,400만원(△38.3%) - 예치금 103억 7,600만원 → 78억 2,1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⑲ 기 후 대 응 기 금 - 재무활동 △121억 800만원(42.8%) - 예치금 283억 800만원 → 404억 1,6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⑳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사 회 적 경 제 계 정 - 재무활동 145억 5,300만원 (128.2%) - 예치금 113억 5,200만원 → 259억 5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㉑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 재무활동 8,900만원 (46.1%) - 예치금 192억 7,100만원 → 281억 7,100만원 ▶ 수입계획대비 예치금회수 증가에 따른 지출	원안 가결
	㉒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통 합 계 정 - 정책활동 713억원(47.5%) - 용자성 사업비 1,500억원 → 2,213억원 ▶ 서울에너지공사 재정적자 보전 - 재무활동 △1,413억원(△11.4%) - 예탁금 9,533억 4,000만원 → 8,833억 4,000만원(△700억원) ▶ 특별회계 재원상황 반영 - 예치금 1,626억 2000만원 → 913억 2,000만원(△713억원) ▶ 서울에너지공사 재정적자 보전	수정 가결

4. 각 기금의 세부사업별 미집행 현황

(1) 융자성사업 세부사업별 미집행 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는 50억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17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32억 1,000만원(지출계획 대비 64.2%)이 미집행된 바,

- 동 사업은 '22회계연도에도 120억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융자 수요가 미발생하여 전액 미집행되었다는 점에서 과도한 지출잔액이 발생 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지출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8-23〉 미집행액 10억원 이상이거나 미집행률 50% 이상인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C=A-B-C)	불용률 (D = C / A)
중소기업육성기금 융 자 계 정	중 소 기 업 직 접 융 자	200,000	170,531	-	29,468	14.7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5,000	1,790	-	3,210	64.2
기 후 대 응 기 금	민 간 건 물 에 너 지 효 율 화 지 원	31,463	24,492	3,386	3,584	11.3
사 회 복 지 기 금 장애인복지계정	장 애 인 전 세 주 택 지 원 사 업	7,400	4,885	-	2,515	33.9
사 회 복 지 기 금 주 거 지 원 계 정	저 소 득 층 주 택 임 대 보 증 금	8,600	7,440	-	1,160	13.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279 ('24. 4. 4)

(2) 비용자성사업 세부사업별 미집행 현황

- '23회계연도에는 14개 기금, 20개 계정에서 비용자성사업비로 131건의 세부사업을 지출계획하였으나, 미집행률 50.0% 이상 발생한 사업이 19건, 미집행액 10억원 이상 발생 사업이 23건으로 확인되는 바,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감소 및 벤처투자시장이 위축되어 **스케일업 펀드 출자**의 경우에는 지출계획현액 180억원중 20억원을 지출하고, 160억원(미집행률 88.8%)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전년도 이월액 6억 1,100만원을 포함한 16억 2,0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신축건물 등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 11억 6,600만원(미집행률 71.9%)이 미집행된 바, 지출계획시 실제 지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중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은 288억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239억 1,300만원(미집행률 83.0%)이 미집행된 바,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의 확대에서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아 정책수요자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등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회계에 편성된 세출예산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의 경비중 불용액(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해당 사업예산에 사용할 수 없으나,
 - 기금의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발생한 미집행액은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해당 기금의 사업비로 다시 활용된다는 점에서 불용이나 미집행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둔감한 재원운용환경으로 사료되나,

- 당해연도에 지출계획한 사업이 사업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등 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8-24〉 지출계획현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된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 현액 ^{주1)}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E = D / A)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스마트시티펀드 출자	9,000	4,451	-	4,549	50.5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재도전지원펀드 출자	4,000	1,600	-	2,400	6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스 케 일 업 펀 드	18,000	2,000	-	16,000	88.8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첫걸음동행펀드 출자	7,000	2,450	-	4,550	65.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디지털대전환펀드 출자	7,000	1,450	-	5,550	79.2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 5 호 출 자	1,200	240	-	960	80.0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채권 및 기타관리비	100	13	-	86	86.7
식품진흥기금	먹거리전략 식거버넌스 운영 및 활성화	80	4	-	75	94.7
기 후 대 응 기 금	민 간 건 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1,620	454	-	1,166	71.9
기 후 대 응 기 금	난방 효율 개선사업	854	149	-	704	82.5
기 후 대 응 기 금	기후테크 경연대회	20	8	-	12	60.0
성 평 등 기 금	양 성 평 등 단 체 활성화 지원사업	100	50	-	50	50.0
사 회 복 지 기 금 노인복지 계정	어 르 신 주 거 지 원	68	23	-	45	65.6
사 회 복 지 기 금 주거지원 계정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 조 지 급	28,800	4,887	-	23,912	83.0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연 구 용 역	1,194	572	-	622	52.0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반조성금	남 북 교 류 협 력 사 업	3,278	482	-	2,795	85.2

주1) 지출계획현액 = 지출계획액 + 이월액

〈표 8-25〉 미집행액 발생규모 10억원 이상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 현액 ^{주1)}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E = D / A)
중소기업육성기금 융 자 계 정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1,102,800	89,839	-	12,960	12.6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4차산업혁명펀드 출자	7,000	5,060	-	1,940	27.7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스마트시티펀드 출자	9,000	4,451	-	4,549	50.5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창업지원펀드 출자	13,500	8,745	-	4,755	35.2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채도전지원펀드 출자	4,000	1,600	-	2,400	6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서울바이오펀드 출자	10,000	8,013	-	1,987	19.8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문화콘텐츠산업펀드 출자	6,500	3,675	-	2,825	43.4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스케일업펀드 출자	18,000	2,000	-	16,000	88.8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첫걸음동행펀드 출자	7,000	2,450	-	4,550	65.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디지털대전환펀드 출자	7,000	1,450	-	5,550	79.2
기 후 대 응 기 금	민 간 건 물 신 재 생 에 너 지 보 급	1,620	4,454	-	1,166	71.9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도 로 굴 착 복 구 공 사	44,552	39,919	1,027	3,605	8.0
자 원 회 수 시 설 주 변 영 향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강 남 자 원 회 수 시 설 지 역 주 민 아 파 트 관 리 비 및 임 대 료 지 원	10,961	9,384	-	1,577	14.3
사 회 복 지 기 금 노 인 복 지 계 정	장 애 인 전 세 주 택 지 원 사 업	7,400	4,885	-	2,515	33.9
사 회 복 지 기 금 주 거 지 원 계 정	저 소 득 층 주 택 임 대 료 보 조 지 금	28,800	4,887	-	23,912	83.0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재 난 예 방	322,453	194,907	72,608	54,937	17.0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응 급 복 구	29,607	24,256	-	5,351	18.0
재 난 관 리 기 금 구 호 계 정	이 재 민 재 해 보 상	51,441	47,586	-	3,855	7.4
재 난 관 리 기 금 구 호 계 정	의 료 및 구 호 비 지 원	13,559	10,627	-	2,931	21.6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반조성기금	남 북 교 류 협 력 사 업	3,278	482	-	2,795	85.2

주1) 지출계획현액 = 지출계획액 + 이월액

IX.참고자료⁴⁰⁶⁾

1.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

○ 2023회계연도 최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47조 1,905억 1,200만원 에서
추경예산 조정액	3조 372억 3,600만원 을 더하고
간주처리분	1,482억 3,300만원 을 더하여
최종예산액	50조 3,759억 8,200만원 으로서
직전회계연도보다	△3.7% 감소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33조 4,660억 8,400만원 에서
추경예산 조정액	2조 6,698억 5,900만원 을 더하고
간주처리분	962억 8,700만원 을 더하여
최종예산액	36조 2,322억 3,100만원 임

○ 특별회계는 12개로서

당초예산액	13조 7,244억 2,800만원 에서
추경예산 조정액	3,673억 7,700만원 을 더하고
간주처리분	519억 4,600만원 을 더하여
최종예산액	14조 1,437억 5,100만원 임

406) 결산서상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보고서중 참고자료를 작성함에 따라 실제 결산서상 천 원단위 표기 내용과 차이가 있음

〈표 9-1〉 2023회계연도 최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예산액 (가)	추경예산 조정액 (나)	간주처리 (다)	최종예산액 (가)+(나)+(다)
합계	47,190,512	3,037,236	148,233	50,375,982
일 반 회 계 계	33,466,084	2,669,859	96,287	36,232,231
특 별 회 계 계	13,724,428	367,377	51,946	14,143,751
공기업특별회계 소계	1,816,400	27,350	35	1,843,785
수 도 사 업	930,000	0	0	930,000
공기업하수도사업	886,400	27,350	35	913,785
기타특별회계 소계	11,908,028	340,027	51,911	12,299,966
도시철도건설사업비	2,011,991	△2,508	10,363	2,019,846
교 통 사 업	1,670,325	488,906	3,771	2,163,002
광 역 교 통 시 설	305,965	12,811	0	318,775
주 택 사 업	2,963,623	2,765	31,344	2,997,732
도 시 개 발	1,831,991	△187,153	6,393	1,651,231
균 형 발 전	169,685	94	0	169,779
학 교 용 지 부 담 금	29,387	7,385	0	36,772
의 료 급 여 기 금	1,912,895	16,040	0	1,928,935
한 강 수 질 개 선	35,792	821	0	36,612
소 방	976,373	869	40	977,282

2. 2023회계연도 결산 개관

(1) 결산총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 50조 3,759억 8,2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조 1,140억 6,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1조 4,900억 4,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3.7% 감소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50조 7,585억 5,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8.7%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98.6%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5.3%포인트 감소하였음

- 세출결산액은 47조 4,604억 5,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5.6%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92.2%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1.8%포인트 감소함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3조 2,980억 9,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37.7%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6.4%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3.5%포인트 감소하였음

- 명시이월액은 6,411억 9,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103.1% 증가하였으며

- 사고이월액은 8,605억 8,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15.4% 증가하였으며

- 건설개량이월액은 329억 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166.8% 증가하였으며
-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174억 2,5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41.2% 증가하였음
- 순세계잉여금은
1조 6,459억 9,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60.2%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액 대비 비율은 3.2%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4.2%포인트 감소하였음

〈표 9-2〉 회계연도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 ('23~'22)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가)	세출결산액 (나)	결산상 잉여금 (가)-(나)	이월처리 등
2023	총계	51,490,048 <2023최종> 50,375,982 <2022→2023이월> 1,114,066	50,758,554 (98.6%)	47,460,456 (92.2%)	3,298,098 (6.4%)	명사건계보조채물순 시고설속무납세 이개량비이영 월이월이월이 641,199 860,581 32,902 0 117,425 0 0 1,645,992
	일반회계	36,507,392 <2023최종> 36,232,231 <2022→2023이월> 275,162	36,215,269 (99.2%)	34,925,473 (95.7%)	1,286,796 (3.5%)	명사계보조채물순 시고설속무납세 이개량비이영 월이월이월이 42,346 213,859 0 97,914 0 0 932,677
	특별회계	14,982,656 <2023최종> 14,143,751 <2022→2023이월> 838,905	14,543,285 (97.1%)	12,531,983 (83.6%)	2,011,302 (13.4%)	명사건계보조채물순 시고설속비이영 월이월이월이 598,853 646,722 32,902 0 19,511 0 0 713,315

※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만, “건설개량이월액”은 공기업특별회계만 작성
※ (괄호)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가)	세출결산액 (나)	결산상 잉여금 (가)-(나)	이월처리 등	
2022	총계	53,468,799	55,571,683 (103.9%)	50,276,587 (94.0%)	5,295,096 (9.9%)	명 시 이 월 315,678 사 고 이 월 746,000 건 설 개 량 이 월 12,330 계 속 비 이 월 0	
		<2022최종> 52,307,196				보조금실제반납금 83,142	
		<2021→2022이월> 1,161,603				채 무 상 환 0 순 세 계 잉 여 금 4,137,947	
	일반회계	38,319,643	40,714,143 (106.2%)	37,116,773 (96.9%)	3,597,370 (9.4%)	명 시 이 월 81,713 사 고 이 월 193,449	
		<2022최종> 38,050,517				계 속 비 이 월 0 보조금실제반납금 67,351	
		<2021→2022이월> 269,126				채 무 상 환 0 순 세 계 잉 여 금 3,254,857	
특별회계	15,149,157	14,857,540 (98.1%)	13,159,814 (86.9%)	1,697,726 (11.2%)	명 시 이 월 233,965 사 고 이 월 552,551 건 설 개 량 이 월 12,330 계 속 비 이 월 0		
	<2022최종> 14,256,679				보조금실제반납금 15,790		
	<2021→2022이월> 892,477				채 무 상 환 0 순 세 계 잉 여 금 883,089		

※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만, “건설개량이월액”은 공기업특별회계만 작성
※ (괄호)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2) 세입결산

① 총 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 51조 4,900억 4,80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0조 7,585억 5,400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8.6%이고,
직전 5년간 평균비율(105.7%) 대비 △7.2%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직전회계연도 비율(103.9%) 대비 △5.4%포인트 감소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7.2%로
직전 5년간 평균비율(97.3%) 대비 △0.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직전회계연도 비율(97.8%) 대비 △0.6%포인트 감소하였음

〈표 9-3〉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정리보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실제수납액 비율	
						예산현액 대비 (다)/(가)	징수결정액 대비 (다)/(나)
합 계	51,490,048	52,245,295	50,758,554	293,169	1,193,571	98.6	97.2
일반회계	36,507,392	37,461,877	36,215,269	288,978	957,630	99.2	96.7
특별회계	14,982,656	14,783,418	14,543,285	4,191	235,941	97.1	98.4

〈표 9-4〉 회계연도별 세입 수납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	2022	2021
총계	예 산 액	50,375,982	52,307,196	46,697,522
	예 산 현 액	51,490,048	53,468,799	47,759,128
	징 수 결 정 액	52,245,295	56,822,400	53,887,516
	실 제 수 납 액	50,758,554	55,571,683	52,859,112
	정 리 보 류 액	293,169	114,646	82,124
	미 수 납 액	1,193,571	1,136,071	946,279
	실제수납액 / 예산현액	98.6	103.9	98.1
	실제수납액 / 징수결정액	97.2	97.8	98.1
일반회계	예 산 액	36,232,231	38,050,517	33,482,498
	예 산 현 액	36,507,392	38,319,642	33,834,846
	징 수 결 정 액	37,461,877	41,751,415	40,078,231
	실 제 수 납 액	36,215,269	40,714,143	39,173,002
	정 리 보 류 액	288,978	113,505	77,622
	미 수 납 액	957,630	923,767	827,607
	실제수납액 / 예산현액	99.2	106.2	115.8
	실제수납액 / 징수결정액	96.7	97.5	97.7
특별회계	예 산 액	14,143,751	14,256,679	13,215,024
	예 산 현 액	14,982,656	15,149,157	13,924,282
	징 수 결 정 액	14,783,418	15,070,985	13,809,285
	실 제 수 납 액	14,543,285	14,857,540	13,686,110
	정 리 보 류 액	4,191	1,141	4,502
	미 수 납 액	235,941	212,304	118,672
	실제수납액 / 예산현액	97.1	98.1	98.3
	실제수납액 / 징수결정액	98.4	98.6	99.1

②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6조 5,073억 9,200만 원에 대하여 37조 4,618억 7,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99.2%인 36조 2,152억 6,900만원을 수납처리 하였음
- 2023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보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7.0%포인트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직전회계연도보다 △0.8%포인트 감소한 96.7%임

〈표 9-5〉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실제수납액 비율	
						예산현액 대비 (다)/(가)	징수결정액 대비 (다)/(나)
합 계	36,507,392	37,461,877	36,215,269	288,978	957,630	99.2	96.7
지방세 수입	24,112,184	25,000,502	23,862,799	285,589	852,113	99.0	95.4
세 외 수 입	1,335,051	1,497,257	1,388,504	3,389	105,364	104.0	92.7
지방교부세	199,227	201,221	201,221	-	-	101.0	100.0
보 조 금	6,565,259	6,478,146	6,478,146	-	-	98.7	100.0
지 방 채	-	-	-	-	-	-	-
보전수입등및 내 부 거 래	4,295,671	4,284,751	4,284,599	-	153	99.7	100.0

〈표 9-6〉 최근 3년간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입결산액 (실제수납액)			2023 징수결정액 (나)	2023 징수율 (가)/(나)	
		2023 (가)	2022	2021			
합 계		36,215,269	40,714,143	39,173,002	37,461,877	96.7	
지방세수입		23,862,799	26,163,797	26,001,189	25,000,502	95.4	
	취 득 세	5,147,181	5,871,174	8,010,035	5,218,465	98.6	
	주 민 세	771,181	728,680	638,590	779,693	98.9	
	재 산 세	3,474,933	3,918,885	3,646,069	3,525,357	98.6	
	자 동 차 세	994,650	1,025,804	1,164,093	1,050,567	94.7	
	레 저 세	105,128	105,142	4,439	105,128	100.0	
	담 배 소 비 세	576,611	588,594	594,187	604,609	95.4	
	지 방 소 비 세	2,678,872	2,760,286	2,077,641	2,678,872	100.0	
	지 방 소 득 세	7,983,158	8,834,457	7,427,344	8,157,149	97.9	
	지역자원시설세	295,088	325,408	316,084	298,289	98.9	
	지 방 교 육 세	1,610,372	1,789,797	1,886,954	1,652,168	97.5	
	지 난 년 도 수 입	225,625	215,570	235,753	930,205	24.3	
	세외수입		1,388,504	1,336,602	1,115,327	1,497,257	92.7
	재 산 임 대 수 입	172,253	137,268	120,742	176,578	97.6	
	사 용 료 수 입	154,991	148,135	116,740	157,870	98.2	
	수 수 료 수 입	36,406	44,380	54,627	36,406	100.0	
	사 업 수 입	212,224	193,447	166,028	213,393	99.5	
	징수교부금수입	8,701	9,541	10,913	8,701	100.0	
	이 자 수 입	140,776	169,979	54,067	141,258	99.7	
	재 산 매 각 수 입	168,043	56,574	15,807	168,614	99.7	
	자치단체간부담금	13,392	13,642	10,592	13,393	100.0	
	보조금반환수입	297,242	292,360	303,641	308,222	96.4	
	기 타 수 입	147,949	221,682	218,526	150,806	98.1	
	지 난 년 도 수 입	28,760	37,080	38,775	108,140	26.6	
	과 징 금	589	1,916	838	829	71.0	
	이 행 강 제 금	-	-	-	-	-	
	변 상 금	4,404	7,899	4,942	9,166	48.0	
	과 태 료	2,483	2,638	2,831	3,548	70.0	
	환 수 금	133	9	96	139	95.7	
	부 담 금	158	52	-3,838	194	81.4	
	범 칙 금	-	-	-	-	-	
	지방교부세		201,221	268,344	207,708	201,221	100.0
	보조금		6,478,146	6,395,519	7,126,799	6,478,146	100.0
지방채		-	-	34,200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284,599	6,549,881	4,687,779	4,284,751	100.0	
	양금	순계양금	3,254,857	1,681,958	887,852	3,254,857	100.0
		법정양금	-	4,189,243	2,577,424	-	-
	전 년 도 이 월 금		342,513	341,823	455,411	342,513	100.0
	융자금원금수입		697	924	708	697	100.0
	예 치 금 회 수		-	-	-	-	-
	보조금등반환금		8,654	14,120	-	8,806	98.3
	전 입 금		257,678	321,813	335,884	257,678	100.0
	예탁금및예수금		420,200	-	430,500	420,200	100.0

〈표 9-7〉 2023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가)	결산액 (나)	증감	
			금액 (다)=(나)-(가)	비율 (다)/(가)
합 계	24,112,184	23,862,799	-249,385	-1.0
보 통 세	21,877,932	21,731,714	-146,218	-0.7
취 득 세	5,221,862	5,147,181	-74,681	-1.4
주 민 세	672,385	771,181	98,796	14.7
재 산 세	3,522,079	3,474,933	-47,146	-1.3
자 동 차 세	1,052,439	994,650	-57,789	-5.5
레 저 세	106,133	105,128	-1,005	-0.9
담 배 소 비 세	582,205	576,611	-5,594	-1.0
지 방 소 비 세	2,786,892	2,678,872	-108,020	-3.9
지 방 소 득 세	7,933,937	7,983,158	49,221	0.6
목 적 세	2,020,552	1,905,460	-115,092	-5.7
지역자원시설세	313,104	295,088	-18,016	-5.8
지 방 교 육 세	1,707,448	1,610,372	-97,076	-5.7
지 난 년 도 수 입	213,700	225,625	11,925	5.6

〈표 9-8〉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등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가)	결산액 (나)	증감	
			금액 (다)=(나)-(가)	비율 (다)/(가)
계	12,395,208	12,352,470	-42,738	-0.3
세 외 수 입	1,335,051	1,388,504	53,453	4.0
경상적 세외수입	784,933	725,351	-59,582	-7.6
재 산 임 대 수 입	159,401	172,253	12,852	8.1
사 용 료 수 입	155,689	154,991	-698	-0.4
수 수 료 수 입	38,800	36,406	-2,394	-6.2
사 업 수 입	296,900	212,224	-84,676	-28.5
징 수 교 부 금 수 입	11,394	8,701	-2,693	-23.6
이 자 수 입	122,749	140,776	18,027	14.7
임시적 세외수입	542,470	655,386	112,916	20.8
재 산 매 각 수 입	149,219	168,043	18,824	12.6
자 치 단 체 간 부 담 금	13,770	13,392	-378	-2.7
보 조 금 반 환 수 입	213,479	297,242	83,763	39.2
기 타 수 입	135,503	147,949	12,446	9.2
지 난 년 도 수 입	30,499	28,760	-1,739	-5.7
지방행정제제·부과금등	7,648	7,767	119	1.6
과 징 금	691	589	-102	-14.8
이 행 강 제 금	-	-	-	-
변 상 금	4,470	4,404	-66	-1.5
과 태 료	2,362	2,483	121	5.1
환 수 금	-	133	133	-
부 담 금	125	158	33	26.4
범 칙 금	-	-	-	-
지 방 교 부 세	199,227	201,221	1,994	1.0
보 조 금	6,565,259	6,478,146	-87,113	-1.3
지 방 채	-	-	-	-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4,295,671	4,284,599	-11,072	-0.3
보 전 수 입 등	3,603,214	3,606,721	3,507	0.1
내 부 거 래	692,457	677,878	-14,579	-2.1

③ 특별회계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 14조 9,826억 5,60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이 14조 5,432억 8,500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7.1%이고,
직전회계연도 비율(98.1%) 대비 △1.0%포인트 감소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8.4%로
직전회계연도 비율(98.6%)대비 △0.2%포인트 감소하였음

〈표 9-9A〉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실제수납액 비율	
						예산현액 대비 (다)/(가)	징수결정액 대비 (다)/(나)
합 계	14,982,656	14,783,418	14,543,285	4,191	235,942	97.1	98.4
기 타 특 별 회 계	12,979,944	12,624,307	12,498,400	3,324	122,584	96.3	99.0
도 시 철 도 건 설 사업비특별회계	2,057,950	2,056,158	2,056,139	-	19	99.9	100.0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2,230,608	2,188,287	2,155,087	2,173	31,028	96.6	98.5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332,691	360,299	323,701	-	36,598	97.3	89.8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3,041,073	2,907,489	2,855,719	-	51,770	93.9	98.2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119,577	2,074,218	2,071,873	-	2,345	97.7	99.9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11,851	203,210	203,210	-	-	95.9	100.0
학교용지부담금 특 별 회 계	36,772	12,788	11,335	1,118	335	30.8	88.6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1,928,935	1,801,033	1,800,826	-	207	93.4	100.0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37,339	34,341	34,341	-	-	92.0	100.0
소 방 특 별 회 계	983,148	986,484	986,169	33	282	100.3	100.0
공 기업 특 별 회 계	2,002,712	2,159,111	2,044,885	867	113,358	102.1	94.7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995,269	1,074,511	1,012,372	658	61,481	101.7	94.2
공 기업 하 수 도 사업특별회계	1,007,443	1,084,600	1,032,513	209	51,877	102.5	95.2

〈표 9-9B〉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실제수납액 비율	
						예산현액 대비 (다)/(가)	징수결정액 대비 (다)/(나)
합 계	15,149,157	15,070,985	14,857,540	1,141	212,304	98.1	98.6
기 타 특 별 회 계	13,247,112	13,163,608	13,054,090	187	109,330	98.5	99.2
도 시 철 도 건 설 사업비특별회계	2,201,610	2,191,058	2,191,058	-	-	99.5	100.0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2,292,776	2,343,088	2,304,803	174	38,111	100.5	98.4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350,237	336,318	299,146	-	37,172	85.4	88.9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3,002,632	2,981,465	2,953,290	-	28,175	98.4	99.1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425,711	2,402,337	2,401,778	-	559	99.0	100.0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08,873	208,795	208,794	-	-	100.0	100.0
학교용지부담금 특 별 회 계	29,215	15,198	10,087	-	5,111	34.5	66.4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1,752,291	1,702,188	1,702,188	-	-	97.1	100.0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33,731	33,115	33,115	-	-	98.2	100.0
소 방 특 별 회 계	950,036	950,046	949,831	13	202	100.0	100.0
공 기업 특별회계	1,902,045	1,907,377	1,803,450	954	102,974	94.8	94.6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67,964	898,549	846,853	736	50,961	97.6	94.2
공 기업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1,034,081	1,008,828	956,597	218	52,013	92.5	94.8

(3) 세출결산

① 총 괄

○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51조 4,900억 4,800만원 중

지출액이 47조 4,604억 5,600만원(예산현액 대비 92.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조 6,905억 5,700만원(예산현액 대비 3.3%)

보조금 반납금은 1,001억 8,500만원(예산현액 대비 0.2%)

집행잔액은 2조 2,388억 5,000만원(예산현액 대비 4.3%)임

〈표 9-10〉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계	50,375,982	1,114,066	51,490,048	48,228,213	47,460,456	1,690,557	100,185	2,238,850
예산현액 대비	-	-	-	93.7	92.2	3.3	0.2	4.3
일반회계	36,232,231	275,162	36,507,392	35,141,733	34,928,473	256,205	80,815	1,241,899
예산현액 대비	-	-	-	96.3	95.7	0.7	0.2	3.4
특별회계	14,143,751	838,905	14,982,656	13,086,480	12,531,983	1,434,352	19,370	996,951
예산현액 대비	-	-	-	87.3	83.6	9.6	0.1	6.7

②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6조 5,073억 9,200만원 중

지출액은 34조 9,284억 7,300만원(예산현액 대비 95.7%)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562억 500만원(예산현액 대비 0.7%)

보조금 반납금은 808억 1,500만원(예산현액 대비 0.2%)

집행잔액은 2조 2,388억 5,000만원(예산현액 대비 4.3%)임

〈표 9-11〉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야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나)	비율 (나)/(가)
합계	36,232,231	275,192	36,507,392	34,928,473	256,205	80,815	1,241,899	3.4
일반공공행정	9,496,826	17,856	9,514,683	9,158,783	7,943	109	347,847	3.7
공공질서및안전	1,229,194	1,285	1,230,479	1,227,108	913	283	2,175	0.2
교육	4,662,782	10,574	4,673,357	4,429,702	11,028	0	232,627	5.0
문화및관광	747,489	38,241	785,730	737,519	34,863	456	12,893	1.6
환경	847,497	105,432	952,929	710,716	121,470	62,119	58,625	6.2
사회복지	12,704,421	36,336	12,740,757	12,408,889	9,966	14,626	307,276	2.4
보건	639,865	24,169	664,033	623,602	18,085	765	21,582	3.3
농림해양수산	29,960	3,959	33,919	31,394	658	45	1,822	5.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73,811	16,376	590,187	567,765	10,734	8	11,679	2.0
교통및물류	2,158,199	28,599	2,186,798	2,114,336	3,008	9	69,444	3.2
국토및지역개발	1,942,237	43,808	1,986,045	1,871,619	37,538	2,343	74,545	3.8
과학기술	2,811	0	2,811	2,675	0	0	136	4.8
예비비	125,001	△51,793	73,208	0	0	0	73,208	100.0
기타	1,072,136	321	1,072,456	1,044,363	0	52	28,041	2.6

③ 특별회계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4조 9,826억 5,600만원 중

지출액은 12조 5,319억 8,300만원(예산현액 대비 83.6%)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조 4,343억 5,200만원(예산현액 대비 9.6%)

보조금 반납금은 193억 7,000만원(예산현액 대비 0.1%)

집행잔액은 9,969억 5,100만원(예산현액 대비 6.7%)임

〈표 9-12〉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회계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나)	비율 (나)/(가)
특별회계	14,143,751	838,905	14,982,656	12,531,983	1,434,352	19,370	996,951	6.7
기타특별회계	12,299,966	679,978	12,979,944	10,885,570	1,251,238	19,168	823,969	6.3
도시철도건설 사업비특별회계	2,019,846	38,104	2,057,950	1,979,317	65,323	0	13,310	0.6
교통사업 특별회계	2,163,002	67,606	2,230,608	1,997,093	87,029	304	146,182	6.6
광역교통시 설특별회계	318,775	13,916	332,691	256,327	61,610	5,976	8,778	2.6
주택사업 특별회계	2,997,732	43,342	3,041,073	2,265,000	594,957	10,757	170,359	5.6
도시개발 특별회계	1,651,231	468,345	2,119,577	1,649,302	390,567	638	79,070	3.7
균형발전 특별회계	169,779	42,071	211,850	145,914	50,868	193	14,875	7.0
학교용지부담 금특별회계	36,772	0	36,772	10,399	0	0	26,373	71.7
의료급여기 금특별회계	1,928,935	0	1,928,935	1,594,952	0	0	333,983	17.3
한강수질개 선특별회계	36,612	727	37,339	32,727	157	1,172	3,283	8.8
소방방 특별회계	977,282	5,866	983,148	954,540	726	127	27,755	2.8
공기업특별회계	1,843,785	158,927	2,002,711	1,646,413	183,114	203	172,982	8.6
수도사업 특별회계	930,000	65,269	995,269	838,604	50,432	203	106,031	10.7
공기업하수 도사업특별회계	913,785	93,658	1,007,442	807,809	132,682	0	66,951	6.6

(4) 불용액(집행잔액)

○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은 2조 2,388억 8,500만원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불용률)은 4.3%로

직전 5년간 평균불용률 3.2%에 비해 1.1%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직전회계연도(3.7%) 대비 0.6%포인트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1조 2,418억 9,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불용률)은 3.4%임

불용률은 직전 5년간 평균비율(2.1%)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하였으

며, 직전회계연도(2.2%) 대비 1.2%포인트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9,969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불용률)은 6.7%임

불용률은 직전 5년간 평균비율(5.7%)에 비해 1.0%포인트 증가하였으

며, 직전회계연도(7.5%) 대비 △0.8%포인트 감소하였음

〈표 9-13〉 불용액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계	사유별(원인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계	2,238,850	382,014	6,145	547,760	81,832	1,131,386	89,714
일반회계	1,241,899	71,302	3,585	347,999	26,025	719,779	73,209
특별회계	996,951	310,712	2,560	199,760	55,807	411,607	16,505
기타특별회계	823,969	300,434	92	185,876	27,871	298,776	10,919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3,310	0	26	10,933	26	2,326	0
교 통 사 업	146,182	2,485	25	4,536	3,619	133,748	1,770
광역교통시설	8,778	3,826	0	2,214	0	1,898	840
주 택 사 업	170,359	13,931	0	59,609	225	95,164	1,431
도 시 개 발	79,070	1,426	41	12,300	20,389	42,181	2,733
균 형 발 전	14,875	8,129	0	3,506	393	1,661	1,187
학교용지부담금	26,373	0	0	25,988	0	244	141
의료급여기금	333,983	270,322	0	63,661	0	0	0
한강수질개선	3,283	0	0	2,777	0	139	366
소 방	27,755	314	0	354	3,220	21,416	2,451
공기업특별회계	172,982	10,278	2,468	13,884	27,936	112,831	5,586
수 도 사 업	106,031	10,278	2,468	11,568	12,379	63,919	5,419
공기업하수도사업	66,951	0	0	2,315	15,556	48,912	167

(5) 이용 및 전용

- 2023회계연도에는 실·본부·국간 또는 부서간 예산 이용이 발생하지 않았음
- 예산의 전용은 총 165건에 240억 3,600만원이 이루어져, 직전회계연도 대비 39건이 증가하고, △6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9-1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2023	2022	2021
합계 (건수)		24,036 (165)	26,784 (132)	26,702 (168)
	일반회계 (건수)	12,067 (138)	16,575 (90)	20,383 (144)
	특별회계 (건수)	11,970 (27)	10,209 (42)	6,319 (24)
	기타특별회계 (건수)	3,531 (18)	8,130 (36)	6,034 (22)
	공기업특별회계 (건수)	8,439 (9)	2,079 (6)	285 (2)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목(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세목)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건수임

(6) 예비비

① 총 괄

○ 예비비 예산액은 1,488억 7,100만원 으로
지출결정액 582억 900만원 중
지출액은 551억 1,200만원 이고
이월액은 1억 7,300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29억 2,500만원 임

〈표 9-1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계		148,871	58,209	55,286	55,112	173	2,925
	일반회계	125,001	51,793	48,869	48,695	173	2,925
	특별회계	23,870	6,417	6,417	6,417	0	0

② 일반회계

○ 일반회계중 예비비 예산액은 1,250억 100만원 으로
지출결정액 582억 900만원 중
지출액은 551억 1,200만원 이고
이월액은 1억 7,300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29억 2,500만원 임

〈표 9-16〉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 (분야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125,001	51,793	48,869	48,695	173	2,925
	일 반 공 공 행 정	0	1,788	829	829	0	959
	공공질서및안전	0	500	500	500	0	0
	교 육	0	0	0	0	0	0
	문 화 및 관 광	0	294	173	0	173	121
	환 경	0	316	0	0	0	316
	사 회 복 지	0	12,554	11,714	11,713	0	840
	보 건	0	5,990	5,316	5,316	0	674
	농 립 해 양 수 산	0	961	960	960	0	1
	산 업 · 중 소 기 업 및 에 너 지	0	1,050	1,050	1,050	0	0
	교 통 및 물 류	0	27,208	27,208	27,208	0	0
	국 토 및 지 역 개 발	0	812	800	800	0	12
	과 학 기 술	0	0	0	0	0	0
	기 타	0	321	318	318	0	3
	예 비 비	0	0	0	0	0	0

③ 특별회계

○ 특별회계 중 예비비 예산액은 238억 7,000만원 으로
지출결정액 64억 1,700만원 중
지출액은 64억 1,700만원 이고
이월액은 0원 이며
집행잔액은 0원 임

〈표 9-17〉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회계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23,870	6,417	6,417	6,417	0	0
기타특별회계	13,703	1,835	1,835	1,835	0	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0	0	0	0	0	0
교 통 사 업	1,770	0	0	0	0	0
광 역 교 통 시 설	840	0	0	0	0	0
주 택 사 업	2,379	0	0	0	0	0
도 시 개 발	4,057	1,324	1,324	1,324	0	0
균 형 발 전	1,187	0	0	0	0	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141	0	0	0	0	0
의 료 급 여 기 금	0	0	0	0	0	0
한 강 수 질 개 선	366	0	0	0	0	0
소 방	2,962	512	512	512	0	0
공기업특별회계	10,167	4,581	4,581	4,581	0	0
수 도 사 업	9,300	3,881	3,881	3,881	0	0
공 기업하수도사업	867	700	700	700	0	0

(7) 다음연도 이월액

- 2023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 중 계속비 이월은 없음
-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423억 4,600만원 이며
-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2,138억 5,900만원 임
-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7,547억 2,800만원 이며
- 기타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6,467억 2,200만원 임
-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액은 329억 200만원 이며
- 공기업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1,502억 1,200만원 임

〈표 9-18〉 2023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현황(회계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나)/(가)
		계 (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설개량 이월	계속비 이월	
합계	51,490,048	1,690,557	797,073	860,581	32,902	0	3.3
일반회계	36,507,392	256,205	42,346	213,859		0	0.7
특별회계	14,982,656	1,434,352	754,728	646,722		0	9.6
기타특별회계	12,979,944	1,251,238	754,728	496,510		0	9.6
도시철도건설사업비	2,057,950	65,323	37,369	27,954		0	3.2
교 통 사 업	2,230,608	87,029	19,462	67,567		0	3.9
광 역 교 통 시 설	332,691	61,610	3,480	58,130		0	18.5
주 택 사 업	3,041,073	594,957	590,678	4,279		0	19.6
도 시 개 발	2,119,577	390,567	83,760	306,807		0	18.4
균 형 발 전	211,850	50,868	19,979	30,889		0	24.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36,772	0	0	0		0	0.0
의 료 급 여 기 금	1,928,935	0	0	0		0	0.0
한 강 수 질 개 선	37,339	157	0	157		0	0.4
소 방	983,148	726	0	726		0	0.1
공기업특별회계	2,002,711	183,114		150,212	32,902	0	9.1
수 도 사 업	995,269	50,432		41,378	9,054	0	5.1
공 기업하수도사업	1,007,442	132,682		108,834	23,849	0	13.2

〈표 9-19〉 최근 3년간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	2022	2021
합계	1,690,557	1,114,066	1,161,603
명 시 이 월	797,073	335,678	445,055
사 고 이 월	860,581	766,059	690,474
건 설 개 량 이 월	32,902	12,330	26,075
계 속 비 이 월	0	0	0

〈표 9-20〉 최근 3년간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 관련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사고이월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액 비율
2023	51,490,048	47,460,456	2,238,850	860,581	1.7
2022	53,468,799	50,276,587	1,995,106	766,059	1.4
2021	47,759,128	45,333,691	1,180,682	690,474	1.4

(8) 결산상잉여금

① 결산상잉여금 총괄

○ 2023회계연도 결산상잉여금은	3조 2,980억 9,800만원 으로
명시이월	6,411억 9,900만원 ,
사고이월	8,605억 8,100만원 ,
건설개량이월	329억 200만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1,174억 2,500만원 ,
채무상환	0만원 ,
물납 등	0만원 ,
순세계잉여금	1조 6,459억 9,200만원 임

② 일반회계 결산상잉여금

○ 일반회계 결산상잉여금은	1조 2,867억 9,600만원 으로
명시이월	423억 4,600만원 ,
사고이월	2,138억 5,900만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979억 1,400만원 ,
채무상환	0만원 ,
물납 등	0만원 ,
순세계잉여금	9,326억 7,700만원 임

③ 특별회계 결산상잉여금

○ 특별회계 결산상잉여금은	2조 113억 200만원 으로
명시이월	5,988억 5,300만원 ,
사고이월	6,467억 2,200만원 ,
건설개량이월	329억 200만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195억 1,100만원 ,
채무상환	0,000억 0,000만원 ,
물납 등	0,000억 0,000만원 ,
순세계잉여금	7,133억 1,500만원 임

〈표 9-21〉 2023회계연도 결산상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결산상잉여금 (A)	결 산 상 잉 여 금 세 부 내 역								2022회계연도 결산상잉여금 (B)	증감률 [(A-B)/(B)]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건설개량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	채무상환	물납 등	순세계 양여금		
합 계	3,298,098	641,199	860,581	32,902	0	117,425	0	0	1,645,992	5,295,096	△37.7
일반회계	1,286,796	42,346	213,859		0	97,914	0	0	932,677	3,597,370	△64.2
특별회계	2,011,302	598,853	646,722	32,902	0	19,511	0	0	713,315	1,697,726	18.5
기 타	1,612,830	598,853	496,510		0	19,308	0	0	498,158	1,461,435	10.4
공기업	398,473		150,212	32,902	0	203	0	0	215,156	236,291	68.6

(9) 기 금

- 17개 기금(26개 계정)의 2023회계연도말 조성액은 7조 6,622억 8,0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말 조성액 7조 2,080억 8,100만원에 비해 4,541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9-22〉 기금별·계정별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말 조 성 액	2023회계연도중 증감			2023회계연도말 조 성 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7,208,081	454,199	3,238,957	2,784,758	7,662,28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79,020	259,898	2,118,879	1,858,981	5,938,918
통합계정	3,423,856	750,669	1,097,641	346,971	4,174,526
재정안정화계정	2,255,164	△490,771	1,021,238	1,512,010	1,764,392
중소기업육성기금	221,487	44,684	364,592	319,908	266,172
융자계정	125,107	1,602	275,908	274,306	126,709
투자계정	57,105	31,664	75,239	43,574	88,770
사회적경제계정	39,275	11,418	13,445	2,028	50,693
식품진흥기금	49,660	1,411	5,423	4,012	51,072
기후대응기금	98,447	△19,331	13,249	32,580	79,116
도로굴착복구기금	27,594	5,161	45,430	40,269	32,754
성평등기금	23,958	136	1,159	1,023	24,094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8,809	1,785	30,223	28,438	10,594
사회복지기금	46,602	22,601	41,799	19,199	69,201
노인복지계정	12,474	△429	638	1,067	12,045
장애인복지계정	23,982	△1,410	3,483	4,894	22,572
자활계정	8,307	1,547	2,458	911	9,853
주거지원계정	1,839	22,893	35,220	12,327	24,731
체육진흥기금	56,466	1,958	12,277	10,320	58,424
재난관리기금	844,968	84,840	526,957	442,116	929,809
재난계정	715,943	72,758	315,710	242,952	788,701
구호계정	129,025	12,082	211,247	199,164	141,108
남북교류협력기금	31,992	1,003	1,495	492	32,995
대외협력기금	8,452	△3,407	2,890	6,297	5,045
국내협력계정	3,714	△1,886	1,152	3,038	1,828
국제협력계정	4,738	△1,521	1,738	3,259	3,217
도시재생기금	49,211	30,476	31,775	1,299	79,687
관광진흥기금	6,132	565	2,388	1,823	6,697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923	333	2,156	1,823	1,256
서울관광플라자계정	5,209	232	232	-	5,441
공무원주거안정기금	4,988	△816	17,186	18,002	4,172
하수도사업회전기금	50,293	22,939	22,939	-	73,231
고향사랑기금	-	298	298	-	298

※ 연도말 조성액 = 예탁금잔액 + 예치금잔액(사고이월 포함)

- 17개 기금(26개 계정)의 2023회계연도말 예치금 잔액은 2조 7,198억 1,5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말 예치금 잔액 3조 3,030억 3,600만 원에 비해 △5,832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9-23〉 기금별·계정별 예치금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말 예치금 잔액	2023회계연도중 증감			2023회계연도말 예치금 잔액
		계	수납	지출	
합 계	3,303,036	△583,221	3,264,877	3,848,098	2,719,81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61,807	△769,522	2,132,799	2,902,321	1,192,285
통합계정	211,043	△118,751	1,111,561	1,230,311	92,292
재정안정화계정	1,750,764	△650,771	1,021,238	1,672,010	1,099,992
중소기업육성기금	221,488	24,684	364,592	339,908	246,172
융자계정	125,107	1,602	275,908	274,306	126,709
투자계정	57,105	31,664	75,239	43,574	88,770
사회적경제계정	39,275	△8,582	13,445	22,028	30,693
식품진흥기금	14,660	1,411	5,423	4,012	16,072
기후대응기금	58,447	△7,331	25,249	32,580	51,116
도로굴착복구기금	27,594	5,161	45,430	40,269	32,754
성평등기금	758	136	1,159	1,023	894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6,809	1,785	30,223	28,438	8,594
사회복지기금	16,292	22,601	41,799	19,198	38,893
노인복지계정	984	△429	638	1,067	555
장애인복지계정	9,582	△1,410	3,483	4,894	8,172
자활계정	3,887	1,547	2,458	911	5,433
주거지원계정	1,839	22,893	35,220	12,327	24,731
체육진흥기금	4,144	1,958	12,277	10,320	6,102
재난관리기금	844,969	84,840	526,956	442,116	929,809
재난계정	715,943	72,758	315,710	242,952	788,701
구호계정	129,025	12,082	211,247	199,164	141,108
남북교류협력기금	31,992	1,003	1,495	492	32,995
대외협력기금	8,452	△3,407	2,890	6,298	5,045
국내협력계정	3,714	△1,886	1,152	3,038	1,828
국제협력계정	4,738	△1,521	1,738	3,259	3,217
도시재생기금	49,211	30,476	31,775	1,299	79,687
관광진흥기금	1,132	565	2,388	1,823	1,697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923	333	2,156	1,823	1,256
서울관광플라자계정	209	232	232	-	441
공무원주거안정기금	4,988	△816	17,186	18,002	4,172
하수도사업회전기금	50,293	22,939	22,939	-	73,231
고향사랑기금	-	298	298	-	298

※ 예치금잔액은 사고이월 포함

(10) 채 권

○ 2023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2022회계연도말에 비해 1,804억 500만원 증가한 1조 7,098억 9,400만원으로, 종류별 구성내역은

- 보증금채권 3,563억 7,500만원 ,
- 융자금채권 1조 3,510억 4,400만원 ,
- 미수금채권 22억 6,100만원 ,
- 기타 채권 2억 1,400만원 임

〈표 9-24〉 2023회계연도 채권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말 현재액	2 0 2 3 회 계 연 도 중 증 감			2023회계연도말 현재액
			계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1,529,488	180,405	675,474	495,069	1,709,894
	일 반 회 계	250,919	(27,973)	90,141	118,114	222,945
	특 별 회 계	363,924	13,867	131,421	117,554	377,791
	기타특별회계	317,943	59,848	131,421	71,573	377,791
	공기업특별회계	45,981	(45,981)	-	45,981	-
기	금	914,646	194,512	453,912	259,401	1,109,157

〈표 9-25〉 2023회계연도말 종류별 채권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소 계	기 타	공 기 업	
합	계	1,709,894	222,945	377,791	377,791	-	1,109,157
	보 증 금 채 권	356,375	128,819	225,803	225,803	-	1,754
	융 자 금 채 권	1,351,044	93,352	150,289	150,289	-	1,107,403
	미 수 금 채 권	2,261	561	1,700	1,700	-	-
	기 타 채 권	214	214	-	-	-	-

(11) 부채 및 채무

- 2023회계연도말 서울시 부채 현재액은 18조 891억 8,1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말에 비해 △1조 2,710억 2,400만원 감소하였음

〈표 9-26〉 2023회계연도 부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말 현 재 액	2023회계연도중 증감현황			조정액	2023회계연도말 현 재 액
		계 (가)-(나)	증가 (가)	감소 (나)		
총 계	19,360,206	(1,271,024)	6,194,739	7,465,763	-	18,089,181
지방채 ^{주1)}	11,898,002	(455,505)	1,681,591	2,137,095	-	11,442,498
일 반 회 계	34,200	-	-	-	-	34,200
기 타 특 별 회 계	11,213,802	(455,505)	1,681,591	2,137,096	-	10,758,297
도 시 철 도 거 설 사 업 비 회 계	6,663,534	(240,863)	1,151,591	1,392,454	-	6,422,67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766,025	36,833	395,000	358,167	-	1,802,858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365,244	(230,375)	50,000	280,374	-	2,134,869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366,400	(8,000)	85,000	93,000	-	358,400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52,600	(13,100)	-	13,100	-	39,500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	-	-	-
기 금	650,000	-	-	-	-	650,000
재난관리기금	650,000	-	-	-	-	650,000
세입세출외현금	294,539	28,414	1,054,170	1,025,756	-	322,953
일 반 회 계	288,457	28,437	951,711	923,273	-	316,895
기 타 특 별 회 계	3,333	116	63,002	62,886	-	3,449
공기업특별회계	2,749	(140)	39,457	39,597	-	2,609
기 금	-	-	-	-	-	-
기타부채 ^{주2)}	7,167,665	(843,934)	3,458,978	4,302,912	-	6,323,731
일 반 회 계	1,728,541	(1,036,346)	990,542	2,026,906	-	692,177
기 타 특 별 회 계	5,342,008	220,471	2,405,649	2,185,179	-	5,562,479
공기업특별회계	41,039	22,733	57,482	34,750	-	63,771
기 금	56,077	(50,773)	5,305	56,078	-	5,304

※ 주1)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

주2) 재개발·재건축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 2023회계연도말 서울시 지방채 현재액은 11조 4,424억 9,773만원으로 2022회계연도말에 비해 △4,555억 462만원 감소하였음

〈표 9-27〉 2023회계연도 지방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명)	차입선 (기채방법)	2022 회계연도말 현재액	2023회계연도중 증감현황			조정액	2023 회계연도말 현재액	2023 회계연도중 이자지급
			계 (A+B)	차입 (A)	상환 (B)			
계		11,898,002	△455,505	1,681,591	2,137,096	-	11,442,498	180,399
일반회계 소계		34,200	-	-	-	-	34,200	783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 센터 건립 등	모집공채	34,200	-	-	-	-	34,200	783
기타특별회계 소계		11,213,802	△455,505	1,681,591	2,137,096	-	10,758,297	168,113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매출공채 모집공채	6,663,534	△240,863	1,151,591	1,392,454	-	6,422,670	87,283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도시 모집공채	1,766,025	36,833	395,000	358,167	-	1,802,858	30,057
도시개발 특별회계	모집공채	2,365,244	△230,375	50,000	280,375	-	2,134,869	44,381
광역교통 특별회계	공사자금 모집공채	366,400	△8,000	85,000	93,000	-	358,400	5,465
균형발전 특별회계	모집공채	52,600	△13,100	-	13,100	-	39,500	927
공기업특별회계 소계		-	-	-	-	-	-	-
-	-	-	-	-	-	-	-	-
기금 소계		650,000	-	-	-	-	650,000	11,503
재난관리기금	모집공채	650,000	-	-	-	-	650,000	11,503

- 2023회계연도말 서울시투자기관 채무 현재액은 10조 2,716억 8,793만원으로 2022회계연도말에 비해 1,522억 1,285만원 증가 하였음

〈표 9-28〉 서울시투자기관 채무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차입선	2022회계연도말 현재액	2023회계연도중 증감현황			조정액	2023회계연도말 현재액	2023회계연도중 이자지급
		소계	차입	상환			
계	10,119,475	152,213	2,848,935	2,696,722	-	10,271,688	225,979
서울교통공사	3,538,000	420,000	1,310,000	890,000	-	3,958,000	104,796
공사채	3,538,000	270,000	930,000	660,000	-	3,808,000	102,295
기업어음	-	-	230,000	230,000	-	-	2,501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	150,000	150,000	-	-	150,000	-
서울주택도시공사	6,328,312	△368,124	1,134,285	1,502,409	-	5,960,188	109,241
주택도시기금	5,773,201	△659,341	342,989	1,002,330	-	5,113,860	87,884
공사채	-	690,000	690,000	-	-	690,000	8,549
토지보상채권	55,111	1,217	1,296	79	-	56,328	-
기업어음	200,000	△100,000	100,000	200,000	-	100,000	5,579
금융기관(여신)	300,000	△300,000	-	300,000	-	-	7,229
농수산식품공사	71,197	22,925	35,630	12,705	-	94,122	1,810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61,197	22,925	25,630	2,705	-	84,122	1,810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10,000	-	10,000	10,000	-	10,000	-
서울에너지공사	181,966	77,411	369,020	291,609	-	259,377	10,131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144,400	71,300	71,300	-	-	215,700	6,227
기후대응기금	14,847	4,074	4,684	610	-	18,921	64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16,239	△1,067	1,036	2,103	-	15,172	391
공사채	6,480	3,104	3,104	-	-	9,584	452
일시차입금	-	-	288,896	288,896	-	-	2,998

(12) 물품 및 재산

① 물품

- 2023회계연도말 정수물품은 수량 15,553개, 현재액 2,716억 1,4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말에 비해 수량은 235개 증가하고, 금액은 208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음
- 구매와 관리전환 등에 의한 증가는 2,168개, 545억 1,000만원이며, 매각과 관리전환 등에 의한 감소는 △1,933개, △336억 4,500만원임

〈표 9-29〉 2023회계연도 물품 증감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정수	2022 회계연도말 보유현황		2023회계연도중 증감현황						2023 회계연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소계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합계	16,174	수량	15,318	2,168	1,317	851	△1,933	△114	△1,819	15,553
		금액	250,749	54,510	37,103	17,407	△33,645	△8,622	△25,023	271,614

② 공유재산

○ 2023회계연도말 공유재산은

- 토지 108,198천 m^2 78조 1,875억 1,616만원 ,
- 건물 13,203천 m^2 9조 471억 7,884만원 ,
- 기타 14,709천건 51조 7,335억 5,394만원 임

○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38조 9,682억 4,894만원으로 2022회계연도말 대비 3조 8,056억 6,009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사유는

- 공공시설 무상귀속 3,012억 6,260만원,
- 공공임대주택 매입 2,505억 5,215만원,
- 서울혁신파크부지 외 4개소 교환취득 1,480억 7,371만원,
- 도시자연공원 토지수용 1,057억 5,000만원,
- 서울시립대학교 시대융합관 신축 363억 8,622만원 등임

○ 주요 감소사유는

- 송현동부지 교환처분 △1,123억 5,798만원,
- 서인사마당주차장 외 10개소 교환처분 △357억 1,427만원,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편입토지 매각 △324억 1,108만원,
- 서울의료원(강남분원) 멸실 △135억 6,459만원,
- 마장청계플랫폼525 건물 매각 △57억 8,491만원 등임

〈표 9-30〉 2023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 회 현	0 회 계 연 재	2 회 계 연 재	2 회 계 연 재	2023회계연도 중 증감현황			2 회 현	0 회 계 연 재	2 회 계 연 재	3 회 계 연 재
						계 (가)-(나)	증가 (가)	감소 (나)				
합	계		135,162,589			3,805,660	5,355,681	1,550,021				138,968,249
	행정재산		106,733,366			3,294,901	4,405,596	1,110,695				110,028,267
	공용재산		11,642,167			561,999	750,134	188,135				12,204,166
	공공용재산		83,952,997			2,538,018	3,297,517	759,499				86,491,016
	기업용재산		9,373,582			△18,565	141,256	159,821				9,355,017
	보존용재산		1,764,620			213,449	216,688	3,240				1,978,068
	일반재산		22,934,204			69,832	509,158	439,326				23,004,036
	건설중인재산		5,495,020			440,927	440,927	-				5,935,946

(13)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관련

① 수도사업특별회계

□ 수입·지출 결산

-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결산 내역은
예산액 9,952억 6,88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123억 7,223만원으로
-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7%이고,
직전 5년간 평균비율(97.9%) 대비 3.8%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직전회계연도 비율(97.6%) 대비 4.1%포인트 증가하였음
- 징수·조사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2%로
직전 5년간 평균비율(96.3%) 대비 2.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직전회계연도 비율(94.2%)과 동일함

〈표 9-31〉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사업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재원수입
예산액 (가)	계	995,269	868,658	61,342	65,269
	당 초	930,000	868,658	61,342	0
	추 경	0	0	0	0
	간 주	0	0	0	0
	이월자금예산액	65,269	0	0	65,269
징수·조사결정액 (나)		1,074,511	889,087	120,155	65,269
수납액 (다)		1,012,372	829,891	117,212	65,269
불납결손액		658	0	658	0
미수금		61,481	59,196	2,285	0
수납액 비율	예산액 대비 (다)/(가)	101.7	95.5	191.1	100.0
	징수·조사결정액 대비 (다)/(나)	94.2	93.3	97.5	100.0

-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결산 내역은
예산액 9,952억 6,888만원 중
지출액이 8,386억 363만원(예산액 대비 84.3%)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504억 3,187만원(예산액 대비 5.1%),
불용액은 1,062억 3,338만원(예산액 대비 10.7%)임

〈표 9-32〉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사업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예산액 (가)	계	995,269	644,212	285,788	65,269
	당 초	930,000	644,212	285,788	0
	추 경	0	0	0	0
	간 주	0	0	0	0
	이용·전용·조정·이체	0	0	0	0
	예 비 비 지 출 액	0	0	0	0
	이 월 자 금 예 산 액	65,269	0	0	65,269
당 기 지 출 원 인 행 위 액		876,046	605,820	226,807	43,419
채 무 확 정 액		838,604	591,873	203,983	42,748
지 급 결 정 액		0	0	0	0
지 출 액 (나)		838,604	591,873	203,983	42,748
미 지 급 비 용 · 미 지 급 금		0	0	0	0
익 년 도 이 월 액 (다)		50,432	13,974	34,103	2,355
불 용 액 (라)		106,233	38,365	47,702	20,166
예산액 대 비	지 출 액 비 율 (나)/(가)	84.3	91.9	71.4	65.5
	이 월 액 비 율 (다)/(가)	5.1	2.2	11.9	3.6
	불 용 액 비 율 (라)/(가)	10.7	6.0	16.7	30.9

□ 지방채 현황 : 해당없음

□ 자산, 부채, 자본 및 당기순손실

- 2023회계연도말 자산은 5조 2,443억 1,172만원으로서
2022회계연도말과 비교하여 672억 5,595만원 증가하였음
- 2023회계연도말 부채는 1,439억 6,301만원으로서
2022회계연도말과 비교하여 162억 943만원 증가하였음
- 2023회계연도말 자본은 5조 1,003억 4,871만원으로서
2022회계연도말과 비교하여 510억 4,653만원 증가하였음
- 2023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315억 8,227만원으로서
2022회계연도말과 비교하여 439억 3,959만원 증가하였음

〈표 9-33〉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부채·자본·당기순이익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2회계연도 대비	
					증감액	증감률
자 산	계	5,125,699	5,177,056	5,244,312	67,256	1.3
	유 동 자 산	120,136	196,478	262,431	65,953	33.6
	비 유 동 자 산	5,005,563	4,980,578	4,981,881	1,303	0.0
부 채	계	119,005	127,754	143,963	16,209	12.7
	유 동 부 채	26,555	34,987	30,954	-4,033	-11.5
	비 유 동 부 채	92,450	92,767	113,009	20,242	21.8
자 본	계	5,006,693	5,049,302	5,100,349	51,047	1.0
	자 본 금	1,218,213	1,218,213	1,218,213	0	0.0
	자 본 잉 여 금	4,167,972	4,222,938	4,242,402	19,464	0.5
	자 본 조 정	0	0	0	0	0.0
	기타포괄손익 누 계 액	0	0	0	0	0.0
	이 익 잉 여 금 (또는 결손금)	-379,491	-391,849	-360,266	31,583	8.1
당 기 순 이 익 주1)	계	-133,224	-12,357	31,582	43,939	355.6
	수 익	641,945	790,794	894,054	103,260	13.1
	비 용	775,169	803,151	862,472	59,321	7.4

주1) 당기순손실의 경우, 계를 음수로 표기

②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수입·지출 결산

- 2023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결산 내역은
예산액 1조 74억 4,24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325억 1,331만원으로
-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5%이고,
직전 5년간 평균비율(94.9%) 대비 7.6%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직전회계연도 비율(92.5%) 대비 10.0%포인트 증가하였음
- 징수·조사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5.2%로
직전 5년간 평균비율(96.5%) 대비 △1.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직전회계연도 비율(94.8%) 대비 0.4%포인트 증가하였음

〈표 9-34〉 2023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사업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재원수입
예산액 (가)	계	1,007,442	762,044	151,740	93,658
	당 초	886,400	762,208	124,192	-
	추 경	27,350	△164	27,514	-
	간 주	35	-	35	-
	이월자금예산액	93,658	-	-	93,658
징수·조사결정액 (나)		1,084,600	820,373	170,569	93,658
수납액 (다)		1,032,513	772,153	166,702	93,658
불납결손액		209	0	209	-
미수금		51,877	48,220	3,657	-
수납액 비율	예산액 대비 (다)/(가)	102.5	101.3	109.9	100
	징수·조사결정액 대비 (다)/(나)	95.2	94.1	97.7	100

- 2023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결산 내역은
예산액 1조 74억 4,200만원 중
지출액이 8,078억 900만원(예산액 대비 80.2%)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326억 8,200만원(예산액 대비 13.2%),
불용액은 669억 5,100만원(예산액 대비 6.6%)임

〈표 9-35〉 2023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사업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예산액 (가)	계	1,007,442	503,893	409,891	93,657
	당 초	886,400	474,067	412,333	-
	추 경	27,385	29,792	-2,442	-
	간 주	35	35	-	-
	이용·전용·조정·이체	-	-	-	-
	예 비 비 지 출 액	-	-	-	-
	이 월 자 금 예 산 액	-	-	-	-
당 기 지 출 원 인 행 위 액		902,217	460,335	352,330	89,551
채 무 확 정 액		807,809	439,774	279,233	88,802
지 급 결 정 액		807,809	439,774	279,233	88,802
지 출 액 (나)		807,809	439,774	279,233	88,802
미 지 급 비 용 · 미 지 급 금		-	-	-	-
익 년 도 이 월 액 (다)		132,682	22,076	109,825	780
불 용 액 (라)		66,951	42,043	20,833	4,075
예산액 대 비	지 출 액 비 율 (나)/(가)	80.2	87.3	68.1	94.8
	이 월 액 비 율 (다)/(가)	13.2	4.4	26.8	0.8
	불 용 액 비 율 (라)/(가)	6.6	8.3	5.1	4.4

□ 지방채 현황 : 해당없음

□ 자산, 부채, 자본 및 당기순이익

- 2023회계연도말 자산은 7조 343억 9,700만원으로서
2022회계연도말과 비교하여 93억 7,400만원 증가하였음
- 2023회계연도말 부채는 101억 7,400만원으로서
2022회계연도말과 비교하여 63억 8,300만원 증가하였음
- 2023회계연도말 자본은 7조 269억 6,000만원으로서
2022회계연도말과 비교하여 29억 4,100만원 증가하였음
- 2023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은 △460억 2,700만원으로서
2022회계연도말과 비교하여 △467억 9,000만원 감소하였음

〈표 9-36〉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부채·자본·당기순이익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2회계연도 대비	
					증감액	증감률
자 산	계	7,034,397	7,082,670	7,091,994	9,324	0.1
	유 동 자 산	239,811	222,793	287,357	64,564	29.0
	비 유 동 자 산	6,794,586	6,859,877	6,804,637	△55,240	△0.8
부 채	계	7,437	3,791	10,174	6,383	168.4
	유 동 부 채	7,099	3,342	9,632	6,290	188.2
	비 유 동 부 채	338	449	542	93	20.7
자 본	계	7,026,960	7,078,879	7,081,820	2,941	0.0
	자 본 금	6,354,233	6,354,233	6,354,233	-	0.0
	자 본 잉 여 금	462,344	513,500	562,468	48,968	9.5
	자 본 조 정	-	-	-	-	-
	기 타 포 괄 액 손 익 누 계 액	-	-	-	-	-
	이 익 잉 여 금 (또는 결손금)	210,382	211,146	165,118	△46,028	△21.8
당 기 순 이 익 주1)	계	25,863	763	△46,027	△46,790	△6,132.4
	수 익	937,880	1,018,496	1,010,283	△8,213	0.81
	비 용	912,018	1,017,733	1,056,310	38,577	3.79

주1) 당기순손실의 경우, 계를 음수로 표기

(14) 재무제표

① 재정상태표

- 2023회계연도말 총 자산은 152조 5,148억 800만원으로서
2022회계연도말에 비해 3,439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총 부채는 18조 891억 8,100만원으로서
2022회계연도말에 비해 1조 2,710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순자산은 134조 4,256억 2,600만원으로서
2022회계연도말에 비해 1조 6,149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9-37〉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자 산 총 계		152,514,808	100	152,170,873	100
	유 동 자 산	8,084,693	5.3	10,505,677	6.9
	투 자 자 산	18,566,194	12.2	18,584,906	12.2
	일 반 유 형 자 산	8,804,695	5.8	8,975,641	5.9
	주 민 편 의 시 설	31,394,377	20.6	29,740,759	19.6
	사 회 기 반 시 설	84,518,839	55.4	83,277,281	54.7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146,010	0.7	1,086,609	0.7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52,514,808		152,170,873	
부 채 총 계		18,089,181	100	19,360,206	100
	유 동 부 채	3,423,926	18.9	4,879,528	25.2
	장 기 차 입 부 채	9,721,703	53.8	9,760,907	50.4
	기 타 비 유 동 부 채	4,943,552	27.3	4,719,771	24.4
순 자 산 총 계		134,425,626	100	132,810,667	100
	고 정 순 자 산	113,439,626	84.4	110,363,883	83.1
	특 정 순 자 산	6,446,474	4.8	8,576,128	6.5
	일 반 순 자 산	14,539,527	10.8	13,870,655	10.4

② 재정운영표

- 2023회계연도 총비용은 37조 2,318억 3,400만원으로서
직전회계연도에 비해 △2조 3,895억 7,200만원 감소하였음
- 2023회계연도 총수익은 37조 3,301억 600만원으로서
직전회계연도에 비해 △3조 3,130억 5,500만원 감소하였음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982억 7,200만원 흑자로서
직전회계연도에 비해 △9,234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9-38〉 재정운영표 (성질별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재정운영결과 (가)-(나)		(98,272)		(1,021,753)	
총비용 (가)		37,231,834	100	39,621,407	100
인건비		2,204,970	5.9	2,153,166	5.4
운영비		7,921,455	21.3	7,661,589	19.3
정부간이전비용		20,266,324	54.4	22,270,149	56.2
민간등이전비용		4,649,803	12.5	5,370,115	13.6
기타비용		2,189,282	5.9	2,166,388	5.5
총수익 (나)		37,330,106	100	40,643,160	100
자체조달수익		28,024,667	75.1	30,270,397	74.5
정부간이전수익		8,746,024	23.4	9,986,030	24.6
기타수익		559,416	1.5	386,733	0.9

※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가 괄호일 경우 흑자를 의미함

(15) 성인지 결산

〈표 9-39〉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293	4,054,921	3,919,068	96.6
일 반 회 계	일 반 회 계	266	3,700,492	3,584,250	96.9
	기타특별회계	22	353,202	333,704	94.5
	기 금	5	1,227	1,114	90.8

〈표 9-40〉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사업유형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사업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293	4,054,921	3,919,068	96.6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 추진 사업	소 계	46	803,560	765,427	95.3
	일 반 회 계	43	778,371	750,440	96.4
	기타특별회계	2	24,339	14,170	58.2
	기 금	1	850	817	96.1
성 별 영 향 평 가 사 업	소 계	121	961,073	927,662	96.5
	일 반 회 계	104	644,660	620,425	96.2
	기타특별회계	16	316,333	307,233	97.1
	기 금	1	80	4	5.3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소 계	126	2,290,289	2,225,979	97.2
	일 반 회 계	119	2,277,461	2,213,385	97.2
	기타특별회계	4	12,531	12,302	98.2
	기 금	3	297	293	98.7

〈표 9-41A〉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조직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실 · 본 부 · 국	사업수	세 출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행률
			구 성 비		구 성 비	
총 계	293	4,054,921	100.0	3,919,068	100.0	96.6
홍 보 기 획 관	3	6,511	0.2	6,121	0.2	94.0
여 성 가 족 정 책 실	84	1,733,170	42.7	1,676,270	42.8	96.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4	52,866	1.3	51,565	1.3	97.5
비 상 기 획 관	2	557	0.0	521	0.0	93.6
디 지 털 정 책 관	2	1,357	0.0	1,317	0.0	97.1
미 래 청 년 기 획 단	9	83,180	2.1	74,923	1.9	90.1
기 획 조 정 실	1	836	0.0	804	0.0	96.2
경 제 정 책 실	20	275,315	6.8	256,499	6.5	93.2
복 지 정 책 실	41	1,349,535	33.3	1,333,280	34.0	98.8
도 시 교 통 실	6	90,398	2.2	86,557	2.2	95.8
기 후 환 경 본 부	4	7,684	0.2	7,354	0.2	95.7
문 화 본 부	5	8,952	0.2	8,945	0.2	99.9
관 광 체 육 국	7	39,669	1.0	38,704	1.0	97.6
평 생 교 육 국	8	63,008	1.6	48,552	1.2	77.1
시 민 건 강 국	17	60,448	1.5	60,060	1.5	99.4
행 정 국	10	7,816	0.2	7,195	0.2	92.0
미 래 공 간 기 획 관	2	2,476	0.1	2,030	0.1	82.0
디 자 인 정 책 관	1	4,331	0.1	3,994	0.1	92.2
기 술 심 사 담 당 관	1	46	0.0	45	0.0	99.1
재 난 안 전 관 리 실	2	1,132	0.0	1,128	0.0	99.7
주 택 정 책 실	6	223,969	5.5	219,257	5.6	97.9
도 시 계 획 국	1	120	0.0	119	0.0	99.4
균 형 발 전 본 부	3	1,365	0.0	1,111	0.0	81.3

〈표 9-41B〉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조직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실 · 본 부 · 국	사업수	세 출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행률
			구 성 비		구 성 비	
푸른도시여가국	1	2,008	0.0	1,013	0.0	50.5
물순환안전국	1	339	0.0	335	0.0	98.8
감사위원회	5	596	0.0	519	0.2	87.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	78	0.0	73	0.2	93.1
자치경찰위원회	2	144	0.0	144	0.2	100.0
소방재난본부	5	3,624	0.1	3,499	0.2	96.5
미래한강본부	2	12,958	0.3	8,812	0.2	68.0
데이터센터	1	317	0.0	317	0.2	99.7
어린이병원	1	101	0.0	100	0.2	99.3
은평병원	2	1,124	0.0	935	0.2	83.2
서북병원	2	265	0.0	235	0.2	88.8
서울시립과학관	2	2,837	0.1	1,114	0.2	39.3
농업기술센터	4	1,136	0.0	1,123	0.2	98.9
서울역사박물관	2	637	0.0	634	0.2	99.5
한성백제박물관	1	270	0.0	270	0.2	100.0
서울도서관	4	11,314	0.3	11,250	0.2	99.4
서울역사편찬원	1	480	0.0	463	0.2	96.4
서울공예박물관	1	194	0.0	194	0.2	99.9
시립미술관	2	261	0.0	259	0.2	99.2
서울대공원	1	423	0.0	416	0.2	98.4
서울식물원	1	463	0.0	458	0.2	98.8
서울기록원	1	613	0.0	556	0.2	90.7